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386-01



■ 정책보고서 2014-37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김승권 · 김태완 · 신정훈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책임연구자】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2013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공저)

제3기 서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서천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정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지역균형발전의 강조와 함께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 개정으로 지역사회보장 개념에 의한 복지접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서울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등 우리 사회에 최근 발생한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들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접근전략이 다각화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무엇보다 읍·면·동 단위의, 더 나아가 마을단위의 인적 안전망 체계 구축이 민관협력에 의해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특성을 최대수준에서 고려한 지역복지정책의 추진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역복지정책이 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 추진성과 등 모든 단계에서 절절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복지정책 평가의 의미와 중요성이 있다.

전국 시·군·구에 대한 복지정책평가는 9년째 이어지고 있다. 2006~2008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였고, 2009년부터는 정부의 업무조정으로 행정자치부의 시도 합동평가에 통합되어 실시되었기 때문에 합동평가 자료 중에서 복지분야 자료를 별도로 분석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간접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도 합동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2006~2008년에 실시된 방식으로 시·군·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다만, 시도 합동평가의 일환으로 실시됨으로 인하여 평가지표의 충분성에서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즉, 복지정책에 대한 종합평가의 성격을 갖지 못하는 제한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평가지표에 의해 시·군·구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는 유일한 연구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도별, 시·군·구별 주요 복지통계는 학계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어 매우 가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당 원의 김승권 선임연구위원 책임으로 원내 연구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본 보고서 집필에서 연구진의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김승권)
제2장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김승권)
제3장 2014년 복지종합평가 결과 종합분석 (김승권)
제4장 사회복지직렬 확보율 평가결과 분석 (김승권)
제5장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평가결과 분석 (김승권)
제6장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평가결과 분석 (김승권·신정훈)
제7장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김태완)
제8장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평가결과 분석 (김태완)
제9장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김태완)
제10장 장애인 복지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김승권·신정훈)
제11장 아동보호 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김승권·신정훈)
제12장 보육기반 조성 평가결과 분석 (김승권·신정훈)
제13장 취약계층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평가결과 분석 (김승권·신정훈)
제14장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분석 (김승권)
제15장 우수지자체 선정 기준 및 결과 (김승권)
제16장 복지정책평가 9개년 성과와 정책제언 (김승권·김태완)
부록 1 및 부록 2 (김승권·신정훈)

짧은 연구기간과 적은 연구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낸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연구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효과성 증대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8
제2장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33
제1절 국내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33
제2절 국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42
제3장 2014년 복지종합평가 결과 종합분석	49
제1절 평가개요	49
제2절 2014년 주요 평가 결과	51
제3절 2014년 복지종합평가 결과의 시사점	56
제4장 사회복지직렬 확보율 평가결과 분석	61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61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62
제5장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평가결과 분석	67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67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69
제6장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평가결과 분석	77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77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79

제7장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89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89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92
제8장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평가결과 분석	107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07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09
제9장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119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19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21
제10장 장애인 복지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131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31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32
제11장 아동보호 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137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37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39
제12장 보육기반 조성 평가결과 분석	147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47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49
제13장 취약계층 생산물 우선구매 실적 평가결과 분석	157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57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58
제14장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분석	163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63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64
제15장 우수지자체 선정 기준 및 결과	169
제1절 우수지자체 선정 기준	169
제2절 우수지자체 선정 결과	176
제16장 복지정책평가 9개년 성과와 정책제언	183
제1절 복지정책평가 9개년 성과	183
제2절 정책제언	191
참고문헌	207
〈부록 1〉 시·도별 주요 복지통계	209
〈부록 2〉 시·군·구별 주요 복지통계	229

표 목차

〈표 2-1〉 2006~2013년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 분야의 평가지표	33
〈표 2-2〉 2006~2013년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분야의 평가지표	34
〈표 2-3〉 2006~2013년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분야의 평가지표	36
〈표 2-4〉 2006~2013년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분야의 평가지표	37
〈표 2-5〉 2006~2013년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분야의 평가지표	38
〈표 2-6〉 2006~2013년 노인 복지서비스 분야의 평가지표	39
〈표 2-7〉 2006~2013년 장애인 복지서비스 분야의 평가지표	40
〈표 2-8〉 2006~2013년 아동보호서비스 분야의 평가지표	41
〈표 2-9〉 2006~2013년 보육기반 조성 분야의 평가지표	42
〈표 3-1〉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의 틀	50
〈표 3-2〉 2014년 지역복지정책 평가를 및 (세부) 평가지표	50
〈표 3-3〉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의 전국 평균 점수	52
〈표 3-4〉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총점	52
〈표 3-5〉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지역별 평균 점수	53
〈표 3-6〉 2006~2014년 지역별 복지정책평가의 최고 및 최저(1000점 기준)	53
〈표 3-7〉 2014년 평가지표별 평균 점수	55
〈표 3-8〉 2014년 평가지표별 평균 점수의 3대 지역 격차(100점 기준 환산)	56
〈표 4-1〉 사회복지직렬 확보율 평가지표	61
〈표 4-2〉 「사회복지 직렬 확보율」의 평가점수	61
〈표 4-3〉 사회복지직렬 확보(배치)비율 평가결과	62
〈표 4-4〉 사회복지직렬 확보(배치)비율 기초분석	63
〈표 4-5〉 사회복지직렬 확보(배치)비율의 지역격차	63
〈표 5-1〉 2012~2014년 지역사회서비스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67
〈표 5-2〉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의 평가점수	68
〈표 5-3〉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68
〈표 5-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평가결과	69
〈표 5-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기초분석	70
〈표 5-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의 지역격차	71
〈표 5-7〉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73

〈표 5-8〉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기초분석	74
〈표 5-9〉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의 지역격차	74
〈표 6-1〉 2012~2014년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77
〈표 6-2〉 「민간복지자원 활성화」의 평가점수	78
〈표 6-3〉 「민간복지자원 활성화」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79
〈표 6-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평가결과	80
〈표 6-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기초분석	80
〈표 6-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의 지역격차	81
〈표 6-7〉 기부식품 등 모집 및 이용실적 평가결과	82
〈표 6-8〉 기부식품 등 모집 및 이용실적 기초분석	83
〈표 6-9〉 기부식품 등 모집 및 이용실적의 지역격차	83
〈표 6-10〉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실적 평가결과	84
〈표 6-11〉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실적 기초분석	84
〈표 6-12〉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실적의 지역격차	85
〈표 7-1〉 2012~2014년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89
〈표 7-2〉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의 평가점수	90
〈표 7-3〉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91
〈표 7-4〉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평가결과	93
〈표 7-5〉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기초분석	94
〈표 7-6〉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의 지역격차	94
〈표 7-7〉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평가결과	95
〈표 7-8〉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기초분석	96
〈표 7-9〉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의 지역격차	96
〈표 7-10〉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평가결과	98
〈표 7-11〉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기초분석	98
〈표 7-1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실적의 지역격차	99
〈표 7-13〉 수급자 관리실적 평가결과	100
〈표 7-14〉 수급자 관리실적 기초분석	100
〈표 7-15〉 수급자 관리실적의 지역격차	101
〈표 7-16〉 긴급복지 지원실적 평가결과	102
〈표 7-17〉 긴급복지 지원 실적 기초분석	103

〈표 7-18〉 긴급복지 지원실적의 지역격차	103
〈표 8-1〉 2012~2014년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107
〈표 8-2〉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의 평가점수	108
〈표 8-3〉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109
〈표 8-4〉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평가결과	110
〈표 8-5〉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기초분석	111
〈표 8-6〉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지역격차	111
〈표 8-7〉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평가결과	112
〈표 8-8〉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기초분석	113
〈표 8-9〉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의 지역격차	113
〈표 8-10〉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평가결과	115
〈표 8-11〉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기초분석	115
〈표 8-12〉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의 지역격차	116
〈표 9-1〉 2012~2014년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119
〈표 9-2〉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의 평가점수	120
〈표 9-3〉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121
〈표 9-4〉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평가결과	122
〈표 9-5〉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기초분석	123
〈표 9-6〉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의 지역격차	123
〈표 9-7〉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평가결과	125
〈표 9-8〉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기초분석	125
〈표 9-9〉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의 지역격차	126
〈표 9-10〉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평가결과	127
〈표 9-11〉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기초분석	128
〈표 9-12〉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의 지역격차	128
〈표 10-1〉 2012~2014년 「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131
〈표 10-2〉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평가점수	132
〈표 10-3〉 장애인연금 수급률 평가결과	133
〈표 10-4〉 장애인연금 수급률 기초분석	133
〈표 10-5〉 장애인연금 수급률의 지역격차	133
〈표 11-1〉 2012~2014년 아동복지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137

〈표 11-2〉 「아동보호 서비스」의 평가점수	138
〈표 11-3〉 「아동보호 서비스」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139
〈표 11-4〉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평가결과	140
〈표 11-5〉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기초분석	140
〈표 11-6〉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의 지역격차	141
〈표 11-7〉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을 평가결과	142
〈표 11-8〉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을 기초분석	142
〈표 11-9〉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의 지역격차	143
〈표 11-10〉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평가결과	144
〈표 11-11〉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기초분석	144
〈표 11-12〉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의 지역격차	144
〈표 12-1〉 2011~2014년 보육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147
〈표 12-2〉 보육기반 조성의 평가점수	148
〈표 12-3〉 보육기반 조성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148
〈표 12-4〉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평가결과	149
〈표 12-5〉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기초분석	150
〈표 12-6〉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의 지역격차	150
〈표 12-7〉 취약보육 실시율 평가결과	151
〈표 12-8〉 취약보육 실시율 기초분석	152
〈표 12-9〉 취약보육 실시율의 지역격차	153
〈표 13-1〉 2012~2014년 「취약계층 생산물 우선구매 실적」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157
〈표 13-2〉 취약계층 생산물 우선구매 실적의 평가점수	157
〈표 13-3〉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을 평가결과	158
〈표 13-4〉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을 기초분석	159
〈표 13-5〉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의 지역격차	159
〈표 14-1〉 2012~2014년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163
〈표 14-2〉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평가점수	164
〈표 14-3〉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을 평가결과	165
〈표 14-4〉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을 기초분석	165
〈표 14-5〉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의 지역격차	166
〈표 15-1〉 3대 지역별 인구규모 순위	170

〈표 15-2〉 3대 지역별 재정자립도 순위	171
〈표 15-3〉 3대 지역별 인구규모 및 재정자립도의 평균 순위	173
〈표 15-4〉 3대 지역별 그룹 분류 결과	175
〈표 15-5〉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우수 지자체:	177
〈표 15-6〉 2006~2014년 기간 지역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178
〈표 16-1〉 지자체간 복지종합평가결과의 격차	183
〈표 16-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	184
〈표 16-3〉 기부식품 총액 및 이용실적	184
〈표 16-4〉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실적	185
〈표 16-5〉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수 및 발굴실적	185
〈표 16-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실적	186
〈표 16-7〉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186
〈표 16-8〉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187
〈표 16-9〉 긴급복지지원실적	187
〈표 16-10〉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취·창업인원 및 취·창업률	188
〈표 16-11〉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탈수급자수 및 탈수급률	188
〈표 16-12〉 전체 수급권자 및 사례관리대상자의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189
〈표 16-13〉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190
〈표 16-14〉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용	190
〈표 16-15〉 취약보육시설 이용 아동	191

그림 목차

[그림 3-1] 지역복지정책평가의 전국 평균 점수 변화추이: 2006년~2014년	52
[그림 3-2] 2006~2014년 지역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1,000점 기준 환산)	54

제1장 서론

□ 연구의 배경

- 한국사회에서 지방분권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강조
 - 사회복지분야에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복지에 대한 역할과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성 대두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복지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추진이 요구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을 통해 지역복지정책 활성화 및 개선임.
 -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정부합동평가(시·도 복지정책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시·군·구 복지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우수지자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 시·군·구별 복지정책 평가를 통하여 기초 자치단체장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에 기여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복지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
 - 지난 평가의 성과를 분석하여 연도별 및 분야별 특징을 파악하고, 향후 효율적인 평가방향을 설정

□ 연구내용

-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분석임. 점수부여기준표에 의거한 시·군·구별 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분석하며 이러한 평가결과 분석은 영역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추진함.

-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를 선정함. 각 그룹별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최근 5년간 우수지자체의 동향을 파악함.
- 과거(2006~2013) 복지정책평가의 성과를 분석함.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한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정책평가를 통한 성과를 도출함.
- 결과분석에 따른 지자체 복지수준 향상 방안을 제안함. 먼저 전반적 정책 제언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 이어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 및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을 제언함. 아울러 영역(평가지표)별 정책을 제언하여 지역복지발전에 기여함.
- 평가그룹 분류 개선방안을 마련함. 현재 분류기준인 3대 지역, 인구, 재정자립도의 개선 필요성 여부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함.
- 성과중심의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제안함. 현 지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자체 복지정책 추진성과가 담보될 수 있는 효과성 높은 지표를 제안함.

□ 연구방법

- 국내외 복지정책평가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연구 검토임. 특히, 2006~2013년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의 지표를 검토하여 비교함.
- 본 연구의 핵심인 시군구 단위의 복지정책 평가결과를 분석함. 평가결과 분석은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비교함.
- 지역, 인구, 재정자립도 등에 기초하여 16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평가결과를 비교하고, 우수 지자체 선정함.
- 연구진 회의, 시도 평가업무 담당자 회의, 분야별 자문회의를 수행함.

제2장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 국내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2006~2012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 복지기반 조성

-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와 관련된 평가지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선택형, 개발형),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임.
- 민간복지자원 활성화와 관련된 지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기부식품 활성화 정도임.

○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과 관련된 평가지표는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이행급여특례보호실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수급자관리실적, 긴급복지 지원실적임.
-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와 관련된 평가지표는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지원 실적임.
 - 3개의 지표는 사업에 따른 효과를 잘 나타내 주는 성과지표로서 의미가 큼.
-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과 관련된 평가지표는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임.
 - 새롭게 구성된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은 허위사실로 의료보험급여를 받는 대상자에 대한 것으로 의료급여의 목적에 다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복지서비스

- 노인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평가지표는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개정법 시설·인력 기준 충족률과 기초노령연금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임.
 - 노인 복지서비스 분야의 평가지표는 평가초기와 비교할 때 많은 부분이 감소함.
 -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좀 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평가지표는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임.
- 아동보호서비스와 관련된 평가지표는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와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임.

4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 아동보호서비스의 평가지표는 현재 요보호아동에 국한되어 있어 추후 요보호아동복지 외의 아동복지관련 평가지표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보육기반 조성과 관련된 평가지표는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과 취약보육 실시율임.
- 전년도와 동일한 평가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짐.

□ 국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 영국의 지방구역종합평가(Comprehensive Area Assessment, CAA) 프로그램

- 2002년 성과종합평가(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 CPA)를 도입
- 2009년 4월 기존의 성과종합평가를 기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는 성과평가 방식인 지방구역종합평가(Comprehensive Area Assessment, CAA)로 대체
- 이 평가는 국가지표조합(National Indicator Set, NIS)을 활용하는데, 국가지표조합은 지방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조합(198개 지표)으로 기존의 수많은 지표를 축소·통합한 것
- 국가지표조합(NIS) 중 상당수가 보건복지부 관련 지표이며, 이들 지표에는 성과지표 및 과정지표(실적지표)가 모두 포함.

○ 캐나다 앨버타 주의 보건복지부 성과측정

- 앨버타 주는 「Health and wellness annual report」를 통해 거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
- 7개의 성과목표를 가지고 18개의 측정 가능한 지표를 제시함.

○ 미국의 지방정부 정책평가

-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성과평가와 정부성과평가(GPP)제도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가 있음.
- 전자는 각 주별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시행되며, 정책의 성

과 및 집행과정을 측정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추후 정책결정에 반영함.

- 후자는 체계모형(System model)에 입각한 평가로 성과에 대한 직접평가가 아니라, 성과를 산출하는 관리체계를 평가하여 성과창출기관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둠.

제3장 2014년 복지종합평가 결과 종합분석

□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복지평가는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음. 그렇지만 그 방식은 크게 변화되었는데, 2006~2008년과 2009~2014년의 기간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음.

○ 2006~2008년 기간에는 평가팀이 전국의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고, 2009~2014년 기간에는 정부 평가업무 조정으로 행정자치부의 ‘시·도 합동평가’에 포함되어 통합·실시되고 있음.

- 처음 평가가 실시된 2006년에는 96개 세부지표이었고, 2007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81개 세부지표이었으며, 2008년은 76개 세부지표로 피평가 기관인 시·군구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다소 줄였음.
-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시·도 합동평가에 통합된 이후에 복지평가지표는 2009년 50개 세부지표에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2012년과 2013년에 24개 세부지표, 2014년 25개 세부지표에 불과함.

○ 2014년 특징은 일반행정 분야에 ‘사회복지직렬 확보율’ 지표가 새롭게 포함되었고,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지표가 지역경제 분야에 포함되었으며,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지표가 중점과제 분야에 포함되었다는 것임.

- 그 외의 지표는 전년도의 평가를 및 (세부) 평가지표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음.

□ 2014년 주요 평가 결과

○ 2014년 복지종합평가 결과는 7,214점 만점에 평균 5,303.03점이며,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점수는 73.51점임.

- 100점 기준 환산의 평균점수는 2013년 71.7점에서 다소 상승함.
- 평가결과와 전국 격차는 최고 6,337.20점, 최저 4,004.40점임.
 -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고 87.85점, 최저 55.51점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획득한 지자체 간에 복지수준의 격차가 약 1.6배나 됨.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대 지역별 복지평가 총점의 평균은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어촌이었으며, 대도시는 가장 낮았음.
 -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에 의해 살펴보면, 중소도시 75.53점, 농어촌 73.06점, 대도시 71.85점임.

□ 전국 및 3대 지역의 평가지표별 평가점수

-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가 90.48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복지직 확보 비율 78.42점, 민간 복지자원 활성화 76.28점,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76.03점, 아동보호 서비스 74.58점,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72.01점,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70.89점임.
 - 다소 저조한 60점대의 평가결과를 보인 평가지표는 보육기반 조성 68.77점,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67.51점, 중증장애인생산물 67.59점,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66.81점임.
- 3대 지역을 비교하면, 대도시는 「중증장애인생산물」만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는 「사회복지직 확보 비율」,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민간 복지 자원 활성화」,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보육기반 조성」 등의 평가지표가 가장 높았으며, 농어촌은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장애인 복지 서비스」, 「아동보호 서비스」,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등의 평가지표가 가장 높았음.
 - 3대 지역 간 격차는 「중증장애인생산물」 평가지표가 33.81점으로 가장 컸고, 다음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 평가지표 15.45점, 「민간 복지 자원 활성화」 평가지표 13.09점,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평가지표 12.62점 등으로 컸음.

- 「사회복지직 확보 비율」 평가지표 0.90점,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평가지표 3.41점,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평가지표 3.93점, 「보육기반 조성」과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평가지표 4.04점,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평가지표 4.85점 등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적었음.

제4장 사회복지직렬 확보율 평가결과 분석

□ 전반적 평가결과

○ 195점 만점에 전국 평균 152.92점이었음.

-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195점 만점을 획득한 반면, 최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78점으로 기본 점수인 40%만을 획득하고 있어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가 컸음.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사회복지직렬 확보율에 대한 평가결과는 만점인 30점을 획득한 지자체가 41.30%로 가장 많았고, 기본 점수인 12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22.17%임.

- 지역별 평균 점수는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농어촌이 44.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도시 44.59%이었으며, 중소도시는 34.62%로 가장 적었음.

○ 2013년에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직렬 평균 현원은 62.12명이었고, 평균 정원 64.38명 대비 96.91%의 확보율을 나타냄.

제5장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평가결과 분석

□ 전반적 평가결과

○ 860점 만점에 전국 평균 580.57점이었음.

-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860점 만점을 획득한 반면, 최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344점으로 기본 점수인 40%만을 획득하고 있어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가 컸음.

- 중소도시 지자체의 평균 점수가 621.9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어촌 지자체로 평균 602.88점이었으며, 대도시 지자체는 평균 513.44점으로 가장 낮았음.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지표의 2개 세부지표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세부 지표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에 대한 평가결과는 30점 만점에 평균 21.12점이었고, 지역별 평균 점수는 중소도시 23.33점, 농어촌 19.76점, 대도시 20.23점이었음.
- 두 번째 세부 지표인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7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6.39점이었고, 지역별 평균 점수는 중소도시 48.99점, 농어촌 50.35점, 대도시 39.47점으로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유사하였으나, 대도시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음.

제6장 민간복지지원 활성화 평가결과 분석

□ 전반적 평가결과

○ 650점 만점에 평균 495.84점이었음.

-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650점 만점을 획득한 반면, 최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305.50점으로 나타남.
- 중소도시 지자체의 평균 점수가 544.50점으로 가장 높았고, 농어촌 지자체는 평균 481.75점이었으며, 대도시 지자체는 평균 459.39점으로 가장 낮았음.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첫 번째 세부 지표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에 대한 평

가결과는 50점 만점에 평균 40.09점이었음.

- 지역별 평균 점수는 중소도시 지자체가 48.4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어촌 지자체 38.46점, 대도시 지자체 32.97점의 순임.

○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지표의 두 번째 세부 지표인 ‘기부식품제공 활성화 정도’는 복합지표로서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과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실적’에 의하여 평가됨.

-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25점 만점에 평균 17.68점이었음. 지역별 평균 점수는 대도시 지자체가 평균 18.2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어촌 지자체 평균 17.60점, 중소도시 지자체 평균 17.26점의 순이었음.
-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25점 만점에 평균 18.52점이었음. 대도시 지자체가 19.50점, 중소도시 지자체 18.05점, 농어촌 지자체 18.05점이었음.

제7장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 전반적 평가결과

○ 1,240점 만점에 평균 942.72점이었음.

-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1,240점 만점을 획득한 반면, 최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483.60점으로 나타남.
- 중소도시 지자체의 평균 점수가 964.02점으로 가장 높았고, 농어촌 지자체는 평균 941.29점이었으며, 대도시 지자체는 평균 921.79점으로 가장 낮았음.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은 20점 만점에 평균점수는 14.52점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17.04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각각 14.31점과 12.35점으로 대도시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20점 만점에 평균점수는 19.19점이었고, 지역별로 대도시가 19.50점으로 높았으며 중소도시가 근소하게 낮은 19.50점, 농어촌은 18.35점임.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의 20점 만점에 평균점수는 13.57점으로 2013년에 비해 근소하게 상향(13.40점)되었고, 농어촌과 중소도시는 비슷한 수준인 13.88점과 13.62점을 받았으며, 대도시는 다소 낮은 점수인 13.19점이었음.
- 수급자 관리 실적은 10점 만점에 평균 6.41점으로 2013년 6.85점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 농어촌이 작년에 이어 가장 높은 7.62점이었고, 대도시, 중소도시는 비슷한 수준인 5.61점과 5.97점을 받았음.
- 긴급복지지원 실적의 30점 만점에 평균 22.33점으로 전년도(21.76점)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24.35점과 23.72점이었으며, 대도시는 18.74점으로 지역간 격차를 보였음.

제8장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평가결과 분석

□ 전반적 평가결과

○ 1,010점 만점에 평균 727.29점이었음.

- 중소도시 지자체의 평균 점수가 755.17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도시 지자체는 평균 720.29점이었으며, 농어촌 지자체는 평균 706.22점으로 가장 낮았음.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자활사업의 세부평가항목은 작년과 동일한 평가항목인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수급자의 취창업률”과 새롭게 구성된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으로 구성됨.

- 평균점수에서 탈수급률은 27.71점으로 2013년(20.88점)에 비해서는 높아

졌음.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는 있지 않지만 대도시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평균점수에 비해 낮았음.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전국 평균 29.98점이었으며, 도시지역이 농어촌에 비해 높았음.
-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에 대한 평균점수는 14.31점이었으며, 중소도시가 가장 높은 15.54점이었으며, 다음으로 대도시와 농어촌이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제9장 의료급여관리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 전반적 평가결과

○ 590점 만점에 평균 418.23점이었음.

-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590점 만점을 획득한 반면, 최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236.00점으로 나타남.
- 농어촌 지자체의 평균 점수가 430.70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지자체는 평균 415.95점이었으며, 대도시 지자체는 평균 407.50점으로 가장 낮았음.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의료급여 관리 적절성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가율과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4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두변수 모두 최고점을 받은 지자체가 있었으며, 최저점수는 동일하게 16점을 보여주고 있음.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담이득금 징수실적은 2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역시 최고점수 20점과 최소점수 8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균을 보면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가율의 경우 농어촌이 30.69점, 대도시 26.05점, 중소도시가 25.77점으로 나타났음.

-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의 경우 중소도시가 30점, 대도시 29.22점, 농어촌이 25.85점으로 다소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은 농어촌이 16.46점, 중소도시가 14.73점, 대도시 13.8점으로 2013년과 동일한 순서를 보여주고 있음.

제10장 장애인복지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 전반적 평가결과

○ 610점 만점에 평균 551.92점이었음.

-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610점 만점을 획득한 반면, 최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244.00점으로 나타남.
- 농어촌 지자체의 평균 점수가 605.31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지자체는 평균 537.27점이었으며, 대도시 지자체는 평균 511.08점으로 가장 낮았음.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장애인연금 지급률의 평가는 94.% 이상이면 만점인 100점, 85% 이상~94% 미만이면 85점, 75% 이상~85% 미만이면 70점, 65% 이상~75% 미만이면 55점, 65% 미만이면 기본점수인 40점을 부여함.

- 전체적으로 장애인연금 신규 지급률의 평가결과를 보면, 94% 이상의 높은 지급률을 보인 지자체는 전국 230개 지자체 중 64.78%이었고, 65% 미만의 지급률을 보인 지자체는 1.30%임.
- 농어촌 지자체가 만점인 100점(94% 이상)을 받은 경우가 96.15%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지자체 및 대도시 지자체도 만점인 100점(94% 이상)을 받은 경우가 각각 52.46%, 44.59%로 나타남.
- 중소도시 지자체에서는 40점(65% 미만)을 받은 경우가 2.56%로 전국 평균 1.30%의 약 2배로 많이 나타남.

제11장 아동보호 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 전반적 평가결과

○ 470점 만점에 평균 350.54점이었음.

-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470점 만점을 획득한 반면, 최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188.00점으로 나타남.
- 농어촌 지자체의 평균 점수가 359.25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지자체는 평균 350.81점이었으며, 대도시 지자체는 평균 341.07점으로 가장 낮았음.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아동보호 서비스」 지표의 2개의 세부지표 평가결과를 보면 첫 번째 세부 지표인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는 복합지표로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 비율과 디딤씨앗통장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로 구성되며 두 번째 세부 지표인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에 대한 평가결과로 구성됨.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지표 평가결과는 10점 만점에 평균 9.11점이었고, 지역별 평균 점수는 농어촌 지자체가 가장 높은 9.60점이었으며,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 9.51점, 대도시 지자체 8.16점의 순이었음.
-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에 대한 평가결과는 20점 만점에 평균 12.70점이었고, 지역별 평균 점수는 유사한 수준이었음.
-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에 대한 평가결과는 20점 만점에 평균 15.49점이었고,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자체가 16.5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도시 지자체 15.05점, 중소도시 지자체 14.85점의 순이었음.

제12장 보육기반 조성 평가결과 분석

□ 전반적 평가결과

○ 880점 만점에 평균 605.21점이었음.

- 중소도시 지자체의 평균 점수가 621.08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도시 지자체는 평균 609.22점이었으며, 농어촌 지자체는 평균 585.54점으로 가장 낮았음.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보육기반 조성」 지표의 2개 세부지표 평가결과는 ‘어린이집 평가인증률’과 ‘취약보육 실시율’로 평가지표가 구성됨.
-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에 대한 평가결과는 40점 만점에 평균 27.32점 (SD=4.87)이었고,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자체 평균 27.84점, 중소도시 지자체 평균 28.00점, 농어촌 지자체 평균 26.15점이었음.
- ‘취약보육 실시율’에 대한 평가결과는 60점 만점에 평균 41.45점이었고,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지자체 평균 42.58점, 대도시 지자체 평균 41.39점, 농어촌 지자체 평균 40.38점이었음.

제13장 취약계층 생산물 우선구매 실적 평가결과 분석

□ 전반적 평가결과

- 448점 만점에 평균 302.79점이었음.
- 대도시 지자체의 평균 점수가 378.08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지자체는 평균 307.57점이었으며, 농어촌 지자체는 평균 226.58점으로 가장 낮았음.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전국 230개 지자체 중 만점인 40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31.30%이었고, 기본 점수인 16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38.26%이었음.
-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대도시가 52.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30.77%이었으며, 농어촌은 11.54%로 적었음.

제14장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분석

□ 전반적 평가결과

- 261점 만점에 평균 174.38점이었음.
- 농어촌 지자체의 평균 점수가 179.13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지자체는 평균 175.12점이었으며, 대도시 지자체는 평균 168.59점으로 가장 낮았음.

□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 전국 230개 지자체 중 만점인 30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13.91%이었고, 기본 점수인 12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7.39%임.
-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농어촌이 19.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11.54%이었으며, 대도시는 10.81%로 적었음.

제15장 우수지자체 선정 기준 및 결과

□ 우수지자체 선정 기준

- 평가그룹별로 우수 지자체 선정함.
- 평가그룹 분류 1단계
 - 전체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함.
- 평가그룹 분류 2단계
 - 3대 지역구분별로 시군구의 인구규모와 재정자립도에 순위를 부여하고, 이들 순위를 합산하여 1/2를 곱한 값을 최종 순위로 산출함.
- 평가그룹 분류 3단계
 - 2단계의 최종 순위에 따라 시군구를 그룹수로 나누어 각 그룹별 시군구를 선정. 즉, 이들 평균값의 오름차순을 기준으로 대도시 5개 그룹, 중소도시 5개 그룹, 농어촌 6개 그룹으로 분류함.

□ 우수지자체 선정 결과

-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의 우수 지자체로 16개 각 그룹별로 최우수 1개를 선정함.
- 이들 그룹별 최우수지자체 중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곳은 중소도시의 경기 포천시였고, 대도시 1위는 대전 대덕구, 농어촌 1위는 충북 보은군이었음.
-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우수지자체 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5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인천, 대전이 각 2개 지역이었으며,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이 각 1개 지역이었음.

제16장 복지정책평가 9개년 성과와 정책제언

□ 복지정책평가 9개년 성과

○ 복지종합평가의 전반적 결과

- 복지종합평가의 전반적 결과를 전체 지자체의 평균점수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 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2006년 56.67점→2007년 63.15점→2008년 64.50점→2009년 67.70점→2010년 67.12점→2011년 65.66점→2012년 68.81점→2013년 71.7점→2014년 73.51점으로 향상됨.
- 전체 지자체 평가결과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향상되었지만,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는 현저함.
- 즉, 100점 기준 2006년의 격차는 30.95%pt이었고, 2013년에는 34.17%pt로 격차가 오히려 커졌으며, 2014년에는 32.34%pt의 격차만 보여 바람직한 양상을 보여 줌.

○ 복지기반조성의 성과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는 2010년 86명, 2011년 57명, 2012년 119명, 2013년 154명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임.
- 전체 지자체 수를 고려한 민간상근간사 배치율은 2010년 37.39%→2011년 24.78%,→2012년 51.97%→2013년 66.96%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것임.

- 민간복지자원의 하나인 기부식품의 총액은 2008년 370억 6,797만 6천원
→2009년 520억 5,800만 5천원→2010년 603억 1,967만원→2011년
782억 2,237만 6천원→2012년 930억 3,783만원→1,134억 6,979만 2천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 기부식품 이용자수는 2010년 217,710명→2011년 256,958명→2012년
302,414명→2013년 397,706명으로 증가됨.
-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지원한 금액은 2012년 127억
6758만 1천원→2013년 145억 6,788만 3천원으로 증가됨. 또한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장은 2012년 437개소→2013년 445개소로 적으
나마 증가됨.

○ 기초생활보장의 성과

-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수는 2008년 184,289명→2009년 226,145명→
2010년 224,889명→2011년 113,677명→2012년 136,679명→2013년
126,220명으로 다소 등락을 보였지만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1~2013년 기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실적을 살펴보면 중점관
리 소득유형 대상자수는 2011년 879,663가구→2012년 6,128,161가구→
2013년 5,573,594가구로 증가하였다가 최근에 감소하였고, 중점관리 소
득 증가건수는 2011년 238,904건→2012년 700,370건→2013년
288,332건으로 증가하였다가 큰 폭을 감소를 보였음.
- 또한 중점관리 소득 감소건수도 2011년 640,759건→2012년 676,270건
→2013년 376,524건으로 증가하였다가 감소됨.
- 근로능력가구수는 2012년 220,811가구에서 2013년 224,443가구로 다
소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이행급여특례가구수는 2012년 3,578가구에서
2013년 14,360가구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음.
- 이행급여특례가구 중 신규 이행급여특례가구는 2012년 3,925가구에서
2013년 15,287가구로 크게 증가됨.

- 수급자 가구는 2012년 820,007가구에서 2013년 808,741가구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급자 가구 중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는 2012년 34,991가구→2013년 33,962가구로 다소 감소됨.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 중 보호결정 가구는 2012년 34,524가구→2013년 33,385가구로 수급자 가구와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의 감소와 유사한 수준에서 감소됨.
- 긴급복지지원 총 결정가구수는 2008년 27,426가구→2009년 93,693가구→2010년 45,223가구→2011년 41,924가구→2012년 38,838가구→2013년 83,118가구로 2009년 이후 2012년까지는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큰 폭으로 증가됨. 이는 긴급지원신청이 2010년 55,607가구→2011년 57,812가구→2012년 45,429가구→2013년 78,319가구로 증가한데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와 타 지원 연계건수도 2013년에 크게 증가하여 각각 56,136가구, 84,319가구임.
-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취업성공패키지 포함)의 취·창업인원은 2008년 2,169명→2009년 2,645명→2010년 3,303명→2011년 4,817명→2012년 5,782명→2013년 7,115명으로 빠른 속도의 증가됨.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 대비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취·창업률은 2008년 7.93%→2009년 8.63%→2010년 10.65%→2011년 12.81%→2012년 15.19%→2013년 16.25%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임. 결과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취·창업률은 2008~2013년 기간에 약 2배의 성과를 거둔 것임.
-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취업성공패키지 포함)의 탈수급자수는 2008년 2,021명→2009년 2,446명→2010년 2,804명→2011년 4,040명→2012년 6,218명→2013년 7,238명으로 빠른 속도의 증가를 보임.
- 업그레이트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 대비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탈수급자수인 탈수급률은 2008년 7.39%→2009년 7.35%→2010년 9.08%→2011년 10.74%→2012년 16.34%→2013년 16.53%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임.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탈수급률은 2008~2013년 기간에 2배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최근에는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 전체 수급권자의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는 2007년 46.4일→2008년 47.8일→2009년 57.7일→2010년 63.3일→2011년 286.5일→2012년 295.3일→2013년 320.6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임.
- 전체 수급권자의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는 2007년 2,329,103원→2008년 2,489,922원→2009년 2,415,074원→2010년 2,824,652원→2011년 2,942,829원→2012년 3,046,203원→2013년으로 3,345,291원으로 상승함.
- 의료급여 대상 중 집중관리대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의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는 전체 수급권자의 평균 의료급여일수 보다 현저히 높았음.
- 그렇지만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2008년 1,129.7일→2009년 1,100.5일→2010년 1,008일→2011년 990.2일→2012년 952.0일→2013년 934.8일로 감소하였음.
-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는 2009~2011년 기간에는 증가하였다가 2012년부터는 감소하였음. 즉, 2009년 6,702,457원→2010년 6,908,471원→2011년 7,081,220원→2012년 6,142,461원→2013년 5,898,889원임.

○ 복지서비스의 성과

-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지원금(디딤씨앗 국공채투자신탁적립액)은 2010년 8,183,993,044원→2011년 9,685,273,352원→2012년 11,346,123,768원으로 증가함.
-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수는 2010년 363,178명→2011년 419,957명→2012년 478,117명→2013년 615,075명으로 최근에 큰 폭의 증가함.
- 이에 따라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은 2010년 22,534원→2011년 23,063원→2012년 23,731원→2013년 21,462원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전체 보호아동 대비 가정위탁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의 비율을 나타내

는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은 2012년 64.02%→2013년 60.71%로 낮아졌음.

-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 대비 취약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비율인 취약보육시설 이용률은 2008년 47.12%→2009년 52.34%→2010년 58.54%→2011년 60.47%→2012년 63.96%→2013년 64.23%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정책제언

○ 복지기반조성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평가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과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의해 평가됨.

-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등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은 높지 않으며, 예산배정액의 약 82%만이 지출되고 있음은 국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복지욕구가 높음에도 나타난 결과라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짐작케 함. 특히, 대도시 지자체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은 73%로 중소도시 90%보다 현저히 낮았음.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전년도 예산집행률에 연동하여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통합사례관리의 평가결과를 보면, 지자체 당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 이 대도시 지자체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자체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음. 따라서 공공 사례관리의 추진방식과 질적 관리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복지기반조성으로서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평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과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에 의해 평가됨.

- 민간상근간사는 많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여전히 전국적으로 약 33%의 지

자체는 배치를 하고 있지 않았음.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중앙정부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과 관심 부족 때문으로 판단됨.

- 보건복지부와 시도에서는 민간상근간사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부식품 총액과 기부식품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식품기부는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역별, 지자체별 기부식품의 총량과 식품 유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광역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효율적 추진체계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평가결과는 예년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음.

-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복지수급 지속에 대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체제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구체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것으로 보임.
- 맞춤형 급여체제로의 전환이 수급자의 보호를 과연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경제로서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이 강조되고 있음.

- 향후 자활사업 역시 동일하게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사회적 경제와 같은 대외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13년도 의료급여 평가결과를 보면 지난 3년간의 실적에 비해 의료비 및 의료급여일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의료급여에 대한 재정 절감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추가적 노력들이 요구됨.
- 반면에 의료급여는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다른 복지선진국에 비해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급여제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의 의미를 되찾아 진정한 ‘종합평가’가 되고 지역사회복지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행 평가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행정자치부 시도 합동평가 외에 복지재정 및 복지인력 평가, 자체 특화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중점사업 평가,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함.

- “자체 특화사업 평가”와 “보건복지부 중점사업 평가”는 질적 평가가 요구되므로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며,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를 평가하고, 중앙에서는 시도별 1~2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하여 직접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체 지자체에 적용토록 함.

- “자체 특화사업 평가”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특화사업으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하며, 필요시 현장평가를 병행함.

- “보건복지부 중점사업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 중에서 각 분야별 1개의 중점 복지사업(전체 6개 이내)을 결정하여 제출된 서류 또는 사통망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하며, 필요시 현장평가를 병행함.

○ 2006~2014년의 9년간 우수지자체 선정을 위한 기준은 3대 지역, 인구규모, 재정자립도 등이었음.

- 현재의 평가그룹 분류가 모든 지자체를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

- 첫째, 인구수를 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

-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수, 장애인 수, 노인 수 등 복지대상자 수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정책제언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제공은 현재와 같이 실시하면 될 것임.

- 부진지자체에 대해서는 부진의 이유를 규명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컨설팅이 제공되어야 함.

- 과거 8년간의 복지정책평가 중 2009년과 2010년의 2년간은 부진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좋은 결과를 얻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제언

- 첫째, 부진한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부진사유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함.
- 지역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최소한 평가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함.
- 평가결과 우수한 복지영역에 대한 자체 인센티브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한국사회에서 지방분권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강조되면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복지에 대한 역할과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게 대두되어 왔다. 지난 10년간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은 끊임없이 추진되었다. 많은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민·관 복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되었으며,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이루어졌다. 특히, 2011년 말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지역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과 평가를 명문화하였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복지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추진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수준에는 현실적으로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기획능력 및 추진 역량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복지정책 추진이 어려워 지역주민의 욕구에 근거한 맞춤형 자체사업 발굴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을 통해 지역복지정책 활성화 및 개선에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정부합동평가(시·도 복지정책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시·군·구 복지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우수지자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둘째, 시·군·구별 복지정책 평가를 통하여 기초 자치단체장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에 기여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복지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한다.

셋째, 지난 평가의 성과를 분석하여 연도별 및 분야별 특징을 파악하고, 향후 효율적인 평가방향을 설정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6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분석이다. 점수부여기준표에 의거한 시·군·구별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평가결과 분석은 영역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둘째,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를 선정한다. 각 그룹별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최근 5년간 우수지자체의 동향을 파악한다.

셋째, 과거(2006년~2013년) 복지정책평가의 성과를 분석한다.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한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정책평가를 통한 성과를 도출한다.

넷째, 결과분석에 따른 지자체 복지수준 향상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전반적 정책 제언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 이어서 지역주민의 복지수준 향상 및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을 제언한다. 아울러 영역(평가지표)별 정책을 제언하여 지역복지발전에 기여한다.

다섯째, 평가그룹 분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분류기준인 3대 지역, 인구, 재정자립도의 개선 필요성 여부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한다.

여섯째, 성과중심의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현 지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자체 복지정책 추진성과가 담보될 수 있는 효과성 높은 지표를 제안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국내외 복지정책평가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연구 검토이다. 특히, 2006~2013년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의 지표를 검토하여 비교한다.

둘째, 본 연구의 핵심인 시군구 단위의 복지정책 평가결과를 분석한다. 평가결과 분석은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비교한다.

셋째, 지역, 인구, 재정자립도 등에 기초하여 16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평가결과를 비교하고, 우수 지자체 선정한다.

넷째, 연구진 회의, 시도 평가업무 담당자 회의, 분야별 자문회의를 수행한다.



제2장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제1절 국내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제2절 국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2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

제1절 국내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지역복지정책평가는 2006년 이래로 현재까지 9년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2006~2008년의 3년간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평가팀을 직접 파견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의 시도 합동평가에 포함하여 복지정책이 평가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2006~2013년 기간의 지역복지정책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복지기반 조성

가.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평가지표는 과거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다.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평가지표가 가장 많았던 경우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직접 평가를 추진한 2008년이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평가지표는 줄어들었다. 2012년과 2013년의 평가지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선택형, 개발형),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등이다.

〈표 2-1〉 2006~2013년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 분야의 평가지표

2006년	지역복지특화사업 예산규모	- 지역복지특화사업 건수 - 지역복지 민관협력사업 건수
2007년	- 자체개발형 사업 선정 건수 - 특화사업 건수	- 자체개발형사업의 기준 금액 대비 액수 - 사회복지 결산액 대비 특화사업 결산액 비율
2008년	- 지역사회서비스 조직, 인력 및 예산확보 정도 4대 바우처사업 서비스 제공 대상자(이용자) 수 4대 바우처사업 서비스 제공인력 수 - 예산 실 집행률	- 지역사회서비스 자체개발형사업 선정건수 및 기준금액 대비 실적 - 사업 수 대비 참여 공급기관 수 - 사회복지 결산액 대비 특화사업 결산액 비율

34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 특화사업 건수	
2009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맞춤형) 시행률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취업자 수 • 사회서비스사업 활용의 안정률 •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맞춤형) • 사회서비스사업 이용률 • 사회서비스 예산대비 집행률
2010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시행률 • 사회서비스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액 실적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개발형)
2011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개발형) 시행률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률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참여율(지역개발형) • 위기가구 통합서비스(사례관리) 추진실적
2012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선택형, 개발형)	•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2013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선택형, 개발형)	•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주: 2007년에는 2008년의 지역사회서비스분야가 복지총괄분야의 사회서비스 활성화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2008~2011년 평가와의 비교를 위해 이를 지역사회서비스분야로 분리하여 제시함.

자료: 1) 김승권 외(2006).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7).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외(2010). 2009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승권 외(2011a). 2010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분석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김승권 외(2011b).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분석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김승권 외(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김승권 외(2013). 2013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민간복지자원 활성화의 지표와 관련하여 평가 초기(2006~2008년)에는 평가지표 수가 많았고 다양한 영역을 다루었다. 시도합동평가로 전환된 이후 점차 축소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2개 지표로 축소되었다. 2013년의 평가지표는 2013년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등으로 이루어졌다.

〈표 2-2〉 2006~2013년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분야의 평가지표

2006년	• 복지부서 담당공무원의 충분성 • 인구 만 명당 법정 민간시설종사자수 • 전체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 지방이양사업비 증감률 • 인구 1인당 민간복지재원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능력(이용시설의 충분성)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민간간사 • 사회복지관련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태실적 • 신설팀 공무원의 전문성 • 기관장의 조직 및 인사개혁 실적 • 사회복지직 배치 수준	• 복지부서 담당공무원의 근무연속성 • 인구 천 명당 등록 자원봉사자수 • 공공부조재정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비율 • 생활시설 종사자 1인당 인건비 증감률 • 사회복지생활시설의 보호능력(생활시설의 충분성) •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 비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 전달체계 개편 실시 및 서비스 기능에 맞는 팀 구성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참여 실적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율 • 복지행정인력의 행정 정보시스템 활용률
-------	--	--

	• 주민의 복지관련 온라인 제안 및 활용 실적 • 사회복지기관 정보시스템 보급률	
2007년	• 복지부서 담당공무원 충분성 • 인구 만 명당 법정 민간시설종사자수 • 전체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 인구 1인당 민간복지재원 • 사회복지생활 시설의 관리수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간간사 채용 및 자격 •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 활성화 • 전달체계 개편 실시 및 서비스 기능에 맞는 팀 구성 • 자체개발형사업의 기준 금액 대비 액수 • 복지정책·사업에의 노력 • 복지정책사업의 기획, 추진, 목적달성, 만족도 등 • 기관장의 조직개혁 실적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참여 실적 • 복지행정인력의 행정정보시스템 활용률 • 민관협력 사업건수 • 민관협력사업 건수 • 사회복지기관 국가복지정보시스템 보급률	• 복지부서 담당공무원의 근무연속성 • 인구 천 명당 등록 자원봉사자수 • 지방이양사업비 증감률 •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충분성 •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의 활성화 • 자체개발형 사업 선정 건수 •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우수 복지정책사업 수준 •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은 사업 • 현장 평가시 협조, 자료의 신속성 및 정확성 • 기관장의 인사개혁 실적 • 사회복지직 배치수준 • 사회복지기관 정보시스템 보급률
2008년	• 복지부서 담당공무원 충분성 • 인구 만 명당 법정민간복지종사자수 • 전체재정 대비 사회복지 재정 비율 • 인구 1인당 민간복지재원 •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충분성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 및 민간간사 활용 •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 활성화 • 읍면동 사회복지직 기초수급자 담당 가구 수 • 연차별 실행계획수립 과정의 충실성 •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우수 복지정책·사업 • 효과성과 효율성이 높은 사업 • 현장 평가시 협조, 자료의 신속성 및 정확성 • 전년도 취약분야 개선도 • 기관장의 조직개혁 실적 •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참여 실적	• 복지부서 담당행정직공무원의 근무연속성 • 인구 천 명당 등록 자원봉사자수 및 등록자원봉사자 당 평균 활동시간 • 사회복지재정 대비 자체투입재정비율 • 사회복지생활시설 설치율 •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관리수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운영의 활성화 • 수급자 사례관리유형분류 및 관리 • 연차별 실행계획수립의 실행도 • 복지정책사업에의 노력 • 복지정책사업의 기획, 추진, 목적달성, 만족도 등 • 기관장의 인사개혁 실적 • 사회복지직 배치 수준 • 복지행정인력의 행정정보시스템 활용률 • 시군구 새물행정시스템과의 정보연계시스템 보급률
2009년	•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 종사자수 • 전체재정 대비 사회복지재정 비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이행의 적절성	• 사회복지기관 행정정보연계시스템 사용률 • 인구 1,000명당 사회복지 이용시설 설치면적 • 지역복지 특화사업 및 민관협력사업 건수 • 등록 자원봉사자당 평균 봉사활동 시간
2010년	• 인구 10,000명당 민간복지종사자 수 •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정도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무원 배치율	•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율 • 활동 자원봉사자의 연평균 봉사활동 시간 • 기부식품 등 증가율 및 이용자 증가율
2011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지원정도	• 기부식품 등 증가율
2012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 기부식품 활성화 정도 -기부식품 등 증가율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2013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기부식품 등 증가율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자료: <표 2-1>과 동일

2. 기초생활보장

가.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기초생활보장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복지재정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분야의 평가지표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위기에 놓이거나 급여가 감소한 가구에 대한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활성화 정도가 2012년부터 평가지표로 포함된 것은 기초생활보장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 관심의 표현이라 하겠다.

〈표 2-3〉 2006~2013년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분야의 평가지표

2006년	- 저소득층 복지사업비의 지항비 비율 - 국민기초생활보장자금 활용실적 - 신규수급자 발굴 실적 - 기초생활부정수급 발굴 및 환수 - 간급지원 결정 ('06.3.24 간급지원사업 시행이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공무원 평균 기초보장담당 연수 - 민간 및 타 기관 연계 발굴실적 - 탈수급 실적
2007년	- 기초생활보장사업비 집행의적정성 -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 탈수급 실적 - 간급지원 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공무원의 근무연속성 - 기초생활 부정수급 발굴 및 환수 - 급여조정 실적 - 간급지원 후 타지원 연계 실적
2008년	-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기초생활 부정수급 발굴 및 환수 실적 - 급여조정 실적 - 탈수급 실적	- 신규수급자 발굴실적 - 기초생활 모니터링 제도 참여실적 - 간급지원 후 타지원 연계실적
2009년	-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관리 수급자수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 간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 기초생활보장 모니터링 참여실적 - 급여조정 실적
2010년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 간급지원 활성화 시행실적 - 사군구 신규 대출 실적	- 급여조정 실적 - 정책대상자 대비 수급 가구 수
2011년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 한시생계보호 종료자 지원실적	- 급여조정 실적 - 간급복지 지원실적
2012년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 이행급여특례보호실적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 수급자 관리실적 - 간급복지 지원실적
2013년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 이행급여특례보호실적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 수급자 관리실적 - 간급복지 지원실적

자료: 〈표 2-1〉과 동일

나.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와 관련된 평가지표는 2007년에 가장 많았으나, 사·도 합동평가로 전환된 후에 다소 축소되었다. 그렇지만 타 영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축소를 보이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업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자립 및 자활이 중요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3년의 평가지표는 2012년과 동일하며,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 지원 실적 등 3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이들 지표는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잘 나타내 주는 성과지표로서 가치가 있다.

〈표 2-4〉 2006~2013년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분야의 평가지표

2006년	• 자활사업 조건 이행률 • 취업·창업률	• 업그레이트형 자활사업 참여율
2007년	• 자활사업 기금 활용실적 • 자활공동체 창업 활성화 정도 • 자활사업 조건 불이행률 • 수급자의 자활성공률 •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 • 자활공동체 사업운영 지원 혹은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액수 • 차상위계층의 취업·창업률
2008년	• 자활사업 기금 활용실적 • 자활공동체 사업운영 지원 혹은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액수 •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 • 수급자의 자활 성공률 • 차상위계층의 취업·창업률
2009년	• 적극적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참여율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2010년	• 지역센터 및 자활공동체 우선구매(위탁) 등 사업운영 규모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 자활기금 활용실적 • 수급자의 취업·창업률
2011년	•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지원실적 • 수급자의 취·창업률	•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 자활사업 참여자 수급자의 탈수급률
2012년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의 탈수급률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실적
2013년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의 탈수급률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실적

자료: 〈표 2-1〉과 동일

다.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과 관련된 평가지표는 지자체 평가의 초기에는 많았으나, 시도 합동평가로 전환된 후에는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축소되었다. 그렇지만 의료급여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은 여전하다고 하겠다. 평가를 하는 목적이 정책의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추진으로 어떤 효과를 획득하느냐에 있다면, 의료급여제도로 인해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이 얼마나 되고 있고, 의료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평가지표는 문제점을 갖는다 하겠다.

어쨌든 2013년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등 3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2012년과 동일하였다.

〈표 2-5〉 2006~2013년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분야의 평가지표

2006년	• 자격관리 신속처리율 • 입원환자의 재원 장기화 • 보건기관 이용률 •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 • 교육실적 • 친절도 • 접근성과 편의성 •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에 대한 평가	• 365일 초과 환자수 증감률 • 1인당 의료이용률 증감률 • 현금급여 실적 • 홍보실적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 민원처리 신속도 • 만성질환 관리대상 질환 및 12세 미만 아동 발발 실적
2007년	• 자격관리 신속 처리율 • 의료급여제도 교육실적 • 수급권자 1인당 평균의료급여 내원일수 증감률 •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감률	• 의료급여제도 홍보실적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실적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감률 • 사례관리 대상자 평균진료비 증감률
2008년	• 자격관리 처리 • 자체사업 기획 및 추진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감률 • 사례관리 대상자 비율	• 의료급여제도 교육 및 홍보 • 수급권자 1인당 평균의료급여 내원일수 증감률 •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급여일수 증감률
2009년	• 의료급여 자격처리의 신속도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가율 •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가율 •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
2010년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감률 • 사례관리 대상자 급여일수 증가율	•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증감률 •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및 사례관리 대상자 비율
2011년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입내원일수 증감률 • 사례관리 대상인원 목표 달성률 • 의료급여관리사 채용률	• 전체 수급권자 및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
2012년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2013년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자료: 〈표 2-1〉과 동일

3. 복지서비스

가. 노인 복지서비스

노인 복지서비스 분야의 평가지표는 평가초기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2006년에는 11개 지표였다가 점차 줄어들어 2009년에는 3개 지표, 2011년부터는 2개 지표로 감소되었다. 특히, 시설과 기초노령연금에 초점을 둔 평가지표를 활용하고 있어 노인일자리와 노인여가에 대한 지표는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평가지표를 적용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표 2-6〉 2006~2013년 노인 복지서비스 분야의 평가지표

2006년	- 노인 1인당 노인복지사업비 -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 평균 재직기간 - 노인생활시설 설치률 -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계획 수립 - 노인복지관련 지자체(특수)사업의 수 - 노인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사업비 증감률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률	- 노인복지 전담부서설치 여부 및 공무원 1인당 노인수 - 노인 이용시설 설치 및 이용 노인수 - 노인복지사업 추진 과정에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 노력 - 노인 일자리 제공 비율
2007년	- 노인 1인당 노인복지사업비 - 노인복지사업 추진과정에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 노력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률	- 노인생활시설 설치율 - 노인복지 지방이양사업 집행액의 증감률 - 노인일자리 제공 - 노인 1인당 노인복지(회)관 서비스 이용 횟수 비율
2008년	-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 노인복지사업 추진과정에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 노력 - 노인복지(회)관 이용률	- 재가노인복지시설 충족률 - 노인일자리 제공 비율 - 독거노인생활지도 서비스 수혜자 비율
2009년	-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서비스 제공률 - 노인요양시설 확충률	노인일자리 제공률(공공영역+민간영역)
2010년	- 장기요양시설 충족률 - 부적정 급여관리	변동자료 적기처리
2011년	노인요양시설 충족률	기초노령연금 관리의 적절성
2012년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개정법 시설·인력 기준 충족률	기초노령연금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2013년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개정법 시설·인력 기준 충족률	기초노령연금 사후관리의 적절성 비율

자료: 〈표 2-1〉과 동일

나.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평가지표는 평가초기 1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점차 평가지표가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12년부터 1개 지표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2013년 평가지표는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이다.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단순히 장애인연금 수급관련 지표 1개로 국한하여 평가를 하는 것은 아쉬움이 크다. 즉, 장애인복지에서 중요한 것으로 재활, 일자리, 생상품 구매실적, 이동권 등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장의 일부 지표에 머무르고 있음은 문제점이다.

〈표 2-7〉 2006~2013년 장애인 복지서비스 분야의 평가지표

2006년	• 장애인복지사업비 •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여부 •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설 자원 예산 • 장애인복지사업관련 조례 제정 수 • 장애인복지사업비의 2004년 대비 사업비 증감률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률	•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의 평균재직월수 • 자립장애인 복지위원회설치여부 및 개최실적 •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관련 가급적택액 • 장애인복지사업관련 특수사업 자원 예산 •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 • 장애인 생상품 우선 구매액
2007년	• 장애인복지사업비 •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시설 자원 예산 • 장애인복지사업비의 2005년 대비 사업비 증감률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률	• 장애인복지사업기반 • 장애인복지사업관련 조례 제정수 • 공공기관 장애인 취업률 • 장애인 생상품우선구매액의 비율
2008년	• 장애인 시설 및 그룹홈 충족률 • 여성장애인 사업 발굴 노력 및 시행 실적 • 장애인 생상품 우선 구매액의 비율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률	• 장애인 전담 과(팀) 설치여부 및 장애인 복지담당 공무원의 근무연속성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2009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장애인전용주차지역 과태료 부과건수 • 우선구매 비율 준수율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구매 비율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 「장애인차별금지법」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 우선구매대상품목 구매 비율 • 우선구매 비율 충족품목 비율
2010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 장애인복지서비스 수혜율 • 우선구매대상품목 구매비율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비율
2011년	• 중증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사업 성과 •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율 • 장애인 복지서비스 수혜율
2012년	• 장애인연금 수급률	
2013년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자료: 〈표 2-1〉과 동일

다. 아동보호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와 관련된 평가지표는 평가초기 1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점차 평가지표가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동보호서비스의 2013년 평가지표는 2012년과 동일하며,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와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이다. 아동복지관련 평가지표가 요보호아동에 국한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판단되며,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아동권리지표가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표 2-8〉 2006~2013년 아동보호서비스 분야의 평가지표

2006년	• 아동 1인당 아동복지사업비 • 아동 10만 명당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수 • 아동복지관련 특수사업사업 지원 아동1인당 사업비 • 아동참여 • 아동보호(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관련 전달체계 •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및 입양비용	•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1인당 아동수 • 아동위원 배치율 • 아동복지관련 특수사업사업 규모 • 아동복지사업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실적증감률 • 방과후 아동보호 비율 • 요보호아동 대학진학률
2007년	• 아동 1인당 아동복지사업비 • 아동위원 • 아동복지사업 사업에 대한 사업비증감률 •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보호비율	•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1인당 아동수 • 아동참여 • 아동 문화관련 기관 설치 및 프로그램교육실시 • 아동발달지원계좌(CDA)비율
2008년	• 아동위원 배치 및 회의결과 반영 • 아동문화 관련 기관 설치 및 프로그램교육실시 • 학대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방지노력	• 아동참여 활성화 •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비율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개설 및 저축률
2009년	•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저축률 • 지역사회아동 방과후 보호 비율	• 요보호아동 관련 보호 비율 및 타 지역별 보호 비율
2010년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저축률	
2011년	• 결식아동 급식지원 내실화 정도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 지역사회아동 방과 후 보호비율
2012년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2013년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자료: 〈표 2-1〉과 동일

4. 보육기반 조성

보육기반 조성 분야의 평가지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2011년 이후 두 개의 지표에 의해 평가를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과 취약보육 실시율이

다. 전체적으로 보육의 질적 관리와 다양한 보육의 실시에 적절한 평가지표라 하겠다. 다만, 보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9〉 2006~2013년 보육기반 조성 분야의 평가지표

2008년	-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비율 및 취약보육실사율	보육시설 확충률
2009년	- 보육수요 충족률 -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수 - 취약보육실사율
2010년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수 - 취약보육실사율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2011년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취약보육 실사율
2012년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취약보육 실사율
2013년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취약보육 실사율

주: 2008년에는 아동복지분야에 보육지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2009~2011년 평가와의 비교를 위해 이를 보육분야로 분리하여 제시함.

자료: 〈표 2-1〉과 동일

제2절 국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동향은 문헌연구만으로는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복지정책평가 분석결과 보고서(2010년, 2012년, 2013년)에 제시된 영국, 캐나다, 미국의 지역복지정책 평가동향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향후 보다 발전되고 상세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국가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와 토론을 갖는 기회가 제공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영국의 지방정부 정책평가¹⁾

영국은 2002년 성과종합평가(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

1) 김승권 외(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참조하였다.

CPA)를 도입하여 점차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9년 4월 기존의 성과 종합평가를 기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는 성과평가 방식인 지방구역종합평가(Comprehensive 42~Area Assessment, CAA)로 대체하였다(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07). 이 평가는 국가 지표조합(National Indicator Set, NIS)을 활용하는데, 국가지표조합은 지방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조합(198개 지표)으로 기존의 수많은 지표를 축소·통합한 것이다(Audit Commission, 2009). 국가지표조합(NIS) 중 상당수가 보건복지부 관련 지표이며, 이들 지표에는 성과지표 및 과정지표(실적지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평가는 크게 구역평가(Area Assessment)와 기관평가(Organisational Assessment)로 구성된다. 전자는 감사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그들의 협력기관이 상호 합의 하여 도출한 우선순위²⁾와 국가적 의제를 고려하여 해당 지역을 평가한다. 후자는 지방 구역의 성과실적 향상 정도와 자원이용 평가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특히, 기관평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 기관평가는 자원이용에 있어서 재정 가치를 구현하는 능력, 성과관리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며, 국가지표조합(NIS)에 포함된 각 지표별 성과를 공개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관평가에서 아동·청소년 서비스와 성인 사회보호서비스의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교육표준행정청(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Ofsted)와 보호서비스향상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CQC)³⁾가 실시하며, 이들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별도로 보고서를 발간한다(Audit Commission, 2009; 임채호, 2009 재인용).

영국의 지방구역종합평가는 현재 종료된 평가방식이나,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는 매우 크다. 국가지표조합(NIS)은 과정지표와 성과지표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총 198개 지표 중 보건복지 관련 지표가 100개로 매우 풍부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지역은 지역실정에 맞춰 약 35개 평가지표를 선택하며, 평가위원은 각 지역마다 선정된 35개 지표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

2) 평가대상인 각 지방구역은 지역 내 기관과 협의 하에 주 타겟 지표를 약 35개 선정한다(Dungey, 2006).

3) 보호서비스향상위원회(CQC)는 건강관리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와 사회보호감사위원회(Commission for Social Care Inspection)의 기능을 인수하여 2009년 4월 신설된 조직임(Audit Commission, 2009; 임채호, 2009 재인용).

치단체의 부담을 감소하는 추가적 방안을 사용하더라도 충분한 복지평가지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평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아동·청소년 서비스, 성인 사회보호서비스, 즉 보건복지분야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2. 캐나다의 지방정부 정책평가⁴⁾

캐나다는 연방주의가 발달된 국가로서 주(州)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평가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의 평가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州)와 지자체는 주(州)의 자체적 평가와 입법을 통해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성과관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앨버타 주의 성과측정과 관련한 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는 「Heath and wellness annual report」에 의해 거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에 대해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09~2010년 보고서에 나타난 성과목표는 크게 7개이다. 이를 살펴보면, ① 효과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헬스시스템(Health system), ②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의료시스템, ③ 건강한 사회 건강한 주민, ④ 위험을 완화하고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강력한 공중보건의 능력, ⑤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⑥ 대기시간, ⑦ 혁신과 기술을 통한 의료서비스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 등이다.

주로 보건과 관련된 성과목표를 갖고 있다. 이들 성과목표를 측정하기 위하여 18개의 측정 가능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Alberta ministry, 2010).

- 전체 의료시스템(Health system) 대한 대중의 평가 : 의료시스템을 ‘완벽하다’ 또는 ‘좋다’라고 말한 사람의 비율
- 연간 부처 운영비용 : 실제 전년 대비 변화 비율
- 민원발생정도 : 지난해 주민이 보고한 불만비율
- 스스로 보고한 건강상태 : 스스로 건강이 ‘뛰어남’, ‘매우양호’, ‘양호’라고 보고한

4) 김승관·김태완·이소라(2013). 2013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발췌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사람의 비율

- 양호한 체질량지수(BMI)를 가진 사람의 비율 : BMI 18.5~24.9인 것으로 보고한 사람의 비율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매년 권장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 비율(65세 이상 /6~23개월 영아)
- 흡연 : 흡연자의 비율(12세~19세)
- 정기적 과다 음주 : 젊은 주민들 사이의 주기적이고 과도한 음주 비율
- 성병 전염 : 매독, 최근 발표된 전염률
- 환자 안전 : 지난해 헬스케어를 받는 동안 자신이나 직계가족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난 비율
- 공공의료시스템의 신뢰성 : 지난해 헬스케어서비스를 받은 주민의 만족도 비율
- 1차의료네트워크를 통한 1차의료 접근 : 1차 의료네트워크에 등록된 주민 비율
- 대기시간
- 응급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중의 평가 : 필요로 하는 서비스 이용이 '쉬웠다'라고 응답한 비율
- 장기치료를 요하는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 수
- 주(州) Netcare에 접속하는 요양보호사의 수
- 주(州) Health link를 인식하는 주민 비율
- 주(州) Health link를 지난해 이용한 비율
- POSP(Physician office system program)에 등록된 의사와 병원 내에서 전자 의료기록을 사용한 비율

3. 미국의 지방정부 정책평가⁵⁾

미국에서 주(州)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성과평가와 정부성과평가(Government Performance Project; GPP)제도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가 있다. 지방정부의 자체적 성과평가는 각 주별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을

5) 김승권 외(2010). 2009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참조하였다.

개발하여 시행되며, 정책의 성과 및 집행과정을 측정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추후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 GPP 제도는 체계모형(System model)에 입각한 평가로 성과에 대한 직접평가가 아니라, 성과를 산출하는 관리체계를 평가하여 성과창출기관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3장

2014년 복지종합평가 결과 종합분석

제1절 평가개요

제2절 2014년 주요 평가 결과

제3절 2014년 복지종합평가 결과의 시사점

3

2014년 복지종합평가 결과 종합분석 <<

제1절 평가개요

1. 전반적 평가개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복지평가는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방식은 크게 변화되었는데, 2006~2008년과 2009~2014년의 기간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즉, 2006~2008년 기간에는 평가팀이 전국의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고, 2009~2014년 기간에는 정부 평가업무 조정으로 행정자치부의 ‘시·도 합동평가’에 포함되어 통합 실시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고, 직접 현장방문에 의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평가지표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종합평가가 가능하였다. 그렇지만 행정자치부의 합동평가에 통합된 2009년부터는 평가틀이 대폭 간소화될 수밖에 없었다. 즉, 합동평가의 성격상 많은 지표에 의한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워 지표수를 대폭 줄였으며, 시·도를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질적 지표는 제외되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복지종합평가의 지표 수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 평가가 실시된 2006년에는 96개 세부지표이었고, 2007년에는 다소 감소하여 81개 세부지표이었으며, 2008년은 76개 세부지표로 피평가기관인 시·군구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다소 줄였다, 이는 평가가 진행되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내용이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시·도 합동평가에 통합된 이후에 복지평가지표는 2009년 50개 세부지표, 2010년 37개 세부지표, 2011년 28개 세부지표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2012년부터는 감소추세를 멈추었으며, 2012년과 2013년에 24개 세부지표, 2014년 25개 세부지표이다.

〈표 3-1〉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의 틀

(단위: 개, 점)

연도	평가분야(평가영역)	평가내용	(세부)평가지표	배점
2006년	8	52	95	770
2007년	8	57	81	1,000
2008년	9	55	76	1,000
2009년	9	17	50	2,977
2010년	9	14	37	7,715
2011년	9	9	28	7,280
2012년	4	8	24	6,713
2013년	4	8	24	6,726
2014년	8	11	25	7,214

평가지표의 감소는 피평가기관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복지종합평가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평가결과에 동의할 수 있는 대표성을 유지하는 지표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시 된다.

2. 2014년 지역복지정책 평가틀 및 평가지표

지역복지정책 평가틀의 2014년 특징은 일반행정 분야에 ‘사회복지직렬 확보율’ 지표가 새롭게 포함되었고,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지표가 지역경제 분야의 서민생활 안정 평가시책에 포함되었으며,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지표가 중점과제 분야의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평가시책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그 외의 지표는 전년도의 평가를 및 (세부) 평가지표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세부 평가지표의 배점과 가중치는 〈표 3-2〉와 같이 제시된다. 각 세부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제14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된다.

〈표 3-2〉 2014년 지역복지정책 평가틀 및 (세부) 평가지표

분야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점수)	가중치
일반행정	조직 및 인사관리	사회복지직렬 확보율	•사회복지직렬 확보율(30점)	6.5
사회복지	복지기반 조성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율(30점)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70점)	8.6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50점) •기부식품제공 활성화 정도(50점) - 기부식품 등 모집 및 이용 실적(25점) - 기부식품 제공사업 예산 지원실적(25점)	6.5

분야	평가시책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점수)	가중치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20점)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20점)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20점) •수급자 관리실적(10점) •긴급복지 지원실적(30점)	12.4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40점)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40점)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20점)	10.1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역순위평가)(40점)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역순위평가)(40점)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20점)	5.9
	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 연금 수급률(100점)	6.1
		아동보호서비스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30점)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 비율(10점) -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20점)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20점)	9.4
	여성·가정 복지	보육기반 조성	•어린이집 평가인증율(40점) •취약보육 실시율(60점)	8.8
지역경제	서민생활 안정	취약계층 생산물 우선구매 실적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40점)	11.2
중점과제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30점)	8.7

제2절 2014년 주요 평가 결과

1. 전국 및 3대 지역의 평가점수

2014년 복지종합평가 결과는 7,214점 만점에 평균 5,303.03점이었다.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점수는 73.51점으로 2013년 71.7점에서 다소 상승한 것이다.

〈표 3-3〉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의 전국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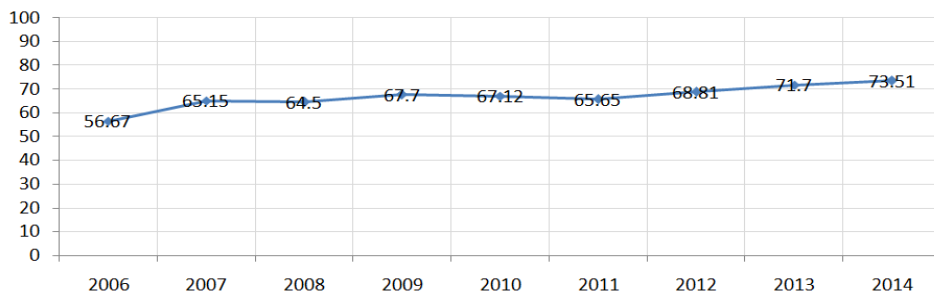
(단위: 점)

	총점기준		100점 기준 환산	
	만점	평균	만점	평균
총점	7,214	5,303.03	100.0	73.51

평가결과와 평균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2006년부터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다. 즉, 평균점수는 100점 기준 2006년 56.67점, 2007년 63.15점, 2008년 64.5점, 2009년 67.7점, 2010년 67.12점, 2011년 65.65점, 2012년 68.81점, 2013년 71.7점, 2014년 73.51점으로 개선되었다.

〔그림 3-1〕 지역복지정책평가의 전국 평균 점수 변화추이: 2006년~2014년

(단위: 점)



평가결과와 전국 격차를 살펴보면, 최고 6337.20점, 최저 4004.40점이었다. 이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고 87.85점, 최저 55.51점이었다. 따라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획득한 지자체 간에 복지수준의 격차가 약 1.6배나 되었다.

〈표 3-4〉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총점

(단위: 점)

영역	총점 기준			100점 기준 환산		
	최고	최저	격차(최고-최저)	최고	최저	격차(최고-최저)
총점	6337.20	4004.40	2332.80	87.85	55.51	32.34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대 지역별 복지평가 총점의 평균은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어촌이었으며, 대도시는 가장 낮았다. 이는 2012년 및 2013년 평가

결과와 동일한 양상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100점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에 의해 살펴보면, 평균점수는 중소도시 75.53점, 농어촌 73.06점, 대도시 71.85점이었다.

3대 지역 내에서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획득한 지방자치단체의 격차도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100점 기준으로 중소도시가 32.34점으로 가장 컸고, 다음은 대도시 24.25점이었으며, 농어촌은 20.34점으로 가장 작았다.

〈표 3-5〉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지역별 평균 점수

(단위: 점)

	총점			100점 기준 환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평균	5183.45	5448.92	5270.57	71.85	75.53	73.06
최고	5966.90	6337.20	6007.80	82.71	87.85	83.28
최저	4217.40	4004.40	4540.50	58.46	55.51	62.94
격차(최고-최저)	1749.50	2332.80	1467.30	24.25	32.34	20.34

이와 같은 3대 지역 내에서의 평가결과의 격차는 과거년도(2006~2011년) 평가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3대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내에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수준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격차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6〉 2006~2014년 지역별 복지정책평가의 최고 및 최저(1000점 기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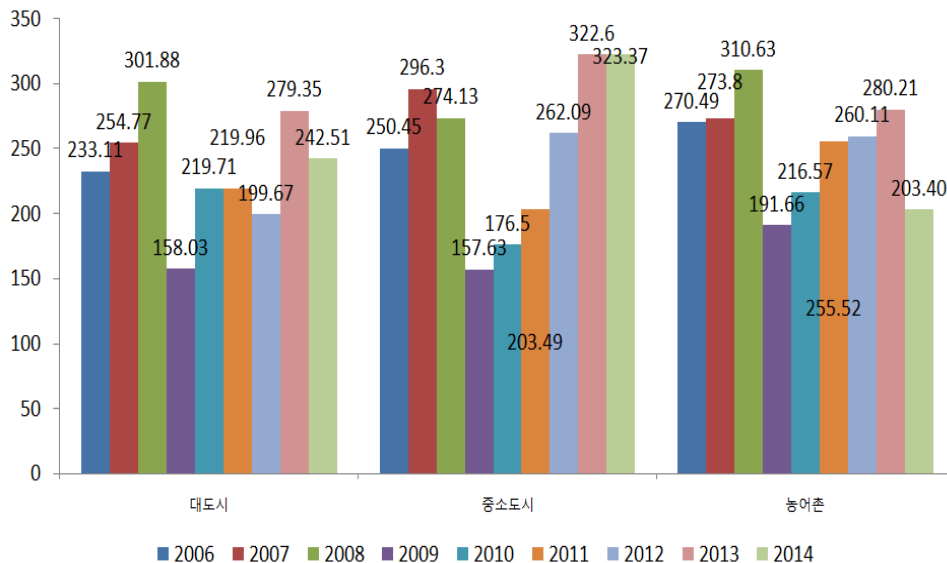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6년	최고	70.84	72.13	68.23
	최저	47.53	47.09	41.18
	차이(최고-최저)	23.31	25.04	27.05
2007년	최고	75.77	80.05	73.84
	최저	50.30	50.42	46.53
	차이(최고-최저)	25.47	29.63	27.31
2008년	최고	83.93	80.99	77.51
	최저	53.74	53.57	46.45
	차이(최고-최저)	30.19	27.42	31.06
2009년	최고	73.73	75.99	78.68
	최저	57.93	60.23	59.51
	차이(최고-최저)	15.80	15.76	19.17
2010년	최고	76.22	77.64	78.60

54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1년	최저	54.25	59.99	56.94
	차이(최고-최저)	21.97	17.65	21.66
	최고	75.44	78.52	78.33
	최저	53.45	58.17	52.78
	차이(최고-최저)	21.99	20.35	25.55
2012년	최고	76.72	83.92	81.87
	최저	56.75	57.71	55.86
	차이(최고-최저)	19.97	26.21	26.01
2013년	최고	84.13	90.37	84.89
	최저	56.20	58.11	56.87
	차이(최고-최저)	27.93	32.26	28.02
2014년	최고	82.71	87.85	83.28
	최저	58.46	55.51	62.94
	차이(최고-최저)	24.25	32.34	20.34

주: 평가총점은 2006년 720점, 2007년과 2008년 1,000점, 2009년 2,977점, 2010년 7,715점, 2011년 7,280점, 2012년 6,713점, 2013년 6,726점, 2014년 7,214점이며 8개년도 비교를 위해 평가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함.
 자료: 1) 김승권 외(2006).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7).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외(2010). 2009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승권 외(2011a). 2010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분석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김승권 외(2011b).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분석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김승권 외(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김승권 외(2013). 2013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3-2] 2006~2014년 지역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1,000점 기준 환산)



2. 전국 및 3대 지역의 평가지표별 평가점수

2014년 평가지표별 평균 평가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가 90.48점으로 가장 높았으면서 유일한 80점 이상의 평가지표이었다. 그 외에 70점대의 평가결과를 보인 평가지표는 사회복지직 확보 비율 78.42점, 민간 복지자원 활성화 76.28점,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76.03점, 아동보호 서비스 74.58점,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72.01점,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70.89점 등이었다. 다소 저조한 60점대의 평가결과를 보인 평가지표는 보육기반 조성 68.77점, 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67.51점, 중증장애인생산물 67.59점,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66.81점이었다.

〈표 3-7〉 2014년 평가지표별 평균 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만점	총점 평균	100점 기준 환산
사회복지직 확보 비율	195.00	152.92	78.42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860.00	580.57	67.51
민간 복지자원 활성화	650.00	495.84	76.28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1240.00	942.72	76.03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1010.00	727.29	72.01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590.00	418.23	70.89
장애인 복지 서비스	610.00	551.92	90.48
아동보호 서비스	470.00	350.54	74.58
보육기반 조성	880.00	605.21	68.77
중증장애인생산물	448.00	302.79	67.59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261.00	174.38	66.81

2014 복지정책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백점기준으로 환산하여 3대 지역을 비교하면, 지표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대도시는 「중증장애인생산물」만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는 「사회복지직 확보 비율」,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민간 복지 자원 활성화」,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보육기반 조성」 등의 평가지표가 가장 높았으며, 농어촌은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장애인 복지 서비스」, 「아동보호 서비스」,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등의 평가지표가 가장 높았다.

3대 지역 간 격차는 「중증장애인생산물」 평가지표가 33.81점으로 가장 컸고, 다음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 평가지표 15.45점, 「민간 복지 자원 활성화」 평가지표 13.09점,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평가지표 12.62점 등으로 컸다. 이와는 달리 「사회복지직 확보 비율」 평가지표 0.90점,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평가지표 3.41점,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평가지표 3.93점, 「보육기반 조성」과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평가지표 4.04점,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평가지표 4.85점 등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작았다.

〈표 3-8〉 2014년 평가지표별 평균 점수의 3대 지역 격차(100점 기준 환산)

(단위: 점)

영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격차
사회복지직 확보 비율	78.56	78.80	77.91	0.90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59.70	72.32	70.10	12.62 (중소도시-대도시)
민간 복지 자원 활성화	70.68	83.77	74.12	13.09 (중소도시-대도시)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74.34	77.74	75.91	3.41 (중소도시-대도시)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71.30	74.77	69.92	4.85 (중소도시-농어촌)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69.07	70.50	73.00	3.93 (농어촌-대도시)
장애인 복지 서비스	83.78	88.08	99.23	15.45 (농어촌-대도시)
아동보호 서비스	72.57	74.64	76.44	3.87 (농어촌-대도시)
보육기반 조성	69.23	70.58	66.54	4.04 (중소도시-농어촌)
중증장애인생산물	84.39	68.65	50.58	33.81 (대도시-농어촌)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64.59	67.09	68.63	4.04 (농어촌-대도시)

제3절 2014년 복지종합평가 결과의 시사점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평가결과의 평균점수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지역사회 복지수준이 점차 상승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는 시·군·구 대상의 복지평가 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라 판단된다.

그렇지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3대 지역 내에서의 평가점수 격차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복지정책

의 평가점수 격차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군구의 복지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양적, 질적 차이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복지정책의 충분성과 효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아직은 미흡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한 측면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채 가시지 않고 있으며, ‘저성장-저고용’의 신사회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효과적·효율적 복지정책의 추진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민관협력의 활성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달체계의 효율화 등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4장

사회복지직렬 확보율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4

사회복지직렬 확보율 <<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2014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영역 중 「사회복지직렬 확보율」 지표는 일반행정 분야의 조직·인사관리 평가시책으로서 평가지표는 「지자체 조직관리 효율화 및 사회복지직렬 확보율」 평가지표의 일부분이다. 이는 과거 평가에는 없었던 것으로 새로운 평가지표이다. 「사회복지직렬 확보율」 지표의 가중치는 6.5이다.

〈표 4-1〉 사회복지직렬 확보율 평가지표

	평가지표와 세부지표	가중치
2014년	- 지자체 조직관리 효율화 및 사회복지 직렬 확보 - 사회복지직렬 확보(배치)비율	6.5

「사회복지직렬 확보율」 지표는 195점 만점에 전국 평균 152.92점(SD=45.63)이었다.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195점 만점을 획득한 반면, 최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78점으로 기본 점수인 40%만을 획득하였다.

평가점수는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즉, 중소도시 153.67점, 대도시 153.19점, 농어촌 151.92점으로 유사하였다.

〈표 4-2〉 「사회복지 직렬 확보율」의 평가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지역	(분석 지자체 수)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사회복지 직렬 확보율	전국	(230)	195.00	195.00	78.00	152.92	45.63
	대도시	(74)	195.00	195.00	78.00	153.19	47.62
	중소도시	(78)	195.00	195.00	78.00	153.67	41.22
	농어촌	(78)	195.00	195.00	78.00	151.92	48.38

주: 30점 만점에 가중치 6.5 적용.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사회복지직렬 확보율의 평가는 '13년도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정원대비 확보(배치) 실적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평가기준일은 2013년 12월 31이다.

여기서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법규로 정한 인원이고, 현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업무)하고 있는 인원을 의미한다.

- 사회복지직렬 확보(배치) 비율 : (사회복지직렬 현원/사회복지직렬 정원) × 100
 - 사회복지직렬 정·현원* : '13년도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정원대비 확보(배치)실적
 * 정원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법규로 정한 인원
 * 현원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업무)하고 있는 인원

동 산출식을 적용하여 확보율이 100% 이상이면 만점인 30점을, 96% 이상~100% 미만이면 26점을, 92% 이상~96% 미만이면 21점을, 92% 미만이면 최저 점수인 12점을 부여하였다.

전체 지자체 중 만점인 30점을 획득한 지자체가 41.30%로 가장 많았고, 기본 점수인 12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22.17%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농어촌이 44.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도시 44.59%이었으며, 중소도시는 34.62%로 가장 적었다.

〈표 4-3〉 사회복지직렬 확보(배치)비율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사회복지직렬 현원/사회복지직렬 정원) × 100				
사회복지직렬 확보(배치) 비율	30점: 100% 이상	41.30	44.59	34.62	44.87
	26점: 96% 이상~100% 미만	16.09	14.86	20.51	12.82
	21점: 92% 이상~96% 미만	20.43	16.22	28.21	16.67
	12점: 92% 미만	22.17	24.32	16.67	25.64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2013년에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직렬 평균 현원은 62.12명이었고, 평균 정원 64.38명 대비 96.91%의 확보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미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최고 97.06%(대도시), 최저 96.77%(농어촌)이었다.

〈표 4-4〉 사회복지직렬 확보(배치)비율 기초분석

(단위: 개, 명,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1개 지자체 당 사회복지직렬 현원	1개 지자체 당 사회복지직렬 정원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전국 평균	(230)	62.12	64.38	96.91
대도시 평균	(74)	69.31	71.65	97.06
중소도시 평균	(78)	81.56	84.74	96.92
농어촌 평균	(78)	35.86	37.13	96.77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사회복지직렬 확보(배치)비율'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2013년 사회복지직렬 확보율의 지자체 간 격차는 현저하였다. 전국 230개 지자체의 확보율은 최고 153.33%, 최저 73.33%로 격차가 무려 80.00 %pt나 되었다. 이를 3대 지역별 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역 내에서의 최고 집행률과 최저 집행률의 차이는 농어촌이 80.00%pt로 가장 컸고, 다음은 대도시로 60.75%pt이었으며, 중소도시는 35.55%pt로 상대적으로 작은 격차를 보였다.

〈표 4-5〉 사회복지직렬 확보(배치)비율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153.33	73.33	80.00
대도시	(74)	140.48	79.73	60.75
중소도시	(78)	118.60	82.05	36.55
농어촌	(78)	153.33	73.33	80.00



제5장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5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지표는 「복지기반조성」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율(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과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이다.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지표의 가중치는 8.6으로 전년도(2013년)의 5.5에 비해 높아졌다.

〈표 5-1〉 2012~2014년 지역사회서비스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평가지표와 세부지표	가중치
2012년	-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선택형, 개발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바우처 생성액 대비 이용률 - 위기가구 통합서비스(사례관리) 추진실적	10.7
2013년	-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선택형, 개발형) - 통합 사례관리 추진실적	5.5
2014년	-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 통합 사례관리 추진실적	8.6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지표는 860점 만점에 전국 평균 580.57점(SD=144.95)이었다.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860점 만점을 획득한 반면, 최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344점으로 기본 점수인 40%만을 획득하고 있어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가 크게 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중소도시 지자체의 평균 점수가 621.96점(SD=151.14)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어촌 지자체로 평균 602.88점(SD=126.06)이었으며, 대도시 지자체는 평균 513.44점(SD=134.61)으로 가장 낮았다.

〈표 5-2〉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의 평가점수

(단위: 개, 점)

평가지표	지역	(분석 지자체 수)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전국	(230)	860.00	860.00	344.00	580.57	144.95
	대도시	(74)	860.00	860.00	344.00	513.44	134.61
	중소도시	(78)	860.00	860.00	344.00	621.96	151.14
	농어촌	(78)	860.00	860.00	344.00	602.88	126.06

주: 민간복지자원 활성화의 가중치는 8.6임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지표의 2개 세부지표 평가결과는 〈표 5-3〉에 제시된다. 첫 번째 세부 지표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에 대한 평가결과는 30점 만점에 평균 21.12점($SD=6.27$)이었다. 지역별 평균 점수는 중소도시 23.33점($SD=5.74$), 농어촌 19.76점($SD=6.01$), 대도시 20.23점($SD=6.51$)이었다.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30점 만점이 최고 점수였고, 기본 점수인 12점이 최저 점수를 보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각 지역 내에서 지자체 간에 큰 격차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세부 지표인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70점 만점에 전국 평균 46.39점($SD=15.94$)이었다. 지역별 평균 점수는 중소도시 48.99점($SD=16.54$), 농어촌 50.35점($SD=15.72$), 대도시 39.47점($SD=13.26$)으로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유사하였으나, 대도시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내에서의 지자체 간 점수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최고 점수는 70점 만점이었고, 최저 점수는 기본 점수인 28점이었다.

〈표 5-3〉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단위: 개, 점)

세부지표	지역	(분석 지자체 수)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전국	(230)	30.00	30.00	12.00	21.12	6.27
	대도시	(74)	30.00	30.00	12.00	20.23	6.51
	중소도시	(78)	30.00	30.00	12.00	23.33	5.74
	농어촌	(78)	30.00	30.00	12.00	19.76	6.01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전국	(230)	70.00	70.00	28.00	46.39	15.94
	대도시	(74)	70.00	70.00	28.00	39.47	13.26
	중소도시	(78)	70.00	70.00	28.00	48.99	16.54
	농어촌	(78)	70.00	70.00	28.00	50.35	15.72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등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은 “(집행액(국비+지방비)/사업별 예산배정액(국비+지방비)) × 100”에 의해 평가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 (집행액(국비+지방비)/사업별 예산배정액(국비+지방비)) × 100
- 사업별 예산배정액 : ‘13.2~’14.1월까지 사업별 최종 사업승인액
- 집행액 : ‘13.2~’14.1월까지 집행액
- 평가대상사업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전체
※ ㉠ 보건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와 일치하게 입력

동 산출식을 적용하여 집행률이 95% 이상이면 만점인 30점을, 90% 이상~95% 미만이면 26점을, 85% 이상~90% 미만이면 21점을, 80% 이상~85% 미만이면 17점을, 80% 미만이면 최저 점수인 12점을 부여하였다.

전체 지자체 중 만점인 30점을 획득한 지자체가 16.96%로 나타났고, 기본 점수인 12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20.87%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중소도시 25.64%, 대도시 14.86%, 농어촌 10.26%로 농어촌이 가장 저조하였다. 기본 점수를 획득하는데 그친 지자체는 대도시가 27.03%로 나타났고, 농어촌 25.64%, 중소도시 10.26%의 순이었다.

〈표 5-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집행액(국비+지방비)/사업별 예산배정액(국비+지방비)) × 100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30점: 95% 이상	16.96	14.86	25.64	10.26
	26점: 90% 이상~95% 미만	23.04	21.62	28.21	19.23
	21점: 85% 이상~90% 미만	22.17	17.57	24.36	24.36
	17점: 80% 이상~85% 미만	16.96	18.92	11.54	20.51
	12점: 80% 미만	20.87	27.03	10.26	25.64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2013년에 230개 전체 지자체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개 지자체당 예산 배정액은 평균 1,215,644천원이었고, 실제 집행액은 평균 1,097,455천원이어서 예산집행률은 90.28%였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예산 배정 대비 실제 집행인 예산집행률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소도시→농어촌→대도시의 순이었다. 즉, 예산집행률이 가장 높은 중소도시 1개 지자체 당 예산 배정액은 평균 1,572,509천원이었고 실제 집행액은 평균 1,446,324천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91.98%이었다. 다음으로 농어촌 1개 지자체 당 예산 배정액은 평균 487,217천원이었고 실제 집행액은 평균 410,612천원으로 예산집행률은 84.28%이었으며 대도시 지자체는 1개 지자체 당 예산 배정액은 평균 1,607,289천원이었고 실제 집행액은 평균 1,453,698천원이어서 예산집행률은 90.44%이었다.

〈표 5-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기초분석
(단위: 개, 천원,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1개 지자체 당 배정액	1개 지자체 당 집행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전국 평균	(230)	1,215,644	1,097,455	90.28
대도시 평균	(74)	1,607,289	1,453,698	90.44
중소도시 평균	(78)	1,572,509	1,446,324	91.98
농어촌 평균	(78)	487,217	410,612	84.28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20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예산집행률의 지자체 간 격차는 현저하였다. 전국 230개 지자체의 예산집행률은 최고 175.83%, 최저 1.63%로 격차가 무려 174.20%pt나 되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 내에서의 최고 집행률과 최저 집행률의 차이는 대도시가 174.20%pt로 가장 컸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각각 37.30%pt, 65.14%pt이었다.

〈표 5-6〉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선택형, 개발형)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175.83	1.63	174.20
대도시	(74)	175.83	1.63	174.20
중소도시	(78)	109.52	72.22	37.30
농어촌	(78)	107.18	42.04	65.14

2.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은 다음에 제시된 산출식에 의하여 평가된다. 여기서 사례관리 요청건수는 '13.1.1~13.11.30일까지 읍·면·동 및 시·군·구의 초기상담을 통해 접수된 사례관리 요청건수이고,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는 동일한 기간에 접수된 사례관리 요청건수 중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한 건수이며, 사례관리 종결건수는 '13.1.1일 이후 초기상담을 통해 등록된 대상자 중 종결된 건수를 말한다. 다만, 종결원인 중 대상자의 거절이나 포기, 사망, 이사, 연락두절에 따른 종결은 사례관리 종결건수에서 제외된다.

○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 ④ 처리절차 준수율 × 0.2 + ⑤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 × 0.6 + ⑥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성 제고 실적 × 0.2

④ 처리절차준수율

- 세부산식 :
$$④ = \left(\frac{④ \times 1 + ⑤ \times 0.5}{⑥ \text{사례관리가구}} \right) \times 100$$
- ▶ ④ : 사례관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
 - ▶ ⑤ : 사례관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후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
 - ▶ ⑥ : 사례관리가구 : 사례관리 후보자*중 서비스연계가구와 미선정처리가구를 제외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
- * 2013.1.1~2013.11.30까지 읍면동 초기상담을 통해 접수된 사례관리 요청건수

⑤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

- 세부산식 :
$$⑤ = \left(\frac{⑦ + ⑧}{⑨ \text{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right)$$
- ▶ ⑦ 읍면동 서비스연계 건수 : 읍면동에서 자체 자원으로 지원한 서비스연계 건수(지역서비스 제공관리 등록-가구단위)
 - ▶ ⑧ 시군구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건수 :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사례관리가구로 구분되어 사례회의와 서비스제공계획이 이루어진 가구의 서비스 연계건수
 - ▶ ⑨ 시군구 서비스연계 건수 :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단순서비스연계가구로 구분되어 사례회의와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없이 서비스연계 실시한 건수 (지역서비스 제공관리 등록-가구단위)
 - ▶ ⑩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 시, 군, 구별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수급 탈락가구
- * 중점대상자 단위 : 명/ 기준시점 : 2013. 12. 31(복지부에서 행복e음으로 일괄추출)/ 중복 제외
 ** 차상위대상자 범위 : 한부모, 장애인, 자활, 본인부담경감, 청소년·한부모, 우선돌봄 대상자에 한함

⑥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 세부산식 :
$$⑥ = \left(\frac{⑪ \times 1 + ⑫ \times 1.5}{⑬ \text{통합사례관리사 배정규모*}} \right) \times 100$$
- ▶ ⑪ 일반계약직 인원(현원 ×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근무일수의 합)
 - ▶ ⑫ 무기계약직 인원(무기계약자 ×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근무일수의 합)
 - ▶ ⑬ 시군구별 국고지원을 받는 통합사례관리사 배정 인원
- * 배정규모 산식 : 시군구 배정된 정원 × 연간 일수(365일)

동 산출식을 적용하여 추진실적이 170% 이상이면 만점인 70점을, 140% 이상~170% 미만이면 59점을, 110% 이상~140% 미만이면 49점을, 80% 이상~110% 미만이면 38점을, 80% 미만이면 최저 점수인 28점을 부여하였다.

전체 지자체 중 만점인 70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22.17%이었고, 기본 점수인 28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29.13%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농어촌 30.77%, 중소도시 26.92%로 나타났고, 대도시는 8.11%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기본 점수를 획득하는데 그친 지자체는 대도시가 43.24%로 많았고, 농어촌과 중소도시는 각각 17.95%, 26.92%로 나타났다.

〈표 5-7〉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처리절차 준수율 $\times 0.2$ + ㉡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 $\times 0.6$ + ㉢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성 제고 실적 $\times 0.2$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70점: 170% 이상	22.17	8.11	26.92	30.77
	59점: 140% 이상~170% 미만	10.00	6.76	15.38	7.69
	49점: 110% 이상~140% 미만	19.13	16.22	16.67	24.36
	38점: 80% 이상~110% 미만	19.57	25.68	14.10	19.23
	28점: 80% 미만	29.13	43.24	26.92	17.95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주: A는 요청일로부터 30일 내의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 B는 요청일로부터 31일 이상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 C는 사례관리 1개월 이상~6개월 미만인 사례관리 종결건수; D는 사례관리 6개월 이상 사례관리 종결 건수.

2014년에 230개 전체 지자체의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을 보면, 1개 지자체당 처리절차준수율은 평균 96.97%이었고, 1개 지자체당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은 평균 160.86건이었으며, 1개 지자체당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은 77.46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소도시 1개 지자체 당 처리절차준수율은 97.59%, 1개 지자체당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은 183.92건, 1개 지자체 당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은 83.11%로 나타났으며 대도시의 1개 지자체 당 처리절차준수율은 97.64%, 1개 지자체 당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은 109.88%, 1개 지자체당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은 81.54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경우 1개 지자체당 처리절차 준수율은 95.72%로 대도시 및 중소도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1개 지자체당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에서는 186.17건으로 대도시 및 중소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개 지자체당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에서는 67.95로 대도시 및 중소도시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5-8〉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기초분석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1개 지자체 당 처리절차준수율	1개 지자체 당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	1개 지자체 당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전국 평균	(230)	96.97	160.86	77.46
대도시 평균	(74)	97.64	109.88	81.54
중소도시 평균	(78)	97.59	183.92	83.11
농어촌 평균	(78)	95.72	186.17	67.95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본 세부지표의 평가 산출식에 기초한 추진실적의 전국 및 3대 지역 내 격차도 현저하였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지역 내에서의 최고 집행률과 최저 집행률의 차이는 약 2~3배의 차이가 났다. 즉, 최고 실적과 최저 실적의 차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각각 284.83%pt, 603.45%pt이었고, 농어촌은 325.46%pt이었다.

〈표 5-9〉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통합사례관리 추진실적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632.40	20.97	611.42
대도시	(74)	326.08	41.25	284.83
중소도시	(78)	632.40	28.95	603.45
농어촌	(78)	346.43	20.97	325.46



제6장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6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2014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들의 4개 영역 중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지표는 「복지기반조성」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평가들의 전체 세부지표 중 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과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이다. 특히,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는 복합지표로 기부식품 등 모집 및 이용실적과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실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지표의 가중치는 6.5로서 최근 중요성이 증대되어 가중치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6-1〉 2012~2014년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평가지표와 세부지표	가중치
2012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 기부식품 활성화 정도 - 기부식품 등 증가율 -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4.5
2013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 기부식품 등 증가율 -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9.5
2014년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 실적 -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실적	6.5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지표는 650점 만점에 평균 495.84점(SD=100.83)이었다.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650점 만점을 획득한 반면, 최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305.50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 지자체의 평균 점수

가 544.50점(SD=62.41)으로 가장 높았고, 농어촌 지자체는 평균 481.75점(SD=102.40)이었으며, 대도시 지자체는 평균 459.39점(SD=112.41)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에 관계없이 최고점수는 650점이었고, 최저 점수는 305.50점이었다.

〈표 6-2〉 「민간복지자원 활성화」의 평가점수

(단위: 개, 점)

평가지표	지역	(분석 지자체 수)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전국	(230)	650.00	650.00	305.50	495.84	100.83
	대도시	(74)	650.00	650.00	305.50	459.39	112.41
	중소도시	(78)	650.00	650.00	305.50	544.50	62.41
	농어촌	(78)	650.00	650.00	305.50	481.75	102.40

주: 민간복지자원 활성화의 가중치는 6.5임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지표의 세부지표 평가결과는 〈표 6-3〉에 제시된다. 첫 번째 세부 지표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에 대한 평가결과는 50점 만점에 평균 40.09점(SD=14.14)이었다. 지역별 평균 점수는 중소도시 지자체가 48.46점(SD=6.6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어촌 지자체 38.46점(SD=14.69), 대도시 지자체 32.97점(SD=14.96)의 순이었다. 또한 3대 지역 간 격차는 매우 컸는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최고점수는 50점 만점이었고, 최저점은 기본 점수인 20점이었다.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지표의 두 번째 세부 지표인 ‘기부식품제공 활성화 정도’는 복합지표로서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과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실적’에 의하여 평가되었다. 먼저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25점 만점에 평균 17.68점(SD=4.36)이었다. 지역별 평균 점수는 대도시 지자체가 평균 18.20점(SD=4.2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농어촌 지자체 평균 17.60점(SD=4.74), 중소도시 지자체 평균 17.26점(SD=4.04)의 순이었다.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최고점수는 25점 만점이었고, 최저점수는 기본 점수인 10점이어서 3대 지역 내의 지자체 간에도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복합지표인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는 25점 만점에 평균 18.52점(SD=4.04)이었다. 3대 지역별 평균 점수는 유사하였다. 즉, 대도시 지자체가 19.50점(SD=4.38), 중소도시 지자체 18.05점(SD=4.45), 농어촌 지자체 18.05

점(SD=3.05)이었다.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최고점수는 25점 만점이었고, 최저점수는 기본 점수인 10점이어서 3대 지역 내의 지자체 간에도 격차가 컸다.

〈표 6-3〉 「민간복지자원 활성화」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단위: 개, 점)

세부지표		지역	(분석 지자체 수)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전국	(230)	50.00	50.00	20.00	40.09	14.14
		대도시	(74)	50.00	50.00	20.00	32.97	14.96
		중소도시	(78)	50.00	50.00	20.00	48.46	6.66
		농어촌	(78)	50.00	50.00	20.00	38.46	14.69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 실적	전국	(230)	25.00	25.00	10.00	17.68	4.36
		대도시	(74)	25.00	25.00	10.00	18.20	4.26
		중소도시	(78)	25.00	25.00	10.00	17.26	4.04
		농어촌	(78)	25.00	25.00	10.00	17.60	4.74
	기부식품 제공사업 자원실적	전국	(230)	25.00	25.00	10.00	18.52	4.04
		대도시	(74)	25.00	25.00	10.00	19.50	4.38
		중소도시	(78)	25.00	25.00	10.00	18.05	4.45
		농어촌	(78)	25.00	25.00	10.00	18.05	3.05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은 민간상근간사의 배치 여부에 따라 최고 점과 최저점으로 양분되어 평가된다. 여기서 민간상근간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를 전담하는 유급간사로서 민간인이면서 상근자를 말한다. 민간상근간사 배치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민간상근간사 배치 지자체/지자체 수)×100
- 민간상근간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를 전담하는 민간상근간사(유급간사에 한함)
 -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민생안정요원, 자활근로요원, 주민생활지원협의회 간사는 제외
 - 기간제 근로자(1년 미만의 경우)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인정, 단 사무보조' 명목으로 채용한 경우는 불인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로 임명하고, 사회복지협의회 간사 겸임시는 인정, 단, 사회복지협의회 간사로 임명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겸임시는 불인정
 - 2012년 이전에 채용한 경우도 2012년에 계속 채용 사실 확인시 인정
 - ※ 2012. 7.1일 이후 채용하여 2013년까지 6개월 이상 계속 채용사실 확인시 인정

이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민간상근간사가 배치가 되었으면 최고 점수인 50점을, 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 점수인 20점을 부여하였다. 전체 지자체 중 만점인 50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66.96%이었고, 기본 점수인 20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33.04%이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중소도시 지자체 94.87%, 농어촌 지자체 61.54%, 대도시 지자체 43.24%로 중소도시 지자체 평균과 대도시 지자체 평균의 격차가 2배가 넘게 나타났다.

〈표 6-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민간상근간사 배치 지자체 / 지자체수) × 10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50점: 90% 이상	66.96	43.24	94.87	61.54
	43점: 80% 이상~90% 미만	-	-	-	-
	35점: 70% 이상~80% 미만	-	-	-	-
	28점: 60% 이상~70% 미만	-	-	-	-
	20점: 60% 미만	33.04	56.76	5.13	38.46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2014년 230개 지자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을 보면 민간상근간사 배치 지자체는 154개 지자체이고 배치율은 66.96%로 나타났으며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는 94.87%로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은 61.54%, 대도시는 43.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6-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기초분석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민간상근간사 배치 지자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전국	(230)	154	66.96
대도시	(74)	32	43.24
중소도시	(78)	74	94.87
농어촌	(78)	48	61.54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값**임.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본 세부지표의 평가 산출식의 특성상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모두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민간상근간사가 배치되어 있으면 100%, 배치되어 있지 않으면 0%이기 때문이다.

〈표 6-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100.00	0.00	100.00
대도시	(74)	100.00	0.00	100.00
중소도시	(78)	100.00	0.00	100.00
농어촌	(78)	100.00	0.00	100.00

2. 기부식품제공 활성화 정도

가. 기부식품 등 모집 및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모집 및 이용실적은 “(‘13년 기부식품 등 총액 -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12년 기부식품 등 총액 × 100”에 의해 평가된다. 여기서 기부식품 등 총액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부식품 등 모집 및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증가율) + (기부식품 이용자 증가율)
- 기부식품 등 증가율 = {('13년 기부식품 등 총액 - '12년 기부식품 등 총액)/'12년 기부식품 등 총액} × 100
 - 기부식품 이용자 증가율 = {('13년 기부식품 이용자 - '12년 기부식품 이용자)/'12년 기부식품 이용자} × 100
 - ※ 이용자수 지표반영비율(시설 10%, 개인이용자 90% 적용)
 - 기부식품 등 총액 : 기부식품 제공사업자(푸드뱅크·마켓)가 기부식품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식품 중 기부자에게 직접 기부 받은 식품 등의 『영수증 발행금액(장부가액)』
 - 전국·광역 푸드뱅크 또는 타 기부식품 지원사업자로부터 이관 받은 식품 등은 불포함(중복 실적)
 - 기부식품 이용자 : 전년도 대비 기부식품을 제공받은 실(實) 인원수의 증가율
 - ※ 기부식품이용자수 지표반영비율(시설 10%, 재가이용자 90% 적용)

등 산출식을 적용하여 증가율이 200% 이상이면 만점인 25점을, 100% 이상~200% 미만이면 21점을, 0% 이상~100% 미만이면 17점을, 0% 미만이면 최저 점수인 10점을 부여하였다.

전체 지자체 중 만점인 25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14.35%이었고, 기본 점수인 10점

을 획득한 지자체는 15.65%이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농어촌 지자체가 16.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도시 지자체 16.22%, 중소도시 지자체 10.26%로 중소도시 지자체가 가장 저조하였다. 기본 점수를 획득하는데 그친 지자체는 농어촌이 19.23%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와 대도시가 각각 15.38%, 12.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6-7〉 기부식품 등 모집 및 이용실적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부식품 등 증가율) +(기부식품 이용자 증가율)				
기부식품 등 모집 및 이용실적	25점: 200% 이상	14.35	16.22	10.26	16.67
	21점: 100% 이상~200% 미만	15.65	18.92	12.82	15.38
	17점: 0% 이상~100% 미만	54.35	52.70	61.54	48.72
	10점: 0% 미만	15.65	12.16	15.38	19.23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1개 지자체 당 2013년 기부식품 등 총액은 전국평균이 493,346.92천원으로 2012년 보다 증가되었으며, 기부식품 이용자 수도 1개 지자체당 2012년 1,314.84명에서 2013년 1개 지자체당 1,729.16명으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어 기부문화의 인지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013년 기부식품 등 총액을 3대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도시 지자체가 가장 많았고(761,686.01천원),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이었으며(620,840.67천원), 농어촌 지자체(111,275.06천원)는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어 지역 간에 큰 격차를 보였다.

〈표 6-8〉 기부식품 등 모집 및 이용실적 기초분석

(단위: 개, 천원, 명,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1개 지자체 당 13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1개 지자체 당 12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총액(A)	기부식품 이용자수(B)	기부식품 등 총액(C)	기부식품 이용자수(D)
전국 평균	(230)	493,346.92	1,729.16	404,512.30	1,314.84
대도시 평균	(74)	761,686.01	2,074.84	621,157.42	1,505.12
중소도시 평균	(78)	620,840.67	2,193.88	520,823.49	1,692.21
농어촌 평균	(78)	111,275.06	936.47	82,666.01	756.96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기부식품 등 모집 및 이용실적'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본 세부지표의 평가 산출식에 의해 기부식품 등 증가율의 지자체 간과 지역 내 격차를 살펴보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전국 230개 지자체의 추진실적은 최고 602.70%, 최저 -84.07%로 격차가 무려 686.76%pt나 되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농어촌이 686.76%pt로 가장 컸고, 다음은 대도시 619.05%pt이었으며, 중소도시는 547.24%pt이었다.

〈표 6-9〉 기부식품 등 모집 및 이용실적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기부식품 등 모집 및 이용실적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602.70	-84.07	686.76
대도시	(74)	551.42	-67.63	619.05
중소도시	(78)	480.09	-67.15	547.24
농어촌	(78)	602.70	-84.07	686.76

나.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실적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실적은 “13년 개소당 평균 자체 예산지원액 - '12년 개소당 평균 자체 예산지원액”에 의하여 평가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부식품 제공사업 예산 지원실적: 13년 개소당 평균 자체 예산지원액-'12년 개소당 평균 자체 예산지원액
 - 자체예산 지원액 :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지원한 실적(도비와 시군구 투입예산)
 - 자체예산 개소당 평균 지원액 : 자체예산 지원액÷해당 지자체에 신고(임의신고, 당연신고)한 사업장 개소수

동 산출식을 적용하여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이 5,000% 이상이면 만점인 25점, 2,500% 이상~5,000% 미만이면 21점, 0% 이상~2,500% 미만이면 17점, 0% 미만이면 최저 점수인 10점을 부여하였다.

전체 지자체 중 만점인 25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21.30%이었고, 기본 점수인 10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7.39%이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대도시 지자체 31.08%, 농어촌 지자체 12.82%, 중소도시 지자체 20.51%이었다. 기본 점수를 획득하는데 그친 지자체는 중소도시 지자체가 12.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도시 지자체 6.76%이었으며, 농어촌 지자체는 2.56%이었다.

〈표 6-10〉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실적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부식품 배분총액 증가율)+(기부식품 이용자 증가율)+(기부식품 제공건수 증가율)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실적	25점: 5,000% 이상	21.30	31.08	20.51	12.82
	21점: 2,500% 이상~5,000% 미만	8.26	12.16	7.69	5.13
	17점: 0% 이상~2,500% 미만	63.04	50.00	58.97	79.49
	10점: 0% 미만	7.39	6.76	12.82	2.56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2013년에 230개 전체 지자체의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자체예산 지원액은 63,338.62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으며 이를 3대 지역으로 살펴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도시 모두가 자체예산 지원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고영 업장 수도 2012년대비 전국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1〉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실적 기초분석

(단위: 개, 천원,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자체예산 지원액		신고사업장 개소수	
		13년(A)	12년(B)	13년(C)	12년(D)
전국 평균	(230)	63,338.62	55,511.22	1.93	1.90
대도시 평균	(74)	112,755.65	99,429.12	2.53	2.49
중소도시 평균	(78)	64,218.14	56,345.50	2.19	2.14
농어촌 평균	(78)	15,576.28	13,011.24	1.12	1.10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실적'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평가 산출식에 의한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실적의 지자체 간과 지역 내 격차를 살펴보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전국 230개 지자체의 지원실적은 최고 41,00%, 최저 19,241.50%으로 격차가 무려 60,241.50%pt나 되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소도시가 가장 큰 60,241.50%이었고, 다음은 농어촌 47,710.00%, 중소도시 37,917.00%의 순이었다.

〈표 6-12〉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실적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기부식품 등 이용실적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41,000.00	-19,241.50	60,241.50
대도시	(74)	24,200.00	-13,717.00	37,917.00
중소도시	(78)	41,000.00	-19,241.50	60,241.50
농어촌	(78)	36,600.00	-11,110.00	47,710.00



제7장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7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복지제도로써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돕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14년간 복지사각지대, 보충급여로 인해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 부정수급 등 수많은 비판에 직면해 왔으며, 최근에는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해도 큰 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세분화된 제도를 통해 더 정확히 복지사무가 지자체 차원에서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로서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지표는 5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동 지표들은 2012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표들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수급자 관리실적, 긴급복지 지원실적 등이다.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지표 가중치는 12.4로 2013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표 7-1〉 2012~2014년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평가지표와 세부지표		가중치
2012년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 급여조정 실적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 수급자 관리실적 - 긴급복지 지원실적	11.8
2013년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 수급자 관리실적 - 긴급복지 지원실적	12.4
2014년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 수급자 관리실적 - 긴급복지 지원실적	12.4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의 만점은 1,240점으로 역시 2013년 평가와 동일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2014년 평가점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만점을 받은 지자체는 농어촌지역 지자체에서 발견된다. 다음으로 중소도시와 대도시가 각각 1,202.8점, 1,116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점수는 942.72점으로 2013년 평가점수인 839.68점에 비해서는 다소 상향되었다. 평균점수가 높은 지역은 중소도시로 964.02점이었으며, 농어촌, 대도시의 순이었다.

〈표 7-2〉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의 평가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지역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전국	1,240.00	1,240.00	483.60	942.72	118.41
	대도시	1,240.00	1,116.00	669.60	921.79	97.41
	중소도시	1,240.00	1,202.80	483.60	964.02	129.95
	농어촌	1,240.00	1,240.00	595.20	941.29	122.20

주: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의 가중치는 12.4임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은 2012년, 2013년과 동일하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수급자 관리실적”, “긴급복지지원실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별 비중은 2013년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각각 20%의 비중, 수급자 관리실적은 10%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긴급복지지원 실적은 지난해와 같이 가장 비중이 높은 30%로 설정되었다.

5가지 세부항목별로 받은 점수의 분포를 보면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수인 20점, 10점 및 30점을 받은 지자체가 있었으며, 최저점을 받은 지자체들과는 많은 점수차이를 보여 주었다.

세부항목별로 평가결과를 보면,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의 평균점수는 14.52점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17.04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13년 평가와 동일한 결과이다. 반면에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각각 14.31점과 12.35점으로 대도시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만점은 20점, 최저점은 8점이었으며, 전국 평균점수는

19.19점이었다. 지역별로 대도시가 19.50점으로 높았으며 중소도시가 근소하게 낮은 19.50점, 농어촌은 18.35점이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의 평균점수는 13.57점으로 2013년에 비해 근소하게 상향(13.40점)되었다. 농어촌과 중소도시는 비슷한 수준인 13.88점과 13.62점을 받았으며 다소 낮은 점수인 13.19점을 대도시 지자체들이 받았다.

〈표 7-3〉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단위: 점)

세부지표	지역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전국	20.00	20.00	8.00	14.52	4.29
	대도시	20.00	20.00	8.00	17.04	3.42
	중소도시	20.00	20.00	8.00	14.31	4.03
	농어촌	20.00	20.00	8.00	12.35	4.06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전국	20.00	20.00	8.00	19.19	2.71
	대도시	20.00	20.00	8.00	19.76	1.55
	중소도시	20.00	20.00	8.00	19.50	1.77
	농어촌	20.00	20.00	8.00	18.35	3.9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전국	20.00	20.00	8.00	13.57	3.41
	대도시	20.00	20.00	8.00	13.19	3.03
	중소도시	20.00	20.00	8.00	13.62	3.56
	농어촌	20.00	20.00	8.00	13.88	3.60
수급자 관리실적	전국	10.00	10.00	3.00	6.41	2.32
	대도시	10.00	10.00	3.00	5.61	2.15
	중소도시	10.00	10.00	3.00	5.97	2.20
	농어촌	10.00	10.00	3.00	7.62	2.13
긴급복지지원 실적	전국	30.00	30.00	12.00	22.33	7.02
	대도시	30.00	30.00	12.00	18.74	7.03
	중소도시	30.00	30.00	12.00	24.35	6.49
	농어촌	30.00	30.00	12.00	23.72	6.26

수급자 관리 실적은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낮은 1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평균점수는 6.41점으로 2013년 6.85점에 비해 다소 낮았다. 농어촌이 작년에 이어 가장 높은 7.62점이었으며, 대도시, 중소도시는 비슷한 수준인 5.61점과 5.97점을 받았다. 2013년에 비해 농어촌은 증가,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감소한 실적이다.

마지막으로 긴급복지지원 실적의 만점은 30점으로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항목이다. 전국 지자체 평균은 22.33점으로 전년도 점수에 비해 (21.76점)에 다소 증가하였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24.35점과 23.72점이었으며, 대도시는 18.74점으로 지역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은 작년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변경 내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변경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로 인한 신규수급자 발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신규수급자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점이다.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은 (신규수급자수/최근 3년간 신규수급자 평균)×0.5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신규 수급자수/신규수급자수)×0.5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 변경을 통해 신규수급자가 어느 정도 발굴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의 기준을 보면 제도 변경 효과에 대한 비중이 다소 높게 평가(가중치 0.5)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선정기준과 다소 형평성을 유지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left(\frac{\text{신규 수급자수}}{\text{최근 3년간 신규 수급자 평균}} \times 0.5 \right) + \left(\frac{\text{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신규 수급자수}}{\text{신규 수급자수}} \times 0.5 \right)$$

- 신규 수급자 수: '13년 중 수급자로 결정되어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 수(가구원수)
- 최근 3년간 신규 수급자 평균: '11년~'13년 중 수급자로 결정되어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 수(가구원수)의 평균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신규 수급자 수: '13년 중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되어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 수(가구원수)

변경된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20점의 만점을 받은 지자체는 25.65%였으며, 대도시의 지자체가 가장 많은 44.59%, 농어촌과 중소도시는 이보다 많이 낮은 20.51%와 12.82%이었다. 2013년과 비교시 대도시 지자체중 만점 지자체의 비중은 크게 증가한 반면에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지자체 중 만점을 받은 지자체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단계의 점수대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8~17점대에 고르게 지자체들이 분포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도시는 상위점수인 20점, 17점에 44.59%, 27.03%로 높은 점수에 많은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중소도시는 중간점수대인 8점인 최하점에 12.82%의 지자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각 점수대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농어촌은 도시지역 지자체에 비해 점수가 낮은 14점 이하에 19.23%와 28.31%, 30.77%로 나타나고 있다.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에 있어 과거와 달리 지역간 차이를 보이는 점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주택가격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금번 제도 변경은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주택가격은 농어촌에 비해 도시지역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완화된 재산기준을 통해 신규수급자로 들어올 수 있는 계층은 주로 농어촌 보다는 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농어촌 거주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도시에 거주하여 재산기준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역시 지역 간 인구규모를 고려시 역시 농어촌지역이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평가지표 설정시 지역간 차이를 고려할 수 있는 변수설정이 필요하다.

〈표 7-4〉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left(\frac{\text{신규 수급자수}}{\text{최근 3년간 신규 수급자 평균}} \right) \times 0.5 + \left(\frac{\text{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신규 수급자수}}{\text{신규 수급자수}} \right) \times 0.5$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20점: 49% 이상	25.65	44.59	20.51	12.82
	17점: 46% 이상~49% 미만	18.70	27.03	20.51	8.97
	14점: 43% 이상~46% 미만	19.57	18.92	20.51	19.23
	11점: 40% 이상~43% 미만	19.57	4.05	25.64	28.21
	8점: 40% 미만	16.52	5.41	12.82	30.77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세부지표의 내용들을 보면 2013년 평가기간에 전국적으로는 1개 지자체당 평균 548.78명의 수급자들이 발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는 대도시가 872.8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 643.06명이었다. 반면 농어촌 지자체는 가장 적은 147.05명 수준이었다. 도시와 농어촌지역 지자체 간에 신규수급자 발굴에 있어 다소 격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신규수급자수는 지역간 격차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 대도시가 908.20명, 중소도시 726.40명인 것과 비교시 농어촌은 177.27명

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신규수급자 발굴 역시 도시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부양의무 재산기준 완화를 통한 신규수급자 발굴에서도 농어촌에 비해 도시지역의 지자체들이 더 많은 신규수급자가 발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농어촌에 비해 도시지역의 주택가격, 지가 등이 높다는 점에서 재산 기준의 완화 효과가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5〉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기초분석

(단위: 명, %)

지역	1개 지자체 당 신규 수급자 수(A)	1개 지자체 당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B)	1개 지자체 당 부양의무재산기준완화 신규수급자수(C)
전국 평균	548.78	598.67	16.27
대도시 평균	872.85	908.20	31.32
중소도시 평균	643.06	726.40	15.10
농어촌 평균	147.05	177.27	3.14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전체적인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은 전국적으로 최고는 0.66%로 대도시이었으며,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각각 0.56%와 0.58% 수준이었다. 최저비율은 중소도시가 0%로 가장 낮았으며, 대도시와 농어촌은 비슷한 수준인 0.26%와 0.28%이었다.

〈표 7-6〉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0.66	0.00	0.66
대도시	(74)	0.66	0.26	0.40
중소도시	(78)	0.56	0.00	0.56
농어촌	(78)	0.58	0.28	0.30

2.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평가되는 지표이다. 최근 고용복지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급자 및 수급가구가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급여탈락시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또한 이행급여가 가지는 특징은 수급자 및 수급가구들이 빈곤함정(Poverty trap)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행급여특례 보호 실적은 두 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근로능력이가구수 대비 이행급여 특례가구수와 기존 이행급여특례가구수 대비 신규이행급여특례가구수의 비율이 각각 50%씩의 가중치로 평가되었다. 신규이행급여 특례가구수의 변화를 통해 동 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 이행급여특례수급자 보호실적	
$\left(\frac{\text{이행급여특례가구수}}{\text{근로능력이가구수}} \times 0.5\right) + \left(\frac{\text{신규이행급여특례가구수}}{\text{이행급여특례가구수}} \times 0.5\right)$	
- 이행급여특례가구수 :	'13.12.31일 현재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이행급여특례가구수
- 근로능력이가구수 :	'13.12.31일 현재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근로능력이가구수
- 신규이행급여특례가구수 :	'13.1.1~'13.12.31까지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신규 이행급여특례가구수

이행급여특례 보호조정 실적에 대한 평가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2013년 평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만점이 20점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적으로 20점 만점을 받은 지자체는 전체의 89.57%로 90%에 이르는 지자체가 만점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자체의 97.3%, 중소도시는 89.74%, 농어촌은 82.05%로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만점을 받을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대도시는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만점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행급여 특례 보호실적에 대한 5단계 점수 척도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대부분의 지자체가 만점을 받음으로써 실제 평가에 있어 변별력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표 7-7〉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left(\frac{\text{이행급여특례가구수}}{\text{근로능력이가구수}} \times 0.5\right) + \left(\frac{\text{신규이행급여특례가구수}}{\text{이행급여특례가구수}} \times 0.5\right)$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20점: 0.45점 이상	89.57	97.30	89.74	82.05
	17점: 0.43점 이상~0.45점 미만	3.48	-	6.41	3.85
	14점: 0.41점 이상~0.43점 미만	2.17	1.35	2.56	2.56
	11점: 0.39점 이상~0.41점 미만	-	-	-	-
	8점: 0.39점 미만	4.78	1.35	1.28	11.54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에 대한 구체적 지표를 살펴보면 전국 및 지역별 평균을 살펴 보면, 1개 지자체당 근로능력이가구수는 전국 평균 975.84가구이었으며, 지역적으로는 대도시가 1,521.11가구, 중소도시는 1,144.74가구로 많은 반면 농어촌은 289.63가 구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1개 지자체당 이행급여특례 가구수는 전국적으로 평균 62.43가구로 2013년의 15.6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지역적으로는 대도시와 중 소도시의 지자체당 이행급여 특례가구수는 103.18가구, 75.04가구이었으며, 농어촌 은 도시지자체와 차이를 보이는 11.18가구 었다. 신규이행특례가구수에는 오히려 기 존 이행급여 특례가구수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제도 정착과정에 있어 동 제도가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7-8〉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기초분석

(단위: 가구, %)

지역	1개 지자체 당 근로능력 가구수	1개 지자체 당 이행급여특례 가구수	1개 지자체 당 신규이행특례 가구수
전국 평균	975.84	62.43	66.47
대도시 평균	1,521.11	103.18	111.26
중소도시 평균	1,144.74	75.04	78.50
농어촌 평균	289.63	11.18	11.94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 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이행급여특례 보호 실적의 최고 비율은 전국적으로 1.17%로 역시 2013년 0.53%에 비해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중소도시의 경우 0.75%, 0.84%로 비슷한 수준이 었으며 농어촌은 1.17%로 도시에 비해 다소 높았다.

〈표 7-9〉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이행급여 보호실적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1.17	0.00	1.17
대도시	(74)	0.75	0.00	0.75
중소도시	(78)	0.84	0.00	0.84
농어촌	(78)	1.17	0.00	1.17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3년간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지표이다. 과거와 달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다면,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부정 수급 등의 문제로 담당 공무원이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때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기구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이며, 정부에서도 지침 개정을 통해 동 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left(\frac{\text{지방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text{수급자가구수}} \times 0.5 \right) + \left(\frac{\text{보호결정 가구수}}{\text{지방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 \times 0.5 \right)$$

- 수급자 가구수 : '13.12.31일 현재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된 수급자 가구수
- 보호결정 가구수 : '13년 중 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 별도위원회 포함)를 통해 기초수급자로 추가 보호한 전체 가구수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 가구수 : '13년 중 기초수급자 책정을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 논의된 전체 가구수

동 평가항목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수급자가구중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논의를 위해 상정된 가구수와 두 번째로 상정된 가구중에서 신규로 보호가 확정된 가구수로 구분되어 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50%로 동일하다. 보호가 필요함에도 규정을 통해 판정이 어려운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급자 및 수급가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각지대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의 점수는 전국적으로 10.37%의 지자체가 만점인 20점을 받고 있으며, 14점대가 38.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이행급여 특례 보호실적에 비해서는 동 평가항목이 변별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지자체 중 만점을 받은 비율이 14.1%로 동일하게 높았으며, 대도시는 4.05%로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 비해서는 낮았다. 특히 대도시의 지자체가 만점을 받은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7-10〉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left(\frac{\text{지방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text{수급자가구수}} \times 0.5 \right) + \left(\frac{\text{보호결정가구수}}{\text{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 \times 0.5 \right)$				
지방생활보장 위원회 활성화 실적	20점: 0.535점 이상	10.87	4.05	14.10	14.10
	17점: 0.525점 이상~0.535점 미만	13.48	14.86	10.26	15.38
	14점: 0.515점 이상~0.525점 미만	38.26	44.59	35.90	34.62
	11점: 0.505점 이상~0.515점 미만	25.22	22.97	28.21	24.36
	8점: 0.505점 미만	12.17	13.51	11.54	11.54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지방생활위원회 활성화 실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보면, 수급자 가구수에서는 평균 3,516.27가구였으며, 도시지역이 농어촌에 비해 평균적으로 많은 가구를 가지고 있었다. 보호결정 가구수는 145.15가구이었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된 가구수는 147.66가수로 보호결정가구수에 비해 다소 높았다.

1개 지자체 당 보호결정 가구수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192.45가구와 187.22가구이었으며, 농어촌은 이보다 적은 58.22가구였다. 전반적으로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된 대부분의 가구들이 보호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기초분석

(단위: 가구, %)

지역	1개 지자체 당 수급자 가구수	1개 지자체 당 보호결정 가구수	1개 지자체 당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수
전국 평균	3,516.27	145.15	147.66
대도시 평균	4,969.38	192.45	195.93
중소도시 평균	4,312.06	187.22	190.85
농어촌 평균	1,341.87	58.22	58.68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에 대한 지역격차를 보면 지역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대도시 0.25%, 중소도시 0.57% 및 농어촌 0.17%로 지역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7-1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실적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0.60	0.00	0.60
대도시	(74)	0.58	0.33	0.25
중소도시	(78)	0.57	0.00	0.57
농어촌	(78)	0.60	0.43	0.17

4. 수급자 관리실적

수급자 관리실적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과정속에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업무로 수급자 및 수급가구의 변동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수급자 관리실적에 대한 평가항목은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와 중점관리소득의 증가 및 감소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가중치는 중점관리 소득이 증가한 경우는 70%, 감소한 경우는 30%로 예년과 동일한 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 수급자 관리실적: $\left(\frac{\text{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text{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수}} \times 0.7 \right) + \left(\frac{\text{중점관리 소득감소건수}}{\text{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수}} \times 0.3 \right)$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고 소득이 산정된 대상자에 대한 관리 실적
 -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수 : 추정소득, 사적이전소득 및 부양비부과자수('12.12.31~'13.11.30까지 월별 행복e음시스템 상 대상자 기준)
 -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중 소득이 증가한 건수
 - 중점관리 소득 감소건수 :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 중 소득이 감소한 건수

동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18.7%의 지자체가 만점인 10점을 받고 있으며, 지역간에 만점을 받은 지자체 수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농어촌은 만점을 받은 지자체가 34.62%이었지만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9.46%와 11.54%로 농어촌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5단계를 기준으로 평가해도 도시기자체들이 3점 이하의 점수대에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농어촌 지자체는 대부분이 3점대 이상에 분포하고 있어 지역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13〉 수급자 관리실적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left(\frac{\text{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text{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수}} \times 0.7 \right) +$ $\left(\frac{\text{중점관리 소득 감소건수}}{\text{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수}} \times 0.3 \right)$				
수급자 관리실적	10점: 0.065 이상	18.70	9.46	11.54	34.62
	8점: 0.060 이상~0.065 미만	19.13	13.51	19.23	24.36
	6점: 0.055 이상~0.060 미만	26.09	27.03	25.64	25.64
	5점: 0.050 이상~0.055 미만	18.26	22.97	21.79	10.26
	3점: 0.050 미만	17.83	27.03	21.79	5.13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수급자 관리실적에 대한 기초분석을 보면, 중점관리 소득이 증가한 건수는 1,253.62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1,633.73건, 대도시 1,332.05건으로 농어촌의 794.09건에 비해 많았다. 소득이 증가한 건수에 비해 소득이 감소한 건수는 다소 많아 전국 평균 1,637.06건이었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비슷한 2천여건, 농어촌은 729.13건이었다. 현재의 결과를 통해 보면 실제 수급자들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보다는 감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평가기준에서 제시한 가중치와는 중요도에서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7-14〉 수급자 관리실적 기초분석

(단위: 건, 명, %)

지역	1개 지자체 당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1개 지자체 당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수	1개 지자체 당 중점관리소득 감소 건수
전국 평균	1,253.62	24,233.02	1,637.06
대도시 평균	1,332.05	28,675.04	2,085.08
중소도시 평균	1,638.73	31,900.05	2,119.95
농어촌 평균	794.09	12,351.76	729.13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수급자 관리실적'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전국 229개 지자체의 수급자 관리실적은 최고 0.09%, 최저 0.0%로 0.09%pt의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및 농어촌 동일한 0.04%pt의 차이를 보였으며, 중소도시는 다소 높은 0.09%pt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7-15〉 수급자 관리실적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수급자 관리실적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0.09	0.00	0.09
대도시	(74)	0.08	0.03	0.04
중소도시	(78)	0.09	0.00	0.09
농어촌	(78)	0.09	0.04	0.04

5. 긴급복지 지원실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신문지상 등 매체를 통해 나타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국민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취약계층의 개인 및 가구가 긴급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긴급가구의 생계, 주거 및 의료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며, 기초보장제도와 더불어 공공부조의 중요한 한 축이라 볼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지자체 복지평가 초기부터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포함되어 평가가 진행되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신규수급자 발굴실적과 더불어 변함없이 꾸준히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복지평가의 지표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결정건수 중 의료지원 결정건수를 제외한 결정건수와 두 번째는 긴급복지를 지원 신청한 가구수중에서 다른 복지지원제도로 연계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는 긴급지원신청건수 중에서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총 결정건수의 비율, 마지막은 전년도 집행액 대비 가산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각 항목에 대한 별도의 가중치는 예년과 같이 주어지고 있지는 않다.

○ 긴급복지 지원실적:

$$\frac{\text{의료지원 제외 결정건수}}{\text{총결정건수}} + \frac{\text{타지원연계건수}}{\text{긴급지원신청건수}} + \frac{\text{총결정건수}}{\text{긴급지원신청건수}} + \text{전년도집행액대비가산점}$$

- 총결정건수 :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결정 건수
-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 : 총결정건수에서 의료지원건수 제외
- 타지원연계건수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교육청 차상위 교육급여, 보건소(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자체 자체 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 등 연계 가구수
 - * 타지원 연계건수는 신청 1건당 최대 2건까지 실제로 지원된 건(단순 신청 불포함)을 행복e음 통계 마감일(매월 5일)까지 입력 시 인정
 - * 총결정건수에는 신청 1건에 대한 복합지원, 연장지원 건수 모두 포함
- 전년도 집행액대비 가산점 : '12년 예산(국비 기준)집행액 대비 30% 이상 증가 지역은 30% 초과분에 대해 가산점 부여
 - * 예시 : 집행률이 37% 증가한 경우 7%(점수 환산 0.07점) 가산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만점을 받은 지자체는 33.48%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반면에 12점의 최저점을 받은 지자체도 22.17%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지자체중 46.15%가 만점을 받았으며, 농어촌은 35.9%로 높았다. 반면에 대도시는 17.57%로 낮은 수준이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지자체가 높은 점수대에 분포하고 있는 반면에 대도시 지자체들은 가장 낮은 수준인 12점에 분포하는 비율이 43.24%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다.

〈표 7-16〉 긴급복지 지원실적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의료지원 제외 결정건수 + 타지원연계건수				
	$\frac{\text{총결정건수}}{\text{총결정건수}} + \frac{\text{타지원연계건수}}{\text{긴급지원신청건수}}$ + $\frac{\text{총결정건수}}{\text{총결정건수}} + \text{전년도집행액대비가산점}$				
긴급복지 지원 실적	30점: 3.5 이상	33.48	17.57	46.15	35.90
	26점: 3.0 이상~3.5 미만	15.65	10.81	14.10	21.79
	21점: 2.5 이상~3.0 미만	16.96	16.22	17.95	16.67
	17점: 2.0 이상~2.5 미만	11.74	12.16	8.97	14.10
	12점: 2.0 미만	22.17	43.24	12.82	11.54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긴급복지 평가항목의 실적을 보면 먼저 전국적으로 1개 지자체당 총 결정건수는 평균적으로 361.33건으로 2013년 평가시 169.6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 중 의료지원건수 제외 실적은 244.07건으로 예년에 비해 의료지원에 대한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타지원 연계건수는 1개 지자체당 평균 362.26건으로 높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도시지역의 지자체의 긴급지원에 대한 업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농어촌은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낮은 건수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 평균 지원실적은 전국적으로 2.99%로 2013년의 2.22%에 높았으며,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평균 이상이었으며 대도시는 평균보다 낮은 2.19%이었다.

〈표 7-17〉 긴급복지 지원 실적 기초분석

(단위: 건, %)

지역	1개 지자체 당 총 결정건수	1개 지자체 당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	1개 지자체 당 긴급지원 신청건수	1개 지자체 당 타지원 연계건수
전국 평균	361.38	244.07	340.52	362.26
대도시 평균	481.05	302.80	469.47	413.86
중소도시 평균	451.29	321.05	410.74	525.59
농어촌 평균	157.94	111.37	147.95	149.96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긴급복지지원 실적에 대한 전국 및 지역 간 격차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6.14% pt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적으로 농어촌과 대도시가 비슷한 4.02%pt, 4.49%pt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중소도시는 6.14%pt로 나타났다.

〈표 7-18〉 긴급복지 지원실적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긴급복지 지원실적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6.14	0.00	6.14
대도시	(74)	5.52	1.03	4.49
중소도시	(78)	6.14	0.00	6.14
농어촌	(78)	5.36	1.34	4.02



제8장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8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평가결과 분석 <<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자활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초기 도입되었지만, 2000년대 들어 고용복지연계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과거 실업극복 차원에서 시작되었던 자활사업이었지만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수급가구들이 실질적으로 자활하고 탈수급이 가능하도록 인프라구축은 물론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자활사업은 자활자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에도 영향을 미쳐 미소금융,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또 다른 한층인 사회적 경제를 구축하는데 여러 영향을 미치게 된다(노대명, 2010; 재인용).

올해 자활사업의 평가영역은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지표로 구성되어, 세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이다. 처음 두 지표는 지속적으로 평가되어 온 지표이지만 마지막 지표는 새로운 지표로 2013년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실적을 대신 한 것이다.

〈표 8-1〉 2012~2014년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평가지표와 세부지표	가중치
2012년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실적	4.9
2013년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공동체) 지원실적	10.5
2014년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10.1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의 만점은 1,010점으로 작년에 비해 다소 하향조정(2013년 1,050점)되었으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받은 지역별로 지자체가 모두 있었다. 전국 평균은 727.29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54.1점이었다.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 모두 최고점과 최저점인 404점을 받은 지자체가 있었으며, 평균적으로는 중소도시가 755.17점으로 높았다. 대도시와 농어촌은 각각 720.1, 706.22점으로 나타났다.

〈표 8-2〉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의 평가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지역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전국	1,010.00	1,010.00	404.00	727.29	154.10
	대도시	1,010.00	1,010.00	404.00	720.10	168.82
	중소도시	1,010.00	1,010.00	404.00	755.17	131.16
	농어촌	1,010.00	1,010.00	404.00	706.22	158.46

주: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의 가중치는 10.1임.

2014년 자활사업의 세부평가항목은 작년과 동일한 평가항목인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수급자의 취·창업률”과 새롭게 구성된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비중은 탈수급률과 취·창업률은 각각 40%,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항목은 20%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세 가지 항목 모두 불 경우 만점과 최저점에 해당되는 40점과 20점을 받은 지자체들이 지역별로 모두 나타나고 있다. 평균점수에서 탈수급률은 27.71점으로 2013년(20.88점)에 비해서는 높아졌다.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는 있지 않지만 대도시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평균점수에 비해 낮았다.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전국 평균 29.98점이었으며, 도시지역이 농어촌에 비해 높았다.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에 대한 평균점수는 14.31점이었으며, 중소도시가 가장 높은 15.54점 이었으며 다음으로 대도시와 농어촌이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8-3〉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단위: 점)

세부지표	지역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전국	40.00	40.00	16.00	27.71	8.60
	대도시	40.00	40.00	16.00	26.46	8.37
	중소도시	40.00	40.00	16.00	28.69	8.03
	농어촌	40.00	40.00	16.00	27.92	9.30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전국	40.00	40.00	16.00	29.98	8.00
	대도시	40.00	40.00	16.00	31.00	7.45
	중소도시	40.00	40.00	16.00	30.54	7.40
	농어촌	40.00	40.00	16.00	28.46	8.90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전국	20.00	20.00	8.00	14.31	4.27
	대도시	20.00	20.00	8.00	13.84	4.44
	중소도시	20.00	20.00	8.00	15.54	3.86
	농어촌	20.00	20.00	8.00	13.54	4.27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자활사업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수급자들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탈수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지표이며, 고용복지 연계라는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다.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수급자에 대한 탈수급률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는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업그레이트형 자활사업참여(실인원) 수급자수 대비 자활특례상향 또는 탈수급자수로 평가하고 있다. 기준은 2013년 1년간에 발생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다.

○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frac{\text{자활특례상향 또는 탈수급자 수}^1}{\text{업그레이트형 자활사업참여(실인원)수급자 수}^2} \times 100$$

- 탈수급자 수¹) : '13.1.1 ~ 12.31 기간 중 업그레이트형 자활사업 및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중 자활(이행*)특례로 상향 이동하였거나 수급 중지된 인원수(사망, 전출 제외)

* 희망리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수급자 중 이행특례상향이동자만 포함(희망키움통장으로 인한 이행특례이동자 제외)

- 업그레이트형 자활사업 참여(실인원) 수급자수²) : '13.1.1 ~ 12.31 기간 중 업그레이트형 자활사업(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인턴·도우미형+희망리본사업)+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전체 인원(사망, 전출 제외)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의 평가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는 40점 만점과 가장 낮은 16점을 받은 지자체의 규모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21.30%, 21.74%).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했던 점수는 28점으로 24.35%를 점유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의 지자체들이 40점 만점을 받은 경우가 28.21%로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상향점수인 34점 이상을 받은 지자체 분포는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저점수를 받은 경우는 대도시가 25.68%, 농어촌 24.36%로 비슷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소도시는 15.38%로 낮은 수준이었다.

〈표 8-4〉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frac{\text{자활특례상향 또는 탈수급자 수}}{\text{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참여 (실인원)수급자 수}} \times 100$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40점: 25% 이상	21.30	14.86	20.51	28.21
	34점: 20% 이상~25% 미만	14.35	16.22	17.95	8.97
	28점: 15% 이상~20% 미만	24.35	22.97	29.49	20.51
	22점: 10% 이상~15% 미만	18.26	20.27	16.67	17.95
	16점: 10%미만	21.74	25.68	15.38	24.36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의 구체적 지표를 보면 16.53%로 전년도 평균인 16.34%에 비해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17.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농어촌 17.78%, 대도시 15.53%의 순이었다.

1개 지자체 당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규모를 보면 대도시는 335.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는 196.01명의 순이었다. 농어촌이 가장 적은 46.72명이라는 점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표 8-5〉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기초분석

(단위: 명, %)

지역	1개 지자체 당 탈수급자 수			1개 지자체 당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	자활사업 수급자의 탈수급률
	자활(이행*)특 례상향이동자	수급중지자	계		
전국 평균	12.63	18.84	31.47	190.35	16.53
대도시 평균	20.22	31.92	52.14	335.77	15.53
중소도시 평균	14.95	20.08	35.03	196.01	17.87
농어촌 평균	3.10	5.21	8.31	46.72	17.78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수급자의 탈수급률 최고 및 최저, 지역 간 격차를 보면 평균적으로 44.44%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중소도시의 격차가 가장 컸으며 대도시 및 농어촌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 8-6〉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44.44	0.00	44.44
대도시	(74)	37.15	0.00	37.15
중소도시	(78)	44.44	0.00	44.44
농어촌	(78)	37.50	0.00	37.50

2.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의 지표는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온 항목으로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참여(실인원) 수급자수 대비 수급을 유지하면서 취업 및 창업을 한 수급자수의 비율로 산정되었다. 구체적인 평가식은 아래와 같다.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수급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소득활동을 함으로써 탈수급을 위한 밑거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평가지표라 할 수 있다.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frac{\text{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 수}}{\text{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실인원) 수급자 수}} \times 100$
- 취창업자 수3) : '13.1.1 ~ 12.31 기간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및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수급유지자 중 취업 및 창업한 자의 수(사망·전출제외)
 -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실인원) 수급자수2) : '13.1.1 ~ 12.31 기간 중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인턴·도우미형+희망리본사업)+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전체인원(사망·전출 제외)

취·창업률에 대한 점수분포를 보면, 26.52%의 지자체가 40점 만점을 받았으며, 28점 이상의 상위 점수를 받은 지자체가 70%에 이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률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한 것을 보인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32.43%로 만점을 받은 지자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지자체가 뒤를 잇고 있다.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경우는 대도시 1.35%, 중소도시 8.97%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농어촌은 20.51%로 도시지역 지자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취·창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도시지역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역간 발생하는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8-7〉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frac{\text{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 수}}{\text{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실인원) 수급자 수}} \times 100$				
수급자의 취·창업률	40점: 20% 이상	26.52	32.43	23.08	24.36
	34점: 15% 이상~20% 미만	20.43	14.86	26.92	19.23
	28점: 10% 이상~15% 미만	23.04	24.32	28.21	16.67
	22점: 5% 이상~10% 미만	19.57	27.03	12.82	19.23
	16점: 5%미만	10.43	1.35	8.97	20.51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중 취·창업률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통해 보면 1개 지자체 당 수급유지자중 취·창업자는 전국적으로 평균 30.93명이었으며 취업자가 29.33명으로 거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창업자는 1.6명으로 2013년

평가인 1.9명에 비해서도 낮아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창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 대비 비율은 15.36%로 2013년 15.1%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도시과 농어촌 간에 취창업자 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도시 및 중소도시는 취·창업자수가 54.8명, 32.31명이었지만 농어촌은 6.92명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비율로 구분하여 보면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에서는 대도시가 16.03%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15.26%와 14.83% 이었다.

〈표 8-8〉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기초분석

(단위: 명, %)

지역	1개 지자체 당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			1개 지자체 당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취업자	창업자	계		
전국 평균	29.33	1.60	30.93	190.35	15.36
대도시 평균	52.51	2.28	54.80	335.77	16.03
중소도시 평균	30.54	1.77	32.31	196.01	15.26
농어촌 평균	6.14	0.78	6.92	46.72	14.83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의 최고와 최저의 격차는 농어촌이 가장 큰 100%를 보여주고 있어 농어촌 지자체간에 자활사업 운영에 있어 많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42.35%와 33.61%로 농어촌에 비해서는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역시 지역내 지자체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다. 향후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 강화를 통해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표 8-9〉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100.00	0.00	100.00
대도시	(74)	42.35	0.00	42.35
중소도시	(78)	33.61	0.00	33.61
농어촌	(78)	100.00	0.00	100.00

3.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은 취약계층의 취약한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탈수급 자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월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달리 희망·내일 키움통장은 장기적으로 참여수급자와 정부가 함께 자산을 키워나가는 방식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과 탈빈곤에 필요한 자산축적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평가에 포함됨으로써 동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성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희망키움 통장 및 내일키움통장에 대한 가입률은 각 사업의 대상자 수 대비 실제 희망키움 및 내일키움 통장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로 평가된다. 동 비율이 높아질수록 가입자 규모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탈수급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을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 \left(\frac{\text{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 수}^{4)}}{\text{희망키움통장 대상가구 수}^{5)}} \times 100 + \left(\frac{\text{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수}^{6)}}{\text{내일키움통장 대상자 수}^{7)}} \times 100$$

-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 수 4) : '13년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 수
 - * 본인저축액,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이 통장 가입 첫 월에 모두 적립된 가구
- 희망키움통장 대상가구 수 5) : '12.12.31 현재 희망키움통장 신청이 가능한 가구 수*
 - * 일하는 수급자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 가구(행복e음 추출)
-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수 6) : '13년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수
 - * 본인저축액 불입과 지자체의 내일키움장려금 적립 결정이 통장 가입 첫 월에 성립된 자
- 내일키움통장 대상자 수 7) : '12.12.31 현재 내일키움통장 신청이 가능한 자*의 수
 - * 시장진입형 및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 발생하는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 수

희망키움 통장 및 내일키움통장에 대한 가입률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전국기준으로 크게 분포하고 있다. 최고 점수인 20점의 경우 23.48%, 최저점수인 12점은 17.83%로 약 6%pt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중소도시 지자체중 만점을 받은 지자체가 30.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도시 20.27%, 농어촌 19.23%로 나타났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는 14점 이상의 중상위 점수를 받을 지자체가 많은 반면에 농어촌의 경우에는 다소 낮은 점수대에 분포하고 있어 일정부분 지역간에 희망키움 통장 및 내일키움통장에 대한 가입률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8-10〉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frac{\text{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 수}}{\text{희망키움통장 대상가구 수}} \times 100$ + $(\frac{\text{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수}}{\text{내일키움통장 대상자 수}}) \times 100$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20점: 50% 이상	23.48	20.27	30.77	19.23
	17점: 40% 이상~50% 미만	18.26	18.92	20.51	15.38
	14점: 30% 이상~40% 미만	21.30	21.62	25.64	16.67
	11점: 20% 이상~30% 미만	19.13	13.51	15.38	28.21
	8점: 20% 미만	17.83	25.68	7.69	20.51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희망키움 통장 및 내일키움통장에 대한 가입률의 평가를 위해 취합된 자료를 통해 동 사업의 성과를 보면 1개 지자체 당 희망 키움 및 내일 키움 통장간에는 내일키움 통장의 사업성고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희망키움 통장의 가입률은 20.3%인 반면에 내일키움통장의 경우에는 53.14%로 두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통장에 대한 전국평균 가입률은 36.72%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희망키움 및 내일키움 통장 모두 중소도시 지자체가 평균적으로 23.3%와 60.19%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희망 키움통장에서는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내일 키움통장에서는 농어촌에 비해 대도시의 가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8-11〉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기초분석

(단위: 가구, %, 명)

지역	1개 지자체 당 희망키움통장가입률			1개 지자체 당 내일키움통장가입률		
	희망키움가입 가구수 (①)	희망키움 대상가구 수(②)	A= (①/②)×100	내일키움가입자 수(③)	내일키움 대상자 수(④)	B= (③/④)×100
전국 평균	39.37	203.81	20.30	22.85	43.83	53.14
대도시 평균	57.80	331.99	17.20	27.81	56.15	50.87
중소도시 평균	49.63	223.28	23.30	26.85	46.86	60.19
농어촌 평균	11.63	62.74	20.23	14.14	29.12	48.25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희망키움 통장 및 내일키움통장에 대한 가입률에 대한 지역간 격차를 보면 전국적으로 최고금액과 최저금액간에 85.46%라는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대

도시간에는 65.84%의 격차를 보이는 반면에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8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자체들의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표 8-12〉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의 지역격차

(단위: 개, 천원)

지역	(분석 지자체 수)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85.46	0.00	85.46
대도시	(74)	65.84	0.00	65.84
중소도시	(78)	82.09	0.00	82.09
농어촌	(78)	85.46	2.08	83.38



제9장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9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중 노인과 장애인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⁶⁾은 비수급자들에 비해 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 제도도입 초기에는 의료급여에 대한 예산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더불어 양대 축을 형성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새롭게 제정될 맞춤형 급여체계 속에서도 의료급여는 급여체계의 한축을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급여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도한 의료이용형태로 인해 재정학자 및 재정기관 등에 의해 재정적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에서도 의료급여는 주로 의료급여의 재정사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평가되어 왔다. 2014년 의료급여분야 평가는 2013년의 평가항목과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3개의 지표를 통해 평가되고 있다(<표 9-1> 참조).

<표 9-1> 2012~2014년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평가지표와 세부지표	가중치
2012년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 사례관리 대상인원 목표달성률 • 의료급여 관리사 무기계약 전환율	6.4
2013년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6.2
2014년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5.9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2012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65세 이상 비율은 28.9%이며, 장애인가구 비율은 21.2%로 다른 취약계층이나 연령에 비해 높은 수준임(보건복지부, 2013)

그 세부내용을 보면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담이득금 징수 실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지표의 가중치는 5.9로 2013년의 가중치 6.2에 비해 줄어들었다.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종합점수는 가중치를 기준으로 보면 590점 만점이며, 2013년과 동일한 비중으로 점유하고 있다. 즉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이 40%,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을 40%,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담이득금 징수실적이 20%로 구성되었다.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평가는 전국 평균 418.23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역간 점수는 농어촌, 중소도시 및 대도시로 430.7점, 415.95점, 407.5점이었다. 지역내 표준편차는 69점대로 차이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 최고점수에서는 대도시는 만점이 없이 572.3점이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는 만점을 가진 지자체들이 있었다.

〈표 9-2〉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의 평가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지역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전국	590.00	590.00	236.00	418.23	70.55
	대도시	590.00	572.30	236.00	407.50	69.26
	중소도시	590.00	590.00	236.00	415.95	69.37
	농어촌	590.00	590.00	236.00	430.70	71.88

주: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가중치는 5.9임.

의료급여 관리 적절성의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가율과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4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두 변수 모두 최고점을 받은 지자체가 있었으며, 최저점수는 동일하게 16점을 보여주고 있다.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담이득금 징수실적은 2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역시 최고점수 20점과 최소점수 8점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균을 보면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의 경우 농어촌이 30.69점, 대도시 26.05점, 중소도시가 25.77점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의 경우 중소도시가 30점, 대도시 29.22점,

농어촌이 25.85점으로 다소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은 농어촌이 16.46점, 중소도시가 14.73점, 대도시 13.8점으로 2013년과 동일한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표 9-3〉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단위: 점)

세부지표	지역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전국	40.00	40.00	16.00	27.53	8.05
	대도시	40.00	40.00	16.00	26.05	7.64
	중소도시	40.00	40.00	16.00	25.77	7.11
	농어촌	40.00	40.00	16.00	30.69	8.47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전국	40.00	40.00	16.00	28.34	8.38
	대도시	40.00	40.00	16.00	29.22	8.48
	중소도시	40.00	40.00	16.00	30.00	7.90
	농어촌	40.00	40.00	16.00	25.85	8.26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전국	20.00	20.00	8.00	15.02	5.38
	대도시	20.00	20.00	8.00	13.80	5.40
	중소도시	20.00	20.00	8.00	14.73	5.34
	농어촌	20.00	20.00	8.00	16.46	5.11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평가의 첫 번째 평가항목은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지표이다. 동 지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의료급여의 급격한 재정 증가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자하는 측면에서 평가항목에 포함되었다. 또한 의료급여에 대한 재원은 중앙정부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차원에서도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평가지표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지표는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 것으로 세부산식을 보면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은 아래 산식에서와 같이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0.5)+(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0.5)’로 산출되도록 하고 있다. 다른 평가항목들은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 반면에 동 지표는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증감률이 적을수록 높은 평가를 받도록 역순위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역순위 평가):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 × 0.5)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 × 0.5)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 :

$$\{ (13\text{년 } 1\text{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 \text{최근 } 3\text{년간 } 1\text{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의 평균값}) / \text{최근 } 3\text{년간 } 1\text{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의 평균값} \} \times 100$$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 :

$$\{ (13\text{년 } 1\text{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 \text{최근 } 3\text{년간 } 1\text{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의 평균값}) / \text{최근 } 3\text{년간 } 1\text{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의 평균값} \} \times 100$$
- ※ 산출기준 : '13년 12월 31일 지급기준(진료실인원, 총 진료비, 총 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에 대한 지표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만점을 받은 지자체는 16.96%로 전년대와 동일한 지표라는 것을 가정하면 전년도 19.65%에 비해서는 만점을 받을 지자체가 다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의 지자체가 상위점수인 만점을 비롯하여 28점 이상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는 반면에 대도시의 반대로 28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가 많았다. 동 점수 분포 양상은 전년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소도시 역시 전반적으로는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지역 지자체의 의료급여 관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9-4〉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 × 0.5) +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 × 0.5)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40점: 10% 미만	16.96	9.46	7.69	33.33
	34점: 10% 이상~12% 미만	17.83	18.92	16.67	17.95
	28점: 12% 이상~14% 미만	23.04	22.97	24.36	21.79
	22점: 14% 이상~16% 미만	24.78	27.03	33.33	14.10
	16점: 16% 이상	17.39	21.62	17.95	12.82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의 평가기초자료를 보면, 수급권자 1인당 의료급여 일수 증감률은 전국 평균 13.26%로 나타나 2013년 평가 9.6%에 비해서는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가 가장 높게 증가한 14.29% 이었으며, 대도시와 농어촌이 13.95%, 11.57%로 농어촌에 비해 도시지역의 의료급여일수가 전반적으로 높

게 증가하고 있다. 동 결과 역시 전년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향후 의료급여 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이 증가하게 된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를 통해 보면 먼저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일수는 3년간 평균에 비해 2013년 평균 급여일수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평균진료비에서도 지난 3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증가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표 9-5〉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기초분석

(단위: 일, 원)

지역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급여일수의 평균값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진료비의 평균값
전국 평균	285.92	320.58
대도시 평균	279.00	316.11
중소도시 평균	277.49	314.29
농어촌 평균	300.90	331.12
		2,927,988.09
		3,345,290.80
		2,793,636.14
		3,197,263.17
		2,881,323.71
		3,323,902.91
		3,102,114.58
		3,507,115.17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에 대한 지역별 차이는 전국적으로 53.43%로 2013년 42.78%pt에 비해 10%pt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최고와 최저차이가 각각 44.96%pt와 44.10%pt로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면 대도시는 14.78%pt로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앞의 표에서 보듯이 지역별로 대도시의 의료급여 평균급여일수와 평균진료비가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비해서는 낮은 것을 통해 지자체간 차이도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표 9-6〉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44.96	-8.47	53.43
대도시	(74)	22.52	7.74	14.78
중소도시	(78)	44.96	0.00	44.96
농어촌	(78)	35.63	-8.47	44.10

주: 본 지표의 수치는 역점수화 되어 산출됨.

2.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두 번째 평가지표는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로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지표이다. 평가지표 항목은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 $\times 0.5$ 와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 $\times 0.5$ '의 합을 통해 산출한다. 앞에서 살펴본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를 통해 보면 동 지표 역시 의료급여 재원의 효율적 관리가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라 볼 수 있다.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다.

-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역순위 평가):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 $\times 0.5$)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 $\times 0.5$)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 :

$$\{('13\text{년 } 1\text{인당 평균 급여일수} - '12\text{년 } 1\text{인당 평균 급여일수}) / '12\text{년 } 1\text{인당 평균 급여일수}\} \times 100$$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 :

$$\{('13\text{년 } 1\text{인당 평균 진료비} - '12\text{년 } 1\text{인당 평균 진료비}) / '12\text{년 } 1\text{인당 평균 진료비}\} \times 100$$
 - ※ 사례관리대상자 기준 : '13년도 고위험군 사례관리 종결자(일반/조기 종결자)로서 산출기준은 전체 수급권자와 동일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의 점수분포를 보면 전국적으로 40점 만점을 받은 지자체는 19.57%로 전년도 38.43%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에 비해 중상위 이상의 평가를 받은 지자체가 많게 분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만점을 받은 지자체가 24.32%, 25.64%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반면에 농어촌은 8.97%로 도시지역 지자체와 비교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점수대별로 보면 대도시는 28점 이상의 점수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특히 중소도시의 지자체는 최저점인 경우가 8.97%로 적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각 점수대에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반면에 농어촌 지자체의 경우 최저점을 받은 지자체가 30.77%로 도시지역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어촌 지자체에 대한 의료급여 재정효율성에 대한 세부적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9-7〉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증감률 × 0.5) +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의료급여진료비 증감률 × 0.5)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40점: -18% 미만	19.57	24.32	25.64	8.97
	34점: -18% 이상~-13% 미만	22.61	21.62	21.79	24.36
	28점: -13% 이상~-8% 미만	20.43	20.27	21.79	19.23
	22점: -8% 이상~-3% 미만	18.70	17.57	21.79	16.67
	16점: -3% 이상	18.70	16.22	8.97	30.77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사례관리 대상자의 1인당 평균의료급여 일수는 2012년 대비 2013년에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었다. 전국 평균은 934.83일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이 884.79일로 낮았다. 반면에 대도시는 다소 높은 998.17일이었다. 1인당 의료급여 진료비 역시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적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1인당 평균 진료비가 많이 감소하고 있었다.

두 변수를 통해 살펴본 증감율을 보면 전년대비 전체 평균은 -10.54%로 줄어들고 있었으며, 중소도시가 높은 -12.64%, 대도시가 -11.95%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자체는 도시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7.11%를 기록하고 있다. 점수 분포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점수를 받은 지자체들이 많지 않았지만, 실제 데이터를 기초로 할 경우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8〉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기초분석

(단위: 일, 원)

지역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
전국 평균	988.87	934.83	7,169,393.87	5,898,889.35
대도시 평균	1,055.28	998.17	7,633,535.81	6,094,789.24
중소도시 평균	986.65	924.77	7,289,871.55	5,811,205.19
농어촌 평균	928.10	884.79	6,608,576.40	5,800,719.77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또한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의 지역 간 격차를 보면, 전국 평균은 최고와 최저 비율 간에 101.01%pt로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격차가 동일한 44.22%pt이었으며, 대도시는 중소도시, 농어촌에 비해 낮은 39.87%pt이었다.

〈표 9-9〉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63.40	-37.60	101.01
대도시	(74)	8.85	-31.02	39.87
중소도시	(78)	6.62	-37.60	44.22
농어촌	(78)	63.40	-26.62	90.03

주: 본 지표의 수치는 역점수화 되어 산출됨.

3.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은 2013년부터 추가된 것으로 이번까지 2년 연속 측정된 지표이다. 세부내용의 구성은 “상해요인 조사처리율”과 “부당이득금 징수율”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표의 가중치는 첫 번째 지표는 30%, 두 번째 지표는 70%의 가중치를 두고 있다. 역시 앞의 지표들과 같이 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부당이득금 징수율에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차원의 재정 안정 노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지표이다. 의료급여에 대한 평가지표 중 이전의 두 지표는 수치가 클수록 오히려 의료급여에 대한 부정적 평가(역순 평가)를 주는 것인 반면에 마지막 지표인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은 실적이 높아질수록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상해요인 조사처리율×0.3)+(부당이득금 징수율×0.7)
- 상해요인 조사처리율: (조사처리건수/ 통보건수 × 100) × 0.3
 - ※ 조사처리건수: 상해요인으로 '12년도 통보 건('12년도 1차수~12차수)에 대해 조사 처리하여 '12년~'13년도에 결정(완전적용, 일부적용, 비적용)한 건수
 - 부당이득금 징수율: (징수금액/결정금액 × 100) × 0.7
 - ※ 결정금액: '12년도 상해요인 결정 부당금액(부당이득금, 구상금), 현지조사 부당금액 및 공단에서 통보(사망상실, 중복이중, 초(재)심, 원외처방, 휴폐업및업무정지, 투여기간관리 등)한 부당금액
 - ※ 징수금액: '12년도 통보한 건에 대해 12년~13년12월31일까지 징수 금액(전산상계, 방법변경, 결손금액 포함)
 - 상해요인 관련 징수금액, 현지조사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공단에서 통보한 부당이득금 징수금액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전국기준으로 만점을 20점을 받은 지자체가 47.39%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저점수를 받은 지자체도 32.17%로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만점과 최저점을 받은 지자체가 많다는 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농어촌이 가장 높은 62.82%이었으며 중소도시가 42.31%로 다음을 잇고 있다. 대도시는 36.49%로 농어촌과 중소도시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9-10〉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상해요인 조사처리율×0.3)+ (부당이득금 징수율×0.7)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20점: 90% 이상	47.39	36.49	42.31	62.82
	17점: 85% 이상~90% 미만	8.26	6.76	11.54	6.41
	14점: 80% 이상~85% 미만	7.39	10.81	7.69	3.85
	11점: 75% 이상~80% 미만	4.78	5.41	5.13	3.85
	8점: 75% 미만	32.17	40.54	33.33	23.08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면, 상해요인 조사처리율은 98.4%로 전년도 98.3%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73.52%로 역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상해조사처리율은 지역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농어촌이 가장 높은 80.49%이었으며, 중소도시 및 대도시가 각각 70.81%와 69.03%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9-11〉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기초분석

(단위: 건, %, 천원)

지역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통보건수 (②)	A= (①/②)×100	징수금액 (③)	결정금액 (④)	B= (③/④)×100
전국 평균	432.31	437.34	98.40	19,698,088.17	26,186,728.90	73.52
대도시 평균	542.53	548.38	98.77	18,030,465.09	24,491,119.82	69.03
중소도시 평균	550.72	557.36	97.61	29,110,411.23	39,521,176.49	70.81
농어촌 평균	209.33	211.99	98.86	11,867,869.05	14,460,936.09	80.49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의 지역격차는 전국 평균 100.0%pt이었으며, 지역간에도 큰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소도시가 가장 큰 100.0%pt이었으며, 농어촌 68.45%pt, 대도시 59.51%pt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9-12〉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100.00	0.00	100.00
대도시	(74)	100.00	40.49	59.51
중소도시	(78)	100.00	0.00	100.00
농어촌	(78)	100.00	31.55	68.45



제10장

장애인 복지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2014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틀의 영역 중 「장애인복지서비스」 지표는 「복지서비스」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평가틀의 전체 세부지표는 1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애인연금 수급률이다.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장애인 연금 수급률」 지표의 가중치는 6.1로 2013년 11.1에 비해 낮아졌다.

〈표 10-1〉 2012~2014년 「노인장애인복지 서비스」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평가지표와 세부지표	가중치
2012년	- 노인요양시설 입소율 및 종합재가기관 확충률 - 노인요양시설 입소율 - 종합재가기관 확충률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 장애인연금 수급률	14.9
2013년	-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 개정법 시설인력 기준 충족률 (사·도 평가에 적용하며, 시·군·구 평가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사후관리의 적절성 -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률	11.1
2014년	장애인연금 수급률	6.1

자료: 김승권 외(2013). 2013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점수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의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만점은 610점으로 환산된다. 전국 230개 지자체의 평균점수는 551.92점(SD=90.36)이었다.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지자체가 605.31점(SD=25.1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 537.27점(SD=90.13), 대도시 지자체 511.08점(SD=106.83)의 순이었다.

전국의 최고점은 610.00점 만점이었고, 최저점은 244.00점이었다. 이러한 최고점 610.0점, 최저점 427.00점을 보인 농어촌 지자체를 제외한 대도시 지자체와 중소도시 지자체에서도 동일하였다.

〈표 10-2〉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평가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지역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국	610.00	610.00	244.00	551.92	90.36
	대도시	610.00	610.00	244.00	511.08	106.83
	중소도시	610.00	610.00	244.00	537.27	90.13
	농어촌	610.00	610.00	427.00	605.31	25.10

주: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의 가중치는 6.1임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장애인연금 지급률은 '(장애인연금 지급자 인원/장애인연금 대상자인원)×100'으로 산출된다. 장애인연금 지급자 인원은 '13년도 12월 기준으로 한 장애인연금 지급자 인원이고, 장애인연금 대상자 인원은 '13.12월 기준, 중증장애인의 소득 하위 63% 수준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연금 지급률: (장애인연금 지급자 인원 / 장애인연금 대상자인원) × 100
- 장애인연금 지급자 인원 : '13.12월 기준으로 한 장애인연금 지급자 인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인원 : '13.12월 기준, 중증장애인의 소득하위 63% 수준

장애인연금 지급률의 평가는 94.% 이상이면 만점인 100점, 85% 이상~94% 미만이면 85점, 75% 이상~85% 미만이면 70점, 65% 이상~75% 미만이면 55점, 65% 미만이면 기본점수인 40점을 부여한다.

전체적으로 장애인연금 신규 지급률의 평가결과를 보면, 94% 이상의 높은 지급률을 보인 지자체는 전국 230개 지자체 중 64.78%이었고, 65% 미만의 지급률을 보인 지자체는 1.30%이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농어촌 지자체가 만점인 100점(94% 이상)을 받은 경우가 96.15%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지자체 및 대도시 지자체도 만점인 100점(94% 이상)을 받은 경우가 각각 52.46%, 44.59%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도시 지자체에서는 40점(65%미만)을 받은 경우가 2.56%로 전국 평균 1.30%의 약 2배로 많이 나타났다.

〈표 10-3〉 장애인연금 수급률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장애인연금 수급자 인원 / 장애인연금 대상자인원) × 100				
장애인연금 수급률	100점: 94% 이상	64.78	44.59	52.56	96.15
	85점: 85% 이상~94% 미만	14.35	20.27	20.51	2.56
	70점: 75% 이상~85% 미만	14.78	18.92	24.36	1.28
	55점: 65% 이상~75%미만	4.78	14.86	-	-
	40점: 65% 미만	1.30	1.35	2.56	-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장애인연금 수급률의 전국 평균은 100.67%로 나타났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지자체가 114.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 95.75%, 대도시 지자체 90.82%의 순이었다.

〈표 10-4〉 장애인연금 수급률 기초분석

(단위: 명, %)

지역	1개 지자체 당 수급자 인원	1개 지자체 당 대상자 인원	장애인연금 수급률
전국 평균	1,328.56	1,402.00	100.67
대도시 평균	1,600.07	1,775.22	90.82
중소도시 평균	1,761.99	1,893.45	95.75
농어촌 평균	637.55	556.49	114.92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장애인연금 수급률의 격차는 전국적으로 최고 140.18%, 최저 55.37%로 격차가 84.81%pt나 되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지자체의 격차가 가장 컸고 (84.80%pt),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78.88%pt), 농어촌 지자체(57.14%pt)의 순이었다.

〈표 10-5〉 장애인연금 수급률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장애인연금 수급률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140.18	55.37	84.80
대도시	(74)	140.18	55.37	84.80
중소도시	(78)	135.55	55.67	79.88
농어촌	(78)	132.55	75.41	57.14



제11장

아동보호 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1

아동보호 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2014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들의 영역 중 「복지서비스」 영역에 「아동보호 서비스」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와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이다. 이 중에서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는 복합지표인데,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과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에 의해 평가된다. 「아동보호 서비스」 지표의 가중치는 9.4로서 전년도(2013년)의 11.2에 비해 낮아졌다.

〈표 11-1〉 2012~2014년 아동복지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평가지표와 세부지표	가중치
2012년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12.1
2013년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율 -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증감률 •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11.2
2014년	•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9.4

자료: 김승권 외(2013). 2013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보호 서비스」 지표는 470점 만점에 평균 350.54점(SD=61.56)이었다.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470점 만점을 획득한 반면, 최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188.00점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가 크게 났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지자체의 평균 점수가 359.25점(SD=56.29)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 평균 350.81점(SD=57.84), 대도시 지자체 평균 341.07점(SD=69.61) 순이었다. 최고점수는 3대 지역 모두 만점인 470.00점이

었으나, 최저점수는 대도시 188.0점, 농어촌 197.40점으로 나타났다.

〈표 11-2〉 「아동보호 서비스」의 평가점수

(단위: 개, 점)

평가지표	지역	(분석 지자체 수)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아동보호 서비스	전국	(230)	470.00	470.00	188.00	350.54	61.56
	대도시	(74)	470.00	470.00	188.00	341.07	69.61
	중소도시	(78)	470.00	470.00	225.60	350.81	57.84
	농어촌	(78)	470.00	470.00	197.40	359.25	56.29

주: 아동보호 서비스 지표의 만점은 50점이고, 가중치는 9.4임.

「아동보호 서비스」 지표의 세부지표 평가결과는 〈표 11-3〉에 제시된다. 첫 번째 세부 지표인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는 복합지표로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과 디딤씨앗통장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각각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에 대한 평가결과는 10점 만점에 전국 230개 지자체 평균 9.11점($SD=1.91$)이었다. 3대 지역별 평균 점수는 농어촌 지자체가 가장 높은 9.60점($SD=1.39$)이었고,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 9.51점($SD=1.29$), 대도시 지자체 8.16점($SD=2.52$)의 순이었다. 전국 및 3대 지역 모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만점(10점)과 기본점수(4점)이었다.

다음으로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에 대한 평가결과는 20점 만점에 전국 230개 지자체 평균 12.70점($SD=3.99$)이었다. 3대 지역별 평균 점수는 유사한 수준이었는데, 대도시 지자체가 평균 13.07점($SD=4.27$), 중소도시 지자체 평균 12.96점($SD=4.15$), 농어촌 지자체 평균 12.08점($SD=3.49$)이었다. 전국 및 3대 지역 모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만점(20점)과 기본점수(8점)이었다.

두 번째 세부 지표인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에 대한 평가결과는 20점 만점에 전국 평균 15.49점($SD=4.35$)이었다. 3대 지역별 평균 점수는 농어촌 지자체가 16.54점($SD=4.3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도시 지자체 15.05점($SD=4.40$), 중소도시 지자체 14.85점($SD=4.18$)의 순이었다. 전국 및 3대 지역 모두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만점(20점)과 기본점수(8점)이었다.

〈표 11-3〉 「아동보호 서비스」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단위: 점)

세부지표		지역	(분석 지자체 수)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 립 비율	전국	(230)	10.00	10.00	4.00	9.11	1.91
		대도시	(74)	10.00	10.00	4.00	8.16	2.52
		중소도시	(78)	10.00	10.00	4.00	9.51	1.29
		농어촌	(78)	10.00	10.00	4.00	9.60	1.39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전국	(230)	20.00	20.00	8.00	12.70	3.99
		대도시	(74)	20.00	20.00	8.00	13.07	4.27
		중소도시	(78)	20.00	20.00	8.00	12.96	4.15
		농어촌	(78)	20.00	20.00	8.00	12.08	3.49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용	전국	(230)	20.00	20.00	8.00	15.49	4.35	
	대도시	(74)	20.00	20.00	8.00	15.05	4.40	
	중소도시	(78)	20.00	20.00	8.00	14.85	4.18	
	농어촌	(78)	20.00	20.00	8.00	16.54	4.33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은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 수/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 수)×100”에 의해 평가된다.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 수는 만15세부터 만17세까지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를 나타내며,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 수는 자립지원계획 작성대상 아동 중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한 아동을 말한다.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 수/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 수)×100
-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수 : 만15세부터 만17세까지의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수 : 자립지원계획 작성대상 아동 중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한 아동
 - ※ 만15세~만17세가 포함된 연도에는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2013년 자립지원계획 수립대상은 1996년생~1998년생임

이 산출식을 적용하여 비율이 100% 이상이면 만점인 10점, 98% 이상~100% 미만이면 8점, 96% 이상~98% 미만이면 6점, 94% 이상~96% 미만이면 5점, 94% 미만이면 기본 점수인 4점을 부여한다.

전체 지자체 중 만점인 10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80.00%이었고, 기본 점수인 4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6.52%이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농어촌 92.31%, 중소도시 84.62%로 많았으나, 대도시는 62.16%로 현저히 적은 양상을 보였다. 기본 점수를 획득하는데 그친 지자체는 대도시 17.57%로 많았으나 중소도시 1.28%, 농어촌 1.28%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11-4〉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수 /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수) × 100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10점: 100% 이상	80.00	62.16	84.62	92.31
	8점: 98% 이상~100% 미만	4.78	5.41	8.97	-
	6점: 96% 이상~98% 미만	3.04	6.76	2.56	-
	5점: 94% 이상~96% 미만	5.65	8.11	2.56	6.41
	4점: 94% 미만	6.52	17.57	1.28	1.28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은 전국의 평균은 97.21%로 나타났으며 3개 영역별로 보면 중소도시 98.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 97.13%, 대도시 96.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5〉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기초분석

(단위: 명,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1개 지자체 당 자립지원계획작성 아동수	1개 지자체 당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수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전국 평균	(230)	39.56	40.25	97.21
대도시 평균	(74)	42.86	44.66	96.24
중소도시 평균	(78)	53.86	54.12	98.19
농어촌 평균	(78)	22.12	22.21	97.13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의 지역격차는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및 중소도시 농어촌 모두 최고점은 100% 이나 대도시의 경우 최저점은 42.50% 이고, 중소도시 및 농어촌은 최저점은 0으로 나타났다.

〈표 11-6〉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100.00	0.00	100.00
대도시	(74)	100.00	42.50	57.50
중소도시	(78)	100.00	0.00	100.00
농어촌	(78)	100.00	0.00	100.00

2.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은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 + 1인당 월평균 매칭지원금 비율)/2”에 의해 평가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 + 1인당 월평균 매칭지원금 비율)/2

$$1인당 \text{평균매칭지원금 비율}(\%) = \frac{1인당 \text{월평균 매칭지원금}}{30,000} \times 100$$

$$\text{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 = \frac{\text{월별 1만원이상 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text{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 \times 100$$

· 1인당 월평균 매칭지원금 : ('13년 월별 매칭지원금의 연간 누계액* / '13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

· 실가입아동 : 계좌 보유아동 중 만기경과, 중도해지 등을 제외한 실제 매칭금 지원대상 아동 전체 (미저축 아동까지 포함)

* '13년 월별 매칭지원금의 연간 누계액 : '14년 1월말까지 실제로 매칭한 금액에 한함

이 산출식을 적용하여 달성률이 85% 이상이면 만점인 20점, 80% 이상~85% 미만이면 17점, 75% 이상~80% 미만이면 14점, 70% 이상~75% 미만이면 11점, 70% 미만이면 최저 점수인 8점을 부여하였다.

전국 230개 지자체 중 만점인 20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10.87%이었고, 기본 점수인 8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28.26%나 되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중소도시가 15.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도시 13.51%, 농어촌 3.85%의 순이었다. 기본 점수를 획득하는데 그친 지자체는 대도시 31.08%나 되었고, 다음은 농어촌 29.49%, 중소도시 24.36%의 순이었다.

〈표 11-7〉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을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 비율 + 1인당 월평균 매칭지원금 비율)/2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20점: 85% 이상	10.87	13.51	15.38	3.85
	17점: 80% 이상~85% 미만	14.78	17.57	12.82	14.10
	14점: 75% 이상~80% 미만	22.61	24.32	17.95	25.64
	11점: 70% 이상~75% 미만	23.48	13.51	29.49	26.92
	8점: 70% 미만	28.26	31.08	24.36	29.49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2014년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비율은 77.76%로 나타났으며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가 78.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 77.37%, 농어촌 77.27%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은 71.54%로 나타났으며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 7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 71.54%, 농어촌 71.08%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율은 74.65%로 나타났으며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가 74.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 74.81%, 농어촌 74.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8〉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을 기초분석

(단위: 개, 명, %, 원)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비율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A+B)/2
		'13년월별1만원 이상저축아동의 연간누계수(①)	'13년월별실가입 아동의연간누계수 (②)	A= (①/②)×100	1인당월평균 매칭지원금 (③)	B= (③/30,000원) ×100	
전국 평균	(230)	2,091.61	2,674.24	77.76	21,462.04	71.54	74.65
대도시 평균	(74)	2,549.62	3,218.64	78.69	21,382.31	71.27	74.98
중소도시 평균	(78)	2,880.71	3,713.18	77.37	21,677.07	72.26	74.81
농어촌 평균	(78)	868.00	1,118.82	77.27	21,322.64	71.08	74.17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전국 230개 지자체의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은 최고 96.59%, 최저 33.02%로 격차가 63.58%p나 되었다. 3대 지역별 증감률 격차는 중소도시 지사

체가 가장 큰 63.58%pt이었고, 대도시와 농어촌 지자체는 각각 40.88%pt, 30.88%pt이었다.

〈표 11-9〉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96.59	33.02	63.58
대도시	(74)	90.49	49.61	40.88
중소도시	(78)	96.59	33.02	63.58
농어촌	(78)	93.52	62.64	30.88

3. 요보호아동 가정보호 비율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은 “(가정위탁아동+공동생활가정)/(아동양육시설아동+가정위탁아동+공동생활가정)×100”에 의해 평가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가정위탁아동+공동생활가정)/(아동양육시설아동+가정위탁아동+공동생활가정)×100
- 가정위탁아동 : '13년 발생한 요보호아동 중 '13년도말 기준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 공동생활가정 : '13년 발생한 요보호아동 중 '13년도말 기준 공동생활가정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 아동양육시설 : '13년 발생한 요보호아동 중 '13년도말 기준 아동양육시설로 보호조치된 아동

이 산출식을 적용하여 집행률이 100% 이상이면 만점인 20점, 80% 이상~100% 미만이면 17점, 60% 이상~80% 미만이면 14점, 40% 이상~60% 미만이면 11점, 40% 미만이면 최저 점수인 8점을 부여하였다.

전국 230개 지자체 중 만점인 20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38.26%이었고, 기본 점수인 8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13.04%이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점을 획득한 경우는 농어촌 지자체가 53.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도시 지자체 32.43%, 중소도시 지자체 28.21%이었다. 기본 점수를 획득하는데 그친 지자체는 대도시 지자체가 14.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 14.10%, 농어촌 지자체 10.26%의 순이었다.

〈표 11-10〉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A+B)/(A+B+C)) \times 100$				
요보호 아동 가정보호비율	20점: 100% 이상	38.26	32.43	28.21	53.85
	17점: 80% 이상~100% 미만	13.91	17.57	15.38	8.97
	14점: 60% 이상~80% 미만	20.00	17.57	26.92	15.38
	11점: 40% 이상~60% 미만	14.78	17.57	15.38	11.54
	8점: 40% 미만	13.04	14.86	14.10	10.26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주: A는 가정위탁아동, B는 공동생활가정, C는 아동양육 시설 아동을 의미함.

2013년 전국 230개 지자체의 평균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은 65.55%이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지자체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이 67.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66.27%, 대도시 62.89%의 순이었다.

〈표 11-11〉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기초분석

(단위: 개, 명,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1개 지자체 당 가정위탁아동	1개 지자체 당 공동생활가정	1개 지자체 당 아동양육시설아동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전국 평균	(230)	7.54	2.65	6.60	65.55
대도시 평균	(74)	7.88	3.05	10.77	62.89
중소도시 평균	(78)	10.12	4.50	7.40	66.27
농어촌 평균	(78)	4.64	0.42	1.83	67.34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기초분석'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2014년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의 지자체 간 격차는 현저하게 나타났다. 전국 230개 지자체의 평균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은 최고 100%, 최저 0%이었으며, 이는 3대 지역별로도 동일하였다.

〈표 11-12〉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의 지역격차

(단위: 개, 명,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100.00	0.00	100.00
대도시	(74)	100.00	0.00	100.00
중소도시	(78)	100.00	0.00	100.00
농어촌	(78)	100.00	0.00	100.00



제12장

보육기반 조성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2014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틀의 4개 영역 중 「보육기반 조성」 지표는 「여성·가정복지」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평가틀의 전체 세부지표 중 「보육기반 조성」 지표는 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과 취약보육 실시율이다. 「보육기반 조성」 지표의 가중치는 8.8로서 전년도(2013년)의 10.7에 비해 낮아졌다.

〈표 12-1〉 2011~2014년 보육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평가지표와 세부지표	가중치
2012년	• 보육기반 조성 -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 취약보육 실시율	10.5
2013년	• 보육기반 조성 -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률 · 취약보육 실시율	10.7
2014년	• 보육기반 조성 - 어린이집 평가 인증율 - 취약보육 실시율	8.8

자료: 김승권 외(2013).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육기반 조성」 지표는 880점 만점에 전국 230개 지자체 평균 605.21점(SD=67.20)이었다.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800.80점을 획득한 반면, 최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352.00점으로 나타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 지자체 평균이 621.08점(SD=65.37)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도시 지자체 평균 609.22점(SD=51.90), 농어촌 지자체 평균 585.54점(SD=77.07)의 순이었다. 3대 지자체 내에서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보면, 중소도시 지자체 최고점이 800.80점이었고, 최저점도 중소도시 지자체 352.00점이었다.

〈표 12-2〉 보육기반 조성의 평가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지역	(분석 지자체 수)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보육기반 조성	전국	(230)	880.00	800.80	352.00	605.21	67.20
	대도시	(74)	880.00	721.60	404.80	609.22	51.90
	중소도시	(78)	880.00	800.80	352.00	621.08	65.37
	농어촌	(78)	880.00	774.40	404.80	585.54	77.07

주: 보육기반 조성의 가중치는 8.8임.

「보육기반 조성」 지표의 2개 세부지표 평가결과는 〈표 12-3〉에 제시된다. 첫 번째 세부지표인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에 대한 평가결과는 40점 만점에 평균 27.32점(SD=4.87)이었다. 3대 지역별 평균 점수는 대도시 지자체 평균 27.84점(SD=3.97), 중소도시 지자체 평균 28.00점(SD=3.99), 농어촌 지자체 평균 26.15점(SD=6.14)이었다. 또한 전국 및 3대 지역의 최고점은 만점인 40점, 최저점은 기본 점수인 16점이었다.

두 번째 세부지표인 ‘취약보육 실시율’에 대한 평가결과는 60점 만점에 평균 41.45점(SD=6.21)이었다. 3대 지역별 평균 점수는 중소도시 지자체 평균 42.58점(SD=6.38), 대도시 지자체 평균 41.39점(SD=4.03), 농어촌 지자체 평균 40.38점(SD=7.50)이었다. 또한 전국 및 3대 지역의 최고점은 만점인 60점, 최저점은 기본 점수인 24점이었다.

〈표 12-3〉 보육기반 조성의 세부지표 평가점수

(단위: 점)

세부지표	지역	(분석 지자체 수)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전국	(230)	40.00	40.00	16.00	27.32	4.87
	대도시	(74)	40.00	40.00	22.00	27.84	3.97
	중소도시	(78)	40.00	40.00	16.00	28.00	3.99
	농어촌	(78)	40.00	40.00	16.00	26.15	6.14
취약보육 실시율	전국	(230)	60.00	60.00	24.00	41.45	6.21
	대도시	(74)	60.00	51.00	24.00	41.39	4.03
	중소도시	(78)	60.00	60.00	24.00	42.58	6.38
	농어촌	(78)	60.00	60.00	24.00	40.38	7.50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은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 100”에 의해 평가된다.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과 ‘12년도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율에 대한 개념, 자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 100
 - ‘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 ‘12.12.31 현재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 ‘13.12.31 현재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 복지부의 현황자료(실적)에 의함

이 산출식을 적용하여 평가인증률이 전국평균의 120% 이상이면 만점인 40점, 전국평균의 110% 이상~120% 미만이면 34점, 전국평균의 -110% 이상~110% 미만이면 28점, 전국평균의 -120% 이상~-110% 미만이면 22점, 전국평균의 -120% 미만이면 최저 점수인 16점을 부여하였다.

〈표 12-4〉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 ‘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 100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40점: 전국평균의 120% 이상	5.22	5.41	3.85	6.41
	34점: 전국평균의 110% 이상~120% 미만	8.26	4.05	8.97	11.54
	28점: 전국평균의 -110% 이상~110% 미만	60.43	72.97	71.79	37.18
	22점: 전국평균의 -120% 이상~-110% 미만	22.17	17.57	14.10	34.62
	16점: 전국평균의 -120% 미만	3.91	-	1.28	10.26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주: 전국평균값 112.987 기준으로 계산함.

전국 230개 지자체 중 만점인 40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5.22%이었고, 기본 점수인 16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3.91%이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농어촌이 6.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도시 5.41%이었으며, 중소도시는 3.85%로 적었다. 기본 점수를 획득하는데 그친 지자체는 농어촌 10.26%, 중소도시

1.28%이었다.

2013년 전국 230개 지자체의 1개 지자체 당 평균 어린이집 수는 118.71개,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는 134.26개,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은 110.71%이다. 이를 3대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도시의 1개 지자체 당 평균 어린이집 수는 145.19개,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는 160.51개,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은 111.24%이었다. 중소도시의 1개 지자체 당 평균 어린이집 수는 194.08개,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는 223.82개,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은 113.36%이었다. 농어촌의 1개 지자체 당 평균 어린이집 수는 18.22개,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는 19.78개,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은 107.57%이었다.

〈표 12-5〉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기초분석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1개 지자체 당 '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1개 지자체 당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전국 평균	(230)	118.71	134.26	110.71
대도시 평균	(74)	145.19	160.51	111.24
중소도시 평균	(78)	194.08	223.82	113.36
농어촌 평균	(78)	18.22	19.78	107.57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기초분석'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평가 산출식에 기초한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의 지자체 간 격차는 현저하게 나타났다. 전국 230개 지자체의 평가인증률 격차는 173.58%pt이었고, 농어촌 지자체의 평가인증률 격차는 157.14%pt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도시 지자체 간의 격차는 82.96%pt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중소도시 지자체 간의 격차는 153.01%pt로 나타났다.

〈표 12-6〉 어린이집 평가인증률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173.58	0.00	173.58
대도시	(74)	173.58	90.63	82.96
중소도시	(78)	153.01	0.00	153.01
농어촌	(78)	157.14	0.00	157.14

2. 취약보육 실시율

‘취약보육 실시율’은 “((영아×0.5)+장애아+다문화영유아+시간연장 및 휴일보육 이용 아동)/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100”에 의해 평가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약보육 실시율:
$$\frac{(\text{영아} \times 0.5) + \text{장애아} + \text{다문화영유아} + \text{시간연장, 휴일보육 이용 아동 수}}{\text{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times 100$$

- 영아, 장애아, 다문화영유아, 시간연장, 휴일보육 이용 아동수 : 취약보육 이용 아동으로서 보육통합정보 시스템으로 파악하며, ‘영아’는 조정계수 적용하여 ‘영아 이용 아동수 × 0.5’로 계산
- ※ 영아는 만 3세미만 아동, 장애아는 무상보육대상 장애아를 의미함.
-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 ※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실적)에 의함

이 산출식을 적용하여 취약보육 실시율이 전국평균 20% 이상이면 만점인 60점, 전국평균 10% 이상~20% 미만이면 51점, 전국평균 -10% 이상~10% 미만이면 42점, 전국평균 -20% 이상~-10% 미만이면 33점, 전국평균 -20% 미만이면 최저 점수인 24점을 부여하였다.

전국 230개 지자체 중 만점인 60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3.04%이었고, 기본 점수인 24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3.48%이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중소도시가 5.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농어촌 3.85%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본 점수를 획득하는데 그친 지자체는 농어촌이 6.41%나 되었고,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각각 1.35%, 2.56%이었다.

〈표 12-7〉 취약보육 실시율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frac{(\text{영아} \times 0.5) + \text{장애아} + \text{다문화영유아} + \text{시간연장, 휴일보육 이용 아동 수}}{\text{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times 100$				
취약보육 실시율	60점: 전국평균 +20% 이상	3.04	-	5.13	3.85
	51점: 전국평균 +10% 이상~+20% 미만	8.26	5.41	10.26	8.97
	42점: 전국평균 -10% 이상~-10% 미만	71.74	83.78	73.08	58.97
	33점: 전국평균 -20% 이상~-10% 미만	13.48	9.46	8.97	21.79
	24점: 전국평균 -20% 미만	3.48	1.35	2.56	6.41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주: 전국평균값 34.808 기준으로 계산함.

2013년 전국 230개 지자체의 1개 지자체 당 평균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는 6,442.70명, 영아보육이용 아동수 3,792.73명, 장애아보육 이용아동 수 43.07명, 다문화영유아보육 이용아동 수 105.07명, 시간연장형보육 이용아동 수 197.23명, 휴일보육 이용아동 수 5.90명이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도시의 1개 지자체 당 평균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는 8,040.16명, 영아보육이용 아동수 4,774.47명, 장애아보육 이용아동 수 63.20명, 다문화영유아보육 이용아동 수 99.51명, 시간연장형보육 이용아동 수 211.58명, 휴일보육 이용아동 수 4.50명이었다. 중소도시의 1개 지자체 당 평균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는 10,187.54명, 영아보육이용 아동수 6,045.74명, 장애아보육 이용아동 수 62.83명, 다문화영유아보육 이용아동 수 160.36명, 시간연장형보육 이용아동 수 334.78명, 휴일보육 이용아동 수 12.53명이었다. 그리고 농어촌의 1개 지자체 당 평균 보육시설 이용아동 수는 1,182.33명, 영아보육이용 아동수 608.32명, 장애아보육 이용아동 수 4.19명, 다문화영유아보육 이용아동 수 55.05명, 시간연장형보육 이용아동 수 28.36명, 휴일보육 이용아동 수 0.62명이었다.

본 평가의 산출식에 근거한 취약보육시설 실시율(영아보육이용 수는 1/2만 적용함)은 전국 평균 34.28%이었고, 3대 지역별로는 큰 차이 없이 33.91%~34.63%의 구간에 있었다.

〈표 12-8〉 취약보육 실시율 기초분석

(단위: 개, 명,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1개 지자체당 전체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수	1개 지자체 당 취약 보육 이용 아동수						취약보육 실시율
			영아보육이용아동수		장애아보육 이용수	다문화영유아 보육이용수	시간연장형 보육이용수	휴일보육 이용수	
			실제이용수	실제이용수 ×0.5					
전국 평균	(230)	6,442.70	3,792.73	1,896.37	43.07	105.07	191.23	5.90	34.28
대도시 평균	(74)	8,040.16	4,774.47	2,387.24	63.20	99.51	211.58	4.50	34.29
중소도시 평균	(78)	10,187.54	6,045.74	3,022.87	62.83	160.36	334.78	12.53	34.63
농어촌 평균	(78)	1,182.33	608.32	304.16	4.19	55.05	28.36	0.62	33.91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취약보육 실시율'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평가 산출식에 기초한 취약보육 실시율의 지자체 간 격차는 컸다. 전국 230개 지자체의 취약보육 실시율은 최고 46.36%, 최저 0%로 격차는 46.36%pt이었다. 이는 중

소도시와 동일한 것이다. 농어촌의 경우 최고 43.98%, 최저 25.55%로 격차는 18.43%pt이었다. 대도시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최고 39.68%, 최저 26.48%로 격차는 13.20%pt이었다.

〈표 12-9〉 취약보육 실시율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취약보육 실시율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46.36	0.00	46.36
대도시	(74)	39.68	26.48	13.20
중소도시	(78)	46.36	0.00	46.36
농어촌	(78)	43.98	25.55	18.43



제13장

취약계층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3

취약계층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2014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틀의 4개 영역 중 「취약계층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지표는 「서민생활안정」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평가틀의 전체 세부지표 중 「취약계층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지표는 1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중증 장애인생산품 총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이다. 「취약계층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지표의 가중치는 11.2로서 전년도(2013년)에는 평가하지 않은 항목이다.

〈표 13-1〉 2012~2014년 「취약계층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평가지표와 세부지표	가중치
2014년	- 취약계층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의 평가점수 -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11.2

자료: 김승권 외(2013).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취약계층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지표는 448점 만점에 전국 230개 지자체 평균 302.79점(SD=115.72)이었다.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448점을 획득한 반면, 최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179.20점으로 나타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지자체 평균이 378.08점(SD=87.89)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 평균 307.57점(SD=115.73), 농어촌 지자체 평균 226.58점(SD=88.06)의 순이었다. 3대 지자체 내에서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보면, 3개 지자체 모두 최고점이 448.00점이었고, 최저점도 3개 지자체 모두 179.20점이었다.

〈표 13-2〉 취약계층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의 평가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지역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취약계층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전국	448.00	448.00	179.20	302.79	115.72
	대도시	448.00	448.00	179.20	378.08	87.89
	중소도시	448.00	448.00	179.20	307.57	115.73
	농어촌	448.00	448.00	179.20	226.58	88.06

주: 취약계층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지표의 만점은 40점이며, 가중치는 11.2임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총 구매액)×100”에 의해 평가된다. 총 구매액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의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총 구매액)× 100
- 총 구매액 : e호조 시스템상 '13년도 지자체의 제품 구매액 중 공사를 제외한 총액
 - 제품구매에 포함할 예산범위는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의 전체 집행액을 기준으로 함
 -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제외) 기준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총 구매액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1%이상이면 만점 부여

이 산출식을 적용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이 1.0% 이상이면 만점인 40점, 0.8% 이상~1.0% 미만이면 34점, 0.5% 이상~0.8% 미만이면 28점, 0.3% 이상~0.5% 미만이면 22점, 0.3% 미만이면 최저 점수인 16점을 부여하였다.

전국 230개 지자체 중 만점인 40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31.30%이었고, 기본 점수인 16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38.26%이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대도시가 52.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30.77%이었으며, 농어촌은 11.54%로 적었다. 기본 점수를 획득한 지자체는 농어촌 69.23%, 중소도시 37.18%, 대도시 6.76%순이었다.

〈표 13-3〉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 총 구매액) × 100				
중증장애인 생산품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40점: 1.0% 이상	31.30	52.70	30.77	11.54
	34점: 0.8% 이상~1.0% 미만	8.70	13.51	12.82	-
	28점: 0.5% 이상~0.8% 미만	10.87	17.57	10.26	5.13
	22점: 0.3% 이상~0.5% 미만	10.87	9.46	8.97	14.10
	16점: 0.3% 미만	38.26	6.76	37.18	69.23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2013년 전국 230개 지자체의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의 기초분석을 살펴보면 1개 지자체 당 '13년 총 평균 구매액은 약 329억원, 1개 지자체당 중증장애인생산물 평균 구매액은 약 24억원으로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평균 달성률은 0.86%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도시의 경우 평균 구매목표비율 달성률은 평균의 약 2배(1.47%)로 나타났으나 농어촌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0.35%로 나타났다.

〈표 13-4〉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기초분석

(단위: 천원, %)

지역	1개 지자체 당 '13년 총 구매액	1개 지자체 당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액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전국 평균	32,927,777.22	243,155.67	0.86
대도시 평균	22,611,193.23	256,724.73	1.47
중소도시 평균	47,146,415.79	391,915.22	0.81
농어촌 평균	28,496,667.05	81,522.92	0.35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 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평가 산출식에 기초한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의 지자체 간 격차를 살펴보면 전국평균 최고는 6.48%, 최저 0%로 격차는 6.48%pt이었다. 이는 중소도시와 동일한 것이다. 농어촌의 경우 최고 3.72%, 최저 0.01%로 격차는 3.71%pt이었다. 대도시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컸는데, 최고 6.48%, 최저 0.10%로 격차는 6.38%pt로 나타나 중소도시와 농어촌 도시보다 대도시에서의 달성률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13-5〉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6.48	0.00	6.48
대도시	(74)	6.48	0.10	6.38
중소도시	(78)	4.91	0.00	4.91
농어촌	(78)	3.72	0.01	3.71



제14장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평가결과 분석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2014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들의 4개 영역 중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지표는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평가들의 전체 세부지표 중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지표는 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자리 실적과 노인 일자리 목표달성률이다. 그 중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자리 실적은 제외하기로 한다.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지표의 가중치는 8.7로서 전년도(2013년)에는 평가하지 않은 항목이다.

〈표 14-1〉 2012~2014년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평가지표 및 세부지표의 비교

	평가지표와 세부지표	가중치
2014년	-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8.7

자료: 김승권 외(2013). 2013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지표는 261점 만점에 전국 230개 지자체 평균 174.38점(SD=44.32)이었다. 최고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261점 만점을 획득한 반면, 최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104.40점으로 나타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 지자체 평균이 179.13점(SD=48.21)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지자체 평균 175.12점(SD=41.60), 대도시 지자체 평균 168.59점(SD=42.74)의 순이었다. 3대 지자체 내에서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보면, 3개 지자체 모두 최고점이 261점이었고, 최저점도 3개 지자체 모두 104.40점이었다.

〈표 14-2〉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평가점수

(단위: 점)

평가지표	지역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전국	261.00	261.00	104.40	174.38	44.32
	대도시	261.00	261.00	104.40	168.59	42.74
	중소도시	261.00	261.00	104.40	175.12	41.60
	농어촌	261.00	261.00	104.40	179.13	48.21

주: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지표의 만점은 30점이며, 가중치는 8.7임.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노인일자리 목표달성률’은 “(노인일자리 제공 수 / 노인일자리 목표량) × 100”에 의해 평가된다. 노인일자리 제공 수 및 노인일자리 목표량의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노인일자리 제공 수 / 노인일자리 목표량) × 100
- 노인일자리 제공 수 : (공공부분 + 민간부분) 일자리 제공 수
 - ※ 가중치 부여 체계
 - 평균 목표사업량 초과범위 상위 25% 이상 : 110%
 - 평균 목표사업량 초과범위 상위 75% 이상 ~ 25% 미만 : 105%
 - 평균 목표사업량 초과범위 상위 100% 이상 ~ 75% 미만 : 103%
 - 노인일자리 목표량 : 지자체 확정 내시 상의 사업 목표량(자체예산으로 확보한 목표량은 제외)

이 산출식을 적용하여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이 130% 이상이면 만점인 30점, 120% 이상~130% 미만이면 26점, 110% 이상~120% 미만이면 21점, 100% 이상~110% 미만이면 17점, 100% 미만이면 최저 점수인 12점을 부여하였다.

전국 230개 지자체 중 만점인 30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13.91%이었고, 기본 점수인 12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7.39%이었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만점을 획득한 지자체는 농어촌이 19.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11.54%이었으며, 대도시는 10.81%로 적었다. 기본 점수를 획득한 지자체는 농어촌 6.41%, 중소도시 7.69%, 대도시 8.11% 순이었다.

〈표 14-3〉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평가결과

(단위: %, 개)

세부지표	척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노인일자리 제공 수 / 노인일자리 목표량) × 100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30점: 130% 이상	13.91	10.81	11.54	19.23
	26점: 120% 이상~130% 미만	7.39	8.11	6.41	7.69
	21점: 110% 이상~120% 미만	23.48	16.22	35.90	17.95
	17점: 100% 이상~110% 미만	47.83	56.76	38.46	48.72
	12점: 100% 미만	7.39	8.11	7.69	6.41
계(수)		100.00 (230)	100.00 (74)	100.00 (78)	100.00 (78)

2013년 전국 230개 지자체의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의 기초분석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목표달성률은 전국평균으로 113.88%로 나타났다. 이를 3대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의 평균이 116.26%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 114.08%, 대도시 111.17%로 뒤를 이었다.

〈표 14-4〉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기초분석

(단위: 명, %)

지역	노인일자리 제공 수					노인일자리 목표량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C/F)×100
	공공분야 (A)	민간분야(B)			C= (A+B)	공공분야 (D)	민간분야 (E)	F= (D+E)	
		일자리 제공수(①)	가중치 (②)	B= (①×②)					
전국 평균	985.62	123.34	1.01	129.85	1,115.47	882.35	92.90	975.25	113.88
대도시 평균	1,219.74	172.15	1.04	183.40	1,403.14	1,131.09	134.89	1,265.99	111.17
중소도시 평균	1,156.19	167.92	1.00	175.75	1,331.94	1,018.24	120.92	1,139.17	114.08
농어촌 평균	592.92	32.46	0.99	33.15	626.08	510.46	25.04	535.50	116.26

주: 전국 평균값은 230개 지자체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230개 지자체로 나눈 값이며, 3대 지역의 평균값은 각 지역 지자체(대도시 74개, 중소도시 78개, 농어촌 78개)의 세부 평가지표의 통계량을 합한 후 각 지역 지자체 수로 나눈 값임. 또한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은 전국 및 지역별로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과임.

평가 산출식에 기초한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의 지자체 간 격차를 살펴보면 전국평균 최고는 228.38%, 최저 0%로 격차는 228.38%pt이었다. 이는 중소도시의 경우 최고는 228.38%pt, 최저는 0%로 격차는 228.38%pt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농어촌은 최고 186.24%pt, 최저 97.50%pt로 격차는 88.74%pt로 나타났으며, 대도시는 최고 167.17%pt, 최저 90.81%pt로 그 격차는 76.36%pt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경우보다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5〉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의 지역격차

(단위: 개, %)

지역	(분석 지자체 수)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최고	최저	차이
전국	(230)	228.38	0.00	228.38
대도시	(74)	167.17	90.81	76.36
중소도시	(78)	228.38	0.00	228.38
농어촌	(78)	186.24	97.50	88.74



제15장

우수지자체 선정 기준 및 결과

제1절 우수지자체 선정 기준

제2절 우수지자체 선정 결과

제1절 우수지자체 선정 기준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다른 사회문화적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형평성 있게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그룹을 분류하고, 평가그룹별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평가그룹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졌다.

1. 평가그룹 분류 1단계

제1단계는 전체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였다.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대구 달성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은 대도시에 속한 군으로, 2006~2013년 기간 중 대도시로 분류하여 평가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을 택하였다.

이 방식을 선택한 기준은 군지역이지만 해당 광역시의 기준에 의하여 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으로 많은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하였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의 성격을 모두 가졌기 때문에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2. 평가그룹 분류 2단계

제2단계는 3대 지역구분별로 시군구의 인구규모와 재정자립도에 순위를 부여하고, 이들 순위를 합산하여 1/2를 곱한 값을 최종 순위로 산출하였다. 2단계에서 활용한 인구규모와 재정자립도의 순위를 3대 지역인 대도시, 중소도시, 군별로 구분하면 <표 15-1> 및 <표 15-2>와 같다. 이에 근거하여 인구규모 및 재정자립도의 평균 순위를 산출하면 <표 15-3>과 같이 제시된다.

〈표 15-1〉 3대 지역별 인구규모 순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자체	인구	지자체	인구	지자체	인구
1	서울시 송파구	673,115	경기도 수원시	1,120,258	충청북도 청원군	154,780
2	대구시 달서구	606,557	경상남도 창원시	1,091,471	경상북도 칠곡군	119,786
3	서울시 노원구	597,189	경기도 성남시(	978,615	경기도 양평군	102,193
4	서울시 강서구	567,431	경기도 고양시	969,916	충청북도 음성군	92,980
5	서울시 강남구	564,197	경기도 용인시	915,959	충청남도 홍성군	88,415
6	인천시 부평구	559,047	경기도 부천시	869,944	전라북도 완주군	86,164
7	서울시 관악구	523,029	경기도 안산시	715,108	충청남도 예산군	85,876
8	인천시 남동구	503,597	충청북도 청주시	666,852	전라남도 해남군	78,150
9	서울시 은평구	501,480	전라북도 전주시	648,863	전라남도 무안군	75,741
10	대전시 서구	496,513	경기도 안양시	611,412	충청남도 부여군	73,259
11	서울시 양천구	495,911	경기도 남양주시	599,539	전라남도 고흥군	71,560
12	서울시 강동구	487,905	충청남도 천안시	581,988	강원도 홍천군	69,727
13	서울시 성북구	481,857	경기도 화성시	525,490	전라남도 화순군	68,378
14	인천시 서구	469,887	경상북도 포항시	518,913	경상남도 함안군	67,425
15	대구시 수성구	459,779	경상남도 김해시	513,260	충청북도 진천군	63,458
16	대구시 북구	448,485	경기도 평택시	434,305	경상남도 거창군	63,103
17	광주시 북구	443,677	제주시 제주시	429,656	경상남도 창원군	62,966
18	서울시 서초구	435,044	경기도 의정부시	429,147	충청남도 태안군	62,548
19	부산시 해운대구	428,188	경상북도 구미시	416,949	경기도 가평군	60,794
20	서울시 구로구	427,520	경기도 시흥시	399,485	전라북도 고창군	60,440
21	서울시 중랑구	419,295	경기도 파주시	394,201	전라남도 영암군	59,997
22	인천시 남구	414,500	경기도 광명시	355,560	충청남도 서천군	58,920
23	서울시 동작구	405,491	경상남도 진주시	337,314	전라북도 부안군	58,869
24	부산시 부산진구	392,731	강원도 원주시	323,885	전라남도 영광군	57,224
25	서울시 영등포구	391,408	전라북도 익산시	306,469	경상북도 의성군	57,043
26	광주시 광산구	385,101	전라남도 여주시	292,217	경상남도 고성군	56,906
27	서울시 마포구	384,644	경기도 김포시	287,432	충청남도 금산군	55,715
28	서울시 광진구	371,313	경기도 군포시	286,841	전라남도 완도군	53,871
29	서울시 동대문구	363,258	충청남도 아산시	280,490	충청북도 옥천군	53,244
30	서울시 도봉구	362,270	전라북도 군산시	278,341	경상북도 울진군	51,844
31	부산시 사하구	352,726	경기도 광주시	275,656	경상남도 하동군	50,806
32	울산시 남구	346,836	전라남도 순천시	273,798	충청북도 영동군	50,663
33	서울시 강북구	343,157	강원도 춘천시	273,364	경상남도 합천군	50,279
34	인천시 계양구	342,202	경상남도 양산시	270,460	경상남도 남해군	48,223
35	대구시 동구	342,092	경상북도 경주시	264,091	강원도 철원군	47,968
36	광주시 서구	316,545	경상북도 경산시	246,358	전라남도 담양군	47,612
37	서울시 서대문구	315,113	전라남도 목포시	245,073	전라남도 보성군	47,050
38	부산시 북구	312,937	경상남도 거제시	236,944	전라남도 장성군	46,289
39	대전시 유성구	306,312	강원도 강릉시	217,741	경상북도 예천군	46,027
40	서울시 성동구	299,604	충청북도 충주시	208,447	경기도 연천군	45,599
41	인천시 연수구	292,589	경기도 이천시	204,917	경상북도 성주군	45,127
42	부산시 남구	291,175	경기도 양주시	200,310	강원도 횡성군	44,615
43	부산시 동래구	278,767	경기도 오산시	200,291	경상북도 청도군	43,968
44	대전시 중구	264,125	경기도 구리시	192,341	전라남도 신안군	43,898
45	부산시 금정구	255,692	경기도 안성시	181,608	강원도 평창군	43,627
46	대전시 동구	251,945	경상북도 안동시	168,302	전라남도 장흥군	42,672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자체	인구	지자체	인구	지자체	인구
47	부산시 사상구	250,424	충청남도 서산시	163,315	경상남도 함양군	40,714
48	서울시 금천구	243,288	경기도 포천시	157,559	경상북도 영덕군	40,257
49	서울시 용산구	243,232	충청남도 당진시	155,104	전라남도 강진군	40,241
50	울산시 중구	233,013	경기도 의왕시	154,757	강원도 영월군	40,155
51	대구시 서구	220,211	제주시 서귀포시	154,057	강원도 정선군	39,915
52	광주시 남구	218,313	전라남도 광양시	150,837	충청북도 괴산군	37,713
53	부산시 연제구	211,536	경기도 하남시	146,269	전라남도 함평군	35,780
54	울산시 울주군	207,840	경상남도 통영시	139,347	경상남도 산청군	35,691
55	대전시 대덕구	205,688	충청북도 제천시	137,521	경상북도 고령군	35,343
56	대구시 달성군	184,366	경상북도 김천시	135,504	충청북도 보은군	34,438
57	울산시 북구	184,088	충청남도 논산시	126,653	충청북도 증평군	34,279
58	부산시 수영구	176,666	전라북도 정읍시	119,392	경상북도 봉화군	33,934
59	울산시 동구	175,479	충청남도 공주시	117,298	전라남도 진도군	33,208
60	대구시 남구	168,715	경상남도 사천시	115,321	강원도 인제군	32,456
61	서울시 종로구	165,207	경상북도 영주시	113,547	충청남도 청양군	32,087
62	부산시 영도구	139,765	세종특별자치시	113,117	충청북도 단양군	31,253
63	서울시 중구	133,360	경기도 여주시	109,550	전라남도 곡성군	30,878
64	부산시 서구	120,828	경상남도 밀양시	108,755	경상남도 의령군	30,329
65	부산시 기장군	114,566	충청남도 보령시	105,559	강원도 고성군	30,124
66	광주시 동구	105,580	경상북도 상주시	104,182	전라북도 순창군	30,055
67	인천시 중구	98,648	경상북도 영천시	101,798	전라북도 임실군	29,956
68	부산시 동구	98,529	경기도 동두천시	97,175	강원도 양양군	27,802
69	인천시 동구	76,720	강원도 동해시	93,897	전라남도 구례군	27,077
70	대구시 중구	75,439	전라북도 김제시	92,317	전라북도 진안군	26,963
71	인천시 강화군	66,752	전라남도 나주시	88,067	경상북도 청송군	26,481
72	부산시 강서구	65,806	전라북도 남원시	87,000	전라북도 무주군	25,321
73	부산시 중구	48,148	강원도 속초시	83,579	강원도 화천군	25,020
74	인천시 옹진군	20,039	경상북도 문경시	75,899	경상북도 군위군	24,119
75			강원도 삼척시	72,463	전라북도 장수군	23,191
76			경기도 과천시	71,068	강원도 양구군	22,799
77			강원도 태백시	49,493	경상북도 영양군	18,208
78			충청남도 계룡시	41,550	경상북도 울릉군	10,673

〈표 15-2〉 3대 지역별 재정자립도 순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자체	재정자립도	지자체	재정자립도	지자체	재정자립도
1	서울시 강남구	75.9	경기도 성남시	65.2	충청북도 청원군	32.2
2	서울시 서초구	73.8	경기도 용인시	63.8	충청북도 진천군	28.7
3	서울시 중구	70.9	경기도 수원시	60.2	충청북도 음성군	27.8
4	서울시 종로구	61.0	경기도 화성시	58.4	경기도 가평군	27.5
5	서울시 용산구	55.4	경기도 안산시	55.9	전라북도 완주군	25.8
6	서울시 송파구	55.1	경기도 광주시	55.4	전라남도 화순군	24.5
7	인천시 중구	54.3	경기도 안양시	55.3	경상남도 함안군	24.2
8	서울시 영등포구	49.4	경기도 고양시	54.7	경기도 양평군	23.8
9	서울시 성동구	48.7	경기도 시흥시	54.0	강원도 정선군	22.9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자체	재정자립도	지자체	재정자립도	지자체	재정자립도
10	부산시 강서구	47.8	경기도 김포시	53.5	경기도 연천군	22.5
11	울산시 남구	47.7	경기도 하남시	52.3	경상북도 칠곡군	21.9
12	서울시 마포구	46.1	경기도 광명시	49.5	전라남도 영암군	20.3
13	울산시 울주군	45.7	경기도 군포시	48.5	강원도 횡성군	18.6
14	인천시 서구	43.9	충청남도 아산시	48.5*	충청남도 태안군	18.5
15	인천시 연수구	42.3	경기도 과천시	48.0	충청남도 홍성군	18.1
16	서울시 동작구	40.0	경기도 의왕시	47.7	충청북도 단양군	18.1*
17	인천시 남동구	39.6	충청남도 천안시	46.6	충청남도 금산군	18.0
18	서울시 서대문구	39.2	경기도 파주시	46.3	전라남도 담양군	17.0
19	서울시 강동구	39.1	경기도 부천시	45.9	충청북도 증평군	16.8
20	서울시 금천구	39.1*	경기도 오산시	45.8	강원도 홍천군	15.9
21	울산시 북구	37.8	경상남도 거제시	45.2	충청북도 옥천군	15.7
22	부산시 기장군	37.4	경기도 평택시	45.1	경상남도 창녕군	15.4
23	대전시 유성구	37.2	경상남도 양산시	44.1	경상남도 의령군	15.4*
24	대구시 달성군	36.6	경기도 구리시	43.0	강원도 양구군	15.2
25	서울시 동대문구	35.9	경상남도 창원시	42.8	경상북도 울진군	15.0
26	서울시 양천구	35.8	경상북도 구미시	42.0	경상북도 성주군	15.0*
27	대구시 중구	34.7	경기도 남양주시	40.8	경상북도 울릉군	14.9
28	울산시 동구	34.3	경기도 이천시	40.6	경상북도 고령군	14.7
29	서울시 광진구	34.2	경상북도 포항시	39.2	경상남도 고성군	14.5
30	부산시 해운대구	34.1	세종특별자치시	38.8	강원도 평창군	14.3
31	서울시 관악구	33.0	경기도 안성시	38.5	충청북도 괴산군	14.1
32	부산시 연제구	32.3	경기도 여주시	38.2	전라북도 무주군	14.1*
33	서울시 구로구	32.1	경상남도 김해시	37.4	충청남도 예산군	13.8
34	부산시 부산진구	30.8	충청북도 청주시	36.4	충청북도 영동군	13.7
35	서울시 성북구	30.5	전라남도 광양시	35.3	전라북도 진안군	13.6
36	부산시 중구	30.0	경기도 의정부시	33.3	경상남도 남해군	13.5
37	대구시 달서구	29.7	전라북도 전주시	32.3	경상남도 하동군	13.1
38	서울시 강서구	29.7*	전라남도 여수시	31.9	충청남도 청양군	13.0
39	대구시 수성구	29.4	경기도 양주시	31.8	강원도 영월군	12.7
40	서울시 은평구	29.2	강원도 태백시	31.3	전라북도 임실군	12.6
41	서울시 중랑구	28.0	제주시 제주시	30.6	전라북도 고창군	12.4
42	서울시 도봉구	27.6	충청남도 당진시	30.6*	전라남도 장성군	12.3
43	인천시 부평구	27.0	제주시 서귀포시	30.6*	경상북도 영덕군	12.3*
44	부산시 남구	26.9	경기도 포천시	29.5	충청북도 보은군	12.3*
45	부산시 금정구	26.6	경상남도 진주시	28.4	충청남도 서천군	12.2
46	서울시 강북구	26.2	강원도 춘천시	27.9	전라남도 영광군	12.2*
47	부산시 수영구	26.1	충청남도 서산시	27.8	강원도 양양군	12.2*
48	인천시 동구	26.1*	경상북도 경산시	27.5	경상남도 합천군	12.1
49	부산시 동래구	25.9	전라북도 군산시	27.1	강원도 고성군	11.8
50	부산시 사상구	25.8	강원도 원주시	26.7	강원도 화천군	11.8*
51	인천시 남구	25.6	경상북도 경주시	25.2	전라남도 무안군	11.7
52	광주시 서구	24.5	경상남도 통영시	22.5	전라남도 진도군	11.7*
53	대전시 서구	23.9	전라남도 목포시	22.2	경상북도 청도군	11.6
54	인천시 계양구	23.9*	충청남도 계룡시	22.1	경상남도 산청군	11.5
55	대구시 북구	23.6	전라남도 순천시	21.8	충청남도 부여군	11.3
56	서울시 노원구	22.3	강원도 강릉시	21.3	경상남도 거창군	11.3*
57	광주시 광산구	22.3*	충청북도 제천시	20.8	강원도 인제군	11.1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자체	재정자립도	지자체	재정자립도	지자체	재정자립도
58	부산시 사하구	22.0	전라북도 익산시	20.7	전라남도 완도군	10.8
59	울산시 중구	21.2	경상남도 사천시	20.4	강원도 철원군	10.7
60	대전시 대덕구	21.0	경상남도 밀양시	20.0	경상남도 함양군	10.7*
61	대구시 동구	20.1	경상북도 영천시	19.8	경상북도 봉화군	10.5
62	대구시 서구	19.9	경상북도 문경시	19.8*	경상북도 의성군	10.4
63	대전시 중구	19.8	충청남도 보령시	19.7	전라남도 고흥군	10.2
64	부산시 동구	19.8*	강원도 속초시	19.7*	전라남도 보성군	10.2*
65	대구시 남구	17.4	경기도 동두천시	19.6	전라북도 부안군	10.1
66	광주시 북구	16.8	경상북도 김천시	19.0	경상북도 예천군	10.1*
67	광주시 동구	16.8*	충청북도 충주시	18.8	전라남도 장흥군	9.5
68	부산시 북구	15.9	경상북도 영주시	18.5	전라남도 구례군	9.5*
69	대전시 동구	15.8	전라남도 나주시	18.2	전라북도 장수군	9.2
70	광주시 남구	14.4	충청남도 공주시	17.5	경상북도 청송군	9.1
71	부산시 영도구	14.4*	강원도 동해시	17.5*	경상북도 군위군	9.1*
72	인천시 옹진군	14.3	강원도 삼척시	17.1	전라남도 곡성군	8.6
73	부산시 서구	13.6	충청남도 논산시	16.1	전라북도 순창군	8.6*
74	인천시 강화군	12.9	경상북도 안동시	13.7	전라남도 해남군	8.5
75			경상북도 상주시	13.1	전라남도 신안군	8.4
76			전라북도 김제시	12.7	전라남도 함평군	7.9
77			전라북도 정읍시	12.1	경상북도 영양군	7.7
78			전라북도 남원시	8.6	전라남도 강진군	7.3

주: * 재정자립도가 동일함에도 순위가 낮은 경우는 상위 순위에 해당됨.

〈표 15-3〉 3대 지역별 인구규모 및 재정자립도의 평균 순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자체	평균순위	지자체	평균순위	지자체	평균순위
1	서울시 강남구	3.0	경기도 수원시	2.0	충청북도 청원군	1.0
2	서울시 송파구	3.5	경기도 성남시	2.0	충청북도 음성군	3.5
3	서울시 서초구	10.0	경기도 용인시	3.5	경기도 양평군	5.5
4	인천시 남동구	12.5	경기도 안산시	6.0	전라북도 완주군	5.5
5	인천시 서구	14.0	경기도 고양시	6.0	경상북도 칠곡군	6.5
6	서울시 강동구	15.5	경기도 안양시	8.5	충청북도 진천군	8.5
7	서울시 영등포구	16.5	경기도 화성시	8.5	전라남도 화순군	9.5
8	서울시 양천구	18.5	경기도 부천시	12.5	충청남도 홍성군	10.0
9	서울시 관악구	19.0	경상남도 창원시	13.5	경상남도 함안군	10.5
10	서울시 마포구	19.5	경기도 시흥시	14.5	경기도 가평군	11.5
11	서울시 동작구	19.5	충청남도 천안시	14.5	강원도 홍천군	16.0
12	대구시 달서구	19.5	경기도 광명시	17.0	충청남도 태안군	16.0
13	서울시 강서구	20.5	경기도 김포시	18.5	전라남도 영암군	16.5
14	울산시 남구	21.5	경기도 광주시	18.5	경상남도 창원군	19.5
15	서울시 성북구	24.0	경기도 평택시	19.0	충청남도 예산군	20.0
16	서울시 성동구	24.5	경기도 남양주시	19.0	충청남도 금산군	22.0
17	서울시 은평구	24.5	경기도 파주시	19.5	경기도 연천군	25.0
18	부산시 해운대구	24.5	경기도 군포시	20.5	충청북도 옥천군	25.0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자체	평균순위	지자체	평균순위	지자체	평균순위
19	인천시 부평구	24.5	충청북도 청주시	21.0	전라남도 담양군	27.0
20	서울시 구로구	26.5	충청남도 아산시	21.0	강원도 횡성군	27.5
21	서울시 용산구	27.0	경상북도 포항시	21.5	경상북도 울진군	27.5
22	서울시 동대문구	27.0	경상북도 구미시	22.5	경상남도 고성군	27.5
23	대구시 수성구	27.0	전라북도 전주시	23.0	강원도 정선군	30.0
24	서울시 서대문구	27.5	경상남도 김해시	24.0	전라남도 무안군	30.0
25	인천시 연수구	28.0	경기도 의정부시	27.0	전라북도 고창군	30.5
26	서울시 광진구	28.5	경상남도 양산시	28.5	충청남도 부여군	32.5
27	부산시 부산진구	29.0	제주시 제주시	29.0	충청북도 영동군	33.0
28	서울시 노원구	29.5	경상남도 거제시	29.5	경상북도 성주군	33.0
29	서울시 중랑구	31.0	경기도 오산시	31.5	충청남도 서천군	33.5
30	대전시 유성구	31.0	경기도 하남시	32.0	경상남도 하동군	34.0
31	대전시 서구	31.5	전라남도 여수시	32.0	전라남도 영광군	34.5
32	서울시 종로구	32.5	경기도 의왕시	33.0	경상남도 남해군	35.0
33	서울시 중구	33.0	경기도 구리시	34.0	경상남도 거창군	35.5
34	서울시 금천구	33.5	경상남도 진주시	34.0	전라남도 고흥군	37.0
35	울산시 울주군	33.5	경기도 이천시	34.5	강원도 평창군	37.5
36	대구시 북구	35.5	강원도 원주시	37.0	충청북도 증평군	38.0
37	서울시 도봉구	36.0	경기도 안성시	38.0	충청북도 단양군	38.5
38	인천시 남구	36.5	강원도 춘천시	39.5	전라남도 장성군	40.0
39	인천시 중구	37.0	전라북도 군산시	39.5	경상남도 합천군	40.5
40	울산시 북구	39.0	경기도 양주시	40.5	전라남도 해남군	41.0
41	서울시 강북구	39.5	전라북도 익산시	41.5	충청북도 괴산군	41.5
42	대구시 달성군	40.0	경상북도 경산시	42.0	경상북도 고령군	41.5
43	부산시 강서구	41.0	경상북도 경주시	43.0	전라남도 완도군	43.0
44	광주시 광양구	41.0	전라남도 순천시	43.5	경상남도 의령군	43.0
45	광주시 북구	41.5	전라남도 광양시	43.5	경상북도 의성군	43.5
46	부산시 연제구	42.5	충청남도 당진시	45.0	전라북도 부안군	44.0
47	부산시 남구	43.0	전라남도 목포시	45.0	강원도 영월군	44.5
48	부산시 기장군	43.5	경기도 과천시	45.5	경상북도 영덕군	45.0
49	인천시 계양구	43.5	세종특별자치시	46.0	강원도 철원군	47.0
50	울산시 동구	43.5	경기도 포천시	46.0	경상북도 청도군	48.0
51	광주시 서구	44.0	제주시 서귀포시	46.0	충청북도 보은군	49.0
52	부산시 사하구	44.5	충청남도 서산시	47.0	충청남도 청양군	49.5
53	부산시 금정구	45.0	경기도 여주시	47.5	강원도 양구군	50.0
54	부산시 동래구	46.0	강원도 강릉시	47.5	전라남도 보성군	50.0
55	대구시 동구	48.0	경상남도 통영시	53.0	전라북도 무주군	51.5
56	부산시 사상구	48.5	충청북도 충주시	53.5	경상북도 예천군	52.0
57	대구시 중구	48.5	충청북도 제천시	56.0	전라북도 진안군	52.5
58	부산시 수영구	52.5	강원도 태백시	58.5	경상북도 울릉군	52.5
59	부산시 북구	53.0	경상남도 사천시	59.5	경상남도 함양군	53.0
60	대전시 중구	53.5	경상북도 안동시	60.0	전라북도 임실군	53.5
61	부산시 중구	54.5	경상북도 김천시	61.0	경상남도 산청군	54.0
62	울산시 중구	54.5	경상남도 밀양시	62.0	전라남도 진도군	55.0
63	대구시 서구	56.5	충청남도 보령시(	64.0	강원도 양양군	56.5
64	대전시 동구	57.5	경상북도 영천시	64.0	전라남도 장흥군	56.5
65	대전시 대덕구	57.5	충청남도 공주시	64.5	강원도 고성군	57.0
66	인천시 동구	58.0	경상북도 영주시	64.5	강원도 인제군	58.5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자체	평균순위	지자체	평균순위	지자체	평균순위
67	광주시 남구	61.0	충청남도 논산시	65.0	전라남도 신안군	59.5
68	대구시 남구	62.5	충청남도 계룡시	66.0	경상북도 봉화군	59.5
69	부산시 동구	65.5	경기도 동두천시	66.5	강원도 화천군	61.0
70	부산시 영도구	66.0	전라북도 정읍시	67.5	전라남도 강진군	63.5
71	광주시 동구	66.0	경상북도 문경시	67.5	전라남도 함평군	64.5
72	부산시 서구	68.5	강원도 속초시	68.0	전라남도 곡성군	67.5
73	인천시 강화군	72.5	강원도 동해시	69.5	전라남도 구례군	68.0
74	인천시 옹진군	73.0	전라남도 나주시	70.0	전라북도 순창군	69.0
75			경상북도 상주시	70.5	경상북도 청송군	70.5
76			전라북도 김제시	73.0	전라북도 장수군	72.0
77			강원도 삼척시	73.5	경상북도 군위군	72.0
78			전라북도 남원시	75.0	경상북도 영양군	77.0

3. 평가그룹 분류 3단계

마지막 제3단계에서는 2단계의 최종 순위에 따라 시군구를 그룹수로 나누어 각 그룹별 시군구를 선정하였다. 즉, 이들 평균값의 오름차순을 기준으로 대도시 5개 그룹, 중소도시 5개 그룹, 농어촌 6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농어촌의 그룹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 보다 1개 많은 것은 인구규모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에게 우수지자체 선정에서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기를 양양하기 위함이다.

〈표 15-4〉 3대 지역별 그룹 분류 결과

구분	그룹	기초지방자치단체 명
대도시 (74)	A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서초구, 인천 남동구, 인천 서구, 서울 강동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양천, 서울 관악구, 서울 마포구, 서울 동작구, 대구 달서구, 서울 강서구, 울산 남구, 서울 성북구(15개)
	B	서울 성동구, 서울 은평구, 부산 해운대구, 인천 부평구, 서울 구로구, 서울 용산구, 서울 동대문구, 대구 수성구, 서울 서대문구, 인천 연수구, 서울 광진구, 부산 진구, 서울 노원구, 서울 중랑구, 대전 유성구(15개)
	C	대전 서구,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금천구, 울산 울주군, 대구 북구, 서울 도봉구, 인천 남구, 인천 중구, 울산 북구, 서울 강북구, 대구 달성군, 부산 강서구, 광주 광산구, 광주 북구(15개)
	D	부산 연제구, 부산 남구, 부산 기장군, 인천 계양구, 울산 동구, 광주 서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동래구, 대구 동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부산 수영구, 부산 북구, 대전 중구(15개)
	E	부산 중구, 울산 중구, 대구 서구, 대전 동구, 대전 대덕구, 인천 동구, 광주 남구, 대구 남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광주 동구, 부산 서구,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14개)

구분	그룹	기초지방자치단체 명
중소 도시 (78)	F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용인시, 경기 안산시, 경기 고양시, 경기 안양시, 경기 화성시, 경남 창원시, 경기 시흥시, 충남 천안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평택시, 경기 남양주시(16개)
	G	경기 파주시, 경기 군포시,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경북 포항시, 경북 구미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경기 의정부시, 경남 양산시, 제주 제주시, 경남 거제시, 경기 오산시, 경기 하남시, 전남 여주시, 경기 의왕시(16개)
	H	경기 구리시, 경남 진주시, 경기 이천시, 강원 원주시, 경기 안성시, 강원 춘천시, 전북 군산시, 경기 양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경산시, 경북 경주시, 전남 순천시, 전남 광양시, 충남 당진시, 전남 목포시, 경기 과천시(16개)
	I	세종시, 경기 포천시, 제주 서귀포시, 충남 서산시, 경기 여주시, 강원 강릉시, 경남 통영시,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강원 태백시, 경남 사천시, 경북 안동시, 경북 김천시, 경남 밀양시, 충남 보령시, 경북 영천시(16개)
	J	충남 공주시, 경북 영주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경기 동두천시, 전북 정읍시, 경북 문경시, 강원 속초시, 강원 동해시, 전남 나주시, 경북 상주시, 전북 김제시, 강원 삼척시, 전북 남원시(14개)
농어촌 (78)	K	충북 청원군, 충북 음성군, 경기 양평군, 전북 완주군, 경북 칠곡군, 충북 진천군, 전남 화순군, 충남 홍성군, 경남 함안군,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영암군(13개)
	L	경남 창녕군, 충남 예산군, 충남 금산군, 경기 연천군, 충북 옥천군, 전남 담양군, 강원 횡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강원 정선군, 전남 무안군, 전북 고창군, 충남 부여군(13개)
	M	충북 영동군, 경북 성주군, 충남 서천군, 경남 하동군, 전남 영광군, 경남 남해군, 경남 거창군, 전남 고흥군, 강원 평창군, 충북 증평군, 충북 단양군, 전남 장성군, 경남 합천군(13개)
	N	전남 해남군, 충북 괴산군, 경북 고령군, 전남 완도군, 경남 의령군, 경북 의성군, 전북 부안군, 강원 영월군, 경북 영덕군, 강원 철원군, 경북 청도군, 충북 보은군, 충남 청양군(13개)
	O	강원 양구군, 전남 보성군, 전북 무주군, 경북 예천군, 전북 진안군, 경북 울릉군, 경남 함양군, 전북 임실군, 경남 산청군, 전남 진도군, 강원 양양군, 전남 장흥군, 강원 고성군(13개)
	P	강원 인제군, 전남 신안군, 경북 봉화군, 강원 화천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북 순창군, 경북 청송군, 전북 장수군, 경북 군위군, 경북 영양군(13개)

제2절 우수지자체 선정 결과

1. 2014년 선정 결과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의 우수 지자체로 16개 각 그룹별로 최우수 1개가 선정되었다. 즉, 전국적으로 16개 우수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이들 그룹별 최우수지자체 중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곳은 중소도시의 경기 포천시였고, 대도시 1위는 대전 대덕구, 농어촌 1위는 충북 보은군이 차지하였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인천, 대전이 각 2개 지역이었으며, 광주, 강원, 충북, 전북, 전남이 각 1개 지역이었다.

〈표 15-5〉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우수 지자체:

대도시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E그룹	
	인천 남동구	인천 연수구	대전 서구	광주 서구	대전 대덕구	
중소도시	F그룹	G그룹	H그룹	I그룹	J그룹	
	경기 남양주시	경기 군포시	경기 구리시	경기 포천시	충남 공주시	
농어촌	K그룹	L그룹	M그룹	N그룹	O그룹	P그룹
	전남 영암군	경기 연천군	충북 단양군	충북 보은군	강원 고성군	전북 순창군

2. 최근 9년간 선정 결과

가. 우수지자체 선정 결과

2006~2014년까지의 9년간 실시된 지역복지정책평가에서 각 그룹별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결과를 연도별로 제시하면 <표 15-6>과 같다.

<표 15-6> 2006~2014년 기간 지역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연도	우수 지자체
2006	대전 서구, 서울 은평구, 인천 연수구, 부산 동구,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경기 과천시, 강원 태백시, 경기 가평군, 충북 옥천군, 경북 고령군, 경남 산청군, 전북 장수군
2007	서울 영등포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동구, 부산 수영구, 경남 창원시, 경남 진주시, 전남 목포시, 강원 태백시, 전북 완주군, 경남 하동군, 충남 서천군, 강원 고성군, 강원 화천군
2008	부산 해운대구, 부산 수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전북 김제시, 전남 순천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남 해남군
2009	대구 남구, 대구 달서구, 대전 중구, 대전 서구, 강원 강릉시, 경남 창원시, 경남 진주시, 충북 단양군, 전북 김제시, 전북 완주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고흥군, 전남보성군
2010	서울 은평구, 인천 서구, 울산 울주군, 부산 강서구, 부산 서구, 충북 청주시, 경기 오산시, 제주 제주시, 충북 충주시, 경북 정읍시, 전북 완주군, 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고창군, 강원 양양군, 전북 임실군
2011	서울 송파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부산 강서구, 광주 남구, 경기 시흥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경북 김천시, 경북 상주시, 충북 청원군, 충남 금산군, 충북 옥천군, 경북 고령군, 강원 고성군, 경남 함양군
2012	서울 광진구, 서울 성동구, 광주 북구, 광주 서구, 대전 동구, 경기 광명시, 경북 포항시, 전북 익산시, 경북김천시, 경북상주시, 충남홍성군, 전남담양군
2013	인천 남동구, 대전 서구, 울산 울주군, 광주 서구, 광주 남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구리시, 경북 경산시, 충북 제천시, 경북 영천시, 경북 칠곡군, 경북 성주군, 전북 부안군, 전남 보성군, 전북 고창군, 전북 순창군
2014	인천 남동구, 인천 연수구, 대전 서구, 광주 서구, 대전 대덕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군포시, 경기 구리시, 경기 포천시, 충남 공주시, 전남 영암군, 경기 연천군, 충북 단양군, 충북 보은군, 강원 고성군, 전북 순창군

나. 부진지자체 선정 결과

지난 9년간 실시된 지역복지정책평가에서 부진지자체(하위 10%)의 명단을 밝히기는 것은 어렵다. 다만, 부진지자체의 특성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9년 연속 부진지자체로 선정된 기초 지자체는 없었다. 이는 2009년과 2010년 부진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이 추진됨으로써 이듬해 평가에서는 많은 지자체가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었고, 평가의 긍정적 측면에서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과거에는 농어촌 지역의 지자체가 부진지자체에 많이 포함되었으나, 최근에는 대도시 지역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이 특징이다. 2014년의 경우, 부진지자체로 간주되는 하위 10%인 23개 지자체 중에서 서울이 14개 지자체를 점하고 있었음은 재정 자립도, 인구규모 등의 복지정책 여건을 고려한다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외의 부진 지자체는 복지여건이 좋지 않은 농어촌 지역(6개 지자체) 및 도농 복합 지역(3개 지자체)이었다.



제16장

복지정책평가 9개년 성과와 정책제언

제1절 복지정책평가 9개년 성과

제2절 정책제언

16

복지정책평가 9개년 성과와 정책제언

제1절 복지정책평가 9개년 성과

1. 복지종합평가의 전반적 결과

복지종합평가의 전반적 결과를 전체 지자체의 평균점수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균 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2006년 56.67점→2007년 63.15점→2008년 64.50점→2009년 67.70점→2010년 67.12점→2011년 65.66점→2012년 68.81점→2013년 71.7점→2014년 73.51점으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연도별로 다소의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평가결과는 향상되었다. 특히, 2013년부터는 복지종합평가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70점대에 진입하였으며, 2014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그림 3-1 참조).

전체 지자체 평가결과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향상되었지만,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는 현저하였다. 즉, 100점 기준 2006년의 격차는 30.95%pt이었고, 2013년에는 34.17%pt로 격차가 오히려 커졌다. 그렇지만 2014년에는 32.34%pt의 격차만 보여 바람직한 양상을 보여 준다.

〈표 16-1〉 지자체간 복지종합평가결과의 격차

(단위: 점)

영역	2006			2013			2014		
	최고	최저	격차 (최고-최저)	최고	최저	격차 (최고-최저)	최고	최저	격차 (최고-최저)
총점	72.13	41.18	30.95	90.37	56.20	34.17	87.85	55.51	32.34

주: 100점 기준 환산
자료: 2006년, 2013년, 2014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자료 재분석.

2. 복지기반조성의 성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는 2010년 86명, 2011년 57명, 2012년 119명, 2013년 154명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전체 지자체 수를 고려한 민간상근간사 배치율은 2010년 37.39%→2011년 24.78%,→2012년 51.97%→2013년 66.96%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민간상근간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어서 지역복지 증진을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6-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

(단위: 개, %)

	2010	2011	2012	2013
배치 지자체 수(A)	86	57	119	154
지자체 수(B)	230	230	229	230
배치율 (C)=(A/B*100)	37.39	24.78	51.97	66.96

자료: 2011~2014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자료 분석.

민간복지자원의 하나인 기부식품의 총액은 2008년 370억 6,797만 6천원→2009년 520억 5,800만 5천원→2010년 603억 1,967만원→2011년 782억 2,237만 6천원→2012년 930억 3,783만원→1,134억 6,979만 2천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기부식품 이용자수는 2010년 217,710명→2011년 256,958명→2012년 302,414명→2013년 397,706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16-3〉 기부식품 총액 및 이용실적

(단위: 천원, 명, 건)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기부식품 총액	37,067,976	52,058,005	60,319,670	78,222,376	93,037,830	113,469,792
기부식품 이용자수	-	-	217,710	256,958	302,414	397,706

주: 당해연도의 통계는 익년도에 다소 변경(증가)되는 경우가 있음.

자료: 2009~2014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자료 분석.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지원한 금액은 2012년 127억 6758만 1천원→2013년 145억 6,788만 3천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장은 2012년 437개소→2013년 445개소로 적으나마 증가하였다.

〈표 16-4〉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실적

(단위: 천원, 개소)

지표	2012	2013
자체예산 지원액	12,767,581	14,567,883
신고사업장 개소수	437	445

자료: 2013~2014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자료 분석.

3. 기초생활보장의 성과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수는 2008년 184,289명→2009년 226,145명→2010년 224,889명→2011년 113,677명→2012년 136,679명→2013년 126,220명으로 다소 등락을 보였지만 지자체의 신규 수급자 발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에는 개별급여제도의 추진으로 신규 수급자 발굴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16-5〉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수 및 발굴실적

(단위: 명, %)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신규수급자 수	184,289	226,145	224,889	113,677	136,679	126,220

자료: 2009~2014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재분석.

2011~2013년 기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수는 2011년 879,663가구→2012년 6,128,161가구→2013년 5,573,594가구로 증가하였다가 최근에 감소하였고,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는 2011년 238,904건→2012년 700,370건→2013년 288,332건으로 증가하였다가 큰 폭을 감소를 보였다. 또한 중점관리 소득 감소건수도 2011년 640,759건→2012년 676,270건→2013년 376,524건으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가 많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수급자 관리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6-6〉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실적

(단위: 가구, 건)

	중점관리 소득유형 대상자수	중점관리 소득 증가건수	중점관리 소득 감소건수
2011	879,663	238,904	640,759
2012	6,128,161	700,370	676,270
2013	5,573,594	288,332	376,524

자료: 2012~2014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재분석.

근로능력가구수는 2012년 220,811가구에서 2013년 224,443가구로 다소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이행급여특례가구수는 2012년 3,578가구에서 2013년 14,360가구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이행급여특례가구 중 신규 이행급여특례가구는 2012년 3,925가구에서 2013년 15,287가구로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행급여특례 보호를 위한 노력이 2013년도에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16-7〉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근로능력가구수	이행급여특례가구수	신규이행특례가구수
2012	220,811	3,578	3,925
2013	224,443	14,360	15,287

자료: 2013~2014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재분석.

수급자 가구는 2012년 820,007가구에서 2013년 808,741가구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급자 가구 중 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는 2012년 34,991가구→2013년 33,962가구로 다소 감소하였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가구 중 보호 결정 가구는 2012년 34,524가구→2013년 33,385가구로 수급자 가구와 생활보자유위원회 상정가구의 감소와 유사한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표 16-8〉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수급자가구수	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	보호결정 가구수
2012	820,007	34,991	34,524
2013	808,741	33,962	33,385

자료: 2013~2014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재분석.

긴급복지지원 총 결정가구수는 2008년 27,426가구→2009년 93,693가구→2010년 45,223가구→2011년 41,924가구→2012년 38,838가구→2013년 83,118가구로 2009년 이후 2012년까지는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긴급지원신청이 2010년 55,607가구→2011년 57,812가구→2012년 45,429가구→2013년 78,319가구로 증가한데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와 타 지원 연계건수도 2013년에 크게 증가하여 각각 56,136가구, 84,319가구나 되었다.

〈표 16-9〉 긴급복지지원실적

(단위: 가구)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긴급지원 신청건수	-	-	55,607	57,812	45,429	78,319
총 결정건수	27,426	93,693	45,223	41,924	38,838	83,118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	-	-	-	-	13,971	56,136
타 지원 연계건수	-	-	21,553	48,435	45,722	84,310

주: 당해연도의 통계는 익년도에 다소 변경(증가)되는 경우가 있음.

자료: 2009~2014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재분석.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취업성공패키지 포함)의 취·창업인원은 2008년 2,169명→2009년 2,645명→2010년 3,303명→2011년 4,817명→2012년 5,782명→2013년 7,115명으로 빠른 속도의 증가를 보여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힘입어 업그레이트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 대비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취·창업률은 2008년 7.93%→2009년 8.63%→2010년 10.65%→2011년 12.81%→2012년 15.19%→2013년 16.25%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취·창업률은 2008~2013년 기간에 약 2배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표 16-10〉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취창업인원 및 취창업률

(단위: 명, %)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	27,350	30,660	31,009	37,609	38,057	43,780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취창업인원	2,169	2,645	3,303	4,817	5,782	7,115
- 취업자	-	2,163	2,956	4,399	5,352	6,747
- 창업자	-	482	347	418	430	368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취창업률	7.93	8.63	10.65	12.81	15.19	16.25

자료: 2009~2014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자료 분석.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취업성공패키지 포함)의 탈수급자수는 2008년 2,021명→2009년 2,446명→2010년 2,804명→2011년 4,040명→2012년 6,218명→2013년 7,238명으로 빠른 속도의 증가를 보였다.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 대비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탈수급자수인 탈수급률은 2008년 7.39%→2009년 7.35%→2010년 9.08%→2011년 10.74%→2012년 16.34%→2013년 16.53%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탈수급률은 2008~2013년 기간에 2배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최근에는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16-11〉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탈수급자수 및 탈수급률

(단위: 명, %)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	27,350	33,271	30,896	37,609	38,057	43,780
탈수급자수	2,021	2,446	2,804	4,040	6,218	7,238
- 자활(이행)특례상향 이동자		1,096	1,446	1,795	2,713	2,904
- 수급중지자		1,350	1,358	2,245	3,505	4,334
탈수급률	7.39	7.35	9.08	10.74	16.34	16.53

자료: 2009~2014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자료 분석.

전체 수급권자의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는 2007년 46.4일→2008년 47.8일→2009년 57.7일→2010년 63.3일→2011년 286.5일→2012년 295.3일→2013년 320.6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또한 전체 수급권자의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는 2007년 2,329,103원→2008년 2,489,922원→2009년 2,415,074원→2010년 2,824,652원→2011년 2,942,829원→2012년 3,046,203원→2013년으로 3,345,291원으로 상승하였다.

의료급여 대상 중 집중관리대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대상자의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일수는 전체 수급권자의 평균 의료급여일수보다 현저히 높았다. 그렇지만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즉, 2008년 1,129.7일→2009년 1,100.5일→2010년 1,008일→2011년 990.2일→2012년 952.0일→2013년 934.8일로 감소하였다. 1인당 평균 의료급여 진료비는 2009~2011년 기간에는 증가하였다가 2012년부터는 감소하였다. 즉, 2009년 6,702,457원→2010년 6,908,471원→2011년 7,081,220원→2012년 6,142,461원→2013년 5,898,889원이었다.

〈표 16-12〉 전체 수급권자 및 사례관리대상자의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단위: 일, 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급여일수	46.4	47.8	57.7	63.3	286.5	295.3	320.6
	1인당 평균 진료비	2,329,103	2,489,922	2,415,074	2,824,652	2,942,829	3,046,203	3,345,291
사례관리 대상자	1인당 평균 급여일수	-	1,129.7	1,100.5	1,008	990.2	952.0	934.8
	1인당 평균 진료비	-	-	6,702,457	6,908,471	7,081,220	6,142,461	5,898,889

주: 당해연도의 통계는 익년도에 다소 변경(증가)되는 경우가 있음.
자료: 2008~2014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자료 분석.

4. 복지서비스의 성과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지원금(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적립액)은 2010년 8,183,993,044원→2011년 9,685,273,352원→2012년 11,346,123,768원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평가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파악이 불가하였다.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수는 2010년 363,178명→2011년 419,957명→2012년 478,117명→2013년 615,075명으로 최근에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이에 따라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은 2010년 22,534원→2011년 23,063원→2012년 23,731원→2013년 21,462원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16-13〉 디딤씨앗통장사업의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단위: 원, 명)

	월별 매칭지원금 연간누계액(①)	월별 실가입자의 연간누계수(②)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①/②)
2010	8,183,993,044	363,178	22,534
2011	9,685,273,352	419,957	23,063
2012	11,346,123,768	478,117	23,731
2013	-	615,075	21,462

자료: 2011~2014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자료 분석.

전체 보호아동 대비 가정위탁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의 비율을 나타내는 요보호 아동 가정보호비율은 2012년 64.02%→2013년 60.71%로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위탁아동과 공동생활가정 아동은 감소된 반면에 아동양육시설 아동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아동의 가정보호 중요성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사안으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표 16-14〉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A+B)/(A+B+C)\} \times 100$
2012	1,829	701	1,422	64.02
2013	1,734	610	1,517	60.71

자료: 2013~2014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자료 분석.

취약보육은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다문화 영유아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휴일보육 등을 의미한다. 취약보육서비스 중에서 영아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시간연장형 보육이었으며, 최근에는 다문화 영유아보육이 장애아보육을 상회하고 있다. 취약보육서비스 이용 아동은 2008년 535,092명→2009년 614,908명→2010년 749,320명→2011년 1,348,729명→2012년 1,482,814명→2013년 1,481,822명으로 2012년까지는 지속적 증가를 보였다가, 지난해에만 미미하게 감소하였다.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 대비 취약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비율인 취약보육시설 이용률은 2008년 47.12%→2009년 52.34%→2010년 58.54%→2011년 60.47%→2012년 63.96%→2013년 64.23%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표 16-15〉 취약보육시설 이용 아동

(단위: 명, %)

지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보육시설 이용 전체 아동	1,135,503	1,174,907	1,279,909	1,348,729	1,482,814	1,481,822
취약보육시설 이용 아동	535,092	614,908	749,320	815,597	948,419	951,739
- 영아보육 이용수	501,888	572,532	686,255	739,332	874,499	872,328
- 장애아보육이용수	15,530	12,086	12,045	11,768	10,230	9,905
- 다문화 영유아보육이용수	-	10,020	11,100	16,808	20,028	24,166
-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수	17,630	19,796	36,619	44,914	41,064	43,982
- 휴일보육 이용수	44	474	3,301	2,775	2,598	1,358
취약보육시설 이용률	47.12	52.34	58.54	60.47	63.96	64.23

자료: 2009~2014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와 자료 분석.

제2절 정책제언

1. 평가결과에 따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

가. 복지기반조성 평가결과에 대한 제언

1)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

복지기반조성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평가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과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의해 평가되었다. 향후 한국사회의 복지는 사회서비스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충분성과 전문성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우 심도있게 접근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등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은 높지 않으며, 예산배정액의 약 82%만이 지출되고 있음은 국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복지욕구가 높음에도 나타난 결과라는 측면에서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대도시 지자체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은 73%로 중소도시 90%보다 현저히 낮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규명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의 개발을 위해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전년도 예산집행률에 연동하여 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사례관리의 평가결과를 보면, 지자체 당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이 대도시 지자체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자체의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평균 실적이 많은 중소도시 지자체 간의 실적 격차는 매우 컸다. 따라서 공공 사례관리의 추진방식과 질적 관리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 사례관리사의 자질이 적절한지, 재교육 체계는 어떠한지, 민간영역의 사례관리와 어떤 역할 구분과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한국사회의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종합분석과 효율화 방안이 요구된다. 이는 통합사례관리가 “사회복지의 꽃”이라고 불리워질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한국형 통합사례관리 모형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김승권·황성철·김연우, 2012).

2)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복지기반조성으로서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평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과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 정도에 의해 평가되었다. 민간상근간사는 많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여전히 전국적으로 약 33%의 지자체는 배치를 하고 있지 않았다.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중앙정부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과 관심 부족 때문으로 판단된다. 민간상근간사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지역복지증진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상근간사 외에 사무국장을 두고 있음과 비교한다면 지역복지의 격차가 크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시도에서는 민간상근간사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부식품 총액과 기부식품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식품 기부는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민간복지자원 활성화를 위해 복지정책평가의 일환으로 다루어져 왔고 국민의 나눔문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기부식품의 관리 철저와 배분에서의 투명성 등에 보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며, 아울러 지역별, 지자체별 기부식품의 총량과 식품 유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광역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효율적 추진체계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기초보장제도 평가결과에 대한 제언

1)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평가결과는 예년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제도가 안정적 국면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부정적 측면에서는 제도 내외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한 현실을 고려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복지제도를 통해 빈곤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수급자 입장에서 제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부정수급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도 진입에 있어 강한 선정기준은 송파 세 모녀 사건같이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복지수급 지속에 대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구체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전환이 수급자의 보호를 과연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일부 근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제 취약한 사람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최저생활보장과 수급자의 자활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동시에 잘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자활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제언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최저생활보장과 자활강화 강화라는 두 가지 큰 목적중 하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제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듯이 자활사업 역시 현재의 틀을 벗어나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맞춤형 급여체계 개선과 맞물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탈수급시 바로 생활상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급여체계를 둬으로써 탈수급자 보호강화를 통해 고용복지 연계를 완성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사회적 경제로서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이 강조되고 있다. 향후 자활사업 역시 동일하게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사회적 경제와 같은 대외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의료급여 평가결과에 대한 제언

2013년도 의료급여 평가결과를 보면 지난 3년간의 실적에 비해 의료비 및 의료급여 일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지표가 재정절감을 대상으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시 다소 평가가 지향하는 모습과는 대조적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의료급여에 대한 재정 절감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추가적 노력들이 요구된다.

반면에 의료급여는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른 복지선진국에 비해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급여제도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제도는 양가적 측면이 대비되는 제도이다. 앞에서 지적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과 제도 도입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의료급여 재정의 문제이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도한 의료이용 행태는 급기야 의료쇼핑이라는 언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진 의료급여의 보호강화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제도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추가적 연구들이 필요하다.

다. 복지서비스 및 보육 평가결과에 대한 제언

1) 아동복지 평가결과에 대한 제언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를 위한 평가는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과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이다. 전자는 매우 좋은 평가결과를 획득하여 요보호아동 자립에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후자는 다소 미흡한 수준에 있었다. 즉,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은 약 70%대에 머물고 있어 요보호아동이 실제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달성률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즉, 가정위탁아동과 공동생활 가정 아동은 감소하였고, 반대로 아동양육시설아동은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의 질적 성장을 위해 가정과 같은 환경을 강조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역행하는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의 환경개선과 소속사회를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가정위탁 및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보육서비스 평가결과에 대한 제언

보육서비스 평가는 어린이집 평가인증률과 취약보육 실시율에 의해 추진되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바람직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신청기관에 대해서만 인증평가를 하고 있어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는 무시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향후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평가인증의 의무화와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에 대한 원인 규명과 지원 확대 또는 제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장애아, 다문화 영유아, 시간연장형 보육, 휴일보육 등을 의미하는 취약보육은 과거보다 많이 실시하고 있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보육시설이용 전체 아동 대비 취약보육 아동의 비율에 대한 격차는 중소도시 지방자치단체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취약보육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취약보육의 대상인 아동이 보육기회에서 배제되는 것은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

보육환경에서 차별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 서민생활 안정 및 노인일자리 평가결과에 대한 제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인데, 이는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그렇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할 수 있는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노인일자리의 목표달성률은 100% 이상으로 초과달성하였다. 그렇지만 시군구 간의 지역격차는 매우 심각하였는데, 일자리 목표달성률이 부진한 지역의 원인을 규명하여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베이비부머의 대량 퇴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장년층 일자리와 노인일 자리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평가지표에 대한 정책제언

가. 복지기반조성 평가지표에 대한 제언

민간복지자원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의 재검토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구 만명당 법정민간복지종사자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업안정성(이직률) 및 급여수준,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충분성, 사회복지생활시설 설치율 등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매 3년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인구 만명당 법정민간복지종사자수

- 세부산식 :
$$\left(\frac{\text{4대 보험 가입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수}}{\text{인구 수}} \right) \times 100.00$$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업안정성(이직률) 및 급여수준

$$\text{- 세부산식 : } \left(\frac{\text{당해연도 이직자 수}}{\text{법정 민간복지종사자 수}} \right) \times 100$$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수준

$$\text{- 세부산식 : } \left(\frac{(1\text{년 근무자 급여수준} + 5\text{년 근무자 급여수준} + 10\text{년 근무자 급여수준})/3}{(\text{전국의 } 1\text{년 근무자 급여수준} + 5\text{년 근무자 급여수준} + 10\text{년 근무자 급여수준})/3} \right) \times 100$$

○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충분성

$$\text{- 세부산식 : } \left(\frac{\text{당해연도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실인원}}{\text{인구 수}} \right) \times 10,000$$

○ 사회복지생활시설 설치율

$$\text{- 세부산식 : } \left(\frac{\text{사회복지생활시설 정원}}{\text{인구 수}} \right) \times 10,000$$

세부 평가지표인 기부식품에 대한 평가기준을 “인구 1인당 기부식품 모금 및 이용 금액”으로 함으로써 지자체의 인구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부 평가지표로서 기부식품을 선정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적 및 이용의 증가율에 의한 평가는 피평가기관에 심한 부담감을 주게 되며, 심지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즉, 전년도 기부식품 모집 및 이용이 우수한 지자체에게는 불합리하며, 평가지표에 적응하기 위해 기부식품의 모집 및 이용을 특정연도에 집중시키는 부작용도 발생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인구규모 편차가 매우 큰 현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당해연도의 금액이 아닌 최근 3년간 평균 변화율에 의해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인구 1인당 기부식품 모금 및 이용 금액

$$\text{- 세부산식 : } \left(\frac{(\text{기부식품 모금 금액} + \text{기부식품 이용 금액})/2}{\text{인구 수}} \right)$$

많은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사업과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즉, 지

역사회복지의 중요성과 지자체의 역할의 증대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평가지표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지역특화사업과 민관협력사업의 중요성을 반영한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율

$$\text{- 세부산식 : } \left(\frac{\text{지역특화사업 수}}{\text{전체 복지사업 수}} \right) \times 100$$

○ 민관협력사업 활성화율

$$\text{- 세부산식 : } \left(\frac{\text{민관협력사업 수}}{\text{전체 복지사업 수}} \right) \times 100$$

나. 기초보장제도 평가지표에 대한 제언

2014년 기초생활보장 업무에 대한 복지종합평가는 과거와 큰 차이 없이 동일한 수준에서 평가가 진행되었다. 지난 3년간의 변화를 고려해도 2012년 급여조정실적이 2013년 이후 이행급여 특례 보호실적으로 변경된 것 외에는 동일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전환이 예정된 2015년을 가정할 때 내년 2015년 평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는 마지막 평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제도의 변화를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점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평가항목은 수요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보호강화보다는 재정안정화 및 공급자 중심의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실제 평가항목 선정시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바람직한 지표개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중앙정부 평가단에서 일방적으로 평가항목이 설정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나마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과 긴급복지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타제도와 연계 등이 평가항목으로 포함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측면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복지제도에 대한 개혁이 논의되고 있으며 주로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근간인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안정 강화라는 측면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지역복지정책평가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재정안정화에 대한 강화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과 취약자의 최저한의 생활보장을 법적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항목들이 추가되었으면 한다. 사례관리 강화, 수급자 급여수준의 생활안정에 대한 적정성,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 발굴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연의 역할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평가와 지표개선이 요구된다.

○ 사례관리 강화

$$\text{- 세부산식 : } \left(\frac{\text{당해연도 공공 사례관리 건수} + \text{민간 사례관리 건수}}{\text{인구 수}} \right) \times 10,000$$

○ 수급자 급여수준의 생활안정에 대한 적정성,

$$\text{- 세부산식 : } \left(\frac{\text{생활곤란자(공공요금 미납, 의료 미치료 등) 수}}{\text{전체 수급자 수}} \right) \times 100$$

○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

$$\text{- 세부산식 : } \left(\frac{\text{당해연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수}}{\text{전체 수급자 수}} \right) \times 100$$

현재의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도의 체계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동 특성을 반영하여 복지종합평가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도의 항목으로 계속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다. 올해의 평가항목도 과거의 평가와 큰 차이 없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률과 취창업률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동 지표와 같이 결과 위주 중심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보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탈수급 이전의 수급자의 근로능력 향상과 탈수급을 위한 각종 사례관리, 성과관리 등의 노력들은 충분히 평가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을 모색하듯이 자활사업부문에서도 최근 사회적 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빈곤층, 근로빈곤층의 보호강화와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변화에 어느 정도 준비하고 대응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들이 지역복지정책평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나마 전년도 평가와 달리 희망키움 및 내일키움통장과 같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수급자들이 안정적으로 탈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가한 점은 바람직스럽다 할 것이다.

○ 사회적 경제 활성화 투입 재정

$$\text{- 세부산식 : } \left(\frac{\text{사회적 경제 활성화 투입 재정}}{\text{전체 복지재정}} \right) \times 100$$

현재 의료급여가 가진 재정적 문제를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복지종합평가의 의료급여 항목은 재정적 측면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되었다. 즉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 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과 같이 의료급여 재정이 최소한으로 늘어난 지자체가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설정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평가가 시작된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역시 의료급여의 부당 및 과도 사용자에 대한 발굴과 제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결국 모든 평가항목이 재정안정화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부조제도가 국가 조세를 통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재정적 측면에 대한 평가강화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부조제도가 가진 또 하나의 순기능인 보호 강화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재정안정화와 더불어 보호강화를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함께 구성됨으로써 최소한 의료급여와 같은 공공부조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균형 감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의료급여 보호율

$$\text{- 세부산식 : } \left(\frac{\text{의료급여 사각지대 수}}{\text{의료급여 사각지대 수} + \text{수급급여 수급자 수}} \right) \times 100$$

다. 복지서비스 및 보육 평가지표에 대한 제언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가지표가 보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지표는 노인일자리 목표달성률 뿐이다. 물론 이 지표도 노인생활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임은 분명하지만, 노인의 여가 및 문화생활과 관련한 지표, 기초연금과 관련된 평가지표도 포함되어야 한다.

○ 노인의 여가 및 문화생활

$$\text{- 세부산식 : } \left(\frac{\text{당해연도 노인 여가 및 문화생활 시설 이용자 수}}{\text{전체 노인 수}} \right) \times 100$$

○ 기초연금

$$\text{- 세부산식 : } \left(\frac{\text{기초연금 비수급 노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수}}{\text{기초연금 비수급 노인}} \right) \times 100$$

장애연금수급률과 중증장애인생산품만으로 장애인복지를 평가하고 있다. 전체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 지표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가장애인서비스 수준관련 지표, 장애인 자립생활 및 고용관련 지표, 장애인 재활관련 지표,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지표 등이 평가지표로서 활용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장애인복지서비스 평가지표는 전체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 지표이어야 하며, 재가장애인서비스 수준관련 지표, 장애인 자립생활 및 고용관련 지표, 장애인 재활관련 지표, 장애인 이동권 보장관련 지표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 재가장애인서비스 수준

$$\text{- 세부산식 : } \left(\frac{\text{당해연도 재가 장애인서비스 이용자 수}}{\text{전체 재가장애인 수}} \right) \times 100$$

○ 장애인 자립생활 및 고용

$$\text{- 세부산식 : } \left(\frac{\text{당해연도 자립생활 및 고용 관련 시설 거주자 및 이용자 실인원}}{\text{전체 장애인 수}} \right) \times 100$$

○ 장애인 재활

$$\text{- 세부산식 : } \left(\frac{\text{당해연도 재활관련 시설 이용자 수}}{\text{전체 장애인 수}} \right) \times 100$$

○ 장애인 이동권 보장

$$\text{- 세부산식 : } \left(\frac{\text{당해연도 장애인 이동서비스 이용자 수}}{\text{전체 장애인 수}} \right) \times 100$$

아동복지서비스의 평가지표는 전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포괄적 평가지표로 대체되어야 하며, 특히 아동권리 증진의 실천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요보호 및 저소득층 아동에 국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즉,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증진을 위한 아동권리교육과 아동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지표가 배제되어 있음은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아동권리교육 참여자 수

$$\text{- 세부산식 : } \left(\frac{\text{당해연도 아동권리교육 참여자 수}}{\text{전체 아동 수}} \right) \times 100$$

○ 아동참여 활성화 사업 투입 재정

$$\text{- 세부산식 : } \left(\frac{\text{아동참여 활성화 사업 투입 재정}}{\text{전체 아동 수}} \right) \times 10,000$$

보육서비스의 평가지표로서 평가인증률과 취약보육 외에도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를 중요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 안전과 관련된 평가지표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서비스의 질이 높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많은 학부모들이 “여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보육시설 및 등·하원 시의 안전도 평가지표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율

$$\text{- 세부산식 : } \left(\frac{\text{국공립보육시설 정원}}{\text{전체 보육시설 정원}} \right) \times 100$$

○ 아동 안전사고 발생률(역순위 평가)

$$\text{- 세부산식 : } \left(\frac{\text{아동 안전사고 발생 수}}{\text{전체 아동 수}} \right) \times 100,000$$

3. 평가방식에 대한 정책제언

2014년 복지종합평가는 2009~2013년에 실시된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시도 합동평가 자료 중 복지분야 자료에 근거하여 시·군·구별로 분석하여 이루어졌다. 이는 복지분야에 대한 평가지표의 충분성과 질적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2012년과 마찬가지로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복지행정상에 의해 주요 분야별로 평가를 추진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평가가 다원화됨으로써 복지정책평가는 종합적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지표의 충분성에서 한계가 노출되고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의 의미를 되찾아 진정한 ‘종합평가’가 되고 지역사회복지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행 평가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한다.

행정자치부 시도 합동평가 외에 복지재정 및 복지인력 평가, 자체 특화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중점사업 평가,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으므로 복지재정 및 복지인력 평가, 자체 특화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중점사업 평가를 추가하면 된다.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자체 특화사업 평가”와 “보건복지부 중점사업 평가”는 질적 평가가 요구되므로 현장 확인을 필요로 하며,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를 평가하고, 중앙에서는 시도별 1~2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하여 직접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체 지자체에 적용토록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광역 지자체의 평가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광역 지자체에 평가업무를 위임하는 전제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자체 특화사업 평가”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특화사업으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하며, 필요시 현장평가를 병행한다. 지나치게 많은 자체 특화사업이 제출될 수 있으므로 한 지자체 당 가장 우수한 자체 특화사업으로 최고 3개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산사업 뿐만 아니라 비예산사업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서 30%의 비중을 둔다.

“보건복지부 중점사업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 중에서 각 분야별 1개의 중점 복지사업(전체 6개 이내)을 결정하여 제출된 서류 또는 사통망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평가하며, 필요시 현장평가를 병행한다. 이 평가는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서 20%의 비중을 둔다.

4. 우수지자체 선정 기준으로서의 평가그룹에 대한 정책제언

2006~2014년의 9년간 우수지자체 선정을 위한 기준은 3대 지역, 인구규모, 재정자립도 등이었다. 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구분하고, 각 지역에서 인구규모 및 재정자립도에 의하여 평가그룹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유사한 복지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평가를 하기 위함이다. 더군다나 농어촌

지역 지자체의 한계를 감안하여 평가그룹을 1개 추가하여 우수지자체를 선정하는 배려를 하였다.

그렇지만 현재의 평가그룹 분류가 모든 지자체를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구수를 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이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수, 장애인 수, 노인 수 등 복지대상자 수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5 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정책제언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제공은 현재와 같이 실시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부진지자체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가 없다. 평가목적에 비추어 부적절한 결과 활용이다.

부진지자체에 대해서는 부진의 이유를 규명하여 복지증진을 위한 컨설팅이 제공되어야 한다. 부진이유에 따라서 지자체가 노력해야 하는 것인지, 중앙정부 또는 광역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며, 이들 원인에 따라 해결방안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과거 8년간의 복지정책평가 중 2009년과 2010년의 2년간은 부진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좋은 결과를 얻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연구 및 컨설팅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역복지정책 평가와 부진지자체 컨설팅을 위한 연구가 행정자치부의 평가자료 제공시점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8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최소한 7개월 간 추진될 필요가 있다.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제언

지역복지정책 피평가기관인 시·군·구와 지도 감독기관인 시·도에 대하여 평가결과가 양호함은 지역복지수준이 향상된다는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부진한 평가지표를 분석하여 부진사유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모든 시·군·구가 특별히 부진한 평가결과를 보인 지표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담당자와 평가담당자의 긴밀한 협조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지역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최소한 평가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시·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시·군·구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 주기는 시·군·구에서는 매 분기, 시·도에서는 매 반기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시·도에서는 정기적으로 가(假) 평가를 실시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평가결과 우수한 복지영역에 대한 자체 인센티브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는 복지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잘한 직원에게는 칭찬을 주어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평가지표의 담당 직원에게 디스인센티브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며, 부진한 원인을 규명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 김승권 외(2006).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7).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10). 2009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11a). 2010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분석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11b).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분석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12).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황성철·김연우(201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 사례관리 연구(3차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승권 외(2013). 2013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대명(2010). 자활사업 10년의 평가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13).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임채호(2009).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지방정부 성과평가제도: 중앙정부에 의한 외부 평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Vol. 42, No. 2.
- Alberta ministry(2010). Health and Wellness Annual report.
- Audit Commission(2009). Comprehensive Area Assessment: A Guide to the New Framework.
-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2007). Developing and implementing the new comprehensive area assessment and associated inspection arrangements.

부록 1. 시·도별 주요 복지통계 <<

□ 일반행정 분야(조직인사관리)

○ 지자체 조직관리 효율화 및 사회복지직렬 확보

〈부표 1-1〉 시·도별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단위: 명, %)

	사회복지직렬 현원(A)	사회복지직렬 정원(B)	(A/B) × 100
전국	14,480	14,977	96.68
서울시합계	1,881	1,997	94.19
서울특별시	56	58	96.55
서울시 구합계	1,825	1,939	94.12
부산시합계	1,086	1,091	99.54
부산광역시	47	47	100.00
부산시 구군합계	1,039	1,044	99.52
대구시합계)	694	724	95.86
대구광역시	36	36	100.00
대구시 구군합계	658	688	95.64
인천시합계	649	654	99.24
인천광역시	30	30	100.00
인천시 구군합계	619	624	99.20
광주합계	423	419	100.95
광주광역시	15	15	100.00
광주시 구합계	408	404	100.99
대전시합계	388	383	101.31
대전광역시	14	10	140.00
대전시 구합계	374	373	100.27
울산시합계	220	244	90.16
울산광역시	14	14	100.00
울산시 구군합계	206	230	89.57
세종특별자치시합계	50	50	100.00
경기도합계	2,466	2,535	97.28
경기도	35	35	100.00
경기도 시군합계	2,431	2,500	97.24
강원도합계	699	727	96.15
강원도	18	15	120.00
강원도 시군합계	681	712	95.65
충청북도합계	543	554	98.01
충청북도	11	11	100.00
충청북도 시군합계	532	543	97.97
충청남도합계	808	821	98.42
충청남도	13	13	100.00
충청남도 시군합계	795	808	98.39

	사회복지직렬 현원(A)	사회복지직렬 정원(B)	(A/B) × 100
전라북도합계	887	954	92.98
전라북도	18	18	100.00
전라북도 시군합계	869	936	92.84
전라남도합계	1,145	1,187	96.46
전라남도	15	15	100.00
전라남도 시군합계	1,130	1,172	96.42
경상북도합계	1,239	1,258	98.49
경상북도	17	17	100.00
경상북도 시군합계	1,222	1,241	98.47
경상남도합계	1,138	1,197	95.07
경상남도	17	17	100.00
경상남도 시군합계	1,121	1,180	95.00
제주특별자치도합계	164	182	90.11

□ 사회복지 분야(복지기반조성)

○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부표 1-2〉 시·도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 × 100
전국	279,598,018	252,414,674	90.28
서울	25,577,318	21,010,197	82.14
부산	20,857,192	18,661,482	89.47
대구	16,936,447	15,658,444	92.45
인천	13,829,571	12,620,518	91.26
광주	14,300,619	14,299,593	99.99
대전	20,485,785	19,522,724	95.30
울산	6,952,462	5,800,682	83.43
세종	647,141	623,157	96.29
경기	41,777,373	40,001,228	95.75
강원	11,845,664	9,374,423	79.14
충북	12,818,294	11,129,054	86.82
충남	14,142,017	12,503,740	88.42
전북	16,978,829	16,167,998	95.22
전남	20,119,595	17,747,496	88.21
경북	17,527,429	15,037,829	85.80
경남	17,895,283	15,795,564	88.27
제주	6,907,000	6,460,545	93.54

〈부표 1-3〉 시도별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처리절차 준수율(A)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B)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화율(C)			
			㉠	㉡	㉢	(C)
전국	96.97	160.86	233,474	24,827	336,895	80.36
서울	97.79	70.97	40,790	612	42,705	97.67
부산	97.45	103.42	62	0	22,630	0.27
대구	98.34	93.70	12,842	0	13,140	97.73
인천	97.13	92.67	15,007	0	15,330	97.89
광주	99.44	82.76	1,345	6,685	8,395	135.47
대전	98.88	328.11	8,277	268	8,760	99.08
울산	100.00	126.94	4,937	2,372	6,570	129.30
세종	85.42	19.77	0	0	0	0.00
경기	98.45	276.07	63,754	3,236	70,810	96.89
강원	95.69	143.82	14,372	3,179	17,885	107.02
충북	97.74	191.62	15,352	153	15,695	99.28
충남	98.22	165.22	14,510	3,101	18,250	104.99
전북	94.33	59.38	13,971	4,644	19,345	108.23
전남	96.72	112.81	61	3	23,360	0.28
경북	95.94	129.68	24,853	561	25,550	100.57
경남	98.87	94.18	56	13	25,185	0.30
제주	100.00	91.13	3,285	0	3,285	100.00

주: 처리절차준수율(A)=[(㉠×1)+(㉡×0.5)]/㉢×100,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B)=[(㉣)+(㉤)+(㉥)]/㉦×100, 통합사례 관리사업 중점대상자*×보정,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화율(C)=[(㉧)+(㉨×1.5)]/㉩×100, 통합사례관리사 배정규모×100이며, ㉠ 사례관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 ㉡ 사례관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후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 ㉢ 사례관리가구: 사례관리 후보자*중 서비스연계가구와 미선정처리가구를 제외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 ㉣ 읍면동 서비스연계 건수: 읍면동에서 자체 자원으로 지원한 서비스연계 건수(지역서비스 제공관리 등록-가구단위), ㉤ 시군구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건수: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사례관리가구로 구분되어 사례회의와 서비스제공계획이 이루어진 가구의 서비스 연계건수, ㉥ 시군구 서비스연계 건수: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단순서비스연계가구로 구분되어 사례회의와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없이 서비스연계 실시한 건수(지역서비스 제공관리 등록-가구단위), ㉦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시, 군, 구별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수급 탈락가구, ㉧ 반계약직 현원(현원 ×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근무일수의 합), ㉨ 무기계약직 현원(무기계약자 ×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근무일수의 합), ㉩ 시군구별 국고지원을 받은 통합사례관리사 배정 인원, ㉪ 통합사례관리사 배정규모 × 365일이다.

○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부표 1-4〉 시도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전국	154	230	66.96
서울	12	25	48.00
부산	1	16	6.25
대구	3	8	37.50
인천	5	10	50.00
광주	5	5	100.00
대전	1	5	20.00
울산	5	5	100.00
세종	1	1	100.00
경기	31	31	100.00
강원	17	18	94.44
충북	8	12	66.67
충남	15	15	100.00
전북	8	14	57.14
전남	5	22	22.73
경북	23	23	100.00
경남	12	18	66.67
제주	2	2	100.00

〈부표 1-5〉 시도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단위: 천원, 명)

	'13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12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총액(A)	기부식품 이용자수(B)	기부식품 등 총액(C)	기부식품 이용자수(D)
전국	113,469,792	397,706	93,037,830	302,414
서울	31,669,615	60,000	25,420,545	29,931
부산	4,734,340	19,065	4,517,523	16,771
대구	3,577,469	13,409	2,501,188	11,410
인천	5,409,832	17,164	4,792,867	15,300
광주	3,509,674	18,822	2,966,351	14,939
대전	4,914,503	14,564	4,150,823	14,760
울산	2,549,332	10,514	1,616,352	8,268
세종	0	0	0	0
경기	27,192,877	63,928	22,360,089	46,375
강원	2,310,424	22,648	1,882,845	18,791
충북	5,482,470	25,325	5,124,542	18,272
충남	4,324,980	19,776	4,822,454	18,865
전북	5,078,961	29,798	3,747,506	21,923
전남	3,188,803	27,477	2,556,518	23,168
경북	3,335,287	32,892	3,093,143	23,849
경남	5,073,877	16,987	2,404,656	15,256
제주	1,117,348	5,337	1,080,428	4,536

〈부표 1-6〉 시도별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실적

(단위: 천원, 개소)

	자체예산 지원액		신고사업장 개소수	
	13년(A)	12년(B)	13년(C)	12년(D)
전국	14,567,883	12,767,581	445	437
서울	3,820,017	3,375,777	63	62
부산	650,600	632,800	32	31
대구	310,400	305,400	21	21
인천	1,860,950	1,802,162	26	26
광주	662,369	293,670	20	19
대전	855,033	775,033	16	16
울산	184,549	172,913	9	9
세종	0	0	0	0
경기	2,421,781	1,805,711	77	76
강원	428,400	413,900	21	20
충북	622,401	545,150	31	30
충남	691,085	691,125	26	25
전북	498,240	497,740	21	20
전남	347,944	298,000	29	29
경북	515,043	480,029	24	24
경남	460,071	459,171	23	23
제주	239,000	219,000	6	6

□ 사회복지 분야(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업무의 적절성

〈부표 1-7〉 시도별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신규 수급자 수(A)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B)	부양의무자재산기준완화 신규수급자수(C)
전국	126,220	137,694	3,741
서울	25,111	23,565	1,020
부산	11,731	13,457	408
대구	8,461	9,683	262
인천	8,113	8,184	251
광주	5,498	6,037	198
대전	4,058	4,521	131
울산	1,619	1,760	48
세종	0	0	0
경기	19,346	20,865	493
강원	5,329	6,131	91
충북	3,684	4,518	68
충남	4,375	5,187	101
전북	6,141	7,210	172
전남	5,716	6,735	118
경북	7,128	8,311	165
경남	7,832	9,029	167
제주	2,078	2,501	48

〈부표 1-8〉 시도별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근로능력가구수(A)	이행급여특례가구수(B)	신규이행특례가구수(C)
전국	224,443	14,360	15,287
서울	36,524	1,647	1,882
부산	22,458	1,836	1,927
대구	18,579	1,253	1,426
인천	12,393	912	971
광주	12,633	1,286	1,279
대전	7,616	594	628
울산	2,359	107	120
세종	0	0	0
경기	29,059	2,197	2,329
강원	9,155	557	595
충북	6,346	305	337
충남	7,710	439	472
전북	15,742	1,051	977
전남	11,947	438	470
경북	15,628	829	840
경남	12,720	498	597
제주	3,574	411	437

〈부표 1-9〉 시도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수급자가구수(A)	보호결정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확정가구수(C)
전국	808,741	33,385	33,962
서울	124,627	5,283	5,436
부산	81,515	2,473	2,477
대구	54,487	2,301	2,301
인천	41,552	1,693	1,777
광주	31,273	1,078	1,095
대전	24,353	970	970
울산	9,927	443	443
세종	0	0	0
경기	117,054	4,931	5,102
강원	34,568	1,634	1,715
충북	27,103	1,068	1,068
충남	32,976	1,422	1,446
전북	51,637	1,571	1,571
전남	48,417	1,777	1,783
경북	61,352	2,787	2,790
경남	56,546	3,285	3,295
제주	11,354	669	693

〈부표 1-10〉 사도별 수급자 관리실적

(단위: 명, 건)

	중점관리소득증가건수(A)	중점관리소득유형대상자수(B)	중점관리소득감소건수(C)
전국	288,332	5,573,594	376,524
서울	29,254	631,045	47,399
부산	26,477	483,346	31,857
대구	13,660	356,149	26,509
인천	11,355	260,859	19,355
광주	8,977	185,585	13,348
대전	6,511	138,917	11,309
울산	2,338	66,052	4,519
세종	0	0	0
경기	36,744	798,091	57,948
강원	15,329	280,282	17,471
충북	13,848	226,278	13,828
충남	16,750	273,576	17,212
전북	24,093	417,604	25,419
전남	27,567	451,396	27,716
경북	28,562	497,344	28,271
경남	20,711	406,314	27,216
제주	6,156	100,756	7,147

〈부표 1-11〉 사도별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총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전국	83,118	56,136	78,319	84,310
서울	7,942	3,051	8,488	574
부산	6,096	3,709	5,868	5,104
대구	4,467	2,929	4,482	1,801
인천	4,651	2,721	4,702	2,148
광주	9,454	7,996	8,226	16,452
대전	1,867	1,230	1,838	3,676
울산	1,121	771	1,137	921
세종	0	0	0	0
경기	19,795	15,315	16,633	29,296
강원	3,243	2,108	3,372	1,296
충북	3,236	2,503	2,803	4,840
충남	3,784	2,769	3,637	2,413
전북	3,923	2,589	3,611	4,713
전남	5,464	3,811	4,739	4,963
경북	3,439	1,898	3,745	3,369
경남	4,058	2,482	4,443	2,343
제주	578	254	595	401

○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부표 1-12〉 시도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수(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①)	수급종지자(②)	계 (①+②)		
전국	2,904	4,334	7,238	43,780	16.53
서울	247	672	919	10,182	9.03
부산	553	617	1,170	4,727	24.75
대구	164	193	357	2,218	16.10
인천	241	265	506	2,990	16.92
광주	165	368	533	2,932	18.18
대전	96	191	287	1,280	22.42
울산	30	56	86	518	16.60
세종	0	0	0	0	0.00
경기	545	494	1,039	5,989	17.35
강원	176	222	398	1,771	22.47
충북	45	151	196	988	19.84
충남	74	154	228	1,598	14.27
전북	136	158	294	2,270	12.95
전남	88	244	332	1,713	19.38
경북	101	272	373	2,125	17.55
경남	158	232	390	1,868	20.88
제주	85	45	130	611	21.28

〈부표 1-13〉 시도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C)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D)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C/D) × 100
	취업자(A)	창업자(B)	(C)=A+B		
전국	6,747	368	7,115	43,780	16.25
서울	1,059	53	1,112	10,182	10.92
부산	1,100	54	1,154	4,727	24.41
대구	309	8	317	2,218	14.29
인천	418	17	435	2,990	14.55
광주	667	16	683	2,932	23.29
대전	281	9	290	1,280	22.66
울산	52	12	64	518	12.36
세종	0	0	0	0	0.00
경기	767	56	823	5,989	13.74
강원	279	23	302	1,771	17.05
충북	145	12	157	988	15.89
충남	208	12	220	1,598	13.77
전북	403	25	428	2,270	18.85
전남	251	29	280	1,713	16.35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C)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D)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C/D) × 100
	취업자(A)	창업자(B)	(C)=A+B		
경북	326	24	350	2,125	16.47
경남	323	10	333	1,868	17.83
제주	159	8	167	611	27.33

〈부표 1-14〉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단위: 가구, 명, %)

	희망키움통장가입률(A)			내일키움통장가입률(B)		
	희망키움 가입가구수(①)	희망키움 대상가구수(②)	A= (①/②)×100	내일키움 가입자수(③)	내일키움 대상자 수(④)	B= (③/④)×100
전국	9,055	46,877	19.32	5,255	10,081	52.13
서울	625	7,204	8.68	350	1,250	28.00
부산	1,052	5,165	20.37	544	687	79.18
대구	681	4,841	14.07	179	396	45.20
인천	678	2,200	30.82	434	850	51.06
광주	721	2,928	24.62	370	535	69.16
대전	441	1,684	26.19	93	136	68.38
울산	79	545	14.50	88	301	29.24
세종	0	0	0.00	0	0	0.00
경기	1,341	4,993	26.86	897	1,418	63.26
강원	414	1,682	24.61	208	411	50.61
충북	237	1,156	20.50	254	487	52.16
충남	327	1,768	18.50	221	380	58.16
전북	549	2,927	18.76	249	656	37.96
전남	488	2,836	17.21	450	747	60.24
경북	689	3,376	20.41	460	824	55.83
경남	426	2,457	17.34	394	901	43.73
제주	307	1,115	27.53	64	102	62.75

○ 의료급여관리의 적절성

〈부표 1-15〉 시도별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급여일수의 평균값(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진료비의 평균값(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전국	285.9	320.6	2,927,988.1	3,345,290.8
서울	287.9	322.7	2,699,432	3,018,917
부산	288.8	326.4	3,128,981	3,582,859
대구	277.4	323.0	2,659,296	3,123,531
인천	277.1	314.2	2,625,327	3,112,066
광주	224.5	254.1	2,342,661	2,737,945
대전	268.9	309.0	2,656,818	3,107,917
울산	274.2	312.0	3,330,912	3,692,121
세종	0.0	0.0	0	0
경기	286.5	330.6	2,819,925	3,319,610
강원	287.6	315.7	2,718,866	3,038,517
충북	303.7	334.5	2,987,381	3,318,212
충남	294.1	328.0	2,968,242	3,426,354
전북	289.2	323.9	3,047,736	3,489,915
전남	292.5	321.9	3,134,964	3,489,915
경북	293.5	328.8	3,148,823	3,553,601
경남	290.3	316.3	3,382,869	3,790,720
제주	271.8	302.7	2,513,308	2,862,998

〈부표 1-16〉 시도별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전국	988.9	934.8	7,169,393.9	5,898,889.4
서울	1,132.2	1,088.8	7,003,205	6,209,983
부산	1,023.0	948.3	8,559,916	5,963,381
대구	1,147.5	1,071.1	7,661,177	6,453,037
인천	899.3	857.9	6,233,600	5,172,493
광주	1,011.2	869.9	9,604,180	6,583,360
대전	1,157.6	1,123.4	8,060,328	6,743,633
울산	880.2	871.5	8,178,984	6,073,310
세종	0.0	0.0	0	0
경기	1,022.9	952.4	7,515,293	5,588,707
강원	889.7	856.1	6,208,523	5,388,962
충북	990.6	915.1	7,140,176	5,479,000
충남	1,025.1	968.2	6,859,801	6,069,921
전북	982.2	890.5	7,623,582	6,012,815
전남	912.7	860.4	6,820,529	6,222,478
경북	932.0	916.4	6,802,911	5,903,927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사례관리대상자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경남	945.4	903.6	6,719,621	6,059,342
제주	1,041.0	986.2	8,285,212	6,374,859

〈부표 1-17〉 사도별 상해요인 조사 및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통보건수(②)	A=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B= (③/④)×100
전국	99,431	100,589	98.85	4,530,560,279	6,022,947,648	75.22
서울	11,370	11,712	97.08	404,054,138	620,434,758	65.12
부산	9,763	9,808	99.54	310,064	564,270	54.95
대구	5,995	6,013	99.70	481,319,810	526,626,350	91.40
인천	4,745	4,754	99.81	107,193,610	223,395,080	47.98
광주	4,512	4,512	100.00	145,833,375	179,786,405	81.11
대전	2,700	2,719	99.30	181,025,960	225,043,910	80.44
울산	1,062	1,062	100.00	14,517,460	36,492,094	39.78
세종	0	0	0.00	0	0	0.00
경기	13,425	13,502	99.43	1,195,286,757	1,511,614,327	79.07
강원	4,146	4,200	98.71	90,529,846	130,293,976	69.48
충북	3,427	3,486	98.31	233,920,970	280,249,470	83.47
충남	4,251	4,667	91.09	260,830,148	393,471,268	66.29
전북	8,537	8,637	98.84	534,847,100	651,592,140	82.08
전남	8,548	8,548	100.00	312,130,590	361,646,350	86.31
경북	7,682	7,696	99.82	261,915,050	416,681,019	62.86
경남	7,949	7,954	99.94	280,501,471	411,191,911	68.22
제주	1,319	1,319	100.00	26,343,930	53,864,320	48.91

○ 장애인 복지서비스

〈부표 1-18〉 시도별 장애인연금 수급률

(단위: 명, %)

	수급자인원 (A)	대상자인원 (B)	수급률 (A/B)*100
전국	305,569	322,461	94.76
서울	42,835	53,233	80.47
부산	23,139	22,618	102.30
대구	15,314	15,303	100.07
인천	14,678	16,545	88.72
광주	9,346	8,840	105.72
대전	8,596	9,218	93.25
울산	4,497	5,609	80.17
세종	990	992	99.80
경기	52,757	63,454	83.14
강원	13,252	12,832	103.27
충북	12,770	12,463	102.46
충남	15,776	16,209	97.33
전북	18,646	16,541	112.73
전남	21,161	18,308	115.58
경북	24,006	22,382	107.26
경남	23,376	23,376	100.00
제주	4,430	4,538	97.62

○ 아동보호서비스

〈부표 1-19〉 시도별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단위: 명,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 수(A)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 수(B)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A/B) × 100
전국	9,098	9,258	98.27
서울	941	1,058	88.94
부산	854	856	99.77
대구	299	299	100.00
인천	460	460	100.00
광주	274	277	98.92
대전	218	220	99.09
울산	126	135	93.33
세종	0	0	0.00
경기	1,453	1,465	99.18
강원	626	626	100.00
충북	391	391	100.00
충남	382	382	100.00
전북	588	588	100.00
전남	879	887	99.10
경북	650	655	99.24
경남	770	772	99.74
제주	187	187	100.00

〈부표 1-20〉 시도별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단위: 명, %, 원)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비율 %(A)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 %(B)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A+B)/2
	'13년 월별 1만원이상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①)	'13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②)	A= (①/②) ×100	1인당월평균 매칭지원금(③)	B= (③/30,000원) ×100	
전국	481,071	615,075	78.21	21,462	71.54	74.88
서울	43,393	54,245	79.99	21,536	71.79	75.89
부산	44,832	55,691	80.50	22,488	74.96	77.73
대구	28,489	37,014	76.97	21,613	72.04	74.51
인천	28,270	32,124	88.00	23,637	78.79	83.40
광주	20,954	28,871	72.58	20,538	68.46	70.52
대전	16,009	22,665	70.63	19,827	66.09	68.36
울산	6,725	7,569	88.85	24,191	80.64	84.74
세종	0	0	0.00	19,810	66.03	33.02
경기	74,857	94,420	79.28	22,387	74.62	76.95
강원	28,378	36,278	78.22	20,897	69.66	73.94
충북	22,595	27,634	81.77	22,294	74.31	78.04
충남	20,761	27,253	76.18	20,994	69.98	73.08
전북	34,616	46,033	75.20	20,807	69.36	72.28
전남	38,177	49,393	77.29	21,098	70.33	73.81
경북	29,787	38,152	78.07	21,317	71.06	74.57
경남	32,974	43,694	75.47	20,102	67.01	71.24
제주	10,254	14,039	73.04	20,750	69.17	71.10

〈부표 1-21〉 시도별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A+B)/(A+B+C)} × 100
전국	1,734	610	1,517	60.71
서울	150	55	377	35.22
부산	128	34	86	65.32
대구	66	18	40	67.74
인천	137	21	64	71.17
광주	39	61	41	70.92
대전	40	18	167	25.78
울산	23	19	22	65.63
세종	0	2	3	40.00
경기	235	138	94	79.87
강원	162	16	25	87.68
충북	62	13	68	52.45
충남	109	24	55	70.74
전북	102	56	99	61.48
전남	145	18	146	52.75
경북	156	12	100	62.69
경남	130	90	94	70.06
제주	50	15	36	64.36

□ 사회복지 분야(여성·가정복지)

○ 보육기반조성

〈부표 1-22〉 시도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단위: 개, %)

	‘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A)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B)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B/A) × 100
전국	27,303	30,879	113.10
서울	4,633	4,913	106.04
부산	1,123	1,200	106.86
대구	1,080	1,156	107.04
인천	1,480	1,853	125.20
광주	808	857	106.06
대전	1,080	1,250	115.74
울산	540	649	120.19
세종	0	0	0.00
경기	7,699	9,012	117.05
강원	821	957	116.57
충북	785	922	117.45
충남	1,150	1,389	120.78
전북	1,173	1,404	119.69
전남	802	853	106.36
경북	1,561	1,645	105.38
경남	2,127	2,347	110.34
제주	441	472	107.03

〈부표 1-23〉 시도별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아동수 (A)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B)							취약보육 실시율 (B/A) ×100
		영아 보육 이용수		장애아 보육이용 수 (③)	다문화유아 보육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보육 이용수(⑤)	휴일 보육이용 수 (⑥)	(B)= ②+③+④+⑤+ ⑥	
		실제 이용수①	조정계수 적용이용수 ①×0.5(②)						
전국	1,481,822	872,328	436,164.0	9,905	24,166	43,982	1,358	515,575.0	34.79
서울	242,648	136,696	68,348.0	1,870	3,082	6,959	160	80,419.0	33.14
부산	74,317	47,053	23,526.5	605	890	1,400	10	26,431.5	35.57
대구	63,505	38,444	19,222.0	711	777	1,596	40	22,346.0	35.19
인천	81,796	49,072	24,536.0	537	1,071	1,773	17	27,934.0	34.15
광주	51,274	30,209	15,104.5	408	551	1,349	74	17,486.5	34.10
대전	47,163	30,174	15,087.0	199	486	2,106	31	17,909.0	37.97
울산	34,269	21,663	10,831.5	347	507	474	1	12,160.5	35.49
세종	0	0	0.0	0	0	0	0	0.0	0.00
경기	397,656	240,033	120,016.5	2,123	5,433	12,522	243	140,337.5	35.29
강원	45,113	24,131	12,065.5	170	908	1,124	114	14,381.5	31.88
충북	51,476	27,098	13,549.0	247	1,010	1,546	13	16,365.0	31.79
충남	69,395	38,511	19,255.5	386	1,656	1,533	47	22,877.5	32.97
전북	59,050	33,877	16,938.5	338	1,451	2,524	105	21,356.5	36.17
전남	56,334	29,709	14,854.5	541	1,826	1,404	28	18,653.5	33.11
경북	73,825	45,430	22,715.0	591	1,992	2,420	67	27,785.0	37.64
경남	106,745	65,498	32,749.0	655	2,113	3,827	108	39,452.0	36.96
제주	27,256	14,730	7,365.0	177	413	1,425	300	9,680.0	35.52

□ 지역경제 분야(서민생활안정)

○ 취약계층 생산물 우선구매 실적

〈부표 1-24〉 시·도별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단위: 원, %)

	'13년 총구매액(A)	'13년 중증장애인생산물구매액(B)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B/A) × 100
전국	10,384,760,849	68,759,635	0.66
서울시합계	1,799,064,279	17,227,378	0.96
서울특별시	874,361,114	4,582,705	0.52
서울시 구합계	924,703,165	12,644,673	1.37
부산시합계	308,258,938	1,725,996	0.56
부산광역시	113,943,212	213,192	0.19
부산시 구군합계	194,315,726	1,512,804	0.78
대구시합계)	412,515,509	1,342,944	0.33
대구광역시	281,478,461	374,192	0.13
대구시 구군합계	131,037,048	968,752	0.74
인천시합계	375,861,873	2,054,146	0.55
인천광역시	176,091,776	220,750	0.13
인천시 구군합계	199,770,097	1,833,396	0.92
광주합계	152,206,180	1,419,207	0.93
광주광역시	108,471,048	969,044	0.89
광주시 구합계	43,735,132	450,163	1.03
대전시합계	160,726,719	945,532	0.59
대전광역시	88,684,455	298,091	0.34
대전시 구합계	72,042,264	647,441	0.90
울산시합계	170,322,042	1,345,844	0.79
울산광역시	62,697,175	405,443	0.65
울산시 구군합계	107,624,867	940,401	0.87
세종특별자치시합계	0	0	0.00
경기도합계	1,759,990,470	16,352,816	0.93
경기도	214,958,492	790,294	0.37
경기도 시군합계	1,545,031,978	15,562,522	1.01
강원도합계	644,466,369	2,149,504	0.33
강원도	104,046,538	313,754	0.30
강원도 시군합계	540,419,831	1,835,750	0.34
충청북도합계	324,771,272	2,248,641	0.69
충청북도	54,181,312	608,262	1.12
충청북도 시군합계	270,589,960	1,640,379	0.61
충청남도합계	755,968,297	7,222,718	0.96
충청남도	122,951,486	471,043	0.38
충청남도 시군합계	633,016,811	6,751,675	1.07
전라북도합계	545,936,315	3,515,451	0.64
전라북도	57,618,557	974,444	1.69
전라북도 시군합계	488,317,758	2,541,007	0.52

	'13년 총구매액(A)	'13년 중증장애인생산물구매액(B)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B/A) × 100
전라남도합계	902,868,511	2,545,680	0.28
전라남도	90,513,434	333,514	0.37
전라남도 시군합계	812,355,077	2,212,166	0.27
경상북도합계	952,044,878	4,672,652	0.49
경상북도	116,436,249	401,914	0.35
경상북도 시군합계	835,608,629	4,270,738	0.51
경상남도합계	861,559,522	2,388,987	0.28
경상남도	86,739,104	275,049	0.32
경상남도 시군합계	774,820,418	2,113,938	0.27
제주특별자치도합계	258,199,675	1,602,139	0.62

□ 중점관리 분야(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부표 1-25〉 시·도별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단위: 개, %)

	노인일자리 제공 수					노인일자리 목표량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C/F)×100
	공공분야 (A)	민간분야(B)			C= (A+B)	공공분야 (D)	민간분야 (E)	F= (D+E)	
		일자리제 공수(①)	가중치 (②)	B= (①×②)					
전국	226,692	28,369	-	28,369.00	255,061.00	202,940	21,367	224,307	113.71
서울	31,881	3,745	0	3,946.94	35,827.94	31,077	3,255	34,332	104.36
부산	14,718	2,809	1.07	3,018.61	17,736.61	14,313	2,146	16,459	107.76
대구	10,481	1,381	0	1,461.35	11,942.35	9,910	1,091	11,001	108.56
인천	14,431	2,320	0	2,527.56	16,958.56	10,897	1,531	12,428	136.45
광주	6,798	1,020	0	1,071.00	7,869.00	6,600	929	7,529	104.52
대전	7,356	1,042	0	1,108.65	8,464.65	6,845	702	7,547	112.16
울산	4,596	422	0	437.47	5,033.47	4,059	328	4,387	114.74
세종	0	0	0	0.00	0.00	0	0	0	0.00
경기	29,478	6,019	0	6,464.22	35,942.22	27,527	3,857	31,384	114.52
강원	13,506	1,746	0	1,829.03	15,335.03	10,589	1,271	11,860	129.30
충북	9,134	1,096	0	1,162.02	10,296.02	7,305	989	8,294	124.14
충남	10,750	927	0	947.56	11,697.56	9,471	773	10,244	114.19
전북	16,839	1,437	0	1,516.65	18,355.65	14,381	1,122	15,503	118.40
전남	17,270	1,035	0	1,060.46	18,330.46	15,210	830	16,040	114.28
경북	20,236	1,884	0	2,002.17	22,238.17	16,553	1,483	18,036	123.30
경남	15,941	1,225	1.07	1,312.21	17,253.21	15,343	844	16,187	106.59
제주	3,277	261	0	0.00	3,277.00	2,860	216	3,076	106.53

부록 2. 시·군·구별 주요 복지통계 <<

□ 일반행정 분야(조직인사관리)

○ 지자체 조직관리 효율화 및 사회복지직렬 확보

〈부표 2-1-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단위: 명, %)

	사회복지직렬 현원(A)	사회복지직렬 정원(B)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A/B) × 100
계	1,825	1,939	94.12
종로구	45	49	91.84
중구	40	46	86.96
용산구	60	64	93.75
성동구	65	72	90.28
광진구	53	61	86.89
동대문구	103	94	109.57
종랑구	81	80	101.25
성북구	96	79	121.52
강북구	76	83	91.57
도봉구	57	62	91.94
노원구	129	144	89.58
은평구	82	92	89.13
서대문구	49	56	87.50
마포구	78	81	96.30
양천구	60	70	85.71
강서구	121	120	100.83
구로구	59	74	79.73
금천구	64	72	88.89
영등포구	76	76	100.00
동작구	67	69	97.10
관악구	86	98	87.76
서초구	44	49	89.80
강남구	80	93	86.02
송파구	81	81	100.00
강동구	73	74	98.65

〈부표 2-1-2〉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단위: 명, %)

	사회복지직렬 현원(A)	사회복지직렬 정원(B)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A/B) × 100
계	1,039	1,044	99.52
중구	27	28	96.43
서구	58	60	96.67
동구	64	60	106.67
영도구	61	61	100.00
부산진구	100	106	94.34
동래구	53	53	100.00
남구	65	66	98.48
북구	100	100	100.00
해운대구	91	92	98.91
사하구	104	104	100.00
금정구	70	70	100.00
강서구	30	30	100.00
연제구	58	59	98.31
수영구	41	40	102.50
사상구	78	76	102.63
기장군	39	39	100.00

〈부표 2-1-3〉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단위: 명, %)

	사회복지직렬 현원(A)	사회복지직렬 정원(B)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A/B) × 100
계	658	688	95.64
중구	39	41	95.12
동구	92	96	95.83
서구	66	67	98.51
남구	55	55	100.00
북구	97	103	94.17
수성구	105	112	93.75
달서구	147	155	94.84
달성군	57	59	96.61

〈부표 2-1-4〉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단위: 명, %)

	사회복지직렬 현원(A)	사회복지직렬 정원(B)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A/B) × 100
계	619	624	99.20
중구	41	41	100.00
동구	37	37	100.00
남구	91	91	100.00
연수구	61	61	100.00
남동구	95	95	100.00
부평구	117	124	94.35
계양구	54	54	100.00
서구	72	71	101.41
강화군	29	29	100.00
옹진군	22	21	104.76

〈부표 2-1-5〉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단위: 명, %)

	사회복지직렬 현원(A)	사회복지직렬 정원(B)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A/B) × 100
계	408	404	100.99
동구	45	47	95.74
서구	83	87	95.40
남구	59	42	140.48
북구	125	131	95.42
광산구	96	97	98.97

〈부표 2-1-6〉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단위: 명, %)

	사회복지직렬 현원(A)	사회복지직렬 정원(B)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A/B) × 100
계	374	373	100.27
동구	101	101	100.00
중구	78	77	101.30
서구	85	85	100.00
유성구	51	51	100.00
대덕구	59	59	100.00

〈부표 2-1-7〉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단위: 명, %)

	사회복지직렬 현원(A)	사회복지직렬 정원(B)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A/B) × 100
계	206	230	89.57
중구	44	53	83.02
남구	42	51	82.35
동구	35	38	92.11
북구	30	33	90.91
울주군	55	55	100.00

〈부표 2-1-8〉 세종시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단위: 명, %)

	사회복지직렬 현원(A)	사회복지직렬 정원(B)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A/B) × 100
계	50	50	100.00

〈부표 2-1-9〉 경기도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단위: 명, %)

	사회복지직렬 현원(A)	사회복지직렬 정원(B)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A/B) × 100
계	2,431	2,500	97.24
수원시	168	171	98.25
성남시	178	182	97.80
고양시	149	156	95.51
용인시	152	161	94.41
부천시	229	229	100.00
안산시	138	142	97.18
안양시	104	108	96.30
남양주시	110	121	90.91
화성시	98	99	98.99
평택시	91	92	98.91
의정부시	82	89	92.13
시흥시	65	65	100.00
파주시	72	72	100.00
광명시	61	69	88.41
김포시	40	40	100.00
군포시	60	60	100.00
광주시	56	56	100.00
이천시	49	45	108.89
양주시	42	48	87.50
오산시	42	44	95.45
구리시	44	42	104.76
안성시	64	66	96.97
포천시	52	52	100.00

의왕시	27	30	90.00
하남시	45	45	100.00
여주시	42	42	100.00
양평군	38	38	100.00
동두천시	40	40	100.00
과천시	19	20	95.00
가평군	40	39	102.56
연천군	34	37	91.89

〈부표 2-1-10〉 강원도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단위: 명, %)

	사회복지직렬 현원(A)	사회복지직렬 정원(B)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A/B) × 100
계	681	712	95.65
춘천시	75	78	96.15
원주시	93	95	97.89
강릉시	65	70	92.86
동해시	43	46	93.48
태백시	27	26	103.85
속초시	36	40	90.00
삼척시	38	43	88.37
홍천군	43	43	100.00
횡성군	30	30	100.00
영월군	36	32	112.50
평창군	30	30	100.00
정선군	28	28	100.00
철원군	29	31	93.55
화천군	22	30	73.33
양구군	15	15	100.00
인제군	30	31	96.77
고성군	21	21	100.00
양양군	20	23	86.96

〈부표 2-1-11〉 충청북도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단위: 명, %)

	사회복지직렬 현원(A)	사회복지직렬 정원(B)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A/B) × 100
계	532	543	97.97
청주시	127	129	98.45
충주시	65	66	98.48
제천시	56	57	98.25
청원군	54	54	100.00
보은군	29	31	93.55
옥천군	33	33	100.00
영동군	28	28	100.00
증평군	22	22	100.00
진천군	26	27	96.30
괴산군	31	31	100.00
음성군	38	38	100.00
단양군	23	27	85.19

〈부표 2-1-12〉 충청남도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단위: 명, %)

	사회복지직렬 현원(A)	사회복지직렬 정원(B)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A/B) × 100
계	795	808	98.39
천안시	112	115	97.39
공주시	51	54	94.44
보령시	60	65	92.31
아산시	80	80	100.00
서산시	74	74	100.00
논산시	61	65	93.85
계룡시	21	18	116.67
당진시	51	43	118.60
금산군	44	44	100.00
부여군	49	51	96.08
서천군	53	56	94.64
청양군	25	29	86.21
홍성군	40	41	97.56
예산군	41	42	97.62
태안군	33	31	106.45

〈부표 2-1-13〉 전라북도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단위: 명, %)

	사회복지직렬 현원(A)	사회복지직렬 정원(B)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A/B) × 100
계	869	936	92.84
전주시	167	170	98.24
군산시	96	117	82.05
익산시	111	119	93.28
정읍시	91	99	91.92
남원시	64	63	101.59
김제시	72	76	94.74
완주군	47	57	82.46
진안군	24	27	88.89
무주군	25	28	89.29
장수군	21	22	95.45
임실군	29	36	80.56
순창군	36	35	102.86
고창군	42	43	97.67
부안군	44	44	100.00

〈부표 2-1-14〉 전라남도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단위: 명, %)

	사회복지직렬 현원(A)	사회복지직렬 정원(B)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A/B) × 100
계	1,130	1,172	96.42
목포시	106	105	100.95
여주시	98	105	93.33
순천시	80	86	93.02
나주시	73	77	94.81
광양시	48	48	100.00
담양군	41	40	102.50
곡성군	38	39	97.44
구례군	29	32	90.63
고흥군	52	52	100.00
보성군	38	43	88.37
화순군	49	52	94.23
장흥군	38	38	100.00
강진군	34	37	91.89
해남군	50	50	100.00
영암군	45	53	84.91
무안군	53	46	115.22
함평군	32	35	91.43
영광군	54	50	108.00
장성군	42	44	95.45
완도군	52	54	96.30
진도군	31	33	93.94
신안군	47	53	88.68

〈부표 2-1-15〉 경상북도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단위: 명, %)

	사회복지직렬 현원(A)	사회복지직렬 정원(B)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A/B) × 100
계	1,222	1,241	98.47
포항시	142	148	95.95
경주시	90	81	111.11
김천시	60	64	93.75
안동시	80	82	97.56
구미시	90	90	100.00
영주시	59	59	100.00
영천시	54	57	94.74
상주시	55	56	98.21
문경시	50	53	94.34
경산시	101	101	100.00
군위군	25	25	100.00
의성군	52	55	94.55
청송군	26	26	100.00
영양군	29	29	100.00
영덕군	40	35	114.29
청도군	34	34	100.00
고령군	28	28	100.00
성주군	29	34	85.29
칠곡군	51	53	96.23
예천군	38	38	100.00
봉화군	32	32	100.00
울진군	47	50	94.00
울릉군	10	11	90.91

〈부표 2-1-16〉 경상남도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단위: 명, %)

	사회복지직렬 현원(A)	사회복지직렬 정원(B)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A/B) × 100
계	1,121	1,180	95.00
창원시	245	258	94.96
진주시	88	105	83.81
통영시	52	57	91.23
사천시	55	64	85.94
김해시	120	119	100.84
밀양시	63	59	106.78
거제시	62	67	92.54
양산시	58	61	95.08
의령군	33	35	94.29
함안군	40	41	97.56
창녕군	37	45	82.22
고성군	37	43	86.05
남해군	46	30	153.33
하동군	32	34	94.12
함양군	33	35	94.29
산청군	40	40	100.00
거창군	42	44	95.45
합천군	38	43	88.37

〈부표 2-1-1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단위: 명, %)

	사회복지직렬 현원(A)	사회복지직렬 정원(B)	사회복지직 확보(배치) 비율 (A/B) × 100
계	0	0	0.00
제주시	0	0	0.00
서귀포시	0	0	0.00

□ 사회복지 분야(복지기반조성)

○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부표 2-2-1〉 서울특별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25,577,318	21,010,197	82.14
종로구	518,705	340,370	65.62
중구	410,026	339,114	82.71
용산구	341,370	245,443	71.90
성동구	417,024	351,996	84.41
광진구	596,492	482,031	80.81
동대문구	1,095,731	812,077	74.11
종랑구	1,319,262	1,137,880	86.25
성북구	1,394,469	1,162,771	83.38
강북구	677,384	610,766	90.17
도봉구	1,309,897	1,059,014	80.85
노원구	1,618,542	1,448,972	89.52
은평구	1,305,001	1,156,528	88.62
서대문구	1,010,882	783,469	77.50
마포구	1,342,560	1,041,362	77.57
양천구	1,311,472	1,104,313	84.20
강서구	1,217,616	1,032,165	84.77
구로구	1,477,018	1,131,438	76.60
금천구	1,158,246	935,398	80.76
영등포구	1,299,158	1,042,367	80.23
동작구	766,416	677,341	88.38
관악구	1,398,176	1,187,831	84.96
서초구	571,889	473,400	82.78
강남구	825,819	703,320	85.17
송파구	908,075	751,814	82.80
강동구	1,286,089	999,017	77.68

〈부표 2-2-2〉 부산광역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20,857,192	18,661,482	89.47
중구	391,676	332,190	84.81
서구	607,644	532,911	87.70
동구	681,852	604,908	88.72
영도구	1,475,699	1,383,615	93.76
부산진구	1,624,475	1,442,125	88.77
동래구	1,251,006	1,141,703	91.26
남구	1,830,143	1,659,605	90.68
북구	1,866,225	1,768,102	94.74
해운대구	2,280,379	2,020,959	88.62
사하구	1,876,674	1,655,382	88.21
금정구	1,451,768	1,347,850	92.84
강서구	781,555	604,494	77.35
연제구	919,868	837,809	91.08
수영구	1,235,085	1,093,498	88.54
사상구	1,526,754	1,361,785	89.19
기장군	1,056,390	874,545	82.79

〈부표 2-2-3〉 대구광역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16,936,447	15,658,444	92.45
중구	652,834	557,125	85.34
동구	2,702,056	2,580,206	95.49
서구	1,660,778	1,516,205	91.29
남구	1,678,653	1,653,095	98.48
북구	2,413,703	2,201,911	91.23
수성구	2,322,613	2,200,026	94.72
달서구	3,393,175	3,157,682	93.06
달성군	2,112,635	1,792,193	84.83

〈부표 2-2-4〉 인천광역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13,829,571	12,620,518	91.26
중구	745,460	644,692	86.48
동구	790,288	604,159	76.45
남구	1,860,585	1,677,931	90.18
연수구	1,477,112	1,321,975	89.50
남동구	2,198,357	2,090,559	95.10
부평구	2,299,377	2,128,412	92.56
계양구	1,624,596	1,585,689	97.61
서구	2,282,582	2,109,141	92.40
강화군	251,113	203,156	80.90
옹진군	300,101	254,803	84.91

〈부표 2-2-5〉 광주광역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14,300,619	14,299,593	99.99
동구	1,464,299	1,194,684	81.59
서구	3,005,727	3,066,929	102.04
남구	2,326,701	2,154,447	92.60
북구	3,806,644	3,913,474	102.81
광산구	3,697,248	3,970,058	107.38

〈부표 2-2-6〉 대전광역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20,485,785	19,522,724	95.30
동구	3,960,518	3,871,912	97.76
중구	4,487,787	4,103,252	91.43
서구	5,299,723	5,132,550	96.85
유성구	3,448,673	3,233,543	93.76
대덕구	3,289,084	3,181,466	96.73

〈부표 2-2-7〉 울산광역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6,952,462	5,800,682	83.43
중구	1,176,207	990,630	84.22
남구	1,586,716	1,406,590	88.65
동구	1,101,545	932,158	84.62
북구	1,173,424	927,028	79.00
울주군	1,914,570	1,544,275	80.66

〈부표 2-2-8〉 세종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647,141	623,157	96.29

〈부표 2-2-9〉 경기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41,777,373	40,001,228	95.75
수원시	3,614,181	3,709,082	102.63
성남시	2,448,894	2,343,845	95.71
고양시	2,233,048	1,998,310	89.49
용인시	2,227,873	1,986,896	89.18
부천시	3,948,639	4,218,319	106.83
안산시	2,354,275	2,375,098	100.88
안양시	1,669,907	1,576,931	94.43
남양주시	1,860,964	1,899,138	102.05
화성시	2,096,303	1,878,191	89.60
평택시	1,097,267	1,201,738	109.52
의정부시	1,888,621	1,893,976	100.28
시흥시	2,481,021	2,217,637	89.38
파주시	1,123,418	1,126,529	100.28
광명시	2,123,749	1,955,326	92.07
김포시	1,043,800	971,794	93.10
군포시	1,248,660	1,119,008	89.62
광주시	1,065,295	895,164	84.03
이천시	558,866	561,871	100.54
양주시	1,044,316	934,779	89.51

242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오산시	492,890	380,085	77.11
구리시	1,314,684	1,213,816	92.33
안성시	669,701	654,847	97.78
포천시	601,805	563,982	93.72
의왕시	542,902	505,735	93.15
하남시	396,118	336,896	85.05
여주시	515,484	470,672	91.31
양평군	339,997	314,862	92.61
동두천시	486,874	455,481	93.55
과천시	54,227	44,251	81.60
가평군	147,365	113,046	76.71
연천군	86,229	83,920	97.32

〈부표 2-2-10〉 강원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11,845,664	9,374,423	79.14
춘천시	1,906,350	1,723,120	90.39
원주시	2,766,857	2,428,753	87.78
강릉시	1,165,685	846,800	72.64
동해시	779,062	712,301	91.43
태백시	170,589	133,982	78.54
속초시	406,499	331,334	81.51
삼척시	410,319	372,321	90.74
홍천군	300,262	213,426	71.08
횡성군	509,003	403,683	79.31
영월군	570,110	380,211	66.69
평창군	372,707	185,991	49.90
정선군	185,879	135,550	72.92
철원군	503,246	407,499	80.97
화천군	274,033	227,523	83.03
양구군	304,406	238,536	78.36
인제군	294,350	243,832	82.84
고성군	575,148	241,801	42.04
양양군	351,159	147,760	42.08

〈부표 2-2-11〉 충청북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12,818,294	11,129,054	86.82
청주시	3,555,129	3,384,356	95.20
충주시	2,222,145	1,917,445	86.29
제천시	1,335,037	1,276,205	95.59
청원군	1,971,312	1,389,241	70.47
보은군	269,922	234,961	87.05
옥천군	335,168	278,237	83.01
영동군	486,585	387,885	79.72
증평군	403,553	296,085	73.37
진천군	847,472	751,956	88.73
괴산군	153,998	128,637	83.53
음성군	647,722	557,952	86.14
단양군	590,251	526,097	89.13

〈부표 2-2-12〉 충청남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14,142,017	12,503,740	88.42
천안시	3,756,192	3,327,784	88.59
공주시	1,374,018	1,274,957	92.79
보령시	986,341	959,528	97.28
아산시	1,958,808	1,781,121	90.93
서산시	893,856	843,882	94.41
논산시	784,465	686,757	87.54
계룡시	213,493	157,886	73.95
당진시	697,386	659,729	94.60
금산군	628,625	497,920	79.21
부여군	335,317	259,243	77.31
서천군	624,915	569,421	91.12
청양군	407,304	349,591	85.83
홍성군	599,710	396,600	66.13
예산군	514,794	443,820	86.21
태안군	366,793	295,501	80.56

〈부표 2-2-13〉 전라북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16,978,829	16,167,998	95.22
전주시	3,783,214	3,817,993	100.92
군산시	2,945,221	2,895,425	98.31
익산시	1,995,638	1,954,586	97.94
정읍시	1,314,134	1,240,991	94.43
남원시	1,235,690	1,068,199	86.45
김제시	1,018,743	969,934	95.21
완주군	1,462,809	1,299,386	88.83
진안군	511,785	462,540	90.38
무주군	298,250	272,895	91.50
장수군	504,702	540,926	107.18
임실군	485,926	354,605	72.98
순창군	445,270	422,786	94.95
고창군	475,672	444,300	93.40
부안군	501,775	423,432	84.39

〈부표 2-2-14〉 전라남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20,119,595	17,747,496	88.21
목포시	2,288,951	1,653,105	72.22
여수시	1,662,130	1,411,029	84.89
순천시	1,620,017	1,433,100	88.46
나주시	1,015,685	1,002,456	98.70
광양시	614,389	607,834	98.93
담양군	889,054	807,716	90.85
곡성군	616,607	591,258	95.89
구례군	532,623	463,082	86.94
고흥군	802,245	707,902	88.24
보성군	607,690	502,585	82.70
화순군	849,928	749,093	88.14
장흥군	667,581	643,343	96.37
강진군	739,697	669,599	90.52
해남군	1,048,523	998,559	95.23
영암군	1,392,265	1,254,501	90.11
무안군	853,176	793,876	93.05
함평군	765,208	672,507	87.89
영광군	772,426	720,823	93.32
장성군	561,114	487,738	86.92

완도군	679,520	559,303	82.31
진도군	472,347	426,317	90.25
신안군	668,418	591,771	88.53

〈부표 2-2-15〉 경상북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17,527,429	15,037,829	85.80
포항시	2,629,705	2,030,046	77.20
경주시	2,252,641	2,016,588	89.52
김천시	1,367,293	1,099,712	80.43
안동시	1,117,991	984,254	88.04
구미시	2,552,285	2,272,243	89.03
영주시	427,885	344,778	80.58
영천시	529,147	425,202	80.36
상주시	498,599	411,342	82.50
문경시	400,943	356,836	89.00
경산시	1,932,493	1,818,795	94.12
군위군	182,841	163,772	89.57
의성군	354,340	337,730	95.31
청송군	124,224	110,861	89.24
영양군	74,103	62,610	84.49
영덕군	271,081	243,488	89.82
청도군	551,421	498,628	90.43
고령군	189,926	137,799	72.55
성주군	257,755	221,564	85.96
칠곡군	1,076,380	869,841	80.81
예천군	224,604	155,614	69.28
봉화군	160,414	158,474	98.79
울진군	338,718	306,953	90.62
울릉군	12,640	10,699	84.65

〈부표 2-2-16〉 경상남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17,895,283	15,795,564	88.27
창원시	5,879,223	5,337,766	90.79
진주시	2,185,432	1,946,922	89.09
통영시	723,717	549,878	75.98
사천시	675,836	606,625	89.76
김해시	2,591,818	2,335,165	90.10
밀양시	519,170	410,120	79.00
거제시	588,016	483,485	82.22
양산시	2,149,534	1,937,498	90.14
의령군	216,309	147,917	68.38
함안군	305,780	283,744	92.79
창녕군	169,399	137,656	81.26
고성군	236,371	190,171	80.45
남해군	244,252	197,595	80.90
하동군	268,742	233,581	86.92
함양군	326,352	284,343	87.13
산청군	265,679	276,152	103.94
거창군	401,871	323,167	80.42
합천군	147,782	113,779	76.99

〈부표 2-2-1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집행률(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단위: 천원, %)

	배정액(A)	집행액(B)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 (B/A)×100
계	6,907,000	6,460,545	93.54
제주시	4,758,970	4,466,605	93.86
서귀포시	2,148,030	1,993,940	92.83

〈부표 2-3-1〉 서울특별시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처리절차준수율 (A)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B)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화율(C)			
			㉡	㉠	㉢	(C)
계	97.79	70.97	40,790	612	42,705	97.67
종로구	93.45	57.48	1,095	0	1,095	100.00
중구	100.00	11.77	777	0	1,095	70.96
용산구	100.00	100.99	1,460	0	1,460	100.00
성동구	99.18	199.19	1,447	0	1,460	99.11
광진구	100.00	45.52	1,460	0	1,460	100.00
동대문구	98.51	9.46	1,429	0	1,460	97.88
중랑구	100.00	21.63	2,088	0	2,190	95.34
성북구	92.16	34.04	1,736	0	1,825	95.12
강북구	98.96	37.37	1,825	0	1,825	100.00
도봉구	90.10	98.45	1,429	0	1,460	97.88
노원구	100.00	72.35	2,555	0	2,555	100.00
은평구	96.83	90.86	1,744	0	1,825	95.56
서대문구	100.00	108.62	1,460	0	1,460	100.00
마포구	100.00	139.85	1,460	0	1,460	100.00
양천구	88.64	58.51	1,825	0	1,825	100.00
강서구	98.21	46.77	2,190	0	2,190	100.00
구로구	93.75	30.08	1,794	0	1,825	98.30
금천구	99.33	44.19	1,460	0	1,460	100.00
영등포구	100.00	125.79	1,789	0	1,825	98.03
동작구	99.50	79.20	1,763	0	1,825	96.60
관악구	96.19	153.51	2,082	0	2,190	95.07
서초구	100.00	9.26	1,460	0	1,460	100.00
강남구	97.06	49.02	848	612	1,825	96.77
송파구	99.48	82.77	2,190	0	2,190	100.00
강동구	98.96	100.88	1,424	0	1,460	97.53

주: 처리절차준수율(A)=[{((㉠×1)+(㉡×0.5))/㉢}×100,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B)=[(㉠+㉡+㉢)/㉢]×100, 통합사례 관리사업 중점대상자*×보정,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화율(C)=[(㉠+㉡×1.5))/㉢]×100이며, ㉠ 사례관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 ㉡ 사례관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후 사례관리계획 수립건수, ㉢ 사례관리가구: 사례관리 후보자*중 서비스연계가구와 미선정처리가구를 제외한 사례관리 대상 가구, ㉠ 읍면동 서비스연계 건수: 읍면동에서 자체 자원으로 지원한 서비스연계 건수(지역서비스 제공관리 등록-가구단위), ㉡ 시군구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건수: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사례관리가구로 구분되어 사례회의와 서비스제공계획이 이루어진 가구의 서비스 연계건수, ㉢ 시군구 서비스연계 건수: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시 단순서비스연계가구로 구분되어 사례회의와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없이 서비스연계 실시한 건수(지역서비스 제공관리 등록-가구단위), ㉢ 통합사례관리사업 중점대상자*: 시, 군, 구별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수급 탈락가구, ㉠ 반계약직 현원(현원 ×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근무일수의 합), ㉡ 무기계약직 현원(무기계약자 ×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근무일수의 합), ㉢ 시군구별 국고지원을 받는 통합사례관리사 배정 인원, ㉢ 통합사례관리사 배정규모 × 365일이다.

〈부표 2-3-2〉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처리절차준수율 (A)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B)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화율(C)			
			㉠	㉡	㉢	(C)
계	97.45	103.42	62	0	22,630	0.27
중구	95.65	150.67	2	0	730	0.27
서구	100.00	338.92	3	0	1,095	0.27
동구	100.00	141.27	3	0	1,095	0.27
영도구	100.00	63.33	3	0	1,095	0.27
부산진구	98.14	45.13	5	0	1,825	0.27
동래구	99.27	49.90	4	0	1,460	0.27
남구	100.00	171.74	4	0	1,460	0.27
북구	91.32	81.51	5	0	1,825	0.27
해운대구	87.27	58.90	6	0	2,190	0.27
사하구	99.58	99.16	5	0	1,825	0.27
금정구	100.00	80.31	4	0	1,460	0.27
강서구	100.00	99.52	3	0	1,095	0.27
연제구	100.00	113.82	3	0	1,095	0.27
수영구	100.00	165.33	3	0	1,095	0.27
사상구	98.90	108.21	5	0	1,825	0.27
기장군	100.00	89.63	4	0	1,460	0.27

주: 〈부표 2-3-1〉과 동일

〈부표 2-3-3〉 대구광역시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처리절차준수율 (A)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B)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화율(C)			
			㉠	㉡	㉢	(C)
계	98.34	93.70	12,842	0	13,140	97.73
중구	100.00	122.87	1,095	0	1,095	100.00
동구	94.44	52.94	1,732	0	1,825	94.90
서구	98.61	65.77	1,460	0	1,460	100.00
남구	100.00	116.14	1,095	0	1,095	100.00
북구	98.44	65.44	1,825	0	1,825	100.00
수성구	98.00	158.55	2,190	0	2,190	100.00
달서구	99.63	86.87	1,985	0	2,190	90.64
달성군	96.27	117.60	1,460	0	1,460	100.00

주: 〈부표 2-3-1〉과 동일.

〈부표 2-3-4〉 인천광역시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처리절차준수율 (A)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B)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화율(C)			
			㉡	㉠	㉠	(C)
계	97.13	92.67	15,007	0	15,330	97.89
중구	100.00	159.93	1,042	0	1,095	95.16
동구	99.21	186.21	1,089	0	1,095	99.45
남구	100.00	65.57	1,825	0	1,825	100.00
연수구	100.00	168.19	1,825	0	1,825	100.00
남동구	100.00	96.54	2,166	0	2,190	98.90
부평구	100.00	53.68	2,546	0	2,555	99.65
계양구	100.00	142.23	1,364	0	1,460	93.42
서구	100.00	53.03	1,447	0	1,460	99.11
강화군	70.59	43.35	973	0	1,095	88.86
옹진군	67.86	32.37	730	0	730	100.00

주: 〈부표 2-3-1〉과 동일.

〈부표 2-3-5〉 광주광역시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처리절차준수율 (A)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B)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화율(C)			
			㉡	㉠	㉠	(C)
계	99.44	82.76	1,345	6,685	8,395	135.47
동구	100.00	160.83	80	1,015	1,095	146.35
서구	98.71	116.02	150	1,675	1,825	145.89
남구	98.15	88.56	120	1,340	1,460	145.89
북구	100.00	45.83	150	1,675	2,190	121.58
광산구	99.71	72.38	845	980	1,825	126.85

주: 〈부표 2-3-1〉과 동일.

〈부표 2-3-6〉 대전광역시 지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처리절차준수율 (A)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B)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화율(C)			
			㉡	㉠	㉠	(C)
계	98.88	328.11	8,277	268	8,760	99.08
동구	97.02	376.89	1,781	0	1,825	97.59
중구	98.31	242.63	1,782	0	1,825	97.64
서구	100.00	477.28	2,159	0	2,190	98.58
유성구	99.65	229.43	1,095	268	1,460	102.53
대덕구	100.00	198.73	1,460	0	1,460	100.00

주: 〈부표 2-3-1〉과 동일.

〈부표 2-3-7〉 울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처리절차준수율 (A)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B)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화율(C)			
			㉡	㉠	㉢	(C)
계	100.00	126.94	4,937	2,372	6,570	129.30
중구	100.00	56.84	1,408	0	1,460	96.44
남구	100.00	106.51	1,340	180	1,460	110.27
동구	100.00	125.20	915	270	1,095	120.55
북구	100.00	111.60	546	824	1,095	162.74
울주군	100.00	270.40	728	1,098	1,460	162.67

주: 〈부표 2-3-1〉과 동일.

〈부표 2-3-8〉 세종시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처리절차준수율 (A)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B)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화율(C)			
			㉡	㉠	㉢	(C)
계	85.42	19.77	0	0	0	0.00

주: 〈부표 2-3-1〉과 동일.

〈부표 2-3-9〉 경기도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처리절차준수율 (A)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B)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화율(C)			
			㉡	㉠	㉢	(C)
계	98.45	276.07	63,754	3,236	70,810	96.89
수원시	99.72	191.65	7,539	0	7,665	98.36
성남시	100.00	355.42	2,715	2,760	6,570	104.34
고양시	95.82	266.03	4,640	0	5,840	79.45
용인시	94.46	989.72	5,744	0	5,840	98.36
부천시	96.02	87.47	5,840	0	5,840	100.00
안산시	98.42	185.41	3,982	0	4,380	90.91
안양시	100.00	284.56	2,784	0	2,920	95.34
남양주시	99.48	311.35	1,750	0	1,825	95.89
화성시	98.86	253.27	1,825	0	1,825	100.00
평택시	100.00	233.58	1,805	0	1,825	98.90
의정부시	98.31	60.51	1,780	0	1,825	97.53
시흥시	100.00	309.94	1,810	0	1,825	99.18
파주시	100.00	188.56	984	476	1,460	116.30
광명시	99.49	259.87	1,296	0	1,460	88.77
김포시	93.88	122.04	1,432	0	1,460	98.08
군포시	100.00	181.24	1,460	0	1,460	100.00
광주시	99.73	377.78	1,404	0	1,460	96.16
이천시	99.13	291.99	1,460	0	1,460	100.00

양주시	100.00	423.27	1,095	0	1,095	100.00
오산시	100.00	502.17	1,095	0	1,095	100.00
구리시	99.43	853.44	1,095	0	1,095	100.00
안성시	93.24	85.27	1,032	0	1,095	94.25
포천시	98.02	187.59	1,095	0	1,095	100.00
의왕시	98.36	405.10	1,056	0	1,095	96.44
하남시	99.57	153.16	1,095	0	1,095	100.00
여주시	96.77	145.85	1,095	0	1,095	100.00
양평군	100.00	235.98	1,095	0	1,095	100.00
동두천시	99.10	642.25	1,095	0	1,095	100.00
과천시	100.00	313.41	1,095	0	1,095	100.00
가평군	98.24	241.86	831	0	1,095	75.89
연천군	95.83	472.95	730	0	730	100.00

주: <부표 2-3-1>과 동일.

<부표 2-3-10> 강원도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처리절차준수율 (A)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B)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화율(C)			
			㉠	㉡	㉢	(C)
계	95.69	143.82	14,372	3,179	17,885	107.02
춘천시	99.43	54.89	1,805	0	1,825	98.90
원주시	100.00	43.47	1,819	0	1,825	99.67
강릉시	100.00	90.79	1,429	0	1,460	97.88
동해시	79.23	372.25	1,095	0	1,095	100.00
태백시	96.61	189.89	1,095	0	1,095	100.00
속초시	100.00	115.17	360	735	1,095	133.56
삼척시	84.62	72.49	973	122	1,095	105.57
홍천군	100.00	281.53	1,020	0	1,095	93.15
횡성군	91.84	242.72	342	365	730	121.85
영월군	91.67	294.13	0	730	730	150.00
평창군	95.45	449.98	649	0	730	88.90
정선군	98.15	78.35	730	0	730	100.00
철원군	85.94	162.38	730	0	730	100.00
화천군	98.98	444.79	546	184	730	112.60
양구군	91.67	251.61	62	668	730	145.75
인제군	96.51	190.00	329	334	730	113.70
고성군	100.00	361.88	658	41	730	98.56
양양군	97.37	308.34	730	0	730	100.00

주: <부표 2-3-1>과 동일.

〈부표 2-3-11〉 충청북도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처리절차준수율 (A)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B)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화율(C)			
			㉠	㉡	㉢	(C)
계	97.74	191.62	15,352	153	15,695	99.28
청주시	93.89	88.14	4,318	0	4,380	98.58
충주시	100.00	300.44	1,460	0	1,460	100.00
제천시	100.00	183.36	1,095	0	1,095	100.00
청원군	100.00	120.04	1,095	0	1,095	100.00
보은군	99.38	227.52	730	0	730	100.00
옥천군	98.82	281.97	1,095	0	1,095	100.00
영동군	100.00	353.50	998	0	1,095	91.14
증평군	100.00	190.55	699	0	730	95.75
진천군	99.02	311.36	1,095	0	1,095	100.00
괴산군	97.22	269.25	942	153	1,095	106.99
음성군	100.00	127.42	1,095	0	1,095	100.00
단양군	97.22	410.41	730	0	730	100.00

주: 〈부표 2-3-1〉과 동일.

〈부표 2-3-12〉 충청남도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처리절차준수율 (A)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B)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화율(C)			
			㉠	㉡	㉢	(C)
계	98.22	165.22	14,510	3,101	18,250	104.99
천안시	99.38	120.12	1,717	700	2,920	94.76
공주시	100.00	169.58	1,065	0	1,095	97.26
보령시	95.31	190.60	1,069	0	1,095	97.63
아산시	99.45	242.41	1,412	48	1,460	101.64
서산시	94.85	150.89	1,095	0	1,095	100.00
논산시	95.88	164.92	365	730	1,095	133.33
계룡시	96.30	29.37	730	0	730	100.00
당진시	96.05	164.14	1,015	0	1,095	92.69
금산군	100.00	121.21	1,095	0	1,095	100.00
부여군	98.39	511.25	1,095	0	1,095	100.00
서천군	98.00	123.67	397	698	1,095	131.87
청양군	98.08	35.87	1,095	0	1,095	100.00
홍성군	96.58	252.82	170	925	1,095	142.24
예산군	100.00	101.14	1,095	0	1,095	100.00
태안군	100.00	311.40	1,095	0	1,095	100.00

주: 〈부표 2-3-1〉과 동일.

〈부표 2-3-13〉 전라북도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처리절차준수율 (A)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B)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화율(C)			
			㉠	㉡	㉢	(C)
계	94.33	59.38	13,971	4,644	19,345	108.23
전주시	97.48	24.25	0	2,920	3,650	120.00
군산시	88.82	45.94	1,825	0	1,825	100.00
익산시	99.11	28.16	3,285	0	3,285	100.00
정읍시	99.80	69.44	1,196	264	1,460	109.04
남원시	97.00	90.37	1,095	0	1,095	100.00
김제시	94.58	40.21	0	1,460	1,460	150.00
완주군	95.35	144.19	730	0	730	100.00
진안군	86.59	145.94	730	0	730	100.00
무주군	96.49	161.59	730	0	730	100.00
장수군	100.00	201.72	730	0	730	100.00
임실군	77.67	152.75	730	0	730	100.00
순창군	93.70	216.74	730	0	730	100.00
고창군	84.02	96.54	1,095	0	1,095	100.00
부안군	85.59	86.94	1,095	0	1,095	100.00

주: 〈부표 2-3-1〉과 동일.

〈부표 2-3-14〉 전라남도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처리절차준수율 (A)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B)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화율(C)			
			㉠	㉡	㉢	(C)
계	96.72	112.81	61	3	23,360	0.28
목포시	94.63	52.65	5	0	1,825	0.27
여수시	100.00	73.57	5	0	1,825	0.27
순천시	100.00	67.26	5	0	1,825	0.27
나주시	96.67	78.17	3	0	1,095	0.27
광양시	99.25	40.68	3	0	1,095	0.27
담양군	94.23	184.85	2	0	730	0.27
곡성군	97.92	156.37	2	0	730	0.27
구례군	96.15	144.07	2	0	730	0.27
고흥군	95.65	319.86	3	0	1,095	0.27
보성군	97.25	469.74	3	0	1,095	0.27
화순군	100.00	220.57	3	0	1,095	0.27
장흥군	94.74	116.15	1	1	730	0.34
강진군	94.44	126.23	2	0	730	0.27
해남군	98.68	26.37	4	0	1,460	0.27
영암군	99.25	156.77	3	0	1,095	0.27
무안군	99.12	76.66	3	0	1,095	0.27
함평군	93.48	183.66	2	0	730	0.27
영광군	95.05	77.46	3	0	1,095	0.27
장성군	98.72	198.27	2	0	730	0.27
완도군	95.35	88.11	3	0	1,095	0.27

254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진도군	91.61	25.50	2	0	730	0.27
신안군	83.75	6.90	0	2	730	0.41

주: <부표 2-3-1>과 동일.

<부표 2-3-15> 경상북도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처리절차준수율 (A)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B)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화율(C)			
			㉞	㉟	㊱	(C)
계	95.94	129.68	24,853	561	25,550	100.57
포항시	96.05	140.84	4,015	0	4,015	100.00
경주시	100.00	232.88	1,460	0	1,460	100.00
김천시	94.89	148.21	1,095	0	1,095	100.00
안동시	95.56	53.85	1,095	0	1,095	100.00
구미시	99.01	67.17	1,460	0	1,460	100.00
영주시	97.33	177.75	1,095	0	1,095	100.00
영천시	97.56	134.86	1,095	0	1,095	100.00
상주시	99.40	157.61	1,095	0	1,095	100.00
문경시	100.00	138.86	1,095	0	1,095	100.00
경산시	97.22	197.96	1,460	0	1,460	100.00
군위군	92.94	150.50	730	0	730	100.00
의성군	94.59	107.69	1,095	0	1,095	100.00
청송군	100.00	75.97	730	0	730	100.00
영양군	99.07	72.10	730	0	730	100.00
영덕군	99.02	40.47	730	0	730	100.00
청도군	97.16	81.42	730	0	730	100.00
고령군	87.32	81.13	686	0	730	93.97
성주군	96.46	114.50	486	244	730	116.71
칠곡군	100.00	133.77	1,095	0	1,095	100.00
예천군	86.59	54.96	730	0	730	100.00
봉화군	95.83	110.92	730	0	730	100.00
울진군	97.54	68.62	1,003	0	1,095	91.60
울릉군	63.16	101.14	413	317	730	121.71

주: <부표 2-3-1>과 동일.

〈부표 2-3-16〉 경상남도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처리절차준수율 (A)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B)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화율(C)			
			㉠	㉡	㉢	(C)
계	98.87	94.18	56	13	25185	0.30
창원시	99.41	63.28	6	11	6205	0.36
진주시	98.85	27.09	5	0	1825	0.27
통영시	99.22	91.91	3	0	1095	0.27
사천시	100.00	115.94	3	0	1095	0.27
김해시	99.12	56.64	5	0	1825	0.27
밀양시	98.70	34.62	3	0	1095	0.27
거제시	98.08	185.51	3	0	1095	0.27
양산시	100.00	94.84	4	0	1460	0.27
의령군	99.37	272.60	2	0	730	0.27
함안군	100.00	151.32	3	0	1095	0.27
창녕군	97.66	193.83	3	0	1095	0.27
고성군	99.40	89.06	3	0	1095	0.27
남해군	98.11	103.89	0	2	730	0.41
하동군	99.38	53.90	3	0	1095	0.27
함양군	100.00	499.93	2	0	730	0.27
산청군	100.00	99.77	2	0	730	0.27
거창군	100.00	225.97	3	0	1095	0.27
합천군	93.36	87.86	3	0	1095	0.27

주: 〈부표 2-3-1〉과 동일.

〈부표 2-3-17〉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실적

(단위: %, 건)

	처리절차준수율 (A)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적(B)	통합사례관리사 고용 및 안정화율(C)			
			㉠	㉡	㉢	(C)
계	100.00	91.13	3,285	0	3,285	100.00
제주시	100.00	83.83	2,190	0	2,190	100.00
서귀포시	100.00	106.50	1,095	0	1,095	100.00

주: 〈부표 2-3-1〉과 동일.

○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부표 2-4-1〉 서울특별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 × 100}
계	12	25	48.00
종로구	0	1	0.00
중구	0	1	0.00
용산구	0	1	0.00
성동구	1	1	100.00
광진구	1	1	100.00
동대문구	1	1	100.00
중랑구	1	1	100.00
성북구	0	1	0.00
강북구	1	1	100.00
도봉구	1	1	100.00
노원구	1	1	100.00
은평구	0	1	0.00
서대문구	0	1	0.00
마포구	0	1	0.00
양천구	0	1	0.00
강서구	0	1	0.00
구로구	0	1	0.00
금천구	1	1	100.00
영등포구	1	1	100.00
동작구	0	1	0.00
관악구	0	1	0.00
서초구	1	1	100.00
강남구	1	1	100.00
송파구	1	1	100.00
강동구	0	1	0.00

〈부표 2-4-2〉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1	16	6.25
중구	0	1	0.00
서구	0	1	0.00
동구	0	1	0.00
영도구	0	1	0.00
부산진구	0	1	0.00
동래구	0	1	0.00
남구	0	1	0.00
북구	0	1	0.00
해운대구	1	1	100.00
사하구	0	1	0.00
금정구	0	1	0.00
강서구	0	1	0.00
연제구	0	1	0.00
수영구	0	1	0.00
사상구	0	1	0.00
기장군	0	1	0.00

〈부표 2-4-3〉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3	8	37.50
중구	0	1	0.00
동구	1	1	100.00
서구	0	1	0.00
남구	1	1	100.00
북구	0	1	0.00
수성구	0	1	0.00
달서구	0	1	0.00
달성군	1	1	100.00

〈부표 2-4-4〉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5	10	.50.00
중구	1	1	100.00
동구	0	1	0.00
남구	0	1	0.00
연수구	0	1	0.00
남동구	1	1	100.00
부평구	1	1	100.00
계양구	0	1	0.00
서구	1	1	100.00
강화군	1	1	100.00
옹진군	0	1	0.00

〈부표 2-4-5〉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5	5	100.00
동구	1	1	100.00
서구	1	1	100.00
남구	1	1	100.00
북구	1	1	100.00
광산구	1	1	100.00

〈부표 2-4-6〉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1	5	20.00
동구	0	1	0.00
중구	0	1	0.00
서구	0	1	0.00
유성구	1	1	100.00
대덕구	0	1	0.00

〈부표 2-4-7〉 울산광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5	5	100.00
중구	1	1	100.00
남구	1	1	100.00
동구	1	1	100.00
북구	1	1	100.00
울주군	1	1	100.00

〈부표 2-4-8〉 세종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1	1	100.00

〈부표 2-4-9〉 경기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31	31	100.00
수원시	1	1	100.00
성남시	1	1	100.00
고양시	1	1	100.00
용인시	1	1	100.00
부천시	1	1	100.00
안산시	1	1	100.00
안양시	1	1	100.00
남양주시	1	1	100.00
화성시	1	1	100.00
평택시	1	1	100.00
의정부시	1	1	100.00
시흥시	1	1	100.00
파주시	1	1	100.00
광명시	1	1	100.00
김포시	1	1	100.00
군포시	1	1	100.00
광주시	1	1	100.00
이천시	1	1	100.00
양주시	1	1	100.00
오산시	1	1	100.00

구리시	1	1	100.00
안성시	1	1	100.00
포천시	1	1	100.00
의왕시	1	1	100.00
하남시	1	1	100.00
여주시	1	1	100.00
양평군	1	1	100.00
동두천시	1	1	100.00
과천시	1	1	100.00
가평군	1	1	100.00
연천군	1	1	100.00

〈부표 2-4-10〉 강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17	18	94.44
춘천시	1	1	100.00
원주시	1	1	100.00
강릉시	1	1	100.00
동해시	1	1	100.00
태백시	1	1	100.00
속초시	1	1	100.00
삼척시	1	1	100.00
홍천군	1	1	100.00
횡성군	0	1	0.00
영월군	1	1	100.00
평창군	1	1	100.00
정선군	1	1	100.00
철원군	1	1	100.00
화천군	1	1	100.00
양구군	1	1	100.00
인제군	1	1	100.00
고성군	1	1	100.00
양양군	1	1	100.00

〈부표 2-4-11〉 충청북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8	12	66.67
청주시	1	1	100.00
충주시	1	1	100.00
제천시	1	1	100.00
청원군	0	1	0.00
보은군	1	1	100.00
옥천군	0	1	0.00
영동군	1	1	100.00
증평군	1	1	100.00
진천군	1	1	100.00
괴산군	0	1	0.00
음성군	0	1	0.00
단양군	1	1	100.00

〈부표 2-4-12〉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15	15	100.00
천안시	1	1	100.00
공주시	1	1	100.00
보령시	1	1	100.00
아산시	1	1	100.00
서산시	1	1	100.00
논산시	1	1	100.00
계룡시	1	1	100.00
당진시	1	1	100.00
금산군	1	1	100.00
부여군	1	1	100.00
서천군	1	1	100.00
청양군	1	1	100.00
홍성군	1	1	100.00
예산군	1	1	100.00
태안군	1	1	100.00

〈부표 2-4-13〉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8	14	57.14
전주시	1	1	100.00
군산시	1	1	100.00
익산시	1	1	100.00
정읍시	1	1	100.00
남원시	1	1	100.00
김제시	1	1	100.00
완주군	0	1	0.00
진안군	1	1	100.00
무주군	0	1	0.00
장수군	0	1	0.00
임실군	0	1	0.00
순창군	0	1	0.00
고창군	0	1	0.00
부안군	1	1	100.00

〈부표 2-4-14〉 전라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5	22	22.73
목포시	0	1	0.00
여수시	1	1	100.00
순천시	1	1	100.00
나주시	0	1	0.00
광양시	1	1	100.00
담양군	0	1	0.00
곡성군	0	1	0.00
구례군	0	1	0.00
고흥군	0	1	0.00
보성군	0	1	0.00
화순군	0	1	0.00
장흥군	0	1	0.00
강진군	0	1	0.00
해남군	0	1	0.00
영암군	1	1	100.00
무안군	0	1	0.00
함평군	0	1	0.00
영광군	0	1	0.00
장성군	0	1	0.00
완도군	0	1	0.00
진도군	1	1	100.00
신안군	0	1	0.00

〈부표 2-4-15〉 경상북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23	23	100.00
포항시	1	1	100.00
경주시	1	1	100.00
김천시	1	1	100.00
안동시	1	1	100.00
구미시	1	1	100.00
영주시	1	1	100.00
영천시	1	1	100.00
상주시	1	1	100.00
문경시	1	1	100.00
경산시	1	1	100.00
군위군	1	1	100.00
의성군	1	1	100.00
청송군	1	1	100.00
영양군	1	1	100.00
영덕군	1	1	100.00
청도군	1	1	100.00
고령군	1	1	100.00
성주군	1	1	100.00
칠곡군	1	1	100.00
예천군	1	1	100.00
봉화군	1	1	100.00
울진군	1	1	100.00
울릉군	1	1	100.00

〈부표 2-4-16〉 경상남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12	18	66.67
창원시	1	1	100.00
진주시	1	1	100.00
통영시	0	1	0.00
사천시	0	1	0.00
김해시	1	1	100.00
밀양시	1	1	100.00
거제시	1	1	100.00
양산시	1	1	100.00
의령군	0	1	0.00
함안군	0	1	0.00
창녕군	1	1	100.00
고성군	0	1	0.00
남해군	1	1	100.00
하동군	1	1	100.00
함양군	0	1	0.00
산청군	1	1	100.00
거창군	1	1	100.00
합천군	1	1	100.00

〈부표 2-4-1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단위: 개, %)

	민간상근간사 배치지자체(A)	지자체 수(B)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상근간사 배치율 {(A/B)×100}
계	2	2	100.00
제주시	1	1	100.00
서귀포시	1	1	100.00

〈부표 2-5-1〉 서울특별시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단위: 천원, 명)

	'13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12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총액(A)	기부식품 이용자수(B)	기부식품 등 총액(C)	기부식품 이용자수(D)
계	31,669,615	60,000	25,420,545	29,931
종로구	1,156,500	1,947	526,722	824
중구	1,020,913	1,220	1,078,838	636
용산구	1,290,808	1,906	924,626	724
성동구	791,497	1,302	633,550	946
광진구	870,438	595	731,185	679
동대문구	983,552	1,847	483,671	400
종랑구	894,635	2,813	649,244	1,223
성북구	562,701	1,880	413,069	550
강북구	2,154,138	1,995	1,949,431	1,005
도봉구	7,216,317	11,944	6,677,362	5,465
노원구	738,200	2,266	795,784	1,871
은평구	545,215	1,368	306,578	965
서대문구	1,000,446	2,563	649,712	429
마포구	862,249	2,225	665,460	587
양천구	754,893	1,189	632,885	1,306
강서구	841,317	8,063	798,194	7,036
구로구	1,141,226	2,425	538,579	463
금천구	893,517	596	570,660	696
영등포구	1,572,702	3,585	1,242,948	1,202
동작구	704,219	2,676	443,536	731
관악구	1,054,258	1,498	772,673	617
서초구	673,672	253	606,448	248
강남구	2,442,930	2,402	2,361,923	630
송파구	788,103	522	408,683	458
강동구	715,169	920	558,784	240

〈부표 2-5-2〉 부산광역시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단위: 천원, 명)

	'13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12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총액(A)	기부식품 이용자수(B)	기부식품 등 총액(C)	기부식품 이용자수(D)
계	4,734,340	19,065	4,517,523	16,771
중구	169,569	1,228	134,280	635
서구	1,687,516	1,403	1,753,099	1,522
동구	220,801	242	112,351	242
영도구	111,943	1,433	155,023	1,398
부산진구	345,630	1,477	286,121	1,270
동래구	220,842	800	219,206	604
남구	363,617	1,914	325,792	1,417
북구	298,888	1,703	252,805	2,110
해운대구	341,054	1,478	383,533	1,177
사하구	308,393	1,450	291,550	1,418
금정구	81,504	1,084	136,158	1,495
강서구	48,079	132	67,858	87
연제구	71,525	350	59,574	226
수영구	114,949	1,185	70,251	724
사상구	224,586	2,727	165,579	1,708
기장군	125,444	459	104,343	738

〈부표 2-5-3〉 대구광역시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단위: 천원, 명)

	'13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12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총액(A)	기부식품 이용자수(B)	기부식품 등 총액(C)	기부식품 이용자수(D)
계	3,577,469	13,409	2,501,188	11,410
중구	416,369	2,495	391,031	1,349
동구	396,649	2,095	142,354	1,733
서구	0	0	0	0
남구	1,019,779	1,921	789,567	1,939
북구	456,804	1,817	304,470	1,753
수성구	177,249	1,138	93,518	1,066
달서구	1,027,144	1,982	702,672	1,895
달성군	83,475	1,961	77,576	1,675

〈부표 2-5-4〉 인천광역시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단위: 천원, 명)

	‘13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12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총액(A)	기부식품 이용자수(B)	기부식품 등 총액(C)	기부식품 이용자수(D)
계	5,409,832	17,164	4,792,867	15,300
중구	705,163	1,618	791,929	1,684
동구	363,499	1,902	370,074	1,597
남구	337,272	1,654	430,579	1,727
연수구	521,418	3,581	504,947	2,967
남동구	936,101	2,766	841,297	2,561
부평구	905,238	1,937	507,570	1,494
계양구	693,188	961	538,197	1,016
서구	643,093	1,352	559,370	1,056
강화군	304,860	1,393	248,904	1,198
옹진군	0	0	0	0

〈부표 2-5-5〉 광주광역시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단위: 천원, 명)

	‘13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12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총액(A)	기부식품 이용자수(B)	기부식품 등 총액(C)	기부식품 이용자수(D)
계	3,509,674	18,822	2,966,351	14,939
동구	328,050	1,978	272,868	1,253
서구	1,350,688	3,590	1,186,740	3,480
남구	347,924	2,219	216,351	1,098
북구	783,284	8,385	666,701	6,842
광산구	699,728	2,650	623,691	2,266

〈부표 2-5-6〉 대전광역시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단위: 천원, 명)

	‘13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12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총액(A)	기부식품 이용자수(B)	기부식품 등 총액(C)	기부식품 이용자수(D)
계	4,914,503	14,564	4,150,823	14,760
동구	1,016,087	3,572	1,075,451	4,952
중구	2,035,317	2,111	1,107,618	2,601
서구	622,251	3,453	633,356	2,540
유성구	847,517	2,857	959,704	2,796
대덕구	393,331	2,571	374,694	1,871

〈부표 2-5-7〉 울산광역시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단위: 천원, 명)

	'13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12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총액(A)	기부식품 이용자수(B)	기부식품 등 총액(C)	기부식품 이용자수(D)
계	2,549,332	10,514	1,616,352	8,268
중구	843,515	1,040	631,664	239
남구	763,136	2,251	415,249	1,917
동구	224,022	1,102	134,646	731
북구	231,506	2,458	141,536	1,655
울주군	487,153	3,663	293,257	3,726

〈부표 2-5-8〉 세종시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단위: 천원, 명)

	'13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12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총액(A)	기부식품 이용자수(B)	기부식품 등 총액(C)	기부식품 이용자수(D)
계	0	0	0	0

〈부표 2-5-9〉 경기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단위: 천원, 명)

	'13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12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총액(A)	기부식품 이용자수(B)	기부식품 등 총액(C)	기부식품 이용자수(D)
계	27,192,877	63,928	22,360,089	46,375
수원시	3,510,985	3,176	2,567,100	3,040
성남시	2,076,832	3,299	2,398,979	3,256
고양시	849,273	2,384	733,529	1,745
용인시	1,642,786	2,830	958,715	2,952
부천시	649,227	3,062	515,455	2,756
안산시	588,851	570	445,331	252
안양시	420,163	865	382,043	697
남양주시	774,052	2,537	626,192	1,360
화성시	828,901	3,006	868,851	2,596
평택시	1,288,664	2,603	1,065,945	2,384
의정부시	1,032,136	1,956	615,419	1,614
시흥시	1,101,222	3,026	1,197,181	2,077
파주시	1,269,560	5,162	1,283,843	4,737
광명시	1,420,893	1,557	936,910	321
김포시	976,671	3,479	618,937	1,857
군포시	436,858	3,325	619,478	1,041
광주시	2,106,001	1,469	1,905,237	2,094
이천시	1,686,166	1,886	1,064,570	1,354
양주시	339,869	1,824	243,761	1,595
오산시	126,776	853	97,156	311
구리시	226,966	1,966	141,660	972

안성시	508,435	2,047	473,846	839
포천시	365,695	1,651	604,089	467
의왕시	188,339	212	145,415	233
하남시	1,576,420	1,880	892,995	1,239
여주시	177,235	1,530	165,618	1,110
양평군	362,595	2,076	148,472	1,555
동두천시	367,780	1,273	466,453	617
과천시	46,531	518	33,207	370
가평군	54,920	1,075	39,980	356
연천군	192,075	831	103,722	578

〈부표 2-5-10〉 강원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단위: 천원, 명)

	'13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12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총액(A)	기부식품 이용자수(B)	기부식품 등 총액(C)	기부식품 이용자수(D)
계	2,310,424	22,648	1,882,845	18,791
춘천시	260,898	3,430	243,321	2,423
원주시	561,080	3,930	487,078	2,437
강릉시	450,107	1,939	183,014	1,755
동해시	120,665	666	132,398	388
태백시	60,296	251	49,594	518
속초시	39,600	524	39,900	631
삼척시	66,840	1,107	61,196	827
홍천군	202,589	1,283	139,110	1,204
횡성군	115,767	1,416	115,425	803
영월군	115,112	1,082	138,118	889
평창군	50,301	712	59,935	1,080
정선군	26,145	1,209	8,664	850
철원군	16,978	314	35,224	256
화천군	34,541	1,405	57,866	1,059
양구군	47,812	616	47,462	542
인제군	37,553	806	27,863	843
고성군	65,790	345	22,040	367
양양군	38,350	1,613	34,637	1,919

〈부표 2-5-11〉 충청북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단위: 천원, 명)

	'13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12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총액(A)	기부식품 이용자수(B)	기부식품 등 총액(C)	기부식품 이용자수(D)
계	5,482,470	25,325	5,124,542	18,272
청주시	2,582,499	4,826	2,605,802	6,971
충주시	441,141	4,736	213,187	1,555
제천시	504,735	2,069	423,828	1,497
청원군	92,023	1,107	95,765	899
보은군	18,228	1,177	63,014	898
옥천군	37,357	1,891	6,022	1,037
영동군	81,455	3,044	57,039	1,861
증평군	69,185	337	60,102	276
진천군	768,908	840	642,060	733
괴산군	249,214	1,485	215,642	775
음성군	623,487	1,780	661,080	937
단양군	14,238	2,033	81,001	833

〈부표 2-5-12〉 충청남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단위: 천원, 명)

	'13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12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총액(A)	기부식품 이용자수(B)	기부식품 등 총액(C)	기부식품 이용자수(D)
계	4,324,980	19,776	4,822,454	18,865
천안시	702,792	2,514	709,995	1,530
공주시	348,174	314	188,303	400
보령시	77,879	1,554	146,295	1,771
아산시	1,361,827	3,806	1,709,212	2,971
서산시	95,243	645	94,227	421
논산시	918,693	1,559	1,230,895	2,678
계룡시	0	0	0	0
당진시	168,559	1,160	105,592	1,149
금산군	19,995	143	4,710	106
부여군	17,826	937	37,982	1,358
서천군	158,416	2,506	140,371	1,392
청양군	83,256	1,779	20,223	1,524
홍성군	207,689	1,633	284,523	2,690
예산군	69,444	868	69,051	559
태안군	95,187	358	81,075	316

〈부표 2-5-13〉 전라북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단위: 천원, 명)

	'13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12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총액(A)	기부식품 이용자수(B)	기부식품 등 총액(C)	기부식품 이용자수(D)
계	5,078,961	29,798	3,747,506	21,923
전주시	1,188,683	10,893	1,065,223	3,431
군산시	258,991	969	226,860	2,664
익산시	880,874	3,992	603,430	2,745
정읍시	689,072	564	405,629	1,832
남원시	161,921	1,675	140,909	1,368
김제시	376,056	3,433	324,838	2,715
완주군	221,123	716	209,780	1,279
진안군	56,422	200	47,713	499
무주군	307,964	1,264	201,484	1,284
장수군	65,201	1,200	50,122	1,130
임실군	163,010	934	61,718	849
순창군	126,630	1,604	98,297	385
고창군	367,631	1,017	220,757	1,268
부안군	215,383	1,337	90,746	474

〈부표 2-5-14〉 전라남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단위: 천원, 명)

	'13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12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총액(A)	기부식품 이용자수(B)	기부식품 등 총액(C)	기부식품 이용자수(D)
계	3,188,803	27,477	2,556,518	23,168
목포시	443,731	1,568	513,047	1,174
여주시	314,808	3,889	246,638	2,950
순천시	581,542	2,145	218,886	1,127
나주시	139,621	1,770	223,894	1,831
광양시	176,638	1,391	186,541	1,550
담양군	94,053	698	40,131	341
곡성군	197,076	1,233	162,182	1,027
구례군	7,227	153	3,236	152
고흥군	52,912	1,464	11,030	1,195
보성군	54,194	3,483	56,948	3,743
화순군	94,326	275	130,317	155
장흥군	11,676	575	19,204	576
강진군	87,058	1,949	52,746	1,005
해남군	125,716	945	85,652	1,285
영암군	89,806	1,733	72,565	1,385
무안군	45,352	588	37,513	414
함평군	128,289	1,296	84,293	658
영광군	96,619	804	110,837	949
장성군	43,816	334	10,788	391
완도군	330,276	54	195,000	125
진도군	58,700	836	83,500	639
신안군	15,367	294	11,570	496

〈부표 2-5-15〉 경상북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단위: 천원, 명)

	'13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12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총액(A)	기부식품 이용자수(B)	기부식품 등 총액(C)	기부식품 이용자수(D)
계	3,335,287	32,892	3,093,143	23,849
포항시	796,091	4,080	744,928	3,641
경주시	95,039	1,975	76,097	1,826
김천시	191,199	7,190	301,881	4,739
안동시	172,208	2,001	392,803	1,139
구미시	613,594	2,679	438,342	1,901
영주시	179,385	1,028	209,494	963
영천시	75,885	979	63,207	968
상주시	165,273	2,153	128,433	1,948
문경시	48,417	2,076	51,589	1,628
경산시	646,819	4,248	408,010	1,450
군위군	0	0	0	0
의성군	31,802	261	29,707	623
청송군	0	0	0	0
영양군	0	0	0	0
영덕군	0	0	0	0
청도군	75,764	892	69,529	503
고령군	0	0	0	0
성주군	87,913	1,399	76,763	1,123
칠곡군	116,931	397	81,417	500
예천군	0	0	0	0
봉화군	0	0	0	0
울진군	38,967	1,534	20,943	897
울릉군	0	0	0	0

〈부표 2-5-16〉 경상남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단위: 천원, 명)

	'13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12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총액(A)	기부식품 이용자수(B)	기부식품 등 총액(C)	기부식품 이용자수(D)
계	5,073,877	16,987	2,404,656	15,256
창원시	1,860,162	2,504	952,564	3,303
진주시	158,389	1,042	249,355	991
통영시	122,466	1,242	101,888	1,036
사천시	295,366	1,996	134,557	1,356
김해시	287,265	1,151	215,186	1,251
밀양시	80,238	686	44,930	503
거제시	27,877	426	23,341	476
양산시	936,299	1,065	159,552	1,142
의령군	0	0	0	0
함안군	36,434	268	85,430	85
창녕군	936,299	1,065	159,552	1,142
고성군	28,053	1,418	19,822	389
남해군	139,694	581	52,745	581

하동군	40,115	1,179	43,866	991
함양군	19,829	357	41,267	100
산청군	0	0	0	0
거창군	97,779	1,846	116,396	1,751
합천군	7,612	161	4,205	159

〈부표 2-5-17〉 제주특별자치시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단위: 천원, 명)

	'13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12년 기부식품 등 모집 이용실적	
	기부식품 등 총액(A)	기부식품 이용자수(B)	기부식품 등 총액(C)	기부식품 이용자수(D)
계	1,117,348	5,337	1,080,428	4,536
제주시	1,015,790	3,948	964,354	3,762
서귀포시	101,558	1,389	116,074	774

〈부표 2-6-1〉 서울특별시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실적

(단위: 천원, 개소)

	자체예산 지원액		신고사업장 개소수	
	13년(A)	12년(B)	13년(C)	12년(D)
계	3,820,017	3,375,777	63	62
종로구	116,592	106,607	2	2
중구	120,092	112,612	2	2
용산구	123,405	114,590	2	2
성동구	120,802	125,424	2	2
광진구	109,751	101,770	2	2
동대문구	119,964	123,001	2	2
종량구	143,024	97,289	2	2
성북구	209,016	175,795	3	3
강북구	156,978	121,428	2	2
도봉구	205,945	178,441	4	4
노원구	211,120	160,438	5	4
은평구	182,003	165,307	3	3
서대문구	185,424	153,661	3	3
마포구	232,604	199,977	4	4
양천구	171,802	199,236	2	2
강서구	124,159	105,005	2	2
구로구	107,677	98,203	2	2
금천구	118,927	101,616	2	2
영등포구	182,010	147,442	2	2
동작구	132,211	115,741	2	2
관악구	115,012	95,220	2	2
서초구	107,194	91,020	2	2
강남구	307,989	298,312	4	4
송파구	110,742	87,062	3	3
강동구	105,574	100,580	2	2

〈부표 2-6-2〉 부산광역시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실적

(단위: 천원, 개소)

	자체예산 지원액		신고사업장 개소수	
	13년(A)	12년(B)	13년(C)	12년(D)
계	650,600	632,800	32	31
중구	55,000	52,000	2	2
서구	84,800	82,800	3	3
동구	4,000	2,000	1	1
영도구	54,000	52,000	3	3
부산진구	56,800	52,000	2	2
동래구	52,000	52,000	2	2
남구	54,000	52,000	2	2
북구	70,000	70,000	2	2
해운대구	53,000	52,000	2	2
사하구	54,000	54,000	2	2
금정구	52,000	52,000	2	2
강서구	2,000	2,000	1	1
연제구	3,000	2,000	2	2
수영구	2,000	2,000	2	1
사상구	52,000	52,000	2	2
기장군	2,000	2,000	2	2

〈부표 2-6-3〉 대구광역시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실적

(단위: 천원, 개소)

	자체예산 지원액		신고사업장 개소수	
	13년(A)	12년(B)	13년(C)	12년(D)
계	310,400	305,400	21	21
중구	106,000	106,000	3	3
동구	0	0	2	2
서구	0	0	1	1
남구	62,000	57,000	2	2
북구	20,000	20,000	4	4
수성구	0	0	3	3
달서구	62,400	62,400	3	3
달성군	60,000	60,000	3	3

〈부표 2-6-4〉 인천광역시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실적

(단위: 천원, 개소)

	자체예산 지원액		신고사업장 개소수	
	13년(A)	12년(B)	13년(C)	12년(D)
계	1,860,950	1,802,162	26	26
중구	131,180	126,226	2	2
동구	210,810	203,928	3	3
남구	210,810	203,928	3	3
연수구	210,810	203,928	3	3
남동구	361,810	355,320	4	4
부평구	210,810	203,928	3	3
계양구	131,180	126,226	2	2
서구	262,360	252,452	4	4
강화군	131,180	126,226	2	2
옹진군	0	0	0	0

〈부표 2-6-5〉 광주광역시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실적

(단위: 천원, 개소)

	자체예산 지원액		신고사업장 개소수	
	13년(A)	12년(B)	13년(C)	12년(D)
계	662,369	293,670	20	19
동구	33,800	9,600	1	1
서구	191,827	110,197	6	6
남구	67,600	19,200	2	2
북구	218,371	97,371	7	6
광산구	150,771	57,302	4	4

〈부표 2-6-6〉 대전광역시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실적

(단위: 천원, 개소)

	자체예산 지원액		신고사업장 개소수	
	13년(A)	12년(B)	13년(C)	12년(D)
계	855,033	775,033	16	16
동구	187,000	167,000	3	3
중구	148,033	138,033	4	4
서구	187,000	167,000	3	3
유성구	236,000	216,000	4	4
대덕구	97,000	87,000	2	2

〈부표 2-6-7〉 울산광역시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실적

(단위: 천원, 개소)

	자체예산 지원액		신고사업장 개소수	
	13년(A)	12년(B)	13년(C)	12년(D)
계	184,549	172,913	9	9
중구	33,000	25,300	2	2
남구	64,597	64,597	3	3
동구	10,080	12,180	1	1
북구	5,480	5,480	1	1
울주군	71,392	65,356	2	2

〈부표 2-6-8〉 세종시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실적

(단위: 천원, 개소)

	자체예산 지원액		신고사업장 개소수	
	13년(A)	12년(B)	13년(C)	12년(D)
계	0	0	0	0

〈부표 2-6-9〉 경기도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실적

(단위: 천원, 개소)

	자체예산 지원액		신고사업장 개소수	
	13년(A)	12년(B)	13년(C)	12년(D)
계	2,421,781	1,805,711	77	76
수원시	299,073	334,250	5	5
성남시	168,918	84,237	6	6
고양시	146,642	27,446	4	4
용인시	99,941	6,660	4	4
부천시	78,210	109,665	3	3
안산시	18,256	7,200	2	2
안양시	41,107	10,000	2	2
남양주시	32,826	25,303	5	5
화성시	167,000	150,000	4	4
평택시	164,400	147,200	4	4
의정부시	113,450	93,670	2	2
시흥시	123,167	119,742	4	4
파주시	106,600	106,000	3	3
광명시	143,200	117,743	3	2
김포시	37,000	16,000	1	1
군포시	22,000	0	1	1
광주시	72,463	78,118	3	3
이천시	150,508	81,397	3	3
양주시	29,297	67,780	2	2
오산시	0	0	1	1
구리시	7,000	0	2	2
안성시	53,800	43,000	2	2
포천시	56,000	15,000	1	1

의왕시	64,500	30,500	1	1
하남시	117,000	110,000	1	1
여주시	23,576	10,800	3	3
양평군	14,752	0	1	1
동두천시	29,315	9,000	1	1
과천시	0	5,000	1	1
가평군	17,780	0	1	1
연천군	24,000	0	1	1

〈부표 2-6-10〉 강원도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실적

(단위: 천원, 개소)

	자체예산 지원액		신고사업장 개소수	
	13년(A)	12년(B)	13년(C)	12년(D)
계	428,400	413,900	21	20
춘천시	50,000	50,000	1	1
원주시	60,000	60,000	3	2
강릉시	73,000	73,000	2	2
동해시	35,000	30,000	1	1
태백시	0	0	1	1
속초시	8,000	8,000	1	1
삼척시	15,000	15,000	1	1
홍천군	24,000	24,000	1	1
횡성군	30,000	30,000	1	1
영월군	10,000	10,000	1	1
평창군	10,000	10,000	1	1
정선군	12,000	8,000	1	1
철원군	10,000	10,000	1	1
화천군	0	0	1	1
양구군	40,400	40,400	1	1
인제군	13,000	10,000	1	1
고성군	28,000	28,000	1	1
양양군	10,000	7,500	1	1

〈부표 2-6-11〉 충청북도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실적

(단위: 천원, 개소)

	자체예산 지원액		신고사업장 개소수	
	13년(A)	12년(B)	13년(C)	12년(D)
계	622,401	545,150	31	30
청주시	170,000	166,843	9	8
충주시	1,800	1,200	2	2
제천시	169,000	162,000	2	2
청원군	35,571	20,008	3	3
보은군	25,000	25,000	1	1
옥천군	9,590	823	1	1
영동군	35,980	34,816	1	1
증평군	5,000	0	2	2
진천군	30,000	30,000	2	2
괴산군	47,200	46,200	3	3
음성군	23,260	23,260	2	2
단양군	70,000	35,000	3	3

〈부표 2-6-12〉 충청남도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실적

(단위: 천원, 개소)

	자체예산 지원액		신고사업장 개소수	
	13년(A)	12년(B)	13년(C)	12년(D)
계	691,085	691,125	26	25
천안시	101,225	121,700	4	3
공주시	132,179	132,179	2	2
보령시	50,000	50,000	3	3
아산시	167,444	167,444	1	1
서산시	15,000	15,000	1	1
논산시	0	0	3	3
계룡시	0	0	0	0
당진시	12,000	12,000	1	1
금산군	200	200	1	1
부여군	55,000	55,000	1	1
서천군	21,037	19,602	2	2
청양군	5,000	0	1	1
홍성군	65,000	62,000	3	3
예산군	42,000	31,000	2	2
태안군	25,000	25,000	1	1

〈부표 2-6-13〉 전라북도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실적

(단위: 천원, 개소)

	자체예산 지원액		신고사업장 개소수	
	13년(A)	12년(B)	13년(C)	12년(D)
계	498,240	497,740	21	20
전주시	81,660	81,160	3	3
군산시	16,660	16,660	1	1
익산시	66,660	66,660	2	2
정읍시	16,660	16,660	1	1
남원시	16,660	16,660	1	1
김제시	66,660	66,660	2	2
완주군	16,660	16,660	1	1
진안군	16,660	16,660	1	1
무주군	66,660	66,660	2	2
장수군	16,660	16,660	1	1
임실군	16,660	16,660	1	1
순창군	16,660	16,660	1	1
고창군	66,660	66,660	3	2
부안군	16,660	16,660	1	1

〈부표 2-6-14〉 전라남도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실적

(단위: 천원, 개소)

	자체예산 지원액		신고사업장 개소수	
	13년(A)	12년(B)	13년(C)	12년(D)
계	347,944	298,000	29	29
목포시	90,000	85,000	3	3
여수시	57,000	55,000	3	3
순천시	6,344	5,000	1	1
나주시	5,000	5,000	1	1
광양시	5,000	5,000	1	1
담양군	5,000	5,000	1	1
곡성군	5,000	5,000	1	1
구례군	5,000	5,000	1	1
고흥군	5,000	5,000	1	1
보성군	5,000	5,000	1	1
화순군	5,000	5,000	1	1
장흥군	5,000	5,000	2	2
강진군	5,000	5,000	2	2
해남군	5,000	5,000	1	1
영암군	5,000	5,000	1	1
무안군	8,000	8,000	1	1
함평군	10,000	5,000	1	1
영광군	55,000	55,000	2	2
장성군	5,000	5,000	1	1
완도군	10,000	10,000	1	1
진도군	41,600	5,000	1	1
신안군	5,000	5,000	1	1

〈부표 2-6-15〉 경상북도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실적

(단위: 천원, 개소)

	자체예산 지원액		신고사업장 개소수	
	13년(A)	12년(B)	13년(C)	12년(D)
계	515,043	480,029	24	24
포항시	155,705	135,392	6	6
경주시	5,000	5,000	1	1
김천시	6,700	6,000	1	1
안동시	5,700	4,000	1	1
구미시	90,000	90,000	2	2
영주시	50,320	47,972	2	2
영천시	6,700	5,000	1	1
상주시	3,000	3,000	1	1
문경시	1,700	1,200	1	1
경산시	174,838	172,865	3	3
군위군	0	0	0	0
의성군	1,500	0	1	1
청송군	0	0	0	0
영양군	0	0	0	0
영덕군	0	0	0	0
청도군	4,680	4,200	1	1
고령군	0	0	0	0
성주군	4,000	3,000	1	1
칠곡군	1,600	0	1	1
예천군	0	0	0	0
봉화군	0	0	0	0
울진군	3,600	2,400	1	1
울릉군	0	0	0	0

〈부표 2-6-16〉 경상남도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실적

(단위: 천원, 개소)

	자체예산 지원액		신고사업장 개소수	
	13년(A)	12년(B)	13년(C)	12년(D)
계	460,071	459,171	23	23
창원시	124,290	127,720	5	5
진주시	108,000	108,000	2	2
통영시	86,818	83,270	2	2
사천시	5,000	5,000	1	1
김해시	71,990	71,698	2	2
밀양시	4,800	4,800	1	1
거제시	3,253	2,495	1	1
양산시	13,000	13,000	1	1
의령군	0	0	0	0
함안군	0	0	1	1
창녕군	0	0	0	0

282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고성군	23,520	24,788	1	1
남해군	5,400	5,400	1	1
하동군	10,000	10,000	1	1
함양군	0	0	1	1
산청군	0	0	0	0
거창군	0	0	2	2
합천군	4,000	3,000	1	1

〈부표 2-6-17〉 제주특별자치시 기부식품 제공사업 지원 실적

(단위: 천원, 개소)

	자체예산 지원액		신고사업장 개소수	
	13년(A)	12년(B)	13년(C)	12년(D)
계	239,000	219,000	6	6
제주시	146,000	140,000	4	4
서귀포시	93,000	79,000	2	2

□ 사회복지 분야(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업무의 적절성

〈부표 2-7-1〉 서울특별시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신규 수급자 수(A)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B)	부양의무자재산기준완화 신규수급자수(C)
계	25,111	23,565	1,020
종로구	522	545	8
중구	462	502	7
용산구	767	810	29
성동구	819	718	38
광진구	777	718	28
동대문구	1,302	1,244	59
중랑구	1,201	1,132	57
성북구	1,626	1,267	68
강북구	1,481	1,230	66
도봉구	689	660	42
노원구	1,750	1,631	102
은평구	1,592	1,476	93
서대문구	1,242	1,064	42
마포구	955	933	37
양천구	759	895	38
강서구	967	1,027	53
구로구	744	722	26
금천구	924	967	31
영등포구	1,208	1,174	30
동작구	781	770	36
관악구	1,167	1,143	47
서초구	395	359	11
강남구	1,176	1,013	12
송파구	779	760	29
강동구	1,026	805	31

〈부표 2-7-2〉 부산광역시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신규 수급자 수(A)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B)	부양의무자재산기준완화 신규수급자수(C)
계	11,731	13,457	408
중구	235	243	5
서구	570	884	12
동구	699	751	24
영도구	620	682	19
부산진구	1,379	1,518	63
동래구	667	680	21
남구	682	757	21
북구	1,175	1,365	50
해운대구	1,400	1,556	44
사하구	978	1,240	51
금정구	744	847	21
강서구	192	232	7
연제구	708	759	15
수영구	504	550	17
사상구	834	980	32
기장군	344	413	6

〈부표 2-7-3〉 대구광역시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신규 수급자 수(A)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B)	부양의무자재산기준완화 신규수급자수(C)
계	8,461	9,683	262
중구	423	501	14
동구	1,116	1,393	29
서구	1,054	1,079	22
남구	1,061	1,148	32
북구	1,113	1,264	47
수성구	1,481	1,703	45
달서구	1,742	1,981	60
달성군	471	614	13

〈부표 2-7-4〉 인천광역시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신규 수급자 수(A)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B)	부양의무자재산기준완화 신규수급자수(C)
계	8,113	8,184	251
중구	696	647	18
동구	194	214	1
남구	1,105	1,150	36
연수구	763	786	14
남동구	1,348	1,529	37
부평구	1,664	1,714	58
계양구	821	659	44
서구	1,225	1,109	29
강화군	277	338	14
옹진군	20	38	0

〈부표 2-7-5〉 광주광역시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신규 수급자 수(A)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B)	부양의무자재산기준완화 신규수급자수(C)
계	5,498	6,037	198
동구	780	862	26
서구	1,112	1,249	37
남구	982	1,096	40
북구	1,651	1,794	57
광산구	973	1,036	38

〈부표 2-7-6〉 대전광역시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신규 수급자 수(A)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B)	부양의무자재산기준완화 신규수급자수(C)
계	4,058	4,521	131
동구	1,311	1,405	39
중구	896	1,029	25
서구	936	941	35
유성구	405	458	15
대덕구	510	688	17

〈부표 2-7-7〉 울산광역시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신규 수급자 수(A)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B)	부양의무자재산기준완화 신규수급자수(C)
계	1,619	1,760	48
중구	444	499	11
남구	439	494	15
동구	217	193	5
북구	179	207	4
울주군	340	367	13

〈부표 2-7-8〉 세종시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신규 수급자 수(A)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B)	부양의무자재산기준완화 신규수급자수(C)
계	0	0	0

〈부표 2-7-9〉 경기도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신규 수급자 수(A)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B)	부양의무자재산기준완화 신규수급자수(C)
계	19,346	20,864.668	493
수원시	1,430	1,549	24
성남시	1,619	1,757.333	33
고양시	1,474	1,479	49
용인시	430	514.333	9
부천시	1,386	1,383	43
안산시	1,508	1,556	35
안양시	695	887.667	20
남양주시	911	1,056.667	29
화성시	535	547.667	7
평택시	974	957	17
의정부시	948	1,066.667	37
시흥시	785	716	20
파주시	859	858.667	12
광명시	437	464.333	15
김포시	701	704	16
군포시	414	458.667	13
광주시	353	475	7
이천시	340	404	8
양주시	336	423.333	12
오산시	275	322.667	1
구리시	357	362.333	12

안성시	458	471.333	10
포천시	461	524.667	9
의왕시	129	154.667	7
하남시	168	213	2
여주시	370	359.667	12
양평군	233	264.333	16
동두천시	422	461	10
과천시	64	71.667	1
가평군	176	258.667	5
연천군	98	142.333	2

〈부표 2-7-10〉 강원도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신규 수급자 수(A)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B)	부양의무자재산기준완화 신규수급자수(C)
계	5,329	6,131	91
춘천시	1,236	1,345	30
원주시	981	1,198	16
강릉시	577	694	9
동해시	291	312	1
태백시	184	181	5
속초시	486	484	4
삼척시	250	344	5
홍천군	159	214	2
횡성군	146	188	4
영월군	117	108	0
평창군	118	148	0
정선군	120	133	1
철원군	152	187	5
화천군	79	86	0
양구군	113	109	2
인제군	83	117	2
고성군	119	155	1
양양군	118	128	4

〈부표 2-7-11〉 충청북도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신규 수급자 수(A)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B)	부양의무자재산기준완화 신규수급자수(C)
계	3,684	4,518	68
청주시	1,045	1,305	28
충주시	566	704	10
제천시	520	622	4
청원군	301	366	6
보은군	101	116	2
옥천군	81	139	7
영동군	164	209	1
증평군	60	85	2
진천군	179	229	1
괴산군	191	178	2
음성군	396	418	4
단양군	80	147	1

〈부표 2-7-12〉 충청남도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신규 수급자 수(A)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B)	부양의무자재산기준완화 신규수급자수(C)
계	4,375	5,187	101
천안시	1,014	1,140	20
공주시	349	409	9
보령시	331	457	7
아산시	621	688	8
서산시	240	316	8
논산시	423	515	13
계룡시	37	48	4
당진시	212	240	12
금산군	131	165	7
부여군	225	282	4
서천군	175	220	1
청양군	59	70	0
홍성군	211	234	3
예산군	143	224	1
태안군	204	179	4

〈부표 2-7-13〉 전라북도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신규 수급자 수(A)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B)	부양의무자재산기준완화 신규수급자수(C)
계	6,141	7,210	172
전주시	1,797	2,080	58
군산시	904	1,028	11
익산시	1,000	1,165	28
정읍시	478	652	18
남원시	424	449	8
김제시	382	521	21
완주군	280	318	6
진안군	93	100	4
무주군	75	93	1
장수군	82	100	1
임실군	147	177	2
순창군	68	86	2
고창군	191	222	6
부안군	220	219	6

〈부표 2-7-14〉 전라남도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신규 수급자 수(A)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B)	부양의무자재산기준완화 신규수급자수(C)
계	5,716	6,735	118
목포시	1,030	1,035	26
여수시	859	1,083	19
순천시	546	568	5
나주시	367	461	8
광양시	278	335	3
담양군	103	154	3
곡성군	95	110	4
구례군	76	98	3
고흥군	234	283	2
보성군	153	219	8
화순군	187	243	5
장흥군	190	215	3
강진군	151	159	2
해남군	189	291	1
영암군	175	152	0
무안군	150	202	2
함평군	111	147	7
영광군	252	295	9
장성군	147	211	1
완도군	164	202	2

진도군	112	126	3
신안군	147	146	2

〈부표 2-7-15〉 경상북도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신규 수급자 수(A)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B)	부양의무자재산기준완화 신규수급자수(C)
계	7,128	8,311	165
포항시	1,184	1,425	27
경주시	634	783	16
김천시	493	499	14
안동시	502	584	12
구미시	789	834	11
영주시	343	428	15
영천시	360	444	11
상주시	342	401	14
문경시	235	275	4
경산시	586	708	7
군위군	60	78	3
의성군	262	231	2
청송군	80	110	2
영양군	74	103	1
영덕군	97	143	6
청도군	124	148	2
고령군	126	131	1
성주군	121	143	2
칠곡군	258	295	6
예천군	145	173	1
봉화군	121	144	2
울진군	166	203	6
울릉군	26	28	0

〈부표 2-7-16〉 경상남도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신규 수급자 수(A)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B)	부양의무자재산기준완화 신규수급자수(C)
계	7,832	9,029	167
창원시	2,179	2,396	34
진주시	864	1,055	13
통영시	468	500	11
사천시	317	416	11
김해시	1,127	1,242	32
밀양시	415	439	15
거제시	232	341	2
양산시	744	810	13
의령군	102	100	1
함안군	164	200	3
창녕군	175	205	10
고성군	219	253	4
남해군	122	148	5
하동군	112	170	1
함양군	131	129	4
산청군	126	164	4
거창군	192	279	2
합천군	143	182	2

〈부표 2-7-17〉 제주특별자치시 신규 수급자 발굴실적

(단위: 명)

	신규 수급자 수(A)	최근3년간 신규수급자평균(B)	부양의무자재산기준완화 신규수급자수(C)
계	2,078	2,501	48
제주시	1,505	1,764	38
서귀포시	573	737	10

〈부표 2-8-1〉 서울특별시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근로능력가구수(A)	이행급여특례가구수(B)	신규이행특례가구수(C)
계	36,524	1,647	1,882
종로구	452	19	21
중구	531	12	12
용산구	684	38	44
성동구	1,097	46	64
광진구	920	45	47
동대문구	1,456	78	91
종랑구	1,504	18	15
성북구	2,155	64	72
강북구	2,063	100	116
도봉구	985	35	42
노원구	4,298	166	195
은평구	1,861	85	97
서대문구	883	45	53
마포구	1,154	102	117
양천구	1,206	37	46
강서구	3,399	122	127
구로구	1,091	39	47
금천구	1,553	96	109
영등포구	1,402	78	92
동작구	1,004	49	49
관악구	2,235	143	175
서초구	547	16	14
강남구	1,750	66	72
송파구	1,048	67	78
강동구	1,246	81	87

〈부표 2-8-2〉 부산광역시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근로능력가구수(A)	이행급여특례가구수(B)	신규이행특례가구수(C)
계	22,458	1,836	1,927
중구	373	25	36
서구	891	89	79
동구	1,223	114	142
영도구	1,406	67	75
부산진구	2,404	235	240
동래구	905	86	102
남구	995	73	73
북구	2,921	198	216
해운대구	2,509	205	220
사하구	2,540	212	216
금정구	1,333	121	115
강서구	267	28	31
연제구	1,186	79	75
수영구	779	76	64
사상구	2,034	167	165
기장군	692	61	78

〈부표 2-8-3〉 대구광역시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근로능력가구수(A)	이행급여특례가구수(B)	신규이행특례가구수(C)
계	18,579	1,253	1,426
중구	560	47	59
동구	2,629	146	164
서구	1,676	86	107
남구	1,736	106	105
북구	2,634	146	172
수성구	3,364	199	227
달서구	4,987	438	501
달성군	993	85	91

〈부표 2-8-4〉 인천광역시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근로능력이구수(A)	이행급여특례가구수(B)	신규이행특례가구수(C)
계	12,393	912	971
중구	605	71	71
동구	473	24	25
남구	1,554	148	141
연수구	1,561	99	115
남동구	2,404	173	163
부평구	3,028	176	215
계양구	879	63	68
서구	1,392	135	148
강화군	460	23	24
옹진군	37	0	1

〈부표 2-8-5〉 광주광역시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근로능력이구수(A)	이행급여특례가구수(B)	신규이행특례가구수(C)
계	12,633	1,286	1,279
동구	1,169	70	69
서구	2,801	260	264
남구	1,972	145	155
북구	4,369	580	545
광산구	2,322	231	246

〈부표 2-8-6〉 대전광역시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근로능력이구수(A)	이행급여특례가구수(B)	신규이행특례가구수(C)
계	7,616	594	628
동구	1,866	123	135
중구	1,763	107	109
서구	2,009	160	176
유성구	784	109	99
대덕구	1,194	95	109

〈부표 2-8-7〉 울산광역시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

	근로능력가구수(A)	이행급여특례가구수(B)	신규이행특례가구수(C)
계	2,359	107	120
중구	686	22	28
남구	698	36	34
동구	303	19	23
북구	319	13	13
울주군	353	17	22

〈부표 2-8-8〉 세종시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근로능력가구수(A)	이행급여특례가구수(B)	신규이행특례가구수(C)
계	0	0	0

〈부표 2-8-9〉 경기도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근로능력가구수(A)	이행급여특례가구수(B)	신규이행특례가구수(C)
계	29,059	2,197	2,329
수원시	2,216	172	187
성남시	2,668	227	217
고양시	2,393	126	144
용인시	761	46	49
부천시	1,945	163	164
안산시	2,463	150	150
안양시	1,303	72	69
남양주시	1,182	89	95
화성시	617	41	46
평택시	1,172	135	155
의정부시	1,598	150	154
시흥시	1,095	92	89
파주시	1,001	70	67
광명시	758	78	80
김포시	795	64	66
군포시	762	99	110
광주시	716	34	40
이천시	550	60	65
양주시	621	45	43
오산시	392	24	29
구리시	585	42	49
안성시	755	55	73
포천시	691	51	68

의왕시	134	14	13
하남시	286	29	30
여주시	476	17	17
양평군	293	14	13
동두천시	374	6	10
과천시	106	14	21
가평군	199	12	11
연천군	152	6	5

〈부표 2-8-10〉 강원도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근로능력이구수(A)	이행급여특례가구수(B)	신규이행특례가구수(C)
계	9,155	557	595
춘천시	2,192	124	128
원주시	1,567	153	166
강릉시	1,043	94	107
동해시	524	26	21
태백시	244	5	4
속초시	768	49	57
삼척시	664	41	43
홍천군	178	9	7
횡성군	222	4	4
영월군	169	7	7
평창군	216	4	4
정선군	133	3	4
철원군	263	12	14
화천군	182	6	10
양구군	192	3	2
인제군	181	9	9
고성군	167	3	3
양양군	250	5	5

〈부표 2-8-11〉 충청북도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근로능력가구수(A)	이행급여특례가구수(B)	신규이행특례가구수(C)
계	6,346	305	337
청주시	2,421	100	103
충주시	1,072	52	57
제천시	680	25	27
청원군	378	25	24
보은군	109	8	11
옥천군	238	8	11
영동군	264	11	8
증평군	160	15	17
진천군	225	19	29
괴산군	230	10	13
음성군	347	25	29
단양군	222	7	8

〈부표 2-8-12〉 충청남도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근로능력가구수(A)	이행급여특례가구수(B)	신규이행특례가구수(C)
계	7,710	439	472
천안시	1,664	90	100
공주시	551	51	58
보령시	639	26	31
아산시	1,074	67	75
서산시	564	53	57
논산시	851	36	30
계룡시	55	4	5
당진시	341	23	19
금산군	303	3	3
부여군	365	5	6
서천군	296	23	22
청양군	131	2	3
홍성군	342	15	17
예산군	318	28	30
태안군	216	13	16

〈부표 2-8-13〉 전라북도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근로능력이구수(A)	이행급여특례가구수(B)	신규이행특례가구수(C)
계	15,742	1,051	977
전주시	1,797	332	275
군산시	904	119	101
익산시	1,000	219	236
정읍시	478	102	106
남원시	424	88	83
김제시	382	70	59
완주군	280	36	32
진안군	93	8	4
무주군	75	5	3
장수군	82	10	10
임실군	147	15	15
순창군	68	6	11
고창군	191	18	15
부안군	220	23	27

〈부표 2-8-14〉 전라남도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근로능력이구수(A)	이행급여특례가구수(B)	신규이행특례가구수(C)
계	11,947	438	470
목포시	1,885	29	30
여수시	1,677	80	93
순천시	1,220	74	77
나주시	781	19	16
광양시	454	49	48
담양군	313	13	12
곡성군	222	4	4
구례군	266	12	11
고흥군	498	2	2
보성군	305	10	12
화순군	464	3	7
장흥군	320	13	16
강진군	352	22	18
해남군	507	32	31
영암군	303	16	17
무안군	376	16	22
함평군	293	5	6
영광군	428	14	15
장성군	386	17	22
완도군	299	1	1
진도군	339	3	5
신안군	259	4	5

〈부표 2-8-15〉 경상북도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근로능력가구수(A)	이행급여특례가구수(B)	신규이행특례가구수(C)
계	15,628	829	840
포항시	2,848	105	98
경주시	1,263	73	78
김천시	889	43	44
안동시	1,052	77	84
구미시	1,419	105	112
영주시	860	38	42
영천시	895	94	85
상주시	508	9	12
문경시	489	17	19
경산시	1,295	116	131
군위군	175	5	6
의성군	308	19	15
청송군	277	1	0
영양군	204	19	13
영덕군	335	24	23
청도군	246	10	11
고령군	256	20	14
성주군	209	11	10
칠곡군	760	13	12
예천군	400	7	8
봉화군	387	10	9
울진군	532	13	14
울릉군	21	0	0

〈부표 2-8-16〉 경상남도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근로능력가구수(A)	이행급여특례가구수(B)	신규이행특례가구수(C)
계	12,720	498	597
창원시	2,790	82	79
진주시	1,527	87	105
통영시	707	16	19
사천시	554	13	15
김해시	1,735	93	112
밀양시	662	16	14
거제시	434	20	29
양산시	1,143	73	96
의령군	167	3	3
함안군	350	26	36
창녕군	271	1	2
고성군	293	3	7
남해군	234	9	11

300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하동군	485	27	33
함양군	308	0	0
산청군	254	5	6
거창군	501	23	28
합천군	305	1	2

〈부표 2-8-17〉 제주특별자치시 이행급여특례 보호실적

(단위: 가구)

	근로능력이구수(A)	이행급여특례가구수(B)	신규이행특례가구수(C)
계	3,574	411	437
제주시	2,619	313	340
서귀포시	955	98	97

〈부표 2-9-1〉 서울특별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수급자가구수(A)	보호결정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C)
계	124,627	5,283	5,436
종로구	2,302	112	113
중구	2,602	77	80
용산구	3,386	143	143
성동구	3,561	150	150
광진구	3,254	81	98
동대문구	6,184	486	486
종량구	6,109	165	167
성북구	6,300	299	299
강북구	6,726	317	317
도봉구	3,561	90	90
노원구	12,154	838	838
은평구	6,499	260	260
서대문구	3,754	110	110
마포구	3,841	233	283
양천구	4,295	88	139
강서구	10,535	294	296
구로구	3,749	141	149
금천구	4,889	153	145
영등포구	5,246	155	156
동작구	3,733	143	144
관악구	6,770	289	289
서초구	1,986	65	65
강남구	5,256	232	253
송파구	3,719	146	148
강동구	4,216	216	218

〈부표 2-9-2〉 부산광역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수급자가구수(A)	보호결정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C)
계	81,515	2,473	2,477
중구	1,637	37	37
서구	3,770	52	52
동구	4,714	215	215
영도구	5,429	107	107
부산진구	8,691	371	371
동래구	3,616	128	128
남구	4,453	97	97
북구	9,675	223	223
해운대구	8,500	79	79
사하구	8,483	351	351
금정구	4,938	282	282
강서구	1,212	73	74
연제구	4,018	121	121
수영구	2,980	124	124
사상구	6,860	121	124
기장군	2,539	92	92

〈부표 2-9-3〉 대구광역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수급자가구수(A)	보호결정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C)
계	54,487	2,301	2,301
중구	2,687	133	133
동구	8,533	487	487
서구	5,647	354	354
남구	5,622	204	204
북구	7,665	284	284
수성구	8,520	162	162
달서구	13,039	553	553
달성군	2,774	124	124

〈부표 2-9-4〉 인천광역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수급자가구수(A)	보호결정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C)
계	41,552	1,693	1,777
중구	2,269	134	134
동구	1,639	28	28
남구	5,870	207	207
연수구	4,541	124	199
남동구	7,819	340	340
부평구	9,905	361	361
계양구	3,227	210	210
서구	4,268	156	165
강화군	1,754	89	89
옹진군	260	44	44

〈부표 2-9-5〉 광주광역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수급자가구수(A)	보호결정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C)
계	31,273	1,078	1,095
동구	3,229	178	178
서구	6,322	362	379
남구	4,336	145	145
북구	11,398	291	291
광산구	5,988	102	102

〈부표 2-9-6〉 대전광역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수급자가구수(A)	보호결정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C)
계	24,353	970	970
동구	7,057	298	298
중구	5,347	253	253
서구	5,805	178	178
유성구	2,187	73	73
대덕구	3,957	168	168

〈부표 2-9-7〉 울산광역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수급자가구수(A)	보호결정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C)
계	9,927	443	443
중구	2,831	155	155
남구	2,762	86	86
동구	1,313	89	89
북구	1,051	54	54
울주군	1,970	59	59

〈부표 2-9-8〉 세종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수급자가구수(A)	보호결정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C)
계	0	0	0

〈부표 2-9-9〉 경기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수급자가구수(A)	보호결정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C)
계	117,054	4,931	5,102
수원시	8,795	363	363
성남시	9,902	228	366
고양시	8,797	264	271
용인시	3,472	100	100
부천시	8,257	361	361
안산시	8,960	319	323
안양시	4,643	160	160
남양주시	5,115	303	303
화성시	2,854	105	105
평택시	5,174	334	334
의정부시	6,499	153	153
시흥시	3,422	209	209
파주시	4,608	116	116
광명시	2,967	132	132
김포시	3,108	120	120
군포시	2,614	292	292
광주시	2,279	78	78
이천시	2,065	92	92
양주시	2,584	81	81
오산시	1,579	48	64
구리시	2,267	123	125
안성시	2,879	152	152
포천시	2,961	164	164

의왕시	929	109	110
하남시	1,259	40	40
여주시	1,955	45	47
양평군	1,797	102	102
동두천시	2,163	98	98
과천시	457	67	68
가평군	1,433	73	73
연천군	1,260	100	100

〈부표 2-9-10〉 강원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수급자가구수(A)	보호결정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C)
계	34,568	1,634	1,715
춘천시	6,309	304	308
원주시	5,525	454	524
강릉시	4,220	115	115
동해시	2,102	33	33
태백시	1,136	30	30
속초시	2,718	208	208
삼척시	2,294	55	55
홍천군	1,273	59	60
횡성군	1,048	61	62
영월군	943	27	28
평창군	895	30	30
정선군	899	28	30
철원군	1,219	50	51
화천군	694	49	49
양구군	741	28	28
인제군	742	10	10
고성군	838	43	43
양양군	972	50	51

〈부표 2-9-11〉 충청북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수급자가구수(A)	보호결정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C)
계	27,103	1,068	1,068
청주시	8,666	213	213
충주시	4,030	170	170
제천시	3,578	120	120
청원군	1,845	63	63
보은군	984	75	75
옥천군	1,104	39	39
영동군	1,423	25	25
증평군	693	29	29
진천군	1,086	142	142
괴산군	1,198	99	99
음성군	1,522	33	33
단양군	974	60	60

〈부표 2-9-12〉 충청남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수급자가구수(A)	보호결정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C)
계	32,976	1,422	1,446
천안시	5,878	233	233
공주시	2,523	111	113
보령시	2,906	62	62
아산시	3,853	145	145
서산시	2,163	184	186
논산시	3,780	62	62
계룡시	205	18	18
당진시	1,517	37	37
금산군	1,348	137	141
부여군	1,951	68	84
서천군	1,722	53	53
청양군	618	36	36
홍성군	1,595	61	61
예산군	1,718	57	57
태안군	1,199	158	158

〈부표 2-9-13〉 전라북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수급자가구수(A)	보호결정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C)
계	51,637	1,571	1,571
전주시	12,579	400	400
군산시	7,171	182	182
익산시	8,482	261	261
정읍시	4,667	129	129
남원시	3,332	144	144
김제시	4,939	75	75
완주군	2,327	44	44
진안군	855	8	8
무주군	730	36	36
장수군	764	21	21
임실군	1,041	55	55
순창군	848	29	29
고창군	1,859	35	35
부안군	2,043	152	152

〈부표 2-9-14〉 전라남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수급자가구수(A)	보호결정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C)
계	48,417	1,777	1,783
목포시	5,715	76	76
여수시	6,363	151	151
순천시	4,477	134	138
나주시	2,955	106	107
광양시	1,769	131	131
담양군	1,297	6	6
곡성군	1,058	23	23
구례군	962	34	34
고흥군	2,670	49	49
보성군	1,634	325	326
화순군	1,862	38	38
장흥군	1,576	116	116
강진군	1,321	50	50
해남군	2,360	85	85
영암군	1,330	115	115
무안군	1,611	82	82
함평군	1,244	29	29
영광군	2,065	67	67
장성군	1,535	41	41
완도군	1,715	15	15
진도군	1,438	58	58
신안군	1,460	46	46

〈부표 2-9-15〉 경상북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수급자가구수(A)	보호결정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C)
계	61,352	2,787	2,790
포항시	10,419	493	493
경주시	5,567	392	392
김천시	3,458	179	178
안동시	4,333	229	231
구미시	4,394	312	312
영주시	3,472	54	55
영천시	3,406	74	74
상주시	2,465	113	113
문경시	2,234	100	100
경산시	4,605	313	313
군위군	709	26	26
의성군	2,023	129	129
청송군	1,002	52	52
영양군	753	23	23
영덕군	1,686	49	49
청도군	1,339	59	59
고령군	945	33	33
성주군	1,206	27	27
칠곡군	2,371	66	66
예천군	1,560	21	22
봉화군	1,229	20	20
울진군	2,015	20	20
울릉군	161	3	3

〈부표 2-9-15〉 경상남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수급자가구수(A)	보호결정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C)
계	56,546	3,285	3,295
창원시	12,829	1,056	1,056
진주시	6,498	768	768
통영시	3,137	115	115
사천시	3,123	109	109
김해시	7,327	322	322
밀양시	3,071	136	136
거제시	2,021	95	98
양산시	4,212	75	75
의령군	932	31	38
합안군	1,644	74	74
창녕군	1,802	106	106
고성군	1,376	85	85
남해군	1,276	73	73

하동군	1,584	46	46
함양군	1,139	27	27
산청군	1,260	46	46
거창군	1,703	58	58
합천군	1,612	63	63

〈부표 2-9-16〉 제주특별자치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단위: 가구)

	수급자가구수(A)	보호결정 가구수(B)	생활보장위원회상정가구수(C)
계	11,354	669	693
제주시	7,703	449	449
서귀포시	3,651	220	244

〈부표 2-10-1〉 서울특별시 수급자 관리 실적

(단위: 명, 건)

	중점관리소득증가건수(A)	중점관리소득 유형대상자수(B)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C)
계	29,254	631,045	47,399
종로구	607	10,708	616
중구	542	9,271	817
용산구	292	12,347	1,225
성동구	790	17,144	1,277
광진구	871	19,868	1,354
동대문구	502	23,343	2,643
종량구	1,944	36,669	2,056
성북구	1,824	29,705	1,756
강북구	1,642	35,663	2,501
도봉구	1,003	18,914	1,280
노원구	2,790	53,519	3,983
은평구	2,048	40,996	2,542
서대문구	982	18,050	1,085
마포구	1,215	21,399	1,465
양천구	1,461	25,984	1,637
강서구	1,714	54,040	4,438
구로구	1,089	19,574	1,272
금천구	978	18,295	1,243
영등포구	1,490	27,022	2,392
동작구	1,225	21,813	2,099
관악구	1,701	37,401	1,997
서초구	223	12,170	1,041
강남구	1,347	22,714	2,559
송파구	426	20,177	1,907
강동구	548	24,259	2,214

〈부표 2-10-2〉 부산광역시 수급자 관리 실적

(단위: 명, 건)

	중점관리소득증가건수(A)	중점관리소득 유형대상자수(B)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C)
계	26,477	483,346	31,857
중구	535	10,426	686
서구	1,808	34,005	1,871
동구	1,791	23,244	1,692
영도구	1,518	32,730	1,908
부산진구	3,262	59,450	2,997
동래구	1,441	23,177	1,737
남구	1,757	30,875	2,136
북구	2,338	38,511	2,772
해운대구	2,701	47,945	3,463
사하구	2,910	48,882	3,398
금정구	1,181	27,746	2,342
강서구	445	7,881	560
연제구	1,343	24,364	1,409
수영구	960	19,981	1,222
사상구	1,503	36,487	2,558
기장군	984	17,642	1,106

〈부표 2-10-3〉 대구광역시 수급자 관리 실적

(단위: 명, 건)

	중점관리소득증가건수(A)	중점관리소득 유형대상자수(B)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C)
계	13,660	356,149	26,509
중구	329	10,786	1,168
동구	2,025	61,452	4,594
서구	1,588	42,830	2,534
남구	1,448	30,780	2,161
북구	2,159	54,117	4,267
수성구	1,768	52,110	3,671
달서구	3,709	84,036	6,484
달성군	634	20,038	1,630

〈부표 2-10-4〉 인천광역시 수급자 관리 실적

(단위: 명, 건)

	중점관리소득증가건수(A)	중점관리소득 유형대상자수(B)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C)
계	11,355	260,859	19,355
중구	503	13,835	1,192
동구	568	10,165	585
남구	2,010	39,228	2,816
연수구	1,185	20,959	2,019
남동구	2,188	54,654	2,815
부평구	1,786	52,227	4,929
계양구	429	19,249	1,822
서구	1,592	32,148	2,237
강화군	960	15,818	778
옹진군	134	2,576	162

〈부표 2-10-5〉 광주광역시 수급자 관리 실적

(단위: 명, 건)

	중점관리소득증가건수(A)	중점관리소득 유형대상자수(B)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C)
계	8,977	185,585	13,348
동구	1,146	24,014	1,737
서구	1,691	30,750	2,084
남구	1,228	28,565	1,709
북구	3,314	62,705	4,901
광산구	1,598	39,551	2,917

〈부표 2-10-6〉 대전광역시 수급자 관리 실적

(단위: 명, 건)

	중점관리소득증가건수(A)	중점관리소득 유형대상자수(B)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C)
계	6,511	138,917	11,309
동구	1,842	35,224	2,960
중구	1,616	30,068	2,412
서구	1,259	31,564	2,946
유성구	647	15,192	990
대덕구	1,147	26,869	2,001

〈부표 2-10-7〉 울산광역시 수급자 관리 실적

(단위: 명, 건)

	중점관리소득증가건수(A)	중점관리소득 유형대상자수(B)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C)
계	2,338	66,052	4,519
중구	355	20,485	1,407
남구	838	16,198	831
동구	346	7,878	671
북구	267	7,626	554
울주군	532	13,865	1,056

〈부표 2-10-8〉 세종시 수급자 관리 실적

(단위: 명, 건)

	중점관리소득증가건수(A)	중점관리소득 유형대상자수(B)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C)
계	0	0	0

〈부표 2-10-9〉 경기도 수급자 관리 실적

(단위: 명, 건)

	중점관리소득증가건수(A)	중점관리소득 유형대상자수(B)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C)
계	36,744	798,091	57,948
수원시	2,204	59,253	4,699
성남시	2,835	52,684	3,608
고양시	1,864	58,605	4,355
용인시	1,113	27,942	1,848
부천시	2,035	50,385	3,634
안산시	1,674	52,846	4,758
안양시	613	27,625	2,443
남양주시	2,189	39,572	2,490
화성시	1,132	23,148	1,329
평택시	1,476	36,526	3,130
의정부시	2,313	41,572	3,093
시흥시	1,495	21,609	3,142
파주시	2,017	32,871	1,702
광명시	404	16,868	1,614
김포시	348	18,777	1,517
군포시	410	15,766	1,533
광주시	1,309	19,716	953
이천시	1,220	18,675	1,087
양주시	1,323	23,138	1,053
오산시	203	12,655	589
구리시	791	13,397	802
안성시	1,375	23,712	1,272

314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포천시	1,356	23,024	1,476
의왕시	395	6,651	625
하남시	498	8,657	657
여주시	969	17,229	1,054
양평군	1,002	15,984	730
동두천시	774	14,538	1,124
과천시	123	3,303	277
가평군	703	12,630	797
연천군	581	8,733	557

〈부표 2-10-10〉 강원도 수급자 관리 실적

(단위: 명, 건)

	중점관리소득증가건수(A)	중점관리소득 유형대상자수(B)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C)
계	15,329	280,282	17,471
춘천시	2,286	53,794	3,684
원주시	1,598	38,165	3,073
강릉시	2,041	33,722	2,100
동해시	887	17,539	836
태백시	474	8,920	515
속초시	1,097	20,412	1,080
삼척시	1,334	18,427	992
홍천군	801	11,743	625
횡성군	717	11,432	735
영월군	567	8,794	408
평창군	696	7,515	367
정선군	548	8,018	421
철원군	538	8,335	428
화천군	400	6,235	348
양구군	245	4,911	342
인제군	295	7,718	580
고성군	370	6,823	471
양양군	435	7,779	466

〈부표 2-10-11〉 충청북도 수급자 관리 실적

(단위: 명, 건)

	중점관리소득증가건수(A)	중점관리소득 유형대상자수(B)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C)
계	13,848	226,278	13,828
청주시	3,538	59,889	3,686
충주시	2,032	34,805	1,771
제천시	1,777	31,928	1,928
청원군	1,498	18,237	1,314
보은군	659	7,734	480
옥천군	518	12,072	772
영동군	879	12,518	692
증평군	222	4,468	315
진천군	791	9,482	550
괴산군	744	12,222	812
음성군	720	13,624	922
단양군	470	9,299	586

〈부표 2-10-12〉 충청남도 수급자 관리 실적

(단위: 명, 건)

	중점관리소득증가건수(A)	중점관리소득 유형대상자수(B)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C)
계	16,750	273,576	17,212
천안시	2,565	42,543	2,721
공주시	1,439	22,114	1,297
보령시	1,433	24,514	1,545
아산시	1,720	29,345	1,643
서산시	718	18,736	1,527
논산시	1,743	31,877	1,818
계룡시	86	1,919	167
당진시	726	13,718	890
금산군	840	12,160	758
부여군	1,126	16,200	957
서천군	1,454	16,991	1,574
청양군	357	4,839	263
홍성군	753	12,325	634
예산군	973	14,246	864
태안군	817	12,049	554

〈부표 2-10-13〉 전라북도 수급자 관리 실적

(단위: 명, 건)

	중점관리소득증가건수(A)	중점관리소득 유형대상자수(B)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C)
계	24,093	417,604	25,419
전주시	5,205	98,855	5,317
군산시	3,062	55,922	3,580
익산시	3,199	60,996	4,344
정읍시	2,649	38,098	2,592
남원시	1,640	28,207	1,700
김제시	2,152	37,533	2,368
완주군	1,289	23,292	1,246
진안군	594	8,545	442
무주군	430	6,872	375
장수군	439	7,942	459
임실군	604	10,365	625
순창군	559	7,301	405
고창군	1,087	16,449	890
부안군	1,184	17,227	1,076

〈부표 2-10-14〉 전라남도 수급자 관리 실적

(단위: 명, 건)

	중점관리소득증가건수(A)	중점관리소득 유형대상자수(B)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C)
계	27,567	451,396	27,716
목포시	1,879	47,952	3,515
여주시	3,165	52,306	3,464
순천시	2,139	42,813	1,961
나주시	1,988	27,770	1,736
광양시	912	14,920	980
담양군	879	14,394	817
곡성군	843	10,672	643
구례군	530	9,698	487
고흥군	1,181	21,697	1,331
보성군	1,351	15,345	844
화순군	1,479	20,021	1,041
장흥군	1,142	15,034	990
강진군	695	13,098	728
해남군	1,378	24,361	1,482
영암군	853	12,418	876
무안군	906	15,439	933
함평군	1,068	13,887	786
영광군	1,563	19,536	1,301
장성군	1,245	15,953	875
완도군	824	16,485	1,072
진도군	696	13,063	902
신안군	851	14,534	952

〈부표 2-10-15〉 경상북도 수급자 관리 실적

(단위: 명, 건)

	중점관리소득증가건수(A)	중점관리소득 유형대상자수(B)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C)
계	28,562	497,344	28,271
포항시	3,977	75,654	4,166
경주시	3,185	43,488	2,477
김천시	1,725	25,095	1,362
안동시	2,301	38,191	2,270
구미시	1,232	26,934	1,958
영주시	1,614	24,864	1,339
영천시	1,357	32,385	1,717
상주시	1,244	24,954	1,288
문경시	1,059	20,429	1,269
경산시	1,778	32,801	2,190
군위군	608	7,339	428
의성군	926	15,206	839
청송군	501	9,554	489
영양군	392	7,517	509
영덕군	794	13,198	825
청도군	885	12,954	623
고령군	636	10,197	684
성주군	688	11,479	498
칠곡군	1,005	22,738	949
예천군	717	13,717	685
봉화군	701	10,103	491
울진군	1,105	17,131	1,125
울릉군	132	1,416	90

〈부표 2-10-16〉 경상남도 수급자 관리 실적

(단위: 명, 건)

	중점관리소득증가건수(A)	중점관리소득 유형대상자수(B)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C)
계	20,711	406,314	27,216
창원시	2,690	83,672	5,735
진주시	1,467	39,163	3,403
통영시	1,079	22,812	1,353
사천시	1,383	25,043	1,304
김해시	1,395	42,921	3,500
밀양시	1,543	19,848	1,467
거제시	994	16,168	951
양산시	1,700	24,543	1,766
의령군	589	7,511	410
함안군	866	13,085	764
창녕군	940	14,368	1,093
고성군	921	14,155	827
남해군	805	13,407	733

318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하동군	970	16,078	752
함양군	838	11,738	737
산청군	895	11,507	698
거창군	796	13,036	807
합천군	840	17,259	916

〈부표 2-10-17〉 제주특별자치시 수급자 관리 실적

(단위: 명, 건)

	중점관리소득증가건수(A)	중점관리소득 유형대상자수(B)	중점관리소득 감소건수(C)
계	6,156	100,756	7,147
제주시	4,168	67,275	5,159
서귀포시	1,988	33,481	1,988

〈부표 2-11-1〉 서울특별시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계	7,942	3,051	8,488	574
종로구	426	338	436	2
중구	136	21	144	61
용산구	164	58	167	7
성동구	335	138	336	2
광진구	181	62	197	26
동대문구	458	81	492	35
종량구	520	96	529	57
성북구	417	152	414	0
강북구	608	344	572	59
도봉구	292	111	313	6
노원구	389	57	442	0
은평구	490	255	505	4
서대문구	234	77	241	0
마포구	159	30	182	126
양천구	259	132	262	0
강서구	351	73	403	0
구로구	337	118	339	0
금천구	427	238	619	119
영등포구	296	141	294	6
동작구	243	99	261	3
관악구	351	161	370	0
서초구	114	73	124	55
강남구	174	40	217	1
송파구	251	98	293	4
강동구	330	58	336	1

〈부표 2-11-2〉 부산광역시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계	6,096	3,709	5,868	5,104
중구	195	123	179	95
서구	365	201	327	278
동구	435	274	434	483
영도구	570	407	467	581
부산진구	565	282	584	294
동래구	337	206	342	82
남구	246	97	250	345
북구	806	560	805	493
해운대구	417	218	378	105
사하구	482	267	487	712
금정구	360	242	302	62
강서구	164	97	148	216
연제구	460	335	459	459
수영구	247	168	248	162
사상구	334	200	343	644
기장군	113	32	115	93

〈부표 2-11-3〉 대구광역시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계	4,467	2,929	4,482	1,801
중구	428	346	526	168
동구	703	506	653	196
서구	667	415	769	93
남구	400	245	399	280
북구	702	463	728	231
수성구	613	383	517	415
달서구	820	526	722	394
달성군	134	45	168	24

〈부표 2-11-4〉 인천광역시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계	4,651	2,721	4,702	2,148
중구	128	64	145	42
동구	387	282	365	114
남구	684	398	637	130
연수구	454	287	432	190
남동구	963	637	989	420
부평구	736	315	751	301
계양구	492	295	490	408
서구	611	341	705	453
강화군	143	87	133	65
옹진군	53	15	55	25

〈부표 2-11-5〉 광주광역시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계	9,454	7,996	8,226	16,452
동구	501	343	470	940
서구	1,782	1,469	1,499	2,998
남구	2,520	2,291	2,470	4,940
북구	1,544	1,187	1,216	2,432
광산구	3,107	2,706	2,571	5,142

〈부표 2-11-6〉 대전광역시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계	1,867	1,230	1,838	3,676
동구	603	437	596	1,192
중구	343	209	308	616
서구	341	197	367	734
유성구	150	87	150	250
대덕구	430	300	417	834

322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부표 2-11-7〉 울산광역시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계	1,121	771	1,137	921
중구	334	190	336	148
남구	263	161	230	101
동구	107	72	101	155
북구	178	139	241	286
울주군	239	209	229	231

〈부표 2-11-8〉 세종시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계	0	0	0	0

〈부표 2-11-9〉 경기도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계	19,795	15,315	16,633	29,296
수원시	1,109	801	980	1,622
성남시	1,270	919	1,059	2,118
고양시	1,104	709	961	1,922
용인시	462	369	386	772
부천시	1,131	755	1,042	1,572
안산시	1,330	1,164	989	975
안양시	722	476	687	1,116
남양주시	790	664	592	1,082
화성시	401	250	359	694
평택시	718	576	649	802
의정부시	714	585	798	1,156
시흥시	972	866	811	1,622
파주시	1,500	1,265	1,158	2,157
광명시	611	475	476	871
김포시	342	233	310	620
군포시	611	490	575	915
광주시	764	631	538	1,076
이천시	340	249	294	587
양주시	459	390	378	756
오산시	452	397	340	581

구리시	596	456	447	883
안성시	362	266	307	590
포천시	427	348	368	654
의왕시	189	129	171	311
하남시	376	247	286	553
여주시	434	351	397	505
양평군	430	338	352	704
동두천시	542	412	448	675
과천시	93	73	66	132
가평군	268	206	215	299
연천군	276	225	194	387

〈부표 2-11-10〉 강원도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계	3,243	2,108	3,372	1,296
춘천시	462	228	467	371
원주시	482	345	441	136
강릉시	89	38	134	0
동해시	104	55	112	19
태백시	100	31	150	0
속초시	195	110	227	93
삼척시	226	154	194	28
홍천군	378	313	287	58
횡성군	116	70	145	23
영월군	106	60	104	13
평창군	88	63	111	174
정선군	137	116	137	83
철원군	211	180	156	79
화천군	58	24	83	27
양구군	186	130	228	56
인제군	100	61	113	15
고성군	101	64	141	78
양양군	104	66	142	43

324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부표 2-11-11〉 충청북도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계	3,236	2,503	2,803	4,840
청주시	915	751	964	1,928
충주시	314	235	284	382
제천시	201	131	174	245
청원군	342	282	232	278
보은군	141	98	136	239
옥천군	81	27	80	160
영동군	321	271	235	271
증평군	226	216	162	246
진천군	187	143	118	222
괴산군	210	159	165	225
음성군	194	118	176	267
단양군	104	72	77	154

〈부표 2-11-12〉 충청남도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계	3,784	2,769	3,637	2,413
천안시	452	200	466	114
공주시	114	62	103	154
보령시	212	148	217	238
아산시	798	661	833	606
서산시	198	135	183	92
논산시	174	63	358	262
계룡시	87	69	63	42
당진시	242	213	188	139
금산군	51	15	54	11
부여군	221	177	166	73
서천군	436	387	343	344
청양군	101	82	92	114
홍성군	210	166	167	69
예산군	353	307	263	131
태안군	135	84	141	24

〈부표 2-11-13〉 전라북도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계	3,923	2,589	3,611	4,713
전주시	842	519	837	1,049
군산시	291	108	299	437
익산시	353	172	315	320
정읍시	231	142	233	326
남원시	676	591	443	390
김제시	179	66	172	320
완주군	103	11	104	124
진안군	190	162	191	302
무주군	216	203	218	305
장수군	168	125	147	179
임실군	91	70	73	136
순창군	69	34	68	136
고창군	190	113	186	287
부안군	324	273	325	355

〈부표 2-11-14〉 전라남도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계	5,464	3,811	4,739	4,963
목포시	683	447	642	687
여수시	688	494	500	324
순천시	1,046	874	662	436
나주시	302	223	321	271
광양시	275	227	181	334
담양군	159	124	162	305
곡성군	297	219	264	511
구례군	60	37	57	108
고흥군	114	47	116	232
보성군	59	21	54	93
화순군	216	131	219	40
장흥군	310	248	281	171
강진군	205	158	166	118
해남군	249	150	217	148
영암군	132	83	119	137
무안군	52	39	63	100
함평군	40	9	40	80
영광군	83	58	115	144
장성군	136	81	158	280
완도군	89	12	121	181
진도군	165	107	177	63
신안군	104	22	104	116

〈부표 2-11-15〉 경상북도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계	3,439	1,898	3,745	3,369
포항시	634	281	636	218
경주시	207	55	204	203
김천시	143	82	139	176
안동시	61	34	160	179
구미시	334	189	461	739
영주시	91	20	93	77
영천시	210	130	213	260
상주시	117	77	107	74
문경시	117	73	124	49
경산시	115	55	115	223
군위군	32	15	37	21
의성군	132	96	137	92
청송군	125	74	125	35
영양군	22	10	27	2
영덕군	104	69	116	151
청도군	140	110	154	7
고령군	66	12	76	50
성주군	98	40	97	97
칠곡군	123	57	137	84
예천군	101	73	101	96
봉화군	78	42	82	93
울진군	368	289	382	436
울릉군	21	15	22	7

〈부표 2-11-16〉 경상남도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계	4,058	2,482	4,443	2,343
창원시	1,167	759	1,444	242
진주시	135	17	209	126
통영시	188	132	190	118
사천시	102	36	131	25
김해시	617	429	565	404
밀양시	256	159	239	235
거제시	94	61	100	11
양산시	283	161	278	174
의령군	55	28	59	2
함안군	54	12	52	68
창녕군	92	53	97	120
고성군	77	39	83	43

남해군	268	209	180	293
하동군	202	125	218	77
함양군	115	57	130	30
산청군	178	118	291	183
거창군	116	76	115	118
합천군	59	11	62	74

〈부표 2-11-17〉 제주특별자치시 긴급복지 지원실적

(단위: 건)

	총 결정건수(A)	의료지원제외 결정건수(B)	긴급지원 신청건수(C)	타지원 연계건수(D)
계	578	254	595	401
제주시	319	123	314	203
서귀포시	259	131	281	198

○ 자활사업 활성화 정도

〈부표 2-12-1〉 서울특별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수(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①)	수급종지자(②)	계 (①+②)		
계	247	672	919	10,182	9.03
종로구	0	20	20	163	12.27
중구	2	17	19	133	14.29
용산구	22	13	35	112	31.25
성동구	3	12	15	203	7.39
광진구	4	17	21	232	9.05
동대문구	2	18	20	457	4.38
종랑구	5	62	67	312	21.47
성북구	0	23	23	550	4.18
강북구	18	12	30	406	7.39
도봉구	0	7	7	170	4.12
노원구	29	55	84	853	9.85
은평구	2	76	78	557	14.00
서대문구	23	31	54	313	17.25
마포구	15	17	32	331	9.67
양천구	13	61	74	587	12.61
강서구	6	46	52	830	6.27
구로구	8	13	21	499	4.21
금천구	55	42	97	603	16.09
영등포구	0	24	24	470	5.11
동작구	0	28	28	330	8.48
관악구	39	24	63	761	8.28
서초구	0	5	5	112	4.46
강남구	1	31	32	495	6.46
송파구	0	14	14	324	4.32
강동구	0	4	4	379	1.06

〈부표 2-12-2〉 부산광역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수(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①)	수급중지자(②)	계 (①+②)		
계	553	617	1,170	4,727	24.75
중구	17	5	22	97	22.68
서구	35	23	58	213	27.23
동구	16	31	47	282	16.67
영도구	19	25	44	191	23.04
부산진구	78	69	147	493	29.82
동래구	16	26	42	203	20.69
남구	20	46	66	266	24.81
북구	30	29	59	417	14.15
해운대구	24	130	154	519	29.67
사하구	48	47	95	476	19.96
금정구	54	17	71	311	22.83
강서구	0	15	15	113	13.27
연제구	33	18	51	228	22.37
수영구	36	25	61	194	31.44
사상구	87	111	198	533	37.15
기장군	40	0	40	191	20.94

〈부표 2-12-3〉 대구광역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수(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①)	수급중지자(②)	계 (①+②)		
계	164	193	357	2,218	16.10
중구	6	11	17	107	15.89
동구	62	18	80	443	18.06
서구	19	12	31	232	13.36
남구	24	30	54	217	24.88
북구	40	23	63	389	16.20
수성구	8	35	43	234	18.38
달서구	5	42	47	406	11.58
달성군	0	22	22	190	11.58

〈부표 2-12-4〉 인천광역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수(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①)	수급중지자(②)	계 (①+②)		
계	241	265	506	2,990	16.92
중구	35	0	35	185	18.92
동구	13	12	25	193	12.95
남구	67	72	139	504	27.58
연수구	16	54	70	398	17.59
남동구	11	60	71	460	15.43
부평구	19	21	40	528	7.58
계양구	32	15	47	236	19.92
서구	33	30	63	427	14.75
강화군	15	1	16	59	27.12
옹진군	0	0	0	0	0.00

〈부표 2-12-5〉 광주광역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수(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①)	수급중지자(②)	계 (①+②)		
계	165	368	533	2,932	18.18
동구	15	10	25	213	11.74
서구	44	90	134	759	17.65
남구	18	46	64	464	13.79
북구	11	154	165	959	17.21
광산구	77	68	145	537	27.00

〈부표 2-12-6〉 대전광역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수(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①)	수급중지자(②)	계 (①+②)		
계	96	191	287	1,280	22.42
동구	35	27	62	305	20.33
중구	19	32	51	254	20.08
서구	4	94	98	369	26.56
유성구	14	18	32	182	17.58
대덕구	24	20	44	170	25.88

〈부표 2-12-7〉 울산광역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수(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①)	수급중지자(②)	계 (①+②)		
계	30	56	86	518	16.60
중구	12	17	29	119	24.37
남구	4	8	12	75	16.00
동구	1	10	11	110	10.00
북구	6	7	13	102	12.75
울주군	7	14	21	112	18.75

〈부표 2-12-8〉 세종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수(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①)	수급중지자(②)	계 (①+②)		
계	0	0	0	0	0.00

〈부표 2-12-9〉 경기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수(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①)	수급중지자(②)	계 (①+②)		
계	545	494	1,039	5,989	17.35
수원시	42	84	126	648	19.44
성남시	46	34	80	560	14.29
고양시	38	17	55	279	19.71
용인시	14	21	35	197	17.77
부천시	9	45	54	549	9.84
안산시	29	30	59	418	14.11
안양시	16	12	28	302	9.27
남양주시	41	14	55	213	25.82
화성시	7	10	17	121	14.05
평택시	27	11	38	223	17.04
의정부시	57	38	95	314	30.25
시흥시	26	11	37	239	15.48
파주시	24	11	35	156	22.44
광명시	18	11	29	154	18.83
김포시	1	11	12	149	8.05
군포시	27	18	45	198	22.73
광주시	15	15	30	169	17.75

이천시	16	20	36	140	25.71
양주시	12	9	21	116	18.10
오산시	4	10	14	100	14.00
구리시	7	6	13	129	10.08
안성시	18	19	37	179	20.67
포천시	1	10	11	58	18.97
의왕시	1	3	4	40	10.00
하남시	19	11	30	103	29.13
여주시	13	1	14	62	22.58
양평군	1	2	3	26	11.54
동두천시	7	5	12	72	16.67
과천시	5	1	6	29	20.69
가평군	1	4	5	36	13.89
연천군	3	0	3	10	30.00

〈부표 2-12-10〉 강원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수(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①)	수급중지자(②)	계 (①+②)		
계	176	222	398	1,771	22.47
춘천시	38	35	73	351	20.80
원주시	40	41	81	341	23.75
강릉시	25	30	55	220	25.00
동해시	0	12	12	70	17.14
태백시	0	13	13	67	19.40
속초시	32	38	70	185	37.84
삼척시	15	10	25	110	22.73
홍천군	0	1	1	59	1.69
횡성군	3	13	16	55	29.09
영월군	2	6	8	31	25.81
평창군	6	1	7	36	19.44
정선군	0	0	0	37	0.00
철원군	0	7	7	19	36.84
화천군	3	3	6	31	19.35
양구군	0	1	1	26	3.85
인제군	2	3	5	22	22.73
고성군	8	6	14	51	27.45
양양군	2	2	4	60	6.67

〈부표 2-12-11〉 충청북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수(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①)	수급중지자(②)	계 (①+②)		
계	45	151	196	988	19.84
청주시	4	33	37	242	15.29
충주시	2	41	43	165	26.06
제천시	2	15	17	102	16.67
청원군	7	5	12	75	16.00
보은군	5	3	8	31	25.81
옥천군	6	3	9	64	14.06
영동군	0	5	5	42	11.90
증평군	4	10	14	43	32.56
진천군	2	14	16	56	28.57
괴산군	3	8	11	35	31.43
음성군	7	10	17	81	20.99
단양군	3	4	7	52	13.46

〈부표 2-12-12〉 충청남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수(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①)	수급중지자(②)	계 (①+②)		
계	74	154	228	1,598	14.27
천안시	18	30	48	311	15.43
공주시	20	10	30	114	26.32
보령시	4	5	9	113	7.96
아산시	1	16	17	188	9.04
서산시	10	25	35	143	24.48
논산시	5	15	20	125	16.00
계룡시	0	6	6	31	19.35
당진시	0	1	1	95	1.05
금산군	0	9	9	80	11.25
부여군	0	4	4	60	6.67
서천군	2	10	12	79	15.19
청양군	3	1	4	28	14.29
홍성군	5	10	15	97	15.46
예산군	2	8	10	76	13.16
태안군	4	4	8	58	13.79

〈부표 2-12-13〉 전라북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수(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①)	수급종지자(②)	계 (①+②)		
계	136	158	294	2,270	12.95
전주시	37	13	50	490	10.20
군산시	7	35	42	299	14.05
익산시	30	28	58	471	12.31
정읍시	1	13	14	264	5.30
남원시	5	15	20	146	13.70
김제시	20	15	35	204	17.16
완주군	1	11	12	79	15.19
진안군	0	3	3	39	7.69
무주군	0	1	1	30	3.33
장수군	1	9	10	27	37.04
임실군	4	5	9	45	20.00
순창군	1	4	5	29	17.24
고창군	29	6	35	94	37.23
부안군	0	0	0	53	0.00

〈부표 2-12-14〉 전라남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수(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①)	수급종지자(②)	계 (①+②)		
계	88	244	332	1,713	19.38
목포시	7	22	29	183	15.85
여수시	0	22	22	147	14.97
순천시	9	20	29	252	11.51
나주시	0	17	17	82	20.73
광양시	6	35	41	120	34.17
담양군	2	1	3	29	10.34
곡성군	3	13	16	58	27.59
구례군	12	14	26	72	36.11
고흥군	2	11	13	68	19.12
보성군	8	22	30	97	30.93
화순군	0	0	0	97	0.00
장흥군	0	8	8	49	16.33
강진군	0	13	13	39	33.33
해남군	4	0	4	36	11.11
영암군	9	19	28	96	29.17
무안군	3	11	14	47	29.79
함평군	13	5	18	69	26.09
영광군	9	3	12	77	15.58
장성군	1	2	3	52	5.77
완도군	0	0	0	3	0.00
진도군	0	3	3	32	9.38
신안군	0	3	3	8	37.50

〈부표 2-12-15〉 경상북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수(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①)	수급중지자(②)	계 (①+②)		
계	101	272	373	2,125	17.55
포항시	0	114	114	438	26.03
경주시	14	8	22	236	9.32
김천시	16	18	34	113	30.09
안동시	0	14	14	92	15.22
구미시	4	14	18	285	6.32
영주시	1	10	11	131	8.40
영천시	15	17	32	90	35.56
상주시	5	10	15	84	17.86
문경시	0	1	1	71	1.41
경산시	24	19	43	159	27.04
군위군	3	4	7	31	22.58
의성군	3	4	7	35	20.00
청송군	0	0	0	14	0.00
영양군	0	0	0	4	0.00
영덕군	3	9	12	60	20.00
청도군	0	1	1	24	4.17
고령군	5	4	9	37	24.32
성주군	0	3	3	18	16.67
칠곡군	0	10	10	99	10.10
예천군	0	1	1	27	3.70
봉화군	2	2	4	30	13.33
울진군	6	9	15	46	32.61
울릉군	0	0	0	1	0.00

〈부표 2-12-16〉 경상남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수(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①)	수급중지자(②)	계 (①+②)		
계	158	232	390	1,868	20.88
창원시	19	37	56	417	13.43
진주시	31	26	57	250	22.80
통영시	3	14	17	89	19.10
사천시	1	19	20	45	44.44
김해시	23	33	56	241	23.24
밀양시	23	13	36	104	34.62
거제시	0	19	19	81	23.46
양산시	24	36	60	204	29.41
의령군	0	3	3	8	37.50
함안군	2	11	13	81	16.05

창녕군	14	3	17	65	26.15
고성군	0	0	0	30	0.00
남해군	1	4	5	26	19.23
하동군	0	10	10	81	12.35
함양군	0	0	0	24	0.00
산청군	5	0	5	30	16.67
거창군	6	2	8	42	19.05
합천군	6	2	8	50	16.00

〈부표 2-12-17〉 제주특별자치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단위: 명, %)

	탈수급자수(A)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수(B)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탈수급률 (A/B)×100
	자활(이행*) 특례상향 이동자(①)	수급종지자(②)	계 (①+②)		
계	85	45	130	611	21.28
제주시	79	33	112	501	22.36
서귀포시	6	12	18	110	16.36

〈부표 2-13-1〉 서울특별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C)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D)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C/D) × 100
	취업자(A)	창업자(B)	(C)=A+B		
계	1,059	53	1,112	10,182	10.92
종로구	10	0	10	163	6.13
중구	11	0	11	133	8.27
용산구	16	4	20	112	17.86
성동구	36	5	41	203	20.20
광진구	21	1	22	232	9.48
동대문구	44	2	46	457	10.07
중랑구	31	1	32	312	10.26
성북구	60	3	63	550	11.45
강북구	66	5	71	406	17.49
도봉구	72	0	72	170	42.35
노원구	81	0	81	853	9.50
은평구	46	2	48	557	8.62
서대문구	19	3	22	313	7.03
마포구	37	3	40	331	12.08
양천구	47	0	47	587	8.01
강서구	85	3	88	830	10.60
구로구	78	3	81	499	16.23
금천구	65	5	70	603	11.61
영등포구	35	0	35	470	7.45
동작구	30	0	30	330	9.09
관악구	46	1	47	761	6.18
서초구	12	3	15	112	13.39
강남구	42	4	46	495	9.29
송파구	21	4	25	324	7.72
강동구	48	1	49	379	12.93

〈부표 2-13-2〉 부산광역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C)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D)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C/D) × 100
	취업자(A)	창업자(B)	(C)=A+B		
계	1,100	54	1,154	4,727	24.41
중구	10	0	10	97	10.31
서구	50	1	51	213	23.94
동구	65	1	66	282	23.40
영도구	31	4	35	191	18.32
부산진구	103	6	109	493	22.11
동래구	51	2	53	203	26.11
남구	64	1	65	266	24.44
북구	74	12	86	417	20.62
해운대구	198	1	199	519	38.34
사하구	103	13	116	476	24.37
금정구	54	3	57	311	18.33
강서구	14	3	17	113	15.04
연제구	71	7	78	228	34.21
수영구	53	0	53	194	27.32
사상구	128	0	128	533	24.02
기장군	31	0	31	191	16.23

〈부표 2-13-3〉 대구광역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C)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D)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C/D) × 100
	취업자(A)	창업자(B)	(C)=A+B		
계	309	8	317	2,218	14.29
중구	13	1	14	107	13.08
동구	55	0	55	443	12.42
서구	33	0	33	232	14.22
남구	20	1	21	217	9.68
북구	82	1	83	389	21.34
수성구	26	2	28	234	11.97
달서구	58	1	59	406	14.53
달성군	22	2	24	190	12.63

〈부표 2-13-4〉 인천광역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 · 창업자(C)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D)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C/D) × 100
	취업자(A)	창업자(B)	(C)=A+B		
계	418	17	435	2,990	14.55
중구	11	2	13	185	7.03
동구	23	0	23	193	11.92
남구	43	0	43	504	8.53
연수구	66	2	68	398	17.09
남동구	100	2	102	460	22.17
부평구	83	8	91	528	17.23
계양구	48	3	51	236	21.61
서구	40	0	40	427	9.37
강화군	4	0	4	59	6.78
옹진군	0	0	0	0	0.00

〈부표 2-13-5〉 광주광역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 · 창업자(C)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D)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C/D) × 100
	취업자(A)	창업자(B)	(C)=A+B		
계	667	16	683	2,932	23.29
동구	15	2	17	213	7.98
서구	232	5	237	759	31.23
남구	112	1	113	464	24.35
북구	233	6	239	959	24.92
광산구	75	2	77	537	14.34

〈부표 2-13-6〉 대전광역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 · 창업자(C)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D)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C/D) × 100
	취업자(A)	창업자(B)	(C)=A+B		
계	281	9	290	1,280	22.66
동구	66	1	67	305	21.97
중구	49	0	49	254	19.29
서구	74	4	78	369	21.14
유성구	35	3	38	182	20.88
대덕구	57	1	58	170	34.12

〈부표 2-13-7〉 울산광역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 · 창업자(C)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D)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C/D) × 100
	취업자(A)	창업자(B)	(C)=A+B		
계	52	12	64	518	12.36
중구	20	3	23	119	19.33
남구	10	6	16	75	21.33
동구	10	3	13	110	11.82
북구	6	0	6	102	5.88
울주군	6	0	6	112	5.36

〈부표 2-13-8〉 세종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 · 창업자(C)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D)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C/D) × 100
	취업자(A)	창업자(B)	(C)=A+B		
계	0	0	0	0	0.00

〈부표 2-13-9〉 경기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 · 창업자(C)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D)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C/D) × 100
	취업자(A)	창업자(B)	(C)=A+B		
계	767	56	823	5,989	13.74
수원시	66	6	72	648	11.11
성남시	73	9	82	560	14.64
고양시	44	4	48	279	17.20
용인시	17	0	17	197	8.63
부천시	60	11	71	549	12.93
안산시	96	0	96	418	22.97
안양시	36	1	37	302	12.25
남양주시	36	3	39	213	18.31
화성시	22	2	24	121	19.83
평택시	7	2	9	223	4.04
의정부시	42	2	44	314	14.01
시흥시	26	5	31	239	12.97
파주시	11	0	11	156	7.05
광명시	37	0	37	154	24.03
김포시	21	0	21	149	14.09
군포시	16	0	16	198	8.08
광주시	29	6	35	169	20.71

이천시	21	0	21	140	15.00
양주시	12	0	12	116	10.34
오산시	7	0	7	100	7.00
구리시	18	3	21	129	16.28
안성시	25	0	25	179	13.97
포천시	16	0	16	58	27.59
의왕시	1	0	1	40	2.50
하남시	10	2	12	103	11.65
여주시	10	0	10	62	16.13
양평군	2	0	2	26	7.69
동두천시	2	0	2	72	2.78
과천시	1	0	1	29	3.45
가평군	2	0	2	36	5.56
연천군	1	0	1	10	10.00

〈부표 2-13-10〉 강원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C)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D)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C/D) × 100
	취업자(A)	창업자(B)	(C)=A+B		
계	279	23	302	1,771	17.05
춘천시	60	3	63	351	17.95
원주시	75	2	77	341	22.58
강릉시	24	2	26	220	11.82
동해시	7	3	10	70	14.29
태백시	20	0	20	67	29.85
속초시	20	0	20	185	10.81
삼척시	12	4	16	110	14.55
홍천군	0	1	1	59	1.69
횡성군	3	7	10	55	18.18
영월군	3	0	3	31	9.68
평창군	4	0	4	36	11.11
정선군	5	0	5	37	13.51
철원군	3	0	3	19	15.79
화천군	6	0	6	31	19.35
양구군	2	0	2	26	7.69
인제군	5	0	5	22	22.73
고성군	17	1	18	51	35.29
양양군	13	0	13	60	21.67

〈부표 2-13-11〉 충청북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C)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D)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C/D) × 100
	취업자(A)	창업자(B)	(C)=A+B		
계	145	12	157	988	15.89
청주시	42	2	44	242	18.18
충주시	26	2	28	165	16.97
제천시	3	1	4	102	3.92
청원군	5	3	8	75	10.67
보은군	4	0	4	31	12.90
옥천군	8	0	8	64	12.50
영동군	6	1	7	42	16.67
증평군	6	0	6	43	13.95
진천군	4	1	5	56	8.93
괴산군	10	0	10	35	28.57
음성군	19	0	19	81	23.46
단양군	12	2	14	52	26.92

〈부표 2-13-12〉 충청남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C)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D)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C/D) × 100
	취업자(A)	창업자(B)	(C)=A+B		
계	208	12	220	1,598	13.77
천안시	44	1	45	311	14.47
공주시	20	0	20	114	17.54
보령시	14	0	14	113	12.39
아산시	41	0	41	188	21.81
서산시	14	3	17	143	11.89
논산시	22	3	25	125	20.00
계룡시	2	0	2	31	6.45
당진시	5	0	5	95	5.26
금산군	4	1	5	80	6.25
부여군	3	0	3	60	5.00
서천군	3	2	5	79	6.33
청양군	1	1	2	28	7.14
홍성군	13	1	14	97	14.43
예산군	9	0	9	76	11.84
태안군	13	0	13	58	22.41

〈부표 2-13-13〉 전라북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C)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D)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C/D) × 100
	취업자(A)	창업자(B)	(C)=A+B		
계	403	25	428	2,270	18.85
전주시	93	9	102	490	20.82
군산시	51	3	54	299	18.06
익산시	100	5	105	471	22.29
정읍시	43	0	43	264	16.29
남원시	26	0	26	146	17.81
김제시	34	1	35	204	17.16
완주군	13	0	13	79	16.46
진안군	2	1	3	39	7.69
무주군	7	1	8	30	26.67
장수군	10	5	15	27	55.56
임실군	8	0	8	45	17.78
순창군	5	0	5	29	17.24
고창군	4	0	4	94	4.26
부안군	7	0	7	53	13.21

〈부표 2-13-14〉 전라남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C)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D)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C/D) × 100
	취업자(A)	창업자(B)	(C)=A+B		
계	251	29	280	1,713	16.35
목포시	22	0	22	183	12.02
여수시	12	0	12	147	8.16
순천시	48	1	49	252	19.44
나주시	10	3	13	82	15.85
광양시	10	1	11	120	9.17
담양군	4	1	5	29	17.24
곡성군	6	1	7	58	12.07
구례군	2	0	2	72	2.78
고흥군	11	0	11	68	16.18
보성군	23	5	28	97	28.87
화순군	26	1	27	97	27.84
장흥군	11	1	12	49	24.49
강진군	17	0	17	39	43.59
해남군	9	1	10	36	27.78
영암군	21	7	28	96	29.17
무안군	1	0	1	47	2.13
함평군	4	0	4	69	5.80
영광군	3	0	3	77	3.90
장성군	8	1	9	52	17.31
완도군	0	3	3	3	100.00
진도군	3	3	6	32	18.75
신안군	0	0	0	8	0.00

〈부표 2-13-15〉 경상북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C)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D)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C/D) × 100
	취업자(A)	창업자(B)	(C)=A+B		
계	326	24	350	2,125	16.47
포항시	104	0	104	438	23.74
경주시	16	4	20	236	8.47
김천시	27	2	29	113	25.66
안동시	27	0	27	92	29.35
구미시	30	0	30	285	10.53
영주시	8	0	8	131	6.11
영천시	18	5	23	90	25.56
상주시	5	8	13	84	15.48
문경시	1	1	2	71	2.82
경산시	42	1	43	159	27.04
군위군	0	0	0	31	0.00
의성군	3	1	4	35	11.43
청송군	0	0	0	14	0.00
영양군	0	0	0	4	0.00
영덕군	12	0	12	60	20.00
청도군	1	0	1	24	4.17
고령군	5	1	6	37	16.22
성주군	4	0	4	18	22.22
칠곡군	18	0	18	99	18.18
예천군	0	0	0	27	0.00
봉화군	2	0	2	30	6.67
울진군	3	1	4	46	8.70
울릉군	0	0	0	1	0.00

〈부표 2-13-16〉 경상남도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창업자(C)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D)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C/D) × 100
	취업자(A)	창업자(B)	(C)=A+B		
계	323	10	333	1,868	17.83
창원시	75	0	75	417	17.99
진주시	40	0	40	250	16.00
통영시	13	0	13	89	14.61
사천시	6	1	7	45	15.56
김해시	79	2	81	241	33.61
밀양시	29	0	29	104	27.88
거제시	14	0	14	81	17.28
양산시	27	1	28	204	13.73
의령군	0	0	0	8	0.00
함안군	1	1	2	81	2.47

창녕군	8	0	8	65	12.31
고성군	0	0	0	30	0.00
남해군	2	0	2	26	7.69
하동군	15	0	15	81	18.52
함양군	0	0	0	24	0.00
산청군	2	0	2	30	6.67
거창군	5	2	7	42	16.67
합천군	7	3	10	50	20.00

〈부표 2-13-17〉 제주특별자치시 자활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 포함)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단위: 명, %)

	수급유지자 중 취 · 창업자(C)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수(D)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취·창업률 (C/D) × 100
	취업자(A)	창업자(B)	(C)=A+B		
계	159	8	167	611	27.33
제주시	147	8	155	501	30.94
서귀포시	12	0	12	110	10.91

〈부표 2-14-1〉 서울특별시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단위: 가구, 명, %)

	희망키움통장가입률(A)			내일키움통장가입률(B)		
	희망키움 가입가구수(①)	희망키움 대상가구수(②)	A= (①/②)×100	내일키움 가입자수(③)	내일키움 대상자 수(④)	B= (③/④)×100
계	625	7,204	8.68	350	1,250	28.00
종로구	8	113	7.08	5	20	25.00
중구	7	140	5.00	0	44	0.00
용산구	13	157	8.28	8	25	32.00
성동구	25	242	10.33	1	59	1.69
광진구	16	187	8.56	10	50	20.00
동대문구	27	323	8.36	11	19	57.89
종랑구	20	223	8.97	18	25	72.00
성북구	31	396	7.83	4	39	10.26
강북구	19	360	5.28	22	84	26.19
도봉구	15	215	6.98	5	10	50.00
노원구	16	626	2.56	30	115	26.09
은평구	73	397	18.39	28	76	36.84
서대문구	21	167	12.57	18	27	66.67
마포구	48	265	18.11	20	22	90.91
양천구	24	239	10.04	15	44	34.09
강서구	38	543	7.00	46	155	29.68
구로구	11	264	4.17	34	98	34.69
금천구	16	367	4.36	9	40	22.50
영등포구	18	289	6.23	7	48	14.58
동작구	20	207	9.66	13	59	22.03
관악구	34	476	7.14	9	44	20.45
서초구	9	99	9.09	0	5	0.00
강남구	21	359	5.85	0	0	0.00
송파구	53	279	19.00	16	83	19.28
강동구	42	271	15.50	21	59	35.59

〈부표 2-14-2〉 부산광역시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단위: 가구, 명, %)

	희망키움통장가입률(A)			내일키움통장가입률(B)		
	희망키움 가입가구수(①)	희망키움 대상가구수(②)	A= (①/②)×100	내일키움 가입자수(③)	내일키움 대상자 수(④)	B= (③/④)×100
계	1,052	5,165	20.37	544	687	79.18
중구	13	111	11.71	17	28	60.71
서구	37	193	19.17	18	16	112.50
동구	40	328	12.20	44	39	112.82
영도구	42	191	21.99	40	53	75.47
부산진구	129	588	21.94	25	31	80.65
동래구	78	274	28.47	13	31	41.94
남구	57	254	22.44	42	46	91.30
북구	96	605	15.87	61	64	95.31
해운대구	114	549	20.77	43	66	65.15
사하구	94	554	16.97	41	61	67.21
금정구	72	295	24.41	39	40	97.50
강서구	18	101	17.82	19	41	46.34
연제구	56	313	17.89	31	43	72.09
수영구	51	159	32.08	37	44	84.09
사상구	138	519	26.59	52	62	83.87
기장군	17	131	12.98	22	22	100.00

〈부표 2-14-3〉 대구광역시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단위: 가구, 명, %)

	희망키움통장가입률(A)			내일키움통장가입률(B)		
	희망키움 가입가구수(①)	희망키움 대상가구수(②)	A= (①/②)×100	내일키움 가입자수(③)	내일키움 대상자 수(④)	B= (③/④)×100
계	681	4,841	14.07	179	396	45.20
중구	23	181	12.71	32	42	76.19
동구	66	533	12.38	26	108	24.07
서구	60	617	9.72	20	57	35.09
남구	62	431	14.39	12	24	50.00
북구	113	703	16.07	15	23	65.22
수성구	134	785	17.07	36	59	61.02
달서구	143	1,343	10.65	28	51	54.90
달성군	80	248	32.26	10	32	31.25

〈부표 2-14-4〉 인천광역시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단위: 가구, 명, %)

	희망키움통장가입률(A)			내일키움통장가입률(B)		
	희망키움 가입가구수(①)	희망키움 대상가구수(②)	A= (①/②)×100	내일키움 가입자수(③)	내일키움 대상자 수(④)	B= (③/④)×100
계	678	2,200	30.82	434	850	51.06
중구	28	106	26.42	10	70	14.29
동구	27	94	28.72	15	16	93.75
남구	105	403	26.05	93	191	48.69
연수구	65	280	23.21	35	33	106.06
남동구	127	316	40.19	35	87	40.23
부평구	155	471	32.91	76	175	43.43
계양구	47	145	32.41	29	58	50.00
서구	110	291	37.80	118	185	63.78
강화군	14	89	15.73	23	35	65.71
옹진군	0	5	0.00	0	0	0.00

〈부표 2-14-5〉 광주광역시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단위: 가구, 명, %)

	희망키움통장가입률(A)			내일키움통장가입률(B)		
	희망키움 가입가구수(①)	희망키움 대상가구수(②)	A= (①/②)×100	내일키움 가입자수(③)	내일키움 대상자 수(④)	B= (③/④)×100
계	721	2,928	24.62	370	535	69.16
동구	26	224	11.61	16	24	66.67
서구	172	622	27.65	52	90	57.78
남구	103	498	20.68	42	85	49.41
북구	213	1,006	21.17	127	166	76.51
광산구	207	578	35.81	133	170	78.24

〈부표 2-14-6〉 대전광역시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단위: 가구, 명, %)

	희망키움통장가입률(A)			내일키움통장가입률(B)		
	희망키움 가입가구수(①)	희망키움 대상가구수(②)	A= (①/②)×100	내일키움 가입자수(③)	내일키움 대상자 수(④)	B= (③/④)×100
계	441	1,684	26.19	93	136	68.38
동구	112	406	27.59	12	23	52.17
중구	91	349	26.07	16	23	69.57
서구	130	475	27.37	10	14	71.43
유성구	60	206	29.13	10	21	47.62
대덕구	48	248	19.35	45	55	81.82

〈부표 2-14-7〉 울산광역시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단위: 가구, 명, %)

	희망키움통장가입률(A)			내일키움통장가입률(B)		
	희망키움 가입가구수(①)	희망키움 대상가구수(②)	A= (①/②)×100	내일키움 가입자수(③)	내일키움 대상자 수(④)	B= (③/④)×100
계	79	545	14.50	88	301	29.24
중구	12	213	5.63	10	50	20.00
남구	27	128	21.09	17	42	40.48
동구	13	62	20.97	22	79	27.85
북구	16	59	27.12	24	79	30.38
울주군	11	83	13.25	15	51	29.41

〈부표 2-14-8〉 세종시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단위: 가구, 명, %)

	희망키움통장가입률(A)			내일키움통장가입률(B)		
	희망키움 가입가구수(①)	희망키움 대상가구수(②)	A= (①/②)×100	내일키움 가입자수(③)	내일키움 대상자 수(④)	B= (③/④)×100
계	0	0	0.00	0	0	0.00

〈부표 2-14-9〉 경기도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단위: 가구, 명, %)

	희망키움통장가입률(A)			내일키움통장가입률(B)		
	희망키움 가입가구수(①)	희망키움 대상가구수(②)	A= (①/②)×100	내일키움 가입자수(③)	내일키움 대상자 수(④)	B= (③/④)×100
계	1,341	4,993	26.86	897	1,418	63.26
수원시	98	393	24.94	87	205	42.44
성남시	114	434	26.27	57	110	51.82
고양시	102	310	32.90	14	28	50.00
용인시	22	132	16.67	17	31	54.84
부천시	123	348	35.34	165	224	73.66
안산시	79	376	21.01	29	92	31.52
안양시	76	242	31.40	48	53	90.57
남양주시	76	172	44.19	42	35	120.00
화성시	29	102	28.43	36	33	109.09
평택시	53	252	21.03	11	16	68.75
의정부시	89	238	37.39	55	60	91.67
시흥시	56	175	32.00	69	68	101.47
파주시	47	180	26.11	17	35	48.57
광명시	40	152	26.32	20	67	29.85
김포시	21	112	18.75	17	18	94.44
군포시	50	150	33.33	47	65	72.31
광주시	39	126	30.95	35	43	81.40

이천시	30	145	20.69	0	0	0.00
양주시	30	101	29.70	22	20	110.00
오산시	13	107	12.15	17	19	89.47
구리시	30	113	26.55	21	17	123.53
안성시	33	110	30.00	5	46	10.87
포천시	23	106	21.70	21	21	100.00
의왕시	7	28	25.00	0	0	0.00
하남시	23	84	27.38	20	42	47.62
여주시	10	83	12.05	25	46	54.35
양평군	3	72	4.17	0	24	0.00
동두천시	3	53	5.66	0	0	0.00
과천시	4	33	12.12	0	0	0.00
가평군	13	45	28.89	0	0	0.00
연천군	5	19	26.32	0	0	0.00

〈부표 2-14-10〉 강원도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단위: 가구, 명, %)

	희망키움통장가입률(A)			내일키움통장가입률(B)		
	희망키움 가입가구수(①)	희망키움 대상가구수(②)	A= (①/②)×100	내일키움 가입자수(③)	내일키움 대상자 수(④)	B= (③/④)×100
계	414	1,682	24.61	208	411	50.61
춘천시	85	341	24.93	28	33	84.85
원주시	83	324	25.62	6	42	14.29
강릉시	58	152	38.16	8	36	22.22
동해시	18	65	27.69	18	24	75.00
태백시	6	31	19.35	11	37	29.73
속초시	20	178	11.24	23	22	104.55
삼척시	35	102	34.31	13	17	76.47
홍천군	17	66	25.76	0	25	0.00
횡성군	20	59	33.90	27	23	117.39
영월군	6	26	23.08	6	19	31.58
평창군	8	52	15.38	7	32	21.88
정선군	3	30	10.00	12	15	80.00
철원군	4	67	5.97	0	0	0.00
화천군	11	34	32.35	5	7	71.43
양구군	16	32	50.00	0	0	0.00
인제군	7	38	18.42	10	13	76.92
고성군	11	46	23.91	15	17	88.24
양양군	6	39	15.38	19	49	38.78

〈부표 2-14-11〉 충청북도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단위: 가구, 명, %)

	희망키움통장가입률(A)			내일키움통장가입률(B)		
	희망키움 가입가구수(①)	희망키움 대상가구수(②)	A= (①/②)×100	내일키움 가입자수(③)	내일키움 대상자 수(④)	B= (③/④)×100
계	237	1,156	20.50	254	487	52.16
청주시	52	388	13.40	31	44	70.45
충주시	43	221	19.46	37	48	77.08
제천시	24	177	13.56	20	60	33.33
청원군	19	50	38.00	29	38	76.32
보은군	10	27	37.04	26	49	53.06
옥천군	12	25	48.00	25	26	96.15
영동군	17	32	53.13	6	46	13.04
증평군	8	32	25.00	6	31	19.35
진천군	17	47	36.17	15	46	32.61
괴산군	7	26	26.92	6	34	17.65
음성군	19	84	22.62	33	46	71.74
단양군	9	47	19.15	20	19	105.26

〈부표 2-14-12〉 충청남도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단위: 가구, 명, %)

	희망키움통장가입률(A)			내일키움통장가입률(B)		
	희망키움 가입가구수(①)	희망키움 대상가구수(②)	A= (①/②)×100	내일키움 가입자수(③)	내일키움 대상자 수(④)	B= (③/④)×100
계	327	1,768	18.50	221	380	58.16
천안시	41	356	11.52	12	18	66.67
공주시	46	104	44.23	26	53	49.06
보령시	23	155	14.84	29	30	96.67
아산시	71	195	36.41	7	7	100.00
서산시	16	104	15.38	19	38	50.00
논산시	33	237	13.92	30	45	66.67
계룡시	8	20	40.00	0	0	0.00
당진시	10	83	12.05	12	17	70.59
금산군	10	95	10.53	17	14	121.43
부여군	11	97	11.34	0	26	0.00
서천군	12	108	11.11	20	33	60.61
청양군	4	33	12.12	4	17	23.53
홍성군	14	73	19.18	26	34	76.47
예산군	11	74	14.86	7	17	41.18
태안군	17	34	50.00	12	31	38.71

〈부표 2-14-13〉 전라북도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단위: 가구, 명, %)

	희망키움통장가입률(A)			내일키움통장가입률(B)		
	희망키움 가입가구수(①)	희망키움 대상가구수(②)	A= (①/②)×100	내일키움 가입자수(③)	내일키움 대상자 수(④)	B= (③/④)×100
계	549	2,927	18.76	249	656	37.96
전주시	187	859	21.77	16	98	16.33
군산시	54	331	16.31	17	56	30.36
익산시	81	432	18.75	53	101	52.48
정읍시	51	297	17.17	32	88	36.36
남원시	50	222	22.52	13	24	54.17
김제시	28	191	14.66	44	60	73.33
완주군	18	141	12.77	3	18	16.67
진안군	7	36	19.44	5	17	29.41
무주군	8	59	13.56	4	15	26.67
장수군	9	59	15.25	9	32	28.13
임실군	17	82	20.73	20	42	47.62
순창군	12	51	23.53	7	11	63.64
고창군	17	93	18.28	9	15	60.00
부안군	10	74	13.51	17	79	21.52

〈부표 2-14-14〉 전라남도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단위: 가구, 명, %)

	희망키움통장가입률(A)			내일키움통장가입률(B)		
	희망키움 가입가구수(①)	희망키움 대상가구수(②)	A= (①/②)×100	내일키움 가입자수(③)	내일키움 대상자 수(④)	B= (③/④)×100
계	488	2,836	17.21	450	747	60.24
목포시	42	450	9.33	46	51	90.20
여주시	60	339	17.70	31	69	44.93
순천시	64	375	17.07	17	21	80.95
나주시	28	199	14.07	23	27	85.19
광양시	74	98	75.51	22	37	59.46
담양군	15	61	24.59	0	27	0.00
곡성군	23	76	30.26	15	19	78.95
구례군	12	69	17.39	0	0	0.00
고흥군	7	105	6.67	11	14	78.57
보성군	17	75	22.67	14	11	127.27
화순군	6	101	5.94	27	69	39.13
장흥군	5	88	5.68	0	19	0.00
강진군	30	78	38.46	50	47	106.38
해남군	17	101	16.83	39	64	60.94
영암군	25	95	26.32	38	48	79.17
무안군	9	83	10.84	35	52	67.31
함평군	15	94	15.96	13	22	59.09
영광군	7	145	4.83	18	44	40.91
장성군	20	76	26.32	21	36	58.33
완도군	7	57	12.28	16	17	94.12
진도군	3	41	7.32	10	46	21.74
신안군	2	30	6.67	4	7	57.14

〈부표 2-14-15〉 경상북도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단위: 가구, 명, %)

	희망키움통장가입률(A)			내일키움통장가입률(B)		
	희망키움 가입가구수(①)	희망키움 대상가구수(②)	A= (①/②)×100	내일키움 가입자수(③)	내일키움 대상자 수(④)	B= (③/④)×100
계	689	3,376	20.41	460	824	55.83
포항시	35	622	5.63	20	32	62.50
경주시	64	237	27.00	18	26	69.23
김천시	77	120	64.17	37	45	82.22
안동시	49	236	20.76	50	88	56.82
구미시	72	317	22.71	24	45	53.33
영주시	24	217	11.06	26	54	48.15
영천시	61	211	28.91	21	43	48.84
상주시	23	127	18.11	33	40	82.50
문경시	22	152	14.47	20	37	54.05
경산시	83	357	23.25	33	51	64.71
군위군	6	34	17.65	13	31	41.94
의성군	18	70	25.71	0	0	0.00
청송군	7	35	20.00	0	0	0.00
영양군	16	54	29.63	0	0	0.00
영덕군	31	87	35.63	46	34	135.29
청도군	12	38	31.58	4	28	14.29
고령군	13	94	13.83	6	57	10.53
성주군	7	58	12.07	23	44	52.27
칠곡군	35	108	32.41	44	75	58.67
예천군	4	64	6.25	3	15	20.00
봉화군	6	49	12.24	18	22	81.82
울진군	23	85	27.06	21	57	36.84
울릉군	1	4	25.00	0	0	0.00

〈부표 2-14-16〉 경상남도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단위: 가구, 명, %)

	희망키움통장가입률(A)			내일키움통장가입률(B)		
	희망키움 가입가구수(①)	희망키움 대상가구수(②)	A= (①/②)×100	내일키움 가입자수(③)	내일키움 대상자 수(④)	B= (③/④)×100
계	426	2,457	17.34	394	901	43.73
창원시	68	455	14.95	53	77	68.83
진주시	72	413	17.43	32	114	28.07
통영시	24	144	16.67	7	15	46.67
사천시	11	77	14.29	13	72	18.06
김해시	52	291	17.87	37	43	86.05
밀양시	24	120	20.00	28	67	41.79
거제시	27	95	28.42	16	32	50.00
양산시	65	227	28.63	21	75	28.00
의령군	4	46	8.70	0	0	0.00
함안군	9	69	13.04	26	55	47.27

354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창녕군	12	85	14.12	5	11	45.45
고성군	0	64	0.00	12	54	22.22
남해군	5	47	10.64	15	42	35.71
하동군	19	91	20.88	22	45	48.89
함양군	5	43	11.63	28	73	38.36
산청군	7	59	11.86	21	50	42.00
거창군	14	67	20.90	29	45	64.44
합천군	8	64	12.50	29	31	93.55

〈부표 2-14-17〉 제주특별자치시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률

(단위: 가구, 명, %)

	희망키움통장가입률(A)			내일키움통장가입률(B)		
	희망키움 가입가구수(①)	희망키움 대상가구수(②)	A= (①/②)×100	내일키움 가입자수(③)	내일키움 대상자 수(④)	B= (③/④)×100
계	307	1,115	27.53	64	102	62.75
제주시	234	787	29.73	47	82	57.32
서귀포시	73	328	22.26	17	20	85.00

○ 의료급여관리의 적절성

〈부표 2-15-1〉 서울특별시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급여일수의 평균값(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진료비의 평균값(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287.9	322.7	2,699,432	3,018,917
종로구	302.9	323.4	2,957,287	3,232,430
중구	302.6	347.3	3,066,126	3,340,247
용산구	295.3	332.8	2,786,507	3,082,862
성동구	286.7	310.3	2,599,899	2,914,912
광진구	274.3	306.2	2,719,178	3,099,739
동대문구	300.3	336.1	2,870,517	3,265,181
중랑구	305.5	347.8	2,890,819	3,382,477
성북구	282.8	314.8	2,565,440	2,791,603
강북구	297.3	326.4	2,646,139	2,888,000
도봉구	293.3	327.3	2,843,683	3,074,431
노원구	308.0	348.6	2,600,659	2,935,901
은평구	297.7	336.7	2,701,230	3,039,248
서대문구	266.3	298.0	2,553,919	2,782,780
마포구	279.0	312.3	2,595,665	2,791,252
양천구	267.9	305.8	2,519,892	2,833,895
강서구	304.8	347.6	2,791,537	3,192,301
구로구	267.3	302.8	2,549,480	2,988,315
금천구	293.5	329.1	2,725,337	3,070,567
영등포구	285.0	321.0	2,734,893	3,075,127
동작구	293.6	330.2	2,520,189	2,874,174
관악구	290.5	323.5	2,667,206	3,004,532
서초구	254.4	292.9	2,514,394	2,811,810
강남구	291.6	325.8	2,804,733	3,122,319
송파구	273.5	305.8	2,556,090	2,833,377
강동구	283.9	315.5	2,704,980	3,045,436

〈부표 2-15-2〉 부산광역시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급여일수의 평균값(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진료비의 평균값(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288.8	326.4	3,128,981	3,582,859
중구	306.3	344.6	3,268,641	3,797,034
서구	287.7	328.5	3,122,976	3,606,633
동구	307.5	339.7	3,239,374	3,557,039
영도구	345.0	396.3	3,711,419	4,421,377
부산진구	297.8	330.2	3,252,453	3,609,109
동래구	277.5	313.4	3,230,413	3,767,034
남구	297.6	339.9	3,194,803	3,723,014
북구	280.8	316.5	2,828,921	3,186,949
해운대구	297.3	328.2	3,150,387	3,568,698
사하구	286.3	328.1	2,989,582	3,471,240
금정구	275.5	314.9	2,994,607	3,532,449
강서구	254.8	291.5	3,357,408	3,788,623
연제구	261.4	298.3	2,796,995	3,239,312
수영구	275.2	319.0	2,754,537	3,139,345
사상구	277.1	314.7	3,074,343	3,496,869
기장군	292.5	318.8	3,096,831	3,421,016

〈부표 2-15-3〉 대구광역시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급여일수의 평균값(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진료비의 평균값(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277.4	323.0	2,659,296	3,123,531
중구	302.4	333.8	2,935,560	3,265,939
동구	313.0	362.7	2,819,285	3,299,699
서구	269.5	318.4	2,744,730	3,256,915
남구	275.9	315.8	2,565,572	2,932,616
북구	262.2	308.3	2,512,063	3,083,232
수성구	256.4	297.2	2,351,481	2,741,101
달서구	257.4	306.0	2,444,506	2,946,533
달성군	282.1	341.7	2,901,170	3,462,214

〈부표 2-15-4〉 인천광역시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급여일수의 평균값(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진료비의 평균값(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277.1	314.2	2,625,327	3,112,066
중구	268.6	289.0	2,579,201	2,900,786
동구	309.0	365.9	2,808,777	3,463,942
남구	271.0	311.7	2,636,005	3,110,795
연수구	261.1	290.4	2,374,667	2,768,785
남동구	259.5	301.0	2,516,358	2,912,839
부평구	285.6	324.3	2,731,505	3,189,378
계양구	261.0	308.3	2,787,976	3,509,070
서구	252.6	286.2	2,887,687	3,354,421
강화군	294.1	312.1	2,471,020	2,702,334
옹진군	308.2	353.3	2,460,070	3,208,305

〈부표 2-15-5〉 광주광역시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급여일수의 평균값(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진료비의 평균값(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224.5	254.1	2,342,661	2,737,945
동구	243.4	272.6	2,490,410	2,898,704
서구	216.7	247.6	2,237,410	2,597,780
남구	211.9	235.1	2,173,170	2,554,011
북구	226.5	263.8	2,322,379	2,742,100
광산구	224.0	251.2	2,489,934	2,897,130

〈부표 2-15-6〉 대전광역시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급여일수의 평균값(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진료비의 평균값(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268.9	309.0	2,656,818	3,107,917
동구	299.3	341.4	2,795,914	3,238,150
중구	253.1	298.9	2,715,257	3,203,441
서구	254.9	297.1	2,478,326	2,996,433
유성구	266.0	300.4	2,525,492	3,025,410
대덕구	271.0	307.0	2,769,102	3,076,150

〈부표 2-15-7〉 울산광역시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급여일수의 평균값(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진료비의 평균값(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274.2	312.0	3,330,912	3,692,121
중구	271.2	308.9	3,213,660	3,638,420
남구	275.5	319.3	3,427,790	3,920,676
동구	289.4	337.7	3,262,227	3,413,371
북구	238.8	271.6	2,699,684	3,040,816
울주군	296.3	322.6	4,051,199	4,447,323

〈부표 2-15-8〉 세종시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급여일수의 평균값(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진료비의 평균값(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0	0	0	0

〈부표 2-15-9〉 경기도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급여일수의 평균값(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진료비의 평균값(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286.5	330.6	2,819,925	3,319,610
수원시	286.5	329.9	2,794,033	3,272,085
성남시	318.2	363.3	2,850,493	3,346,655
고양시	296.3	329.6	2,799,315	3,228,706
용인시	282.6	320.3	2,811,457	3,309,216
부천시	295.6	341.9	3,175,735	3,734,160
안산시	274.8	311.9	2,912,704	3,384,536
안양시	277.6	321.0	2,903,409	3,271,564
남양주시	292.7	330.3	3,102,046	3,514,769
화성시	276.4	307.5	2,697,914	3,235,967
평택시	280.0	325.8	2,800,310	3,168,573
의정부시	285.7	330.1	2,688,956	3,128,368
시흥시	253.1	287.7	2,712,878	3,135,651
파주시	297.7	343.3	2,842,312	3,320,955
광명시	309.2	336.6	2,751,131	3,230,600
김포시	279.0	310.2	2,930,425	3,240,274
군포시	293.2	340.6	2,869,582	3,409,935
광주시	229.2	298.8	2,276,527	2,987,102

이천시	287.4	332.2	2,742,092	3,328,302
양주시	251.5	317.0	2,329,904	3,055,919
오산시	253.8	308.7	2,665,559	3,250,610
구리시	285.4	328.7	2,844,261	3,355,111
안성시	242.9	254.7	2,632,443	2,874,450
포천시	284.6	333.6	2,841,606	3,284,275
의왕시	292.1	331.7	3,197,199	3,763,132
하남시	324.6	360.6	3,411,612	3,681,521
여주시	276.6	319.5	2,946,308	3,426,251
양평군	332.9	354.2	3,176,938	3,449,258
동두천시	249.3	340.1	2,615,421	4,014,527
과천시	274.8	302.5	2,421,046	2,848,389
가평군	387.0	435.3	2,983,036	3,349,078
연천군	309.6	401.3	2,691,028	3,307,976

〈부표 2-15-10〉 강원도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급여일수의 평균값(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진료비의 평균값(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287.6	315.7	2,718,866	3,038,517
춘천시	265.9	299.7	2,449,260	2,860,661
원주시	271.6	303.4	2,605,174	2,938,540
강릉시	278.7	317.7	2,719,624	2,926,526
동해시	312.6	345.7	3,199,296	3,509,279
태백시	286.3	328.3	2,719,038	3,099,986
속초시	315.1	342.4	2,781,659	3,010,889
삼척시	287.2	318.5	2,810,622	2,961,441
홍천군	282.8	308.6	2,897,943	3,409,557
횡성군	282.2	314.5	2,627,131	2,935,061
영월군	275.6	313.5	3,043,997	3,649,323
평창군	267.6	242.0	2,624,873	2,431,371
정선군	282.4	303.3	2,493,634	2,817,669
철원군	291.5	332.0	2,618,988	3,237,741
화천군	298.8	299.1	2,544,739	2,768,191
양구군	298.9	333.1	2,988,871	3,368,502
인제군	285.3	299.8	2,735,758	2,759,438
고성군	298.5	337.2	2,741,196	3,209,430
양양군	295.3	342.9	2,337,790	2,799,700

〈부표 2-15-11〉 충청북도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급여일수의 평균값(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진료비의 평균값(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303.7	334.5	2,987,381	3,318,212
청주시	262.1	301.1	2,485,130	2,870,729
충주시	287.3	319.0	2,835,367	3,164,387
제천시	269.3	302.4	2,871,362	3,362,738
청원군	288.7	317.1	3,013,294	3,313,600
보은군	331.6	347.8	3,649,745	3,914,368
옥천군	350.6	394.2	3,627,958	3,946,660
영동군	334.5	367.6	3,207,292	3,701,664
증평군	277.9	305.6	2,548,052	2,609,626
진천군	280.4	320.1	2,805,182	3,217,684
괴산군	307.1	330.9	2,994,213	3,472,674
음성군	371.4	395.8	2,837,051	2,901,077
단양군	283.0	312.3	2,973,924	3,343,334

〈부표 2-15-12〉 충청남도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급여일수의 평균값(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진료비의 평균값(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294.1	328.0	2,968,242	3,426,354
천안시	256.1	298.2	2,731,643	3,370,721
공주시	285.4	328.8	3,276,240	3,717,673
보령시	293.3	328.9	2,759,925	3,188,301
아산시	282.1	310.6	2,888,545	3,226,407
서산시	268.8	302.6	2,629,967	2,864,956
논산시	293.6	332.8	3,158,102	3,648,401
계룡시	323.8	353.7	3,461,322	4,037,296
당진시	321.3	359.4	3,399,014	4,076,355
금산군	334.3	366.5	3,186,334	3,763,334
부여군	328.0	351.4	3,263,688	3,620,330
서천군	318.9	357.4	2,894,968	3,610,887
청양군	289.6	328.4	2,905,606	3,436,285
홍성군	307.8	342.2	3,022,816	3,283,039
예산군	225.4	253.6	2,117,641	2,499,703
태안군	282.4	305.4	2,827,823	3,051,617

〈부표 2-15-13〉 전라북도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급여일수의 평균값(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진료비의 평균값(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289.2	323.9	3,047,736	3,489,915
전주시	230.6	259.0	2,430,870	2,824,705
군산시	278.2	321.4	2,751,230	3,155,379
익산시	283.1	321.7	2,735,772	3,152,712
정읍시	288.3	318.6	3,005,023	3,274,075
남원시	286.9	312.4	2,818,507	3,118,575
김제시	320.7	349.7	3,603,245	4,002,678
완주군	274.2	303.6	2,936,185	3,503,629
진안군	353.0	373.9	3,454,321	3,876,137
무주군	299.0	318.3	3,110,873	3,197,062
장수군	284.9	315.0	2,730,801	3,167,048
임실군	295.1	339.4	3,160,809	3,762,767
순창군	299.7	319.8	3,347,451	3,512,460
고창군	236.8	314.6	2,825,246	3,910,460
부안군	318.4	367.2	3,757,975	4,401,119

〈부표 2-15-14〉 전라남도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급여일수의 평균값(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진료비의 평균값(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292.5	321.9	3,134,964	3,611,534
목포시	286.5	319.6	3,207,633	3,714,837
여수시	267.9	303.0	2,995,013	3,444,246
순천시	240.6	277.4	2,775,061	3,224,475
나주시	279.7	310.8	3,109,524	3,678,714
광양시	230.9	262.0	2,479,413	2,832,514
담양군	284.4	322.5	3,028,319	3,595,700
곡성군	309.7	346.7	3,024,402	3,648,337
구례군	294.9	322.8	3,569,894	4,099,551
고흥군	297.4	331.2	3,590,370	4,238,006
보성군	293.3	316.7	3,039,521	3,361,950
화순군	257.0	286.1	2,854,106	3,419,589
장흥군	307.9	339.6	3,004,597	3,415,152
강진군	292.6	314.4	3,034,147	3,419,474
해남군	320.9	351.7	3,549,528	4,014,360
영암군	296.2	308.2	3,251,144	3,589,318
무안군	286.5	317.0	3,308,330	3,755,914
함평군	293.0	312.9	3,021,190	3,430,167
영광군	300.2	332.0	3,199,138	3,422,293
장성군	310.1	339.1	3,404,073	3,947,225
완도군	352.6	383.3	3,133,943	3,619,865
진도군	314.7	339.6	3,110,329	3,691,694
신안군	318.2	345.3	3,279,542	3,890,377

〈부표 2-15-15〉 경상북도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급여일수의 평균값(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진료비의 평균값(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293.5	328.8	3,148,823	3,553,601
포항시	274.0	318.4	2,909,256	3,428,373
경주시	292.2	323.2	3,396,145	3,979,577
김천시	292.7	325.0	3,316,530	3,767,441
안동시	292.7	322.1	3,397,093	3,826,051
구미시	248.4	275.6	2,704,872	3,011,918
영주시	270.1	301.5	2,747,093	3,238,233
영천시	311.7	345.3	2,991,571	3,535,541
상주시	312.1	348.5	3,161,181	3,547,138
문경시	289.1	330.9	2,894,868	3,266,548
경산시	275.9	311.7	2,843,895	3,243,468
군위군	308.8	343.1	3,084,053	3,290,396
의성군	310.0	352.5	3,675,125	4,274,705
청송군	292.4	328.2	3,241,485	3,589,868
영양군	274.7	303.8	2,956,261	3,371,202
영덕군	328.3	373.7	3,353,082	3,899,101
청도군	348.8	379.9	3,948,685	4,346,536
고령군	280.3	317.8	2,893,594	3,351,089
성주군	292.5	325.4	3,385,737	3,851,223
칠곡군	309.2	346.1	3,074,218	3,437,390
예천군	295.9	336.4	3,456,551	3,852,811
봉화군	281.5	297.3	3,157,610	3,542,327
울진군	298.6	331.0	3,146,374	3,538,251
울릉군	269.7	325.2	2,687,649	2,543,646

〈부표 2-15-16〉 경상남도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급여일수의 평균값(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진료비의 평균값(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290.3	316.3	3,382,869	3,790,720
창원시	293.6	322.3	3,633,441	4,101,623
진주시	256.9	287.9	3,030,223	3,304,621
통영시	282.1	314.3	3,285,298	3,741,540
사천시	305.8	336.1	3,768,868	4,188,767
김해시	277.1	314.8	3,457,617	4,053,312
밀양시	294.8	328.1	3,344,309	3,784,584
거제시	258.0	292.9	3,293,857	3,763,994
양산시	269.1	304.2	3,281,257	3,695,904
의령군	327.0	347.0	3,966,766	4,535,095
함안군	291.6	326.4	3,460,526	3,904,839

창녕군	313.3	356.2	3,941,574	4,611,718
고성군	301.8	333.9	3,637,766	4,252,188
남해군	287.8	316.9	3,522,472	3,893,495
하동군	284.1	302.0	3,327,249	3,711,479
함양군	301.0	294.0	2,753,887	2,792,845
산청군	306.0	329.2	3,002,157	3,358,126
거창군	261.9	265.9	2,888,318	2,925,013
합천군	314.2	321.2	3,296,055	3,613,809

〈부표 2-15-17〉 제주특별자치시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전체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급여일수의 평균값(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진료비의 평균값(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271.8	302.7	2,513,308	2,862,998
제주시	267.7	301.5	2,427,347	2,724,916
서귀포시	275.9	303.8	2,599,269	3,001,079

〈부표 2-16-1〉 서울특별시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1,132.2	1,088.8	7,003,205	6,209,983
종로구	1,148.9	1,062.2	7,852,785	7,518,779
중구	1,193.8	1,231.2	7,231,942	8,285,988
용산구	1,291.6	1,264.5	7,688,902	7,560,085
성동구	1,030.2	996.6	6,462,779	5,452,853
광진구	1,094.4	1,020.6	6,562,106	5,260,272
동대문구	1,031.6	1,077.6	6,089,855	5,964,810
중랑구	1,152.5	1,151.5	7,580,649	7,081,184
성북구	1,131.9	1,168.6	7,535,548	6,161,777
강북구	1,108.2	1,052.7	6,931,138	5,726,686
도봉구	1,100.6	1,039.5	6,070,319	4,950,792
노원구	1,378.1	1,300.5	9,146,984	8,304,266
은평구	937.3	923.3	5,038,180	5,286,375
서대문구	1,008.8	998.1	5,096,203	4,966,822
마포구	1,142.6	1,043.6	7,879,820	5,428,495
양천구	1,189.8	1,080.6	8,091,268	6,767,330
강서구	1,114.1	1,095.2	7,084,306	7,290,257
구로구	1,071.1	1,064.5	6,918,606	6,004,869
금천구	1,149.5	1,118.9	7,154,813	7,303,051
영등포구	1,190.0	1,156.2	6,858,624	6,201,659
동작구	1,249.8	1,150.0	8,644,073	6,369,185
관악구	1,219.8	1,117.6	7,070,242	5,884,329
서초구	1,028.0	930.0	6,177,501	4,257,270
강남구	1,272.7	1,153.0	7,721,880	6,920,414
송파구	1,003.0	1,063.6	5,269,426	4,779,807
강동구	1,066.9	959.6	6,922,175	5,522,214

〈부표 2-16-2〉 부산광역시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사례관리대상자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1,023.0	948.3	8,559,916	5,963,381
중구	934.9	918.2	9,246,219	5,538,484
서구	1,027.2	965.9	6,707,473	5,094,497
동구	1,258.7	1,154.7	8,638,489	6,658,584
영도구	1,154.7	1,081.4	10,223,829	8,012,853
부산진구	1,074.1	1,041.0	10,322,216	8,762,642
동래구	1,074.3	1,034.7	9,336,334	7,148,510
남구	1,086.8	972.6	8,409,476	5,440,660
북구	1,083.5	1,007.8	8,074,382	6,097,637
해운대구	1,031.1	967.9	6,833,130	5,239,303
사하구	980.3	940.4	7,419,538	5,567,135
금정구	943.5	863.5	7,665,157	5,133,479
강서구	822.7	723.2	5,603,569	4,189,230
연제구	1,021.9	936.7	7,670,060	5,749,538
수영구	865.8	841.3	10,975,811	5,502,889
사상구	1,022.1	850.1	11,790,238	6,460,017
기장군	986.7	873.4	8,042,737	4,818,643

〈부표 2-16-3〉 대구광역시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사례관리대상자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1,147.5	1,071.1	7,661,177	6,453,037
중구	988.0	894.9	7,962,819	5,625,934
동구	1,120.2	1,048.1	8,493,755	6,065,456
서구	1,126.1	1,088.9	7,237,151	6,369,718
남구	1,207.2	1,136.8	7,585,859	6,588,456
북구	1,167.5	1,123.2	6,568,280	5,523,966
수성구	1,224.7	1,093.6	8,561,232	7,653,620
달서구	1,267.1	1,182.1	7,941,322	6,680,181
달성군	1,078.9	1,001.1	6,938,995	7,116,963

〈부표 2-16-4〉 인천광역시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사례관리대상자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899.3	857.9	6,233,600	5,172,493
중구	976.3	952.7	5,640,492	5,278,714
동구	1,073.8	1,045.8	7,001,054	6,581,219
남구	930.9	799.6	6,516,850	4,575,523
연수구	1,017.2	956.6	6,334,873	4,722,964
남동구	953.0	889.7	7,416,703	5,023,458
부평구	1,210.4	1,105.5	8,212,901	6,389,455
계양구	1,146.7	1,148.8	8,805,097	8,337,746
서구	1,072.1	1,047.2	9,034,972	8,019,036
강화군	0.0	0.0	0	0
옹진군	612.1	633.1	3,373,053	2,796,810

〈부표 2-16-5〉 광주광역시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사례관리대상자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1,011.2	869.9	9,604,180	6,583,360
동구	1,050.8	880.6	8,130,875	5,968,764
서구	1,029.6	875.0	10,568,270	6,607,003
남구	927.0	762.5	7,380,896	5,288,009
북구	1,086.5	969.0	11,705,573	7,981,900
광산구	961.9	862.6	10,235,285	7,071,124

〈부표 2-16-6〉 대전광역시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사례관리대상자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1,157.6	1,123.4	8,060,328	6,743,633
동구	1,231.8	1,201.0	8,086,190	6,781,155
중구	1,217.1	1,164.1	8,719,059	7,507,905
서구	1,165.4	1,183.3	9,191,841	6,934,739
유성구	983.0	968.5	6,054,529	6,248,706
대덕구	1,190.9	1,100.0	8,250,021	6,245,659

〈부표 2-16-7〉 울산광역시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사례관리대상자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880.2	871.5	8,178,984	6,073,310
중구	924.6	949.4	7,642,147	6,021,784
남구	925.7	909.7	7,462,480	6,493,899
동구	865.4	839.2	5,742,528	5,118,425
북구	877.5	853.2	9,722,586	5,939,999
울주군	807.7	806.0	10,325,180	6,792,444

〈부표 2-16-8〉 세종시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사례관리대상자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0	0	0	0

〈부표 2-16-9〉 경기도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사례관리대상자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1,022.9	952.4	7,515,293	5,588,707
수원시	1,273.2	1,213.2	8,038,044	6,585,967
성남시	1,171.6	1,069.9	7,368,789	6,270,686
고양시	1,139.5	1,129.8	7,458,940	7,022,643
용인시	1,050.6	954.5	7,318,679	4,921,016
부천시	1,129.4	1,057.3	11,978,296	7,257,121
안산시	1,325.5	1,254.9	8,862,304	6,652,817
안양시	1,202.7	935.7	8,026,514	5,629,717
남양주시	1,005.7	976.6	8,259,140	5,527,584
화성시	894.0	822.3	6,078,088	5,664,484
평택시	1,162.8	1,070.0	7,839,694	6,133,064
의정부시	1,033.6	985.8	8,929,714	6,377,627
시흥시	884.7	813.0	6,896,037	4,699,337
파주시	1,002.4	853.6	8,315,646	4,806,920
광명시	1,046.8	986.9	5,688,703	5,706,402
김포시	1,073.6	946.2	9,552,474	7,169,136
군포시	1,019.9	979.9	8,864,428	5,707,722
광주시	870.9	894.0	5,763,799	4,242,329

이천시	1,010.0	973.6	7,379,017	5,850,769
양주시	1,062.4	1,022.8	5,993,186	5,562,429
오산시	829.1	782.5	7,549,814	5,951,684
구리시	942.5	843.2	9,543,224	5,456,641
안성시	1,014.5	1,013.5	6,926,105	6,016,388
포천시	1,043.4	959.9	9,186,348	6,498,084
의왕시	937.0	869.4	6,183,230	3,875,143
하남시	1,086.6	1,075.2	7,034,067	5,786,286
여주시	882.7	856.3	7,100,359	4,813,621
양평군	948.2	895.8	6,175,189	4,467,000
동두천시	960.3	892.7	6,873,640	5,511,999
과천시	775.4	601.1	5,470,573	2,586,129
가평군	872.3	838.3	4,608,384	4,920,613
연천군	1,057.7	955.9	7,711,643	5,578,545

〈부표 2-16-10〉 강원도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사례관리대상자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889.7	856.1	6,208,523	5,388,962
춘천시	1,074.7	978.3	8,324,097	6,080,053
원주시	1,016.8	916.7	6,745,007	6,153,370
강릉시	954.2	959.3	5,916,537	4,866,168
동해시	842.7	843.1	6,578,335	6,126,137
태백시	864.4	818.1	6,454,466	6,263,395
속초시	849.4	863.1	5,840,373	4,908,723
삼척시	924.8	958.2	6,664,577	6,543,438
홍천군	696.1	691.2	4,686,837	4,624,441
횡성군	848.0	775.7	5,393,905	4,176,191
영월군	829.5	770.4	6,780,318	6,168,319
평창군	832.7	799.5	3,214,314	3,354,479
정선군	883.3	843.4	5,553,409	5,676,675
철원군	1,009.0	985.6	7,213,161	6,197,727
화천군	929.3	919.5	6,432,987	4,619,840
양구군	940.8	888.7	6,392,068	6,194,707
인제군	854.6	800.7	8,582,950	6,145,911
고성군	736.1	697.2	5,583,029	4,295,525
양양군	928.5	901.0	5,397,045	4,606,218

〈부표 2-16-11〉 충청북도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사례관리대상자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990.6	915.1	7,140,176	5,479,000
청주시	1,068.0	994.6	6,522,651	6,097,727
충주시	1,060.8	936.4	7,690,264	5,222,629
제천시	995.8	873.2	7,669,350	5,515,685
청원군	961.0	897.0	7,610,359	6,251,433
보은군	995.2	973.0	5,696,922	5,448,100
옥천군	962.7	899.3	7,498,958	5,352,821
영동군	878.0	844.9	5,711,658	4,878,581
증평군	963.4	898.1	7,346,738	6,314,218
진천군	1,011.7	985.4	7,721,635	6,576,699
괴산군	1,022.8	887.7	7,357,125	4,411,325
음성군	1,016.7	972.4	7,950,944	5,380,353
단양군	950.9	819.6	6,905,508	4,298,428

〈부표 2-16-12〉 충청남도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사례관리대상자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1,025.1	968.2	6,859,801	6,069,921
천안시	1,021.6	1,006.6	7,269,833	8,233,118
공주시	1,040.4	1,022.1	6,265,671	6,215,280
보령시	1,007.5	882.0	6,822,342	5,067,934
아산시	935.8	863.9	5,927,173	4,940,540
서산시	1,109.8	1,036.5	7,618,785	6,570,095
논산시	1,253.8	1,184.8	9,083,988	7,846,495
계룡시	659.9	668.0	4,148,409	3,534,724
당진시	754.0	780.3	5,249,125	4,064,174
금산군	1,200.5	1,263.4	9,322,230	9,117,321
부여군	1,134.4	1,043.1	6,724,194	7,183,672
서천군	1,183.6	1,070.9	8,940,571	8,070,139
청양군	1,264.3	1,014.8	7,296,834	6,219,262
홍성군	917.3	912.8	5,736,671	4,581,851
예산군	876.3	830.4	6,001,640	4,673,945
태안군	1,017.7	943.1	6,489,543	4,730,272

〈부표 2-16-13〉 전라북도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사례관리대상자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982.2	890.5	7,623,582	6,012,815
전주시	945.6	874.9	8,767,080	6,027,402
군산시	999.0	891.3	7,022,251	5,657,887
익산시	1,052.3	932.7	7,919,457	5,536,384
정읍시	1,001.4	879.8	7,574,383	5,033,538
남원시	1,069.1	997.2	7,064,003	5,902,021
김제시	1,203.3	1,089.1	9,582,995	5,608,827
완주군	971.9	909.3	6,909,413	7,286,485
진안군	997.9	902.9	5,071,999	5,654,997
무주군	1,037.6	853.8	7,180,867	6,142,509
장수군	846.3	781.7	5,814,404	5,966,798
임실군	885.5	837.5	11,664,154	6,720,201
순창군	792.9	708.5	6,456,460	5,169,139
고창군	980.7	960.9	7,537,168	7,476,182
부안군	966.8	847.5	8,165,512	5,997,040

〈부표 2-16-14〉 전라남도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사례관리대상자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912.7	860.4	6,820,529	6,222,478
목포시	990.5	929.4	8,968,067	8,750,432
여수시	1,044.5	916.7	8,120,843	6,807,404
순천시	852.0	801.9	6,654,597	5,069,485
나주시	916.0	824.3	6,746,510	4,501,887
광양시	807.4	754.1	6,099,701	4,659,382
담양군	835.6	761.8	6,214,490	5,834,528
곡성군	1,025.9	959.8	6,426,039	5,749,916
구례군	995.5	886.0	6,951,007	5,872,870
고흥군	906.3	838.7	7,283,620	7,357,507
보성군	894.9	909.9	5,319,886	5,386,752
화순군	917.6	820.0	5,974,439	5,808,584
장흥군	904.1	878.5	6,033,502	6,921,486
강진군	939.8	939.6	7,702,818	7,982,936
해남군	937.9	861.0	7,150,972	7,866,151
영암군	897.9	780.4	7,236,873	6,146,648
무안군	993.0	1,087.8	7,850,619	7,728,571
함평군	716.4	734.6	4,717,422	5,245,146
영광군	877.3	820.6	9,140,206	6,282,491
장성군	931.1	869.6	6,951,875	6,888,021
완도군	945.5	859.2	6,426,276	5,967,556
진도군	862.1	830.1	5,450,828	4,247,636
신안군	887.1	863.7	6,631,043	5,819,118

〈부표 2-16-15〉 경상북도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사례관리대상자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932.0	916.4	6,802,911	5,903,927
포항시	1,027.7	1,006.9	6,910,971	6,115,610
경주시	962.1	911.4	9,313,855	7,018,958
김천시	1,006.8	961.9	6,932,483	6,382,003
안동시	991.4	905.2	7,946,167	6,612,731
구미시	1,093.3	1,032.3	7,433,866	6,491,663
영주시	866.0	854.1	6,438,023	5,466,935
영천시	1,091.5	1,015.4	7,047,205	7,202,361
상주시	1,018.1	985.0	7,004,307	6,506,714
문경시	904.6	848.8	5,960,218	5,815,674
경산시	881.2	827.8	9,170,302	5,704,749
군위군	956.6	954.4	4,967,070	4,812,420
의성군	1,061.8	982.5	7,356,724	5,713,228
청송군	928.1	862.1	5,720,067	5,632,918
영양군	738.4	819.1	6,601,896	6,292,664
영덕군	1,048.3	974.5	8,310,460	6,137,619
청도군	972.3	914.2	5,840,531	5,145,811
고령군	830.9	813.1	5,643,276	5,041,155
성주군	722.0	725.4	7,159,817	4,955,670
칠곡군	1,060.1	1,159.7	6,330,374	6,336,858
예천군	871.9	975.4	8,964,062	6,332,243
봉화군	931.4	914.2	6,017,349	5,022,757
울진군	976.8	983.6	7,304,396	6,962,895
울릉군	493.6	649.6	2,093,531	4,086,675

〈부표 2-16-16〉 경상남도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사례관리대상자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945.4	903.6	6,719,621	6,059,342
창원시	1,014.2	968.5	6,859,289	6,576,596
진주시	836.2	833.4	5,673,259	4,649,799
통영시	1,034.4	951.2	7,463,946	7,051,326
사천시	964.1	990.0	7,066,965	7,812,892
김해시	1,165.5	1,090.0	8,299,077	7,519,001
밀양시	906.6	825.2	7,506,321	5,764,952
거제시	915.0	863.6	7,182,807	5,913,492
양산시	1,052.0	978.8	8,040,775	5,830,753
의령군	914.7	903.8	5,672,319	5,313,840
함안군	853.1	820.0	6,140,687	5,878,283

372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창녕군	1,069.7	1,040.1	6,308,289	7,639,896
고성군	794.6	798.5	9,383,963	6,614,374
남해군	978.7	933.4	6,626,256	5,123,108
하동군	783.5	748.6	5,910,840	4,520,346
함양군	822.1	779.6	4,324,771	4,290,468
산청군	948.1	879.8	5,895,724	5,917,707
거창군	967.4	930.6	7,186,624	6,478,434
합천군	997.4	929.4	5,411,272	6,172,894

〈부표 2-16-17〉 제주특별자치시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

(단위: 일, 원)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일수		사례관리대상자 1인당 평균 의료급여진료비	
	'12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A)	'13년 1인당 평균 급여일수(B)	'12년 1인당 평균 진료비(C)	'13년 1인당 평균 진료비(D)
계	1,041.0	986.2	8,285,212	6,374,859
제주시	1,065.9	1,015.4	7,667,330	5,728,248
서귀포시	1,016.0	957.0	8,903,093	7,021,469

〈부표 2-17-1〉 서울특별시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통보건수(②)	A=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B= (③/④)×100
계	11,370	11,712	97.08	404,054,138	620,434,758	65.12
종로구	330	330	100.00	35,467,710	37,914,900	93.55
중구	293	300	97.67	6,306,670	16,354,840	38.56
용산구	329	329	100.00	1,294,680	1,294,680	100.00
성동구	310	310	100.00	8,216,950	38,222,800	21.50
광진구	249	250	99.60	5,596,290	6,303,140	88.79
동대문구	631	634	99.53	5,185,850	5,498,470	94.31
종량구	674	674	100.00	6,995,350	39,076,110	17.90
성북구	438	449	97.55	14,218,930	14,417,950	98.62
강북구	672	672	100.00	6,885,400	19,103,970	36.04
도봉구	329	330	99.70	3,505,910	20,822,510	16.84
노원구	985	1,001	98.40	23,919,400	24,673,570	96.94
은평구	632	632	100.00	11,633,550	30,495,450	38.15
서대문구	269	343	78.43	2,757,030	3,247,290	84.90
마포구	322	322	100.00	20,267,520	23,927,480	84.70
양천구	467	476	98.11	4,943,270	6,827,810	72.40
강서구	975	983	99.19	26,817,540	58,531,230	45.82
구로구	379	383	98.96	6,612,230	11,589,740	57.05
금천구	550	550	100.00	3,691,480	4,578,300	80.63
영등포구	528	528	100.00	6,562,110	7,521,920	87.24
동작구	372	398	93.47	19,642,710	21,321,750	92.13
관악구	329	504	65.28	127,224,410	131,715,190	96.59
서초구	183	183	100.00	10,383,450	18,580,140	55.89
강남구	417	424	98.35	13,658,720	23,918,810	57.11
송파구	367	367	100.00	14,634,188	35,952,058	40.71
강동구	340	340	100.00	17,632,790	18,544,650	95.08

〈부표 2-17-2〉 부산광역시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통보건수(②)	A=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B= (③/④)×100
계	9,763	9,808	99.54	310,064	564,270	54.95
중구	184	184	100.00	6,324	13,125	48.18
서구	495	496	99.80	23,266	70,883	32.82
동구	660	660	100.00	19,477	62,190	31.32
영도구	703	705	99.72	20,523	54,260	37.82
부산진구	1,057	1,057	100.00	27,926	30,356	92.00
동래구	400	401	99.75	5,914	7,517	78.68
남구	599	600	99.83	21,463	22,477	95.49
북구	840	840	100.00	34,796	59,742	58.24
해운대구	1,170	1,170	100.00	40,665	70,472	57.70
사하구	908	908	100.00	49,844	75,709	65.84
금정구	596	597	99.83	6,524	13,650	47.80
강서구	179	179	100.00	10,469	10,916	95.91
연제구	424	463	91.58	18,823	20,623	91.27
수영구	364	364	100.00	7,007	12,769	54.88
사상구	790	790	100.00	15,021	36,921	40.68
기장군	394	394	100.00	2,022	2,660	76.02

〈부표 2-17-3〉 대구광역시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통보건수(②)	A=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B= (③/④)×100
계	5,995	6,013	99.70	481,319,810	526,626,350	91.40
중구	276	276	100.00	35,277,470	35,537,030	99.27
동구	944	944	100.00	62,897,750	70,067,940	89.77
서구	704	705	99.86	159,364,210	172,685,020	92.29
남구	502	502	100.00	23,137,730	38,508,670	60.08
북구	831	836	99.40	55,680,610	59,411,570	93.72
수성구	812	813	99.88	114,481,550	115,289,770	99.30
달서구	1,368	1,379	99.20	24,169,400	28,607,720	84.49
달성군	558	558	100.00	6,311,090	6,518,630	96.82

〈부표 2-17-4〉 인천광역시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통보건수(②)	A=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B= (③/④)×100
계	4,745	4,754	99.81	107,193,610	223,395,080	47.98
중구	207	207	100.00	10,363,930	17,885,710	57.95
동구	167	167	100.00	5,232,200	5,391,710	97.04
남구	753	753	100.00	10,174,510	25,809,510	39.42
연수구	465	465	100.00	4,956,310	22,011,140	22.52
남동구	780	780	100.00	22,614,990	50,717,120	44.59
부평구	1,095	1,096	99.91	22,943,930	29,482,420	77.82
계양구	551	558	98.75	7,515,340	42,060,430	17.87
서구	526	527	99.81	14,719,540	17,092,040	86.12
강화군	171	171	100.00	7,639,720	11,911,860	64.14
옹진군	30	30	100.00	1,033,140	1,033,140	100.00

〈부표 2-17-5〉 광주광역시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통보건수(②)	A=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B= (③/④)×100
계	4,512	4,512	100.00	145,833,375	179,786,405	81.12
동구	447	447	100.00	7,748,150	21,527,520	35.99
서구	828	828	100.00	39,397,510	53,369,280	73.82
남구	599	599	100.00	9,613,310	13,503,640	71.19
북구	1,650	1,650	100.00	71,229,685	73,322,365	97.15
광산구	988	988	100.00	17,844,720	18,063,600	98.79

〈부표 2-17-6〉 대전광역시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통보건수(②)	A=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B= (③/④)×100
계	2,700	2,719	99.30	181,025,960	225,043,910	80.44
동구	769	780	98.59	64,289,510	92,954,060	69.16
중구	485	487	99.59	33,722,660	35,815,110	94.16
서구	595	600	99.17	2,848,740	4,116,180	69.21
유성구	275	275	100.00	38,453,840	50,447,350	76.23
대덕구	576	577	99.83	41,711,210	41,711,210	100.00

〈부표 2-17-7〉 울산광역시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통보건수(②)	A=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B= (③/④)×100
계	1,062	1,062	100.00	14,517,460	36,492,094	39.78
중구	336	336	100.00	3,194,050	10,328,094	30.93
남구	320	320	100.00	5,028,210	6,745,040	74.55
동구	80	80	100.00	2,228,030	14,862,830	14.99
북구	112	112	100.00	1,675,440	1,675,440	100.00
울주군	214	214	100.00	2,391,730	2,880,690	83.03

〈부표 2-17-8〉 세종시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통보건수(②)	A=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B= (③/④)×100
계	0	0	0	0	0	0

〈부표 2-17-9〉 경기도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통보건수(②)	A=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B= (③/④)×100
계	13,425	13,502	99.43	1,195,286,757	1,511,614,327	79.07
수원시	1,015	1,032	98.35	40,598,380	62,232,900	65.24
성남시	879	879	100.00	35,087,200	56,653,780	61.93
고양시	873	874	99.89	189,697,150	245,576,310	77.25
용인시	469	469	100.00	8,905,697	9,691,547	91.89
부천시	1,064	1,064	100.00	34,632,960	36,977,970	93.66
안산시	1,211	1,211	100.00	46,422,890	125,341,000	37.04
안양시	433	445	97.30	209,998,610	210,247,060	99.88
남양주시	521	521	100.00	383,818,450	387,576,060	99.03
화성시	393	393	100.00	5,077,790	6,376,590	79.63
평택시	593	593	100.00	11,618,500	12,435,970	93.43
의정부시	597	599	99.67	16,034,420	16,567,330	96.78
시흥시	433	456	94.96	59,107,930	68,008,220	86.91
파주시	571	571	100.00	17,495,650	26,409,830	66.25
광명시	360	360	100.00	7,098,810	14,568,770	48.73
김포시	354	357	99.16	4,031,650	6,434,770	62.65
군포시	260	260	100.00	10,238,670	14,572,000	70.26
광주시	204	204	100.00	3,302,980	3,422,670	96.50

이천시	288	288	100.00	5,838,850	36,991,310	15.78
양주시	292	303	96.37	2,217,760	2,217,760	100.00
오산시	209	209	100.00	1,251,090	20,753,590	6.03
구리시	198	198	100.00	8,337,370	8,798,220	94.76
안성시	389	389	100.00	8,883,500	45,675,460	19.45
포천시	390	390	100.00	2,118,820	2,388,610	88.71
의왕시	123	123	100.00	3,880,260	4,034,390	96.18
하남시	177	178	99.44	314,780	1,202,430	26.18
여주시	224	224	100.00	3,330,200	7,959,880	41.84
양평군	220	220	100.00	1,054,560	1,191,580	88.50
동두천시	245	248	98.79	2,220,710	2,349,770	94.51
과천시	67	67	100.00	3,942,330	3,942,330	100.00
가평군	181	181	100.00	59,612,960	59,840,510	99.62
연천군	192	196	97.96	9,115,830	11,175,710	81.57

〈부표 2-17-10〉 강원도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통보건수(②)	A=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B= (③/④)×100
계	4,146	4,200	98.71	90,529,846	130,293,976	69.48
춘천시	705	733	96.18	10,831,610	11,952,130	90.63
원주시	785	788	99.62	27,492,670	34,948,940	78.67
강릉시	407	407	100.00	6,570,020	26,903,220	24.42
동해시	255	260	98.08	1,163,160	2,196,850	52.95
태백시	146	146	100.00	3,254,620	3,333,560	97.63
속초시	293	293	100.00	11,830,370	13,314,530	88.85
삼척시	272	277	98.20	13,800,350	16,100,360	85.72
홍천군	196	197	99.49	6,540,150	8,289,740	78.90
횡성군	190	191	99.48	2,086,892	6,105,262	34.18
영월군	145	145	100.00	1,925,550	1,925,550	100.00
평창군	78	78	100.00	134,330	134,330	100.00
정선군	97	98	98.98	385,450	385,450	100.00
철원군	98	98	100.00	194,210	194,210	100.00
화천군	104	104	100.00	138,890	138,890	100.00
양구군	111	113	98.23	1,924,330	2,041,410	94.27
인제군	85	92	92.39	350,130	353,630	99.01
고성군	99	100	99.00	1,104,410	1,169,710	94.42
양양군	80	80	100.00	802,704	806,204	99.57

〈부표 2-17-11〉 충청북도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통보건수(②)	A=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B= (③/④)×100
계	3,427	3,486	98.31	233,920,970	280,249,470	83.47
청주시	811	812	99.88	71,986,020	76,173,330	94.50
충주시	607	607	100.00	123,724,740	132,352,400	93.48
제천시	545	545	100.00	13,496,550	13,496,550	100.00
청원군	226	226	100.00	5,809,900	7,382,130	78.70
보은군	161	161	100.00	4,033,030	4,033,030	100.00
옥천군	214	214	100.00	8,997,460	9,030,760	99.63
영동군	191	191	100.00	1,269,000	4,254,450	29.83
증평군	92	92	100.00	330,440	365,690	90.36
진천군	124	124	100.00	641,330	28,934,890	2.22
괴산군	105	163	64.42	1,310,850	1,500,260	87.38
음성군	262	262	100.00	2,187,630	2,465,060	88.75
단양군	89	89	100.00	134,020	260,920	51.36

〈부표 2-17-12〉 충청남도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통보건수(②)	A=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B= (③/④)×100
계	4,251	4,667	91.09	260,830,148	393,471,268	66.29
천안시	792	792	100.00	23,043,360	101,665,280	22.67
공주시	394	394	100.00	1,341,208	1,341,208	100.00
보령시	482	484	99.59	5,387,110	9,045,810	59.55
아산시	486	497	97.79	92,931,090	94,200,940	98.65
서산시	230	232	99.14	5,562,150	10,886,870	51.09
논산시	289	658	43.92	1,462,540	21,676,670	6.75
계룡시	17	17	100.00	69,210	69,210	100.00
당진시	191	192	99.48	3,791,690	4,809,330	78.84
금산군	235	250	94.00	2,470,350	7,819,570	31.59
부여군	305	306	99.67	25,175,360	25,574,450	98.44
서천군	272	272	100.00	84,784,740	84,784,740	100.00
청양군	86	87	98.85	105,030	320,190	32.80
홍성군	167	167	100.00	6,458,740	6,541,380	98.74
예산군	185	199	92.97	6,349,770	17,201,510	36.91
태안군	120	120	100.00	1,897,800	7,534,110	25.19

〈부표 2-17-13〉 전라북도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통보건수(②)	A=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B= (③/④)×100
계	8,537	8,637	98.84	534,847,100	651,592,140	82.08
전주시	2,048	2,049	99.95	65,981,300	87,433,110	75.47
군산시	884	884	100.00	14,167,350	19,288,240	73.45
익산시	1,149	1,149	100.00	9,436,240	44,240,620	21.33
정읍시	937	942	99.47	6,456,270	6,456,270	100.00
남원시	549	549	100.00	75,057,050	86,257,600	87.02
김제시	773	773	100.00	14,178,570	14,577,070	97.27
완주군	455	455	100.00	74,293,280	115,879,050	64.11
진안군	210	210	100.00	2,303,090	2,303,090	100.00
무주군	117	117	100.00	625,880	653,510	95.77
장수군	147	147	100.00	3,456,290	3,456,290	100.00
임실군	212	212	100.00	11,985,300	11,985,300	100.00
순창군	161	161	100.00	6,159,390	7,166,170	85.95
고창군	311	366	84.97	241,463,270	241,552,280	99.96
부안군	584	623	93.74	9,283,820	10,343,540	89.76

〈부표 2-17-14〉 전라남도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통보건수(②)	A=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B= (③/④)×100
계	8,548	8,548	100.00	312,130,590	361,646,350	86.31
목포시	1,225	1,225	100.00	8,586,550	16,794,180	51.13
여수시	836	836	100.00	33,605,530	38,658,350	86.93
순천시	755	755	100.00	22,606,110	26,387,180	85.67
나주시	518	518	100.00	14,450,920	14,543,600	99.36
광양시	194	194	100.00	23,552,970	23,552,970	100.00
담양군	158	158	100.00	40,830,830	40,830,830	100.00
곡성군	181	181	100.00	13,103,850	13,103,850	100.00
구례군	148	148	100.00	2,917,430	3,731,610	78.18
고흥군	574	574	100.00	17,354,950	24,367,660	71.22
보성군	263	263	100.00	4,649,870	4,765,870	97.57
화순군	276	276	100.00	27,001,040	39,477,330	68.40
장흥군	284	284	100.00	1,191,550	2,978,880	40.00
강진군	245	245	100.00	4,616,190	4,616,190	100.00
해남군	569	569	100.00	6,674,840	7,800,380	85.57
영암군	270	270	100.00	300,220	300,220	100.00
무안군	385	385	100.00	7,689,690	7,775,010	98.90
함평군	217	217	100.00	4,419,430	4,419,430	100.00
영광군	339	339	100.00	1,675,740	3,939,720	42.53
장성군	348	348	100.00	15,739,550	15,794,480	99.65
완도군	235	235	100.00	9,340,700	9,340,700	100.00
진도군	236	236	100.00	49,483,360	56,128,640	88.16
신안군	292	292	100.00	2,339,270	2,339,270	100.00

〈부표 2-17-15〉 경상북도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통보건수(②)	A=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B= (③/④)×100
계	7,682	7,696	99.82	261,915,050	416,681,019	62.86
포항시	1,151	1,155	99.65	40,459,390	48,433,570	83.54
경주시	803	806	99.63	27,596,240	51,676,220	53.40
김천시	451	452	99.78	5,028,640	19,393,530	25.93
안동시	639	639	100.00	12,139,330	19,210,000	63.19
구미시	420	420	100.00	19,133,850	21,236,550	90.10
영주시	417	417	100.00	4,855,950	14,920,450	32.55
영천시	358	358	100.00	7,211,460	32,730,140	22.03
상주시	294	294	100.00	19,611,240	25,944,530	75.59
문경시	311	311	100.00	4,826,560	4,885,760	98.79
경산시	555	555	100.00	30,892,590	37,058,950	83.36
군위군	69	69	100.00	1,779,870	1,832,380	97.13
의성군	256	257	99.61	38,558,130	38,797,690	99.38
청송군	155	156	99.36	3,460,900	15,335,800	22.57
영양군	93	93	100.00	6,942,830	7,329,110	94.73
영덕군	191	191	100.00	12,416,270	12,416,270	100.00
청도군	162	162	100.00	2,873,130	15,600,550	18.42
고령군	176	176	100.00	2,388,930	2,388,930	100.00
성주군	195	195	100.00	950,890	5,561,980	17.10
칠곡군	209	209	100.00	2,568,740	2,641,890	97.23
예천군	185	187	98.93	10,966,300	27,817,690	39.42
봉화군	262	264	99.24	3,538,280	4,621,889	76.56
울진군	311	311	100.00	2,961,630	6,093,240	48.61
울릉군	19	19	100.00	753,900	753,900	100.00

〈부표 2-17-16〉 경상남도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통보건수(②)	A=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B= (③/④)×100
계	7,949	7,954	99.94	280,501,471	411,191,911	68.22
창원시	1,926	1,927	99.95	21,342,240	77,016,770	27.71
진주시	476	477	99.79	31,129,670	32,839,830	94.79
통영시	445	446	99.78	5,662,190	7,004,610	80.84
사천시	333	333	100.00	18,869,340	19,513,090	96.70
김해시	1,339	1,339	100.00	127,114,581	178,522,201	71.20
밀양시	568	569	99.82	4,249,320	5,664,620	75.02
거제시	297	297	100.00	1,871,700	5,608,360	33.37
양산시	447	447	100.00	30,953,120	35,065,360	88.27
의령군	156	156	100.00	1,279,880	1,279,880	100.00
함안군	232	232	100.00	1,776,200	3,407,950	52.12

창녕군	366	366	100.00	4,475,290	11,914,440	37.56
고성군	196	196	100.00	1,361,920	1,361,920	100.00
남해군	207	208	99.52	2,498,270	3,789,640	65.92
하동군	220	220	100.00	2,488,470	2,488,470	100.00
함양군	145	145	100.00	1,198,420	1,198,420	100.00
산청군	148	148	100.00	6,565,470	6,565,470	100.00
거창군	225	225	100.00	16,357,800	16,387,290	99.82
합천군	223	223	100.00	1,307,590	1,563,590	83.63

〈부표 2-17-17〉 제주특별자치시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단위: 건, %, 천원)

	상해요인 조사처리율(A)			부당이득금 징수율(B)		
	조사처리 건수(①)	통보건수(②)	A= (①/②)×100	징수금액(③)	결정금액(④)	B= (③/④)×100
계	1,319	1,319	100.00	26,343,930	53,864,320	48.91
제주시	867	867	100.00	15,786,890	18,835,300	83.82
서귀포시	452	452	100.00	10,557,040	35,029,020	30.14

○ 장애인 복지서비스

〈부표 2-18-1〉 서울특별시 장애인연금 수급률

(단위: 명, %)

	수급자인원 (A)	대상자인원 (B)	수급률 (A/B)*100
계	42,835	53,233	80.47
종로구	1,047	1,116	93.82
중구	597	791	75.47
용산구	728	1,104	65.94
성동구	993	1,344	73.88
광진구	1,056	1,551	68.09
동대문구	1,483	1,890	78.47
중랑구	2,198	2,478	88.70
성북구	1,680	2,335	71.95
강북구	2,111	2,332	90.52
도봉구	1,539	1,920	80.16
노원구	4,690	4,557	102.92
은평구	2,639	2,938	89.82
서대문구	1,205	1,605	75.08
마포구	1,429	1,917	74.54
양천구	1,769	2,330	75.92
강서구	4,412	4,307	102.44
구로구	1,512	2,123	71.22
금천구	1,095	1,319	83.02
영등포구	1,191	1,744	68.29
동작구	1,385	1,944	71.24
관악구	1,939	2,515	77.10
서초구	835	1,508	55.37
강남구	1,873	2,558	73.22
송파구	1,770	2,701	65.53
강동구	1,659	2,306	71.94

〈부표 2-18-2〉 부산광역시 장애인연금 수급률

(단위: 명, %)

	수급자인원 (A)	대상자인원 (B)	수급률 (A/B)*100
계	23,139	22,618	102.30
중구	323	311	103.86
서구	1,099	994	110.56
동구	876	779	112.45
영도구	1,549	1,356	114.23
부산진구	2,289	2,328	98.32
동래구	1,283	1,411	90.93
남구	1,596	1,741	91.67
북구	2,296	2,114	108.61
해운대구	2,620	2,558	102.42
사하구	2,225	2,134	104.26
금정구	1,358	1,392	97.56
강서구	641	557	115.08
연제구	1,196	1,171	102.13
수영구	1,033	1,094	94.42
사상구	1,893	1,785	106.05
기장군	862	893	96.53

〈부표 2-18-3〉 대구광역시 장애인연금 수급률

(단위: 명, %)

	수급자인원 (A)	대상자인원 (B)	수급률 (A/B)*100
계	15,314	15,303	100.07
중구	547	578	94.64
동구	2,823	2,560	110.27
서구	1,253	1,271	98.58
남구	1,125	1,128	99.73
북구	2,526	2,481	101.81
수성구	2,309	2,454	94.09
달서구	3,467	3,560	97.39
달성군	1,264	1,271	99.45

〈부표 2-18-4〉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수급률

(단위: 명, %)

	수급자인원 (A)	대상자인원 (B)	수급률 (A/B)*100
계	14,678	16,545	88.72
중구	524	595	88.07
동구	508	601	84.53
남구	1,963	2,328	84.32
연수구	1,439	1,544	93.20
남동구	2,515	2,807	89.60
부평구	3,234	3,608	89.63
계양구	1,430	1,642	87.09
서구	1,986	2,393	82.99
강화군	800	783	102.17
옹진군	279	244	114.34

〈부표 2-18-5〉 광주광역시 장애인연금 수급률

(단위: 명, %)

	수급자인원 (A)	대상자인원 (B)	수급률 (A/B)*100
계	9,346	8,840	105.72
동구	1,120	799	140.18
서구	1,838	1,795	102.40
남구	1,568	1,537	102.02
북구	2,829	2,690	105.17
광산구	1,991	2,019	98.61

〈부표 2-18-6〉 대전광역시 장애인연금 수급률

(단위: 명, %)

	수급자인원 (A)	대상자인원 (B)	수급률 (A/B)*100
계	8,596	9,218	93.25
동구	1,987	1,961	101.33
중구	1,624	1,763	92.12
서구	2,363	2,625	90.02
유성구	1,079	1,364	79.11
대덕구	1,543	1,505	102.52

〈부표 2-18-7〉 울산광역시 장애인연금 수급률

(단위: 명, %)

	수급자인원 (A)	대상자인원 (B)	수급률 (A/B)*100
계	4,497	5,609	80.17
중구	877	1,139	77.00
남구	1,110	1,478	75.10
동구	610	782	78.01
북구	775	907	85.45
울주군	1,125	1,303	86.34

〈부표 2-18-8〉 세종시 장애인연금 수급률

(단위: 명, %)

	수급자인원 (A)	대상자인원 (B)	수급률 (A/B)*100
계	990	992	99.80

〈부표 2-18-9〉 경기도 장애인연금 수급률

(단위: 명, %)

	수급자인원 (A)	대상자인원 (B)	수급률 (A/B)*100
계	52,757	63,454	83.14
수원시	3,890	4,854	80.14
성남시	3,733	4,801	77.75
고양시	3,952	4,830	81.82
용인시	2,403	3,881	61.92
부천시	3,599	4,396	81.87
안산시	3,198	3,679	86.93
안양시	2,015	2,569	78.44
남양주시	2,735	3,210	85.20
화성시	2,036	2,447	83.20
평택시	2,147	2,463	87.17
의정부시	2,145	2,495	85.97
시흥시	1,433	1,814	79.00
파주시	2,064	2,371	87.05
광명시	1,482	1,796	82.52
김포시	1,208	1,519	79.53
군포시	1,070	1,353	79.08
광주시	1,302	1,540	84.55
이천시	1,275	1,452	87.81
양주시	1,164	1,382	84.23
오산시	873	1,041	83.86

구리시	755	920	82.07
안성시	1,240	1,359	91.24
포천시	1,211	1,240	97.66
의왕시	532	691	76.99
하남시	701	832	84.25
여주시	907	897	101.11
양평군	1,009	1,068	94.48
동두천시	803	787	102.03
과천시	157	282	55.67
가평군	1,259	1,005	125.27
연천군	459	480	95.63

〈부표 2-18-10〉 강원도 장애인연금 수급률

(단위: 명, %)

	수급자인원 (A)	대상자인원 (B)	수급률 (A/B)*100
계	13,252	12,832	103.27
춘천시	2,074	2,096	98.95
원주시	2,235	2,374	94.14
강릉시	1,814	1,711	106.02
동해시	833	771	108.04
태백시	437	503	86.88
속초시	685	634	108.04
삼척시	720	644	111.80
홍천군	688	680	101.18
횡성군	464	460	100.87
영월군	494	452	109.29
평창군	410	381	107.61
정선군	401	401	100.00
철원군	333	294	113.27
화천군	250	214	116.82
양구군	263	232	113.36
인제군	322	290	111.03
고성군	374	327	114.37
양양군	455	368	123.64

〈부표 2-18-11〉 충청북도 장애인연금 수급률

(단위: 명, %)

	수급자인원 (A)	대상자인원 (B)	수급률 (A/B)*100
계	12,770	12,463	102.46
청주시	3,390	3,785	89.56
충주시	1,700	1,671	101.74
제천시	1,389	1,288	107.84
청원군	1,122	1,211	92.65
보은군	425	370	114.86
옥천군	837	685	122.19
영동군	640	558	114.70
증평군	254	266	95.49
진천군	426	460	92.61
괴산군	511	445	114.83
음성군	1,642	1,341	122.45
단양군	434	383	113.32

〈부표 2-18-12〉 충청남도 장애인연금 수급률

(단위: 명, %)

	수급자인원 (A)	대상자인원 (B)	수급률 (A/B)*100
계	15,776	16,209	97.33
천안시	2,423	3,148	76.97
공주시	1,433	1,369	104.67
보령시	1,255	1,121	111.95
아산시	1,619	1,843	87.85
서산시	1,110	1,189	93.36
논산시	1,885	1,581	119.23
계룡시	120	147	81.63
당진시	878	1,085	80.92
금산군	619	546	113.37
부여군	998	888	112.39
서천군	799	694	115.13
청양군	346	345	100.29
홍성군	912	832	109.62
예산군	818	850	96.24
태안군	561	571	98.25

〈부표 2-18-13〉 전라북도 장애인연금 수급률

(단위: 명, %)

	수급자인원 (A)	대상자인원 (B)	수급률 (A/B)*100
계	18,646	16,541	112.73
전주시	3,922	3,980	98.54
군산시	2,124	2,024	104.94
익산시	3,334	2,843	117.27
정읍시	1,621	1,363	118.93
남원시	1,202	1,003	119.84
김제시	1,609	1,297	124.06
완주군	1,187	1,017	116.72
진안군	383	328	116.77
무주군	339	282	120.21
장수군	310	248	125.00
임실군	465	375	124.00
순창군	481	396	121.46
고창군	884	718	123.12
부안군	785	667	117.69

〈부표 2-18-14〉 전라남도 장애인연금 수급률

(단위: 명, %)

	수급자인원 (A)	대상자인원 (B)	수급률 (A/B)*100
계	21,161	18,308	115.58
목포시	2,299	1,696	135.55
여수시	2,553	2,282	111.88
순천시	1,873	1,839	101.85
나주시	1,254	1,222	102.62
광양시	790	818	96.58
담양군	654	542	120.66
곡성군	519	422	122.99
구례군	442	349	126.65
고흥군	1,495	1,149	130.11
보성군	790	596	132.55
화순군	722	648	111.42
장흥군	690	547	126.14
강진군	507	410	123.66
해남군	1,153	915	126.01
영암군	637	610	104.43
무안군	730	968	75.41
함평군	611	508	120.28
영광군	851	704	120.88
장성군	684	556	123.02
완도군	764	592	129.05
진도군	521	418	124.64
신안군	622	517	120.31

〈부표 2-18-15〉 경상북도 장애인연금 수급률

(단위: 명, %)

	수급자인원 (A)	대상자인원 (B)	수급률 (A/B)*100
계	24,006	22,382	107.26
포항시	3,444	3,549	97.04
경주시	2,001	2,010	99.55
김천시	1,460	1,332	109.61
안동시	2,506	2,097	119.50
구미시	1,648	1,809	91.10
영주시	1,306	1,142	114.36
영천시	1,137	978	116.26
상주시	1,199	1,113	107.73
문경시	861	794	108.44
경산시	1,724	1,803	95.62
군위군	319	273	116.85
의성군	877	723	121.30
청송군	355	284	125.00
영양군	291	246	118.29
영덕군	641	517	123.98
청도군	519	476	109.03
고령군	466	391	119.18
성주군	506	475	106.53
칠곡군	782	738	105.96
예천군	788	651	121.04
봉화군	461	389	118.51
울진군	664	539	123.19
울릉군	51	53	96.23

〈부표 2-18-16〉 경상남도 장애인연금 수급률

(단위: 명, %)

	수급자인원 (A)	대상자인원 (B)	수급률 (A/B)*100
계	23,376	23,376	100.00
창원시	5,147	5,956	86.42
진주시	2,465	2,460	100.20
통영시	1,027	948	108.33
사천시	1,187	1,046	113.48
김해시	2,542	2,861	88.85
밀양시	1,078	1,022	105.48
거제시	1,237	1,341	92.24
양산시	1,435	1,670	85.93
의령군	563	452	124.56
함안군	725	689	105.22
창녕군	745	662	112.54
고성군	760	635	119.69

390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남해군	748	630	118.73
하동군	825	680	121.32
함양군	642	505	127.13
산청군	685	536	127.80
거창군	714	616	115.91
합천군	851	667	127.59

〈부표 2-18-17〉 제주특별자치시 장애인연금 수급률

(단위: 명, %)

	수급자인원 (A)	대상자인원 (B)	수급률 (A/B)*100
계	4,430	4,538	97.62
제주시	3,050	3,180	95.91
서귀포시	1,380	1,358	101.62

○ 아동보호서비스

〈부표 2-19-1〉 서울특별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단위: 명,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 수(A)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 수(B)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A/B) × 100
계	941	1,058	88.94
종로구	5	5	100.00
중구	23	23	100.00
용산구	40	41	97.56
성동구	27	30	90.00
광진구	22	22	100.00
동대문구	13	13	100.00
중랑구	43	44	97.73
성북구	33	39	84.62
강북구	50	53	94.34
도봉구	29	32	90.63
노원구	51	51	100.00
은평구	116	136	85.29
서대문구	42	43	97.67
마포구	47	50	94.00
양천구	29	58	50.00
강서구	66	68	97.06
구로구	38	41	92.68
금천구	17	40	42.50
영등포구	17	18	94.44
동작구	46	54	85.19
관악구	65	68	95.59
서초구	7	7	100.00
강남구	24	24	100.00
송파구	35	39	89.74
강동구	56	59	94.92

〈부표 2-19-2〉 부산광역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단위: 명,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 수(A)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 수(B)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A/B) × 100
계	854	856	99.77
중구	7	7	100.00
서구	201	201	100.00
동구	34	34	100.00
영도구	41	41	100.00
부산진구	44	44	100.00
동래구	59	60	98.33
남구	50	50	100.00
북구	25	25	100.00
해운대구	67	68	98.53
사하구	68	68	100.00
금정구	86	86	100.00
강서구	53	53	100.00
연제구	48	48	100.00
수영구	37	37	100.00
사상구	25	25	100.00
기장군	9	9	100.00

〈부표 2-19-3〉 대구광역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단위: 명,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 수(A)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 수(B)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A/B) × 100
계	299	299	100.00
중구	13	13	100.00
동구	62	62	100.00
서구	25	25	100.00
남구	70	70	100.00
북구	31	31	100.00
수성구	41	41	100.00
달서구	39	39	100.00
달성군	18	18	100.00

〈부표 2-19-4〉 인천광역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단위: 명,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 수(A)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 수(B)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A/B) × 100
계	460	460	100.00
중구	20	20	100.00
동구	21	21	100.00
남구	99	99	100.00
연수구	24	24	100.00
남동구	46	46	100.00
부평구	157	157	100.00
계양구	26	26	100.00
서구	33	33	100.00
강화군	33	33	100.00
옹진군	1	1	100.00

〈부표 2-19-5〉 광주광역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단위: 명,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 수(A)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 수(B)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A/B) × 100
계	274	277	98.92
동구	81	82	98.78
서구	43	44	97.73
남구	49	49	100.00
북구	62	63	98.41
광산구	39	39	100.00

〈부표 2-19-6〉 대전광역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단위: 명,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 수(A)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 수(B)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A/B) × 100
계	218	220	99.09
동구	66	66	100.00
중구	45	45	100.00
서구	54	54	100.00
유성구	20	20	100.00
대덕구	33	35	94.29

〈부표 2-19-7〉 울산광역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단위: 명,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 수(A)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 수(B)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A/B) × 100
계	126	135	93.33
중구	14	16	87.50
남구	20	20	100.00
동구	15	16	93.75
북구	7	8	87.50
울주군	70	75	93.33

〈부표 2-19-8〉 세종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단위: 명,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 수(A)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 수(B)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A/B) × 100
계	0	0	0.00

〈부표 2-19-9〉 경기도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단위: 명,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 수(A)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 수(B)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A/B) × 100
계	1,453	1,465	99.18
수원시	112	112	100.00
성남시	90	90	100.00
고양시	66	67	98.51
용인시	42	42	100.00
부천시	121	123	98.37
안산시	150	150	100.00
안양시	101	101	100.00
남양주시	55	55	100.00
화성시	35	35	100.00
평택시	53	53	100.00
의정부시	68	68	100.00
시흥시	28	29	96.55
파주시	76	76	100.00
광명시	36	36	100.00
김포시	33	41	80.49
군포시	18	18	100.00
광주시	28	28	100.00
이천시	20	20	100.00
양주시	41	41	100.00
오산시	24	24	100.00

구리시	16	16	100.00
안성시	46	46	100.00
포천시	28	28	100.00
의왕시	27	27	100.00
하남시	13	13	100.00
여주시	59	59	100.00
양평군	9	9	100.00
동두천시	32	32	100.00
과천시	4	4	100.00
가평군	12	12	100.00
연천군	10	10	100.00

〈부표 2-19-10〉 강원도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단위: 명,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 수(A)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 수(B)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A/B) × 100
계	626	626	100.00
춘천시	66	66	100.00
원주시	105	105	100.00
강릉시	73	73	100.00
동해시	30	30	100.00
태백시	25	25	100.00
속초시	26	26	100.00
삼척시	58	58	100.00
홍천군	22	22	100.00
횡성군	26	26	100.00
영월군	40	40	100.00
평창군	26	26	100.00
정선군	24	24	100.00
철원군	20	20	100.00
화천군	18	18	100.00
양구군	15	15	100.00
인제군	26	26	100.00
고성군	8	8	100.00
양양군	18	18	100.00

〈부표 2-19-11〉 충청북도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단위: 명,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 수(A)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 수(B)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A/B) × 100
계	391	391	100.00
청주시	121	121	100.00
충주시	34	34	100.00
제천시	44	44	100.00
청원군	20	20	100.00
보은군	14	14	100.00
옥천군	35	35	100.00
영동군	18	18	100.00
증평군	0	0	0.00
진천군	24	24	100.00
괴산군	8	8	100.00
음성군	62	62	100.00
단양군	11	11	100.00

〈부표 2-19-12〉 충청남도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단위: 명,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 수(A)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 수(B)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A/B) × 100
계	382	382	100.00
천안시	87	87	100.00
공주시	5	5	100.00
보령시	32	32	100.00
아산시	39	39	100.00
서산시	31	31	100.00
논산시	58	58	100.00
계룡시	4	4	100.00
당진시	4	4	100.00
금산군	11	11	100.00
부여군	34	34	100.00
서천군	9	9	100.00
청양군	8	8	100.00
홍성군	22	22	100.00
예산군	25	25	100.00
태안군	13	13	100.00

〈부표 2-19-13〉 전라북도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단위: 명,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 수(A)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 수(B)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A/B) × 100
계	588	588	100.00
전주시	99	99	100.00
군산시	76	76	100.00
익산시	70	70	100.00
정읍시	42	42	100.00
남원시	46	46	100.00
김제시	19	19	100.00
완주군	49	49	100.00
진안군	18	18	100.00
무주군	23	23	100.00
장수군	8	8	100.00
임실군	23	23	100.00
순창군	7	7	100.00
고창군	86	86	100.00
부안군	22	22	100.00

〈부표 2-19-14〉 전라남도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단위: 명,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 수(A)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 수(B)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A/B) × 100
계	879	887	99.10
목포시	135	136	99.26
여수시	94	94	100.00
순천시	111	112	99.11
나주시	50	51	98.04
광양시	21	22	95.45
담양군	9	9	100.00
곡성군	14	14	100.00
구례군	0	0	0.00
고흥군	31	31	100.00
보성군	29	29	100.00
화순군	26	26	100.00
장흥군	22	22	100.00
강진군	30	30	100.00
해남군	77	81	95.06
영암군	30	30	100.00
무안군	48	48	100.00
함평군	41	41	100.00
영광군	14	14	100.00
장성군	30	30	100.00
완도군	12	12	100.00
진도군	19	19	100.00
신안군	36	36	100.00

〈부표 2-19-15〉 경상북도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단위: 명,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 수(A)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 수(B)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A/B) × 100
계	650	655	99.24
포항시	61	62	98.39
경주시	82	82	100.00
김천시	54	56	96.43
안동시	38	38	100.00
구미시	60	60	100.00
영주시	5	5	100.00
영천시	17	17	100.00
상주시	60	60	100.00
문경시	53	54	98.15
경산시	22	22	100.00
군위군	11	11	100.00
의성군	32	32	100.00
청송군	17	17	100.00
영양군	7	7	100.00
영덕군	31	31	100.00
청도군	18	18	100.00
고령군	11	11	100.00
성주군	36	36	100.00
칠곡군	14	14	100.00
예천군	1	1	100.00
봉화군	1	1	100.00
울진군	17	18	94.44
울릉군	2	2	100.00

〈부표 2-19-16〉 경상남도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단위: 명,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 수(A)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 수(B)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A/B) × 100
계	770	772	99.74
창원시	170	170	100.00
진주시	38	38	100.00
통영시	45	45	100.00
사천시	27	27	100.00
김해시	121	121	100.00
밀양시	53	53	100.00
거제시	43	43	100.00
양산시	38	38	100.00
의령군	9	9	100.00
함안군	14	14	100.00
창녕군	11	12	91.67
고성군	41	41	100.00

남해군	35	35	100.00
하동군	25	25	100.00
함양군	27	27	100.00
산청군	16	16	100.00
거창군	37	37	100.00
합천군	20	21	95.24

〈부표 2-19-17〉 제주특별자치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단위: 명, %)

	자립지원계획 작성 아동 수(A)	자립지원계획 작성 대상 아동 수(B)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비율 (A/B) × 100
계	187	187	100.00
제주시	95	95	100.00
서귀포시	92	92	100.00

〈부표 2-20-1〉 서울특별시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단위: 명, %, 원)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비율 %(A)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 %(B)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A+B)/2
	'13년 월별 1만원이상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①)	'13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②)	A= (①/②) ×100	1인당월평균 매칭지원금(③)	B= (③/30,000원) ×100	
계	43,393	54,245	79.99	21,536	71.79	75.89
종로구	11,210	12,115	92.53	18,064	60.21	76.37
중구	720	873	82.47	19,968	66.56	74.52
용산구	1,861	1,951	95.39	21,453	71.51	83.45
성동구	1,050	1,212	86.63	25,111	83.70	85.17
광진구	558	781	71.45	19,714	65.71	68.58
동대문구	516	742	69.54	17,612	58.71	64.12
중랑구	983	1,435	68.50	17,889	59.63	64.07
성북구	1,388	1,742	79.68	22,040	73.47	76.57
강북구	1,598	2,256	70.83	19,319	64.40	67.62
도봉구	549	870	63.10	16,723	55.74	59.42
노원구	1,588	1,897	83.71	23,141	77.14	80.42
은평구	2,320	3,366	68.92	17,484	58.28	63.60
서대문구	1,492	1,816	82.16	22,278	74.26	78.21
마포구	1,465	1,766	82.96	20,980	69.93	76.44
양천구	1,042	1,577	66.07	16,700	55.67	60.87
강서구	1,649	1,966	83.88	23,592	78.64	81.26
구로구	1,518	2,146	70.74	17,548	58.49	64.61
금천구	1,342	1,651	81.28	22,703	75.68	78.48
영등포구	722	1,340	53.88	13,600	45.33	49.61
동작구	1,869	2,530	73.87	19,576	65.25	69.56
관악구	3,328	4,024	82.70	23,125	77.08	79.89
서초구	567	1,005	56.42	13,268	44.23	50.32
강남구	882	1,008	87.50	19,635	65.45	76.48
송파구	1,256	1,489	84.35	23,602	78.67	81.51
강동구	1,920	2,687	71.46	18,556	61.85	66.65

〈부표 2-20-2〉 부산광역시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단위: 명, %, 원)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비율 %(A)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 %(B)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A+B)/2
	'13년 월별 1만원이상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①)	'13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②)	A= (①/②) ×100	1인당월평균 매칭지원금(③)	B= (③/30,000원) ×100	
계	44,832	55,691	80.50	22,488	74.96	77.73
중구	585	689	84.91	24,492	81.64	83.27
서구	8,001	8,543	93.66	26,021	86.74	90.20
동구	2,014	2,425	83.05	23,232	77.44	80.25
영도구	1,994	2,406	82.88	23,845	79.48	81.18
부산진구	3,193	4,055	78.74	21,966	73.22	75.98
동래구	2,813	3,409	82.52	23,331	77.77	80.14
남구	2,570	3,564	72.11	19,872	66.24	69.17
북구	2,793	3,920	71.25	20,245	67.48	69.37
해운대구	3,397	4,535	74.91	20,747	69.16	72.03
사하구	3,807	4,787	79.53	21,919	73.06	76.30
금정구	4,317	5,287	81.65	22,996	76.65	79.15
강서구	1,746	2,078	84.02	21,939	73.13	78.58
연제구	2,550	3,118	81.78	23,212	77.37	79.58
수영구	1,861	2,318	80.28	23,221	77.40	78.84
사상구	2,414	3,469	69.59	19,520	65.07	67.33
기장군	777	1,088	71.42	18,954	63.18	67.30

〈부표 2-20-3〉 대구광역시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단위: 명, %, 원)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비율 %(A)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 %(B)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A+B)/2
	'13년 월별 1만원이상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①)	'13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②)	A= (①/②) ×100	1인당월평균 매칭지원금(③)	B= (③/30,000원) ×100	
계	28,489	37,014	76.97	21,613	72.04	74.51
중구	916	1,212	75.58	21,596	71.99	73.78
동구	4,450	5,638	78.93	21,713	72.38	75.65
서구	3,262	4,509	72.34	20,495	68.32	70.33
남구	5,254	5,880	89.35	25,062	83.54	86.45
북구	3,308	4,295	77.02	21,695	72.32	74.67
수성구	4,646	6,370	72.94	20,233	67.44	70.19
달서구	4,854	6,593	73.62	21,399	71.33	72.48
달성군	1,799	2,517	71.47	19,256	64.19	67.83

〈부표 2-20-4〉 인천광역시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단위: 명, %, 원)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비율 %(A)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 %(B)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A+B)/2
	'13년 월별 1만원이상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①)	'13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②)	A= (①/②) ×100	1인당월평균 매칭지원금(③)	B= (③/30,000원) ×100	
계	28,270	32,124	88.00	23,637	78.79	83.40
중구	1,397	1,611	86.72	23,731	79.10	82.91
동구	1,068	1,235	86.48	25,206	84.02	85.25
남구	5,709	6,219	91.80	25,033	83.44	87.62
연수구	2,576	3,062	84.13	21,062	70.21	77.17
남동구	3,769	4,477	84.19	23,216	77.39	80.79
부평구	6,537	7,371	88.69	22,682	75.61	82.15
계양구	2,393	2,689	88.99	24,705	82.35	85.67
서구	2,763	3,122	88.50	23,421	78.07	83.29
강화군	1,959	2,225	88.04	25,313	84.38	86.21
옹진군	99	113	87.61	24,522	81.74	84.68

〈부표 2-20-5〉 광주광역시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단위: 명, %, 원)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비율 %(A)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 %(B)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A+B)/2
	'13년 월별 1만원이상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①)	'13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②)	A= (①/②) ×100	1인당월평균 매칭지원금(③)	B= (③/30,000원) ×100	
계	20,954	28,871	72.58	20,538	68.46	70.52
동구	4,321	5,361	80.60	22,961	76.54	78.57
서구	3,095	4,533	68.28	19,273	64.24	66.26
남구	3,488	4,598	75.86	21,100	70.33	73.10
북구	5,994	8,659	69.22	20,023	66.74	67.98
광산구	4,056	5,720	70.91	19,597	65.32	68.12

〈부표 2-20-6〉 대전광역시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단위: 명, %, 원)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비율 %(A)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 %(B)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A+B)/2
	'13년 월별 1만원이상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①)	'13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②)	A= (①/②) ×100	1인당월평균 매칭지원금(③)	B= (③/30,000원) ×100	
계	16,009	22,665	70.63	19,827	66.09	68.36
동구	4,668	6,430	72.60	20,267	67.56	70.08
중구	3,146	4,800	65.54	18,566	61.89	63.71
서구	4,266	5,932	71.92	20,366	67.89	69.90
유성구	2,068	2,721	76.00	21,291	70.97	73.49
대덕구	1,861	2,782	66.89	18,404	61.35	64.12

〈부표 2-20-7〉 울산광역시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단위: 명, %, 원)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비율 %(A)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 %(B)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A+B)/2
	'13년 월별 1만원이상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①)	'13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②)	A= (①/②) ×100	1인당월평균 매칭지원금(③)	B= (③/30,000원) ×100	
계	6,725	7,569	88.85	24,191	80.64	84.74
중구	702	856	82.01	22,382	74.61	78.31
남구	1,302	1,488	87.50	25,149	83.83	85.67
동구	978	1,181	82.81	22,292	74.31	78.56
북구	828	908	91.19	26,937	89.79	90.49
울주군	2,915	3,136	92.95	24,150	80.50	86.73

〈부표 2-20-8〉 세종시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단위: 명, %, 원)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비율 %(A)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 %(B)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A+B)/2
	'13년 월별 1만원이상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①)	'13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②)	A= (①/②) ×100	1인당월평균 매칭지원금(③)	B= (③/30,000원) ×100	
계	0	0	0.00	19,810	66.03	33.02

〈부표 2-20-9〉 경기도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단위: 명, %, 원)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비율 %(A)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 %(B)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A+B)/2
	'13년 월별 1만원이상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①)	'13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②)	A= (①/②) ×100	1인당월평균 매칭지원금(③)	B= (③/30,000원) ×100	
계	74,857	94,420	79.28	22,387	74.62	76.95
수원시	6,166	7,306	84.40	24,324	81.08	82.74
성남시	4,563	6,540	69.77	20,378	67.93	68.85
고양시	3,355	4,620	72.62	20,687	68.96	70.79
용인시	2,961	3,288	90.05	25,549	85.16	87.61
부천시	5,096	5,599	91.02	21,457	71.52	81.27
안산시	6,805	9,639	70.60	20,324	67.75	69.17
안양시	4,300	5,242	82.03	22,892	76.31	79.17
남양주시	3,059	4,047	75.59	21,899	73.00	74.29
화성시	1,752	1,945	90.08	25,712	85.71	87.89
평택시	4,484	5,448	82.31	22,906	76.35	79.33
의정부시	3,470	5,269	65.86	19,469	64.90	65.38
시흥시	2,235	2,545	87.82	25,947	86.49	87.15
파주시	3,334	4,487	74.30	20,487	68.29	71.30
광명시	1,390	1,713	81.14	23,868	79.56	80.35

404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김포시	1,039	1,619	64.18	18,338	61.13	62.65
군포시	1,443	1,883	76.63	21,897	72.99	74.81
광주시	2,514	2,998	83.86	23,571	78.57	81.21
이천시	1,705	1,811	94.15	27,616	92.05	93.10
양주시	1,672	2,130	78.50	22,631	75.44	76.97
오산시	1,099	1,268	86.67	25,788	85.96	86.32
구리시	896	948	94.51	26,052	86.84	90.68
안성시	1,807	2,380	75.92	19,866	66.22	71.07
포천시	1,789	2,025	88.35	23,959	79.86	84.10
의왕시	1,204	1,467	82.07	24,571	81.90	81.99
하남시	438	653	67.08	18,965	63.22	65.15
여주시	2,636	2,695	97.81	28,613	95.38	96.59
양평군	557	685	81.31	23,803	79.34	80.33
동두천시	1,512	2,047	73.86	20,212	67.37	70.62
과천시	404	463	87.26	25,799	86.00	86.63
가평군	608	849	71.61	20,874	69.58	70.60
연천군	564	811	69.54	20,253	67.51	68.53

〈부표 2-20-10〉 강원도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단위: 명, %, 원)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비율 % (A)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 % (B)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A+B)/2
	'13년 월별 1만원이상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①)	'13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②)	A= (①/②) ×100	1인당월평균 매칭지원금(③)	B= (③/30,000원) ×100	
계	28,378	36,278	78.22	20,897	69.66	73.94
춘천시	3,663	4,836	75.74	20,547	68.49	72.12
원주시	5,891	6,939	84.90	21,425	71.42	78.16
강릉시	4,307	5,045	85.37	21,200	70.67	78.02
동해시	1,105	1,655	66.77	19,039	63.46	65.12
태백시	1,000	1,136	88.03	25,762	85.87	86.95
속초시	1,425	2,160	65.97	18,564	61.88	63.93
삼척시	1,868	2,247	83.13	21,732	72.44	77.79
홍천군	1,115	1,471	75.80	20,951	69.84	72.82
횡성군	914	1,353	67.55	17,316	57.72	62.64
영월군	1,170	1,458	80.25	22,003	73.34	76.80
평창군	692	1,045	66.22	18,500	61.67	63.94
정선군	635	841	75.51	19,623	65.41	70.46
철원군	692	992	69.76	18,554	61.85	65.80
화천군	1,112	1,382	80.46	23,501	78.34	79.40
양구군	691	899	76.86	21,751	72.50	74.68
인제군	727	986	73.73	20,864	69.55	71.64
고성군	456	654	69.72	20,031	66.77	68.25
양양군	915	1,179	77.61	23,025	76.75	77.18

〈부표 2-20-11〉 충청북도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단위: 명, %, 원)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비율 % (A)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 % (B)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A+B)/2
	'13년 월별 1만원이상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①)	'13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②)	A= (①/②) ×100	1인당월평균 매칭지원금(③)	B= (③/30,000원) ×100	
계	22,595	27,634	81.77	22,294	74.31	78.04
청주시	9,370	10,651	87.97	24,478	81.59	84.78
충주시	3,242	3,802	85.27	21,376	71.25	78.26
제천시	1,965	2,467	79.65	21,238	70.79	75.22
청원군	1,335	1,625	82.15	20,845	69.48	75.82
보은군	513	653	78.56	23,233	77.44	78.00
옥천군	1,125	1,362	82.60	24,199	80.66	81.63
영동군	707	928	76.19	21,761	72.54	74.36
증평군	343	461	74.40	21,250	70.83	72.62
진천군	781	1,096	71.26	20,245	67.48	69.37
괴산군	626	914	68.49	17,133	57.11	62.80
음성군	2,132	3,053	69.83	19,565	65.22	67.52
단양군	456	622	73.31	19,469	64.90	69.10

〈부표 2-20-12〉 충청남도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단위: 명, %, 원)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비율 % (A)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 % (B)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A+B)/2
	'13년 월별 1만원이상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①)	'13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②)	A= (①/②) ×100	1인당월평균 매칭지원금(③)	B= (③/30,000원) ×100	
계	20,761	27,253	76.18	20,994	69.98	73.08
천안시	4,433	5,826	76.09	20,659	68.86	72.48
공주시	930	1,369	67.93	18,581	61.94	64.93
보령시	1,858	2,320	80.09	22,502	75.01	77.55
아산시	2,218	3,150	70.41	19,273	64.24	67.33
서산시	1,383	1,746	79.21	21,562	71.87	75.54
논산시	2,499	3,409	73.31	19,097	63.66	68.48
계룡시	307	350	87.71	25,800	86.00	86.86
당진시	726	1,191	60.96	16,711	55.70	58.33
금산군	785	1,133	69.29	19,936	66.45	67.87
부여군	1,695	2,096	80.87	22,729	75.76	78.32
서천군	966	1,177	82.07	23,538	78.46	80.27
청양군	334	430	77.67	22,714	75.71	76.69
홍성군	942	1,202	78.37	23,005	76.68	77.53
예산군	1,078	1,224	88.07	23,922	79.74	83.91
태안군	607	630	96.35	27,205	90.68	93.52

〈부표 2-20-13〉 전라북도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단위: 명, %, 원)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비율 %(A)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 %(B)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A+B)/2
	'13년 월별 1만원이상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①)	'13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②)	A= (①/②) ×100	1인당월평균 매칭지원금(③)	B= (③/30,000원) ×100	
계	34,616	46,033	75.20	20,807	69.36	72.28
전주시	9,450	13,583	69.57	19,675	65.58	67.58
군산시	5,456	6,456	84.51	20,916	69.72	77.12
익산시	4,985	7,018	71.03	19,246	64.15	67.59
정읍시	3,364	4,379	76.82	22,276	74.25	75.54
남원시	1,868	2,517	74.22	21,569	71.90	73.06
김제시	1,394	1,917	72.72	21,283	70.94	71.83
완주군	2,003	2,639	75.90	20,612	68.71	72.30
진안군	629	841	74.79	21,618	72.06	73.43
무주군	780	980	79.59	22,700	75.67	77.63
장수군	306	430	71.16	20,156	67.19	69.17
임실군	686	955	71.83	18,040	60.13	65.98
순창군	436	536	81.34	23,168	77.23	79.28
고창군	2,515	2,840	88.56	25,846	86.15	87.35
부안군	744	942	78.98	22,594	75.31	77.15

〈부표 2-20-14〉 전라남도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단위: 명, %, 원)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비율 %(A)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 %(B)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A+B)/2
	'13년 월별 1만원이상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①)	'13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②)	A= (①/②) ×100	1인당월평균 매칭지원금(③)	B= (③/30,000원) ×100	
계	38,177	49,393	77.29	21,098	70.33	73.81
목포시	7,164	10,317	69.44	18,429	61.43	65.43
여수시	3,817	4,879	78.23	21,936	73.12	75.68
순천시	4,284	5,464	78.40	21,640	72.13	75.27
나주시	2,661	3,064	86.85	23,492	78.31	82.58
광양시	873	1,185	73.67	20,545	68.48	71.08
담양군	601	811	74.11	21,520	71.73	72.92
곡성군	778	957	81.30	23,930	79.77	80.53
구례군	299	406	73.65	21,736	72.45	73.05
고흥군	1,684	2,168	77.68	22,507	75.02	76.35
보성군	1,412	1,711	82.52	23,941	79.80	81.16
화순군	1,649	1,874	87.99	23,785	79.28	83.64
장흥군	1,119	1,404	79.70	22,387	74.62	77.16
강진군	1,160	1,426	81.35	20,121	67.07	74.21
해남군	2,172	2,806	77.41	21,328	71.09	74.25
영암군	1,345	1,610	83.54	24,093	80.31	81.93
무안군	1,154	1,468	78.61	22,188	73.96	76.29
함평군	1,198	1,557	76.94	20,171	67.24	72.09
영광군	1,008	1,390	72.52	20,487	68.29	70.40
장성군	1,067	1,421	75.09	19,241	64.14	69.61
완도군	585	755	77.48	20,664	68.88	73.18
진도군	825	1,170	70.51	19,452	64.84	67.68
신안군	1,322	1,550	85.29	19,321	64.40	74.85

〈부표 2-20-15〉 경상북도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단위: 명, %, 원)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비율 %(A)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 %(B)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A+B)/2
	'13년 월별 1만원이상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①)	'13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②)	A= (①/②) ×100	1인당월평균 매칭지원금(③)	B= (③/30,000원) ×100	
계	29,787	38,152	78.07	21,317	71.06	74.57
포항시	3,507	4,927	71.18	19,977	66.59	68.88
경주시	3,656	4,406	82.98	23,544	78.48	80.73
김천시	3,140	3,394	92.52	23,053	76.84	84.68
안동시	2,111	2,302	91.70	25,375	84.58	88.14
구미시	3,352	4,716	71.08	19,323	64.41	67.74
영주시	1,005	1,392	72.20	20,533	68.44	70.32
영천시	1,097	1,503	72.99	20,768	69.23	71.11
상주시	1,719	2,114	81.32	19,465	64.88	73.10
문경시	1,315	1,520	86.51	25,411	84.70	85.61
경산시	1,536	2,412	63.68	17,744	59.15	61.41
군위군	387	485	79.79	22,200	74.00	76.90
의성군	1,187	1,365	86.96	21,871	72.90	79.93
청송군	508	640	79.38	21,169	70.56	74.97
영양군	402	472	85.17	24,722	82.41	83.79
영덕군	999	1,400	71.36	18,876	62.92	67.14
청도군	406	552	73.55	18,415	61.38	67.47
고령군	512	724	70.72	20,290	67.63	69.18
성주군	783	960	81.56	23,577	78.59	80.08
칠곡군	695	982	70.77	19,812	66.04	68.41
예천군	247	290	85.17	24,683	82.28	83.72
봉화군	515	696	73.99	21,270	70.90	72.45
울진군	664	849	78.21	21,777	72.59	75.40
울릉군	44	51	86.27	25,608	85.36	85.82

〈부표 2-20-16〉 경상남도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단위: 명, %, 원)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비율 %(A)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 %(B)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A+B)/2
	'13년 월별 1만원이상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①)	'13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②)	A= (①/②) ×100	1인당월평균 매칭지원금(③)	B= (③/30,000원) ×100	
계	32,974	43,694	75.47	20,102	67.01	71.24
창원시	8,180	10,653	76.79	20,500	68.33	72.56
진주시	3,212	4,486	71.60	20,530	68.43	70.02
통영시	2,095	2,661	78.73	20,350	67.83	73.28
사천시	1,330	1,851	71.85	19,576	65.25	68.55
김해시	4,101	5,578	73.52	20,043	66.81	70.17
밀양시	1,901	2,394	79.41	21,166	70.55	74.98
거제시	2,134	2,805	76.08	19,881	66.27	71.17
양산시	2,416	3,322	72.73	17,950	59.83	66.28

의령군	404	509	79.37	14,894	49.65	64.51
함안군	732	992	73.79	20,720	69.07	71.43
창녕군	524	770	68.05	18,809	62.70	65.37
고성군	1,263	1,559	81.01	19,446	64.82	72.92
남해군	844	1,053	80.15	21,539	71.80	75.97
하동군	536	769	69.70	18,511	61.70	65.70
함양군	747	1,058	70.60	17,020	56.73	63.67
산청군	543	662	82.02	23,192	77.31	79.67
거창군	1,173	1,486	78.94	22,658	75.53	77.23
합천군	839	1,086	77.26	18,703	62.34	69.80

〈부표 2-20-17〉 제주특별자치시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단위: 명, %, 원)

	월평균 1만원 이상 저축아동비율 %(A)			1인당 평균매칭지원금 비율 %(B)		디딤씨앗통장 아동 1인당 매칭지원금 달성률 (A+B)/2
	'13년 월별 1만원이상저축아동의 연간 누계수(①)	'13년 월별 실가입아동의 연간 누계수(②)	A= (①/②) × 100	1인당월평균 매칭지원금(③)	B= (③/30,000원) × 100	
계	10,254	14,039	73.04	20,750	69.17	71.10
제주시	3,266	4,515	72.34	20,713	69.04	70.69
서귀포시	6,988	9,524	73.37	20,768	69.23	71.30

〈부표 2-21-1〉 서울특별시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A+B)/(A+B+C)\} \times 100$
계	150	55	377	35.22
종로구	2	0	0	100.00
중구	0	0	1	0.00
용산구	4	0	8	33.33
성동구	4	0	1	80.00
광진구	9	4	0	100.00
동대문구	6	3	24	27.27
종랑구	16	0	2	88.89
성북구	0	7	0	100.00
강북구	20	3	1	95.83
도봉구	21	0	0	100.00
노원구	6	0	2	75.00
은평구	3	4	16	30.43
서대문구	0	0	0	0.00
마포구	0	2	5	28.57
양천구	11	10	7	75.00
강서구	9	5	9	60.87
구로구	13	3	20	44.44
금천구	11	0	3	78.57
영등포구	2	0	229	0.87
동작구	5	0	16	23.81
관악구	0	0	0	0.00
서초구	1	0	0	100.00
강남구	0	0	4	0.00
송파구	7	14	0	100.00
강동구	0	0	29	0.00

〈부표 2-21-2〉 부산광역시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A+B)/(A+B+C)\} \times 100$
계	128	34	86	65.32
중구	0	1	0	100.00
서구	2	1	0	100.00
동구	8	1	0	100.00
영도구	5	3	2	80.00
부산진구	19	1	4	83.33
동래구	0	0	1	0.00
남구	27	4	3	91.18
북구	8	5	0	100.00
해운대구	16	0	22	42.11
사하구	10	4	8	63.64
금정구	3	0	18	14.29
강서구	3	0	9	25.00
연제구	3	7	9	52.63
수영구	7	4	6	64.71
사상구	14	2	4	80.00
기장군	3	1	0	100.00

〈부표 2-21-3〉 대구광역시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A+B)/(A+B+C)\} \times 100$
계	66	18	40	67.74
중구	3	7	10	50.00
동구	9	0	10	47.37
서구	10	0	0	100.00
남구	5	3	11	42.11
북구	9	0	0	100.00
수성구	2	3	9	35.71
달서구	15	5	0	100.00
달성군	13	0	0	100.00

〈부표 2-21-4〉 인천광역시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A+B)/(A+B+C)\} \times 100$
계	137	21	64	71.17
중구	5	5	12	45.45
동구	0	0	2	0.00
남구	39	2	21	66.13
연수구	8	0	0	100.00
남동구	22	7	0	100.00
부평구	21	1	20	52.38
계양구	10	0	0	100.00
서구	24	6	0	100.00
강화군	8	0	9	47.06
옹진군	0	0	0	0.00

〈부표 2-21-5〉 광주광역시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A+B)/(A+B+C)\} \times 100$
계	39	61	41	70.92
동구	15	0	3	83.33
서구	7	5	0	100.00
남구	4	21	21	54.35
북구	8	30	13	74.51
광산구	5	5	4	71.43

〈부표 2-21-6〉 대전광역시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A+B)/(A+B+C)\} \times 100$
계	40	18	167	25.78
동구	5	3	147	5.16
중구	13	8	1	95.45
서구	12	0	14	46.15
유성구	3	7	2	83.33
대덕구	7	0	3	70.00

412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부표 2-21-7〉 울산광역시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A+B)/(A+B+C)\} \times 100$
계	23	19	22	65.63
중구	10	9	0	100.00
남구	5	7	0	100.00
동구	2	2	5	44.44
북구	6	1	0	100.00
울주군	0	0	17	0.00

〈부표 2-21-8〉 세종시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A+B)/(A+B+C)\} \times 100$
계	0	2	3	40.00

〈부표 2-21-9〉 경기도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A+B)/(A+B+C)\} \times 100$
계	235	138	94	79.87
수원시	31	13	12	78.57
성남시	21	17	0	100.00
고양시	35	8	2	95.56
용인시	7	4	1	91.67
부천시	29	0	1	96.67
안산시	35	43	8	90.70
안양시	0	1	15	6.25
남양주시	0	5	0	100.00
화성시	9	3	0	100.00
평택시	10	0	16	38.46
의정부시	1	3	4	50.00
시흥시	0	0	12	0.00
파주시	20	1	7	75.00
광명시	4	7	3	78.57
김포시	0	2	0	100.00
군포시	0	4	0	100.00
광주시	7	0	0	100.00
이천시	1	2	0	100.00
양주시	3	0	2	60.00
오산시	1	9	0	100.00

구리시	0	3	0	100.00
안성시	0	3	4	42.86
포천시	6	0	4	60.00
의왕시	0	1	2	33.33
하남시	2	9	0	100.00
여주시	6	0	1	85.71
양평군	0	0	0	0.00
동두천시	0	0	0	0.00
과천시	0	0	0	0.00
가평군	7	0	0	100.00
연천군	0	0	0	0.00

〈부표 2-21-10〉 강원도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A+B)/(A+B+C)\} \times 100$
계	162	16	25	87.68
춘천시	10	5	2	88.24
원주시	24	3	7	79.41
강릉시	8	0	15	34.78
동해시	14	3	0	100.00
태백시	21	1	0	100.00
속초시	7	1	0	100.00
삼척시	12	0	0	100.00
홍천군	0	0	0	0.00
횡성군	17	0	0	100.00
영월군	6	3	0	100.00
평창군	6	0	0	100.00
정선군	7	0	0	100.00
철원군	13	0	0	100.00
화천군	2	0	1	66.67
양구군	8	0	0	100.00
인제군	4	0	0	100.00
고성군	1	0	0	100.00
양양군	2	0	0	100.00

414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부표 2-21-11〉 충청북도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A+B)/(A+B+C)\} \times 100$
계	62	13	68	52.45
청주시	18	2	11	64.52
충주시	10	0	10	50.00
제천시	2	3	23	17.86
청원군	5	0	8	38.46
보은군	4	0	0	100.00
옥천군	6	0	8	42.86
영동군	0	2	2	50.00
증평군	5	0	0	100.00
진천군	10	0	0	100.00
괴산군	1	3	0	100.00
음성군	0	0	6	0.00
단양군	1	3	0	100.00

〈부표 2-21-12〉 충청남도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A+B)/(A+B+C)\} \times 100$
계	109	24	55	70.74
천안시	23	10	24	57.89
공주시	4	0	0	100.00
보령시	6	0	1	85.71
아산시	19	10	8	78.38
서산시	12	3	0	100.00
논산시	14	0	4	77.78
계룡시	0	0	0	0.00
당진시	0	0	0	0.00
금산군	5	0	2	71.43
부여군	7	0	6	53.85
서천군	2	0	0	100.00
청양군	0	0	0	0.00
홍성군	8	0	8	50.00
예산군	6	1	2	77.78
태안군	3	0	0	100.00

〈부표 2-21-13〉 전라북도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A+B)/(A+B+C)\} \times 100$
계	102	56	99	61.48
전주시	30	30	26	69.77
군산시	3	7	14	41.67
익산시	7	8	40	27.27
정읍시	2	0	12	14.29
남원시	9	5	0	100.00
김제시	1	0	0	100.00
완주군	7	0	4	63.64
진안군	0	6	0	100.00
무주군	0	0	0	0.00
장수군	5	0	0	100.00
임실군	9	0	0	100.00
순창군	3	0	0	100.00
고창군	4	0	3	57.14
부안군	22	0	0	100.00

〈부표 2-21-14〉 전라남도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A+B)/(A+B+C)\} \times 100$
계	145	18	146	52.75
목포시	6	4	31	24.39
여주시	34	0	9	79.07
순천시	20	3	24	48.94
나주시	9	0	43	17.31
광양시	4	1	0	100.00
담양군	2	1	0	100.00
곡성군	3	0	0	100.00
구례군	0	0	0	0.00
고흥군	13	3	0	100.00
보성군	3	1	0	100.00
화순군	1	0	0	100.00
장흥군	8	4	0	100.00
강진군	0	0	5	0.00
해남군	18	0	10	64.29
영암군	2	0	9	18.18
무안군	2	0	0	100.00
함평군	9	0	10	47.37
영광군	0	1	3	25.00
장성군	0	0	0	0.00
완도군	1	0	0	100.00
진도군	7	0	0	100.00
신안군	3	0	2	60.00

〈부표 2-21-15〉 경상북도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A+B)/(A+B+C)\} \times 100$
계	156	12	100	62.69
포항시	6	5	7	61.11
경주시	21	2	14	62.16
김천시	1	0	13	7.14
안동시	5	1	5	54.55
구미시	12	0	6	66.67
영주시	4	0	5	44.44
영천시	7	0	11	38.89
상주시	19	0	3	86.36
문경시	4	0	4	50.00
경산시	5	2	0	100.00
군위군	2	0	0	100.00
의성군	3	0	13	18.75
청송군	37	0	0	100.00
영양군	0	0	2	0.00
영덕군	3	0	3	50.00
청도군	3	1	1	80.00
고령군	8	0	0	100.00
성주군	3	0	0	100.00
칠곡군	0	1	6	14.29
예천군	0	0	0	0.00
봉화군	1	0	3	25.00
울진군	5	0	4	55.56
울릉군	7	0	0	100.00

〈부표 2-21-16〉 경상남도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A+B)/(A+B+C)\} \times 100$
계	130	90	94	70.06
창원시	36	61	43	69.29
진주시	2	5	6	53.85
통영시	2	6	4	66.67
사천시	3	7	2	83.33
김해시	25	3	10	73.68
밀양시	11	0	3	78.57
거제시	4	5	3	75.00
양산시	15	0	1	93.75
의령군	0	0	11	0.00
함안군	4	1	0	100.00
창녕군	4	0	0	100.00
고성군	2	0	7	22.22

남해군	6	0	0	100.00
하동군	5	0	0	100.00
함양군	2	0	0	100.00
산청군	0	0	2	0.00
거창군	9	2	0	100.00
합천군	0	0	2	0.00

〈부표 2-21-17〉 제주특별자치시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단위: 명, %)

	가정위탁아동(A)	공동생활가정(B)	아동양육시설아동(C)	요보호아동 가정보호비율 $\{(A+B)/(A+B+C)\} \times 100$
계	50	15	36	64.36
제주시	7	11	25	41.86
서귀포시	43	4	11	81.03

□ 사회복지 분야(여성·가정복지)

○ 보육기반조성

〈부표 2-22-1〉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단위: 개, %)

	‘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A)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B)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B/A) × 100
계	4,633	4,913	106.04
종로구	56	59	105.36
중구	48	49	102.08
용산구	75	77	102.67
성동구	111	111	100.00
광진구	160	176	110.00
동대문구	164	180	109.76
중랑구	204	213	104.41
성북구	262	268	102.29
강북구	161	163	101.24
도봉구	237	256	108.02
노원구	414	447	107.97
은평구	240	259	107.92
서대문구	115	130	113.04
마포구	147	172	117.01
양천구	255	248	97.25
강서구	288	288	100.00
구로구	262	269	102.67
금천구	148	153	103.38
영등포구	167	180	107.78
동작구	150	153	102.00
관악구	229	230	100.44
서초구	105	128	121.90
강남구	148	162	109.46
송파구	279	305	109.32
강동구	208	237	113.94

〈부표 2-22-2〉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단위: 개, %)

	‘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A)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B)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B/A) × 100
계	1,123	1,200	106.86
중구	12	13	108.33
서구	32	29	90.63
동구	24	22	91.67
영도구	38	39	102.63
부산진구	105	119	113.33
동래구	66	67	101.52
남구	72	76	105.56
북구	130	127	97.69
해운대구	131	140	106.87
사하구	133	142	106.77
금정구	88	89	101.14
강서구	24	30	125.00
연제구	70	80	114.29
수영구	57	62	108.77
사상구	90	101	112.22
기장군	51	64	125.49

〈부표 2-22-3〉 대구광역시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단위: 개, %)

	‘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A)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B)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B/A) × 100
계	1,080	1,156	107.04
중구	25	28	112.00
동구	137	151	110.22
서구	94	104	110.64
남구	48	49	102.08
북구	233	247	106.01
수성구	151	157	103.97
달서구	295	317	107.46
달성군	97	103	106.19

〈부표 2-22-4〉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단위: 개, %)

	‘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A)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B)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B/A) × 100
계	1,480	1,853	125.20
중구	53	92	173.58
동구	44	68	154.55
남구	189	227	120.11
연수구	134	193	144.03
남동구	266	329	123.68
부평구	318	358	112.58
계양구	197	220	111.68
서구	257	343	133.46
강화군	15	16	106.67
옹진군	7	7	100.00

〈부표 2-22-5〉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단위: 개, %)

	‘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A)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B)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B/A) × 100
계	808	857	106.06
동구	35	35	100.00
서구	160	180	112.50
남구	101	107	105.94
북구	200	224	112.00
광산구	312	311	99.68

〈부표 2-22-6〉 대전광역시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단위: 개, %)

	‘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A)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B)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B/A) × 100
계	1,080	1,250	115.74
동구	166	188	113.25
중구	141	161	114.18
서구	370	419	113.24
유성구	260	320	123.08
대덕구	143	162	113.29

〈부표 2-22-7〉 울산광역시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단위: 개, %)

	‘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A)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B)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B/A) × 100
계	540	649	120.19
중구	80	98	122.50
남구	152	188	123.68
동구	72	112	155.56
북구	130	142	109.23
울주군	106	109	102.83

〈부표 2-22-8〉 세종시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단위: 개, %)

	‘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A)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B)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B/A) × 100
계	0	0	0.00

〈부표 2-22-9〉 경기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단위: 개, %)

	‘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A)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B)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B/A) × 100
계	7,699	9,012	117.05
수원시	650	838	128.92
성남시	464	549	118.32
고양시	625	709	113.44
용인시	583	738	126.59
부천시	426	494	115.96
안산시	466	508	109.01
안양시	389	481	123.65
남양주시	459	510	111.11
화성시	412	492	119.42
평택시	245	270	110.20
의정부시	401	401	100.00
시흥시	295	357	121.02
파주시	274	309	112.77
광명시	251	288	114.74
김포시	140	197	140.71
군포시	160	181	113.13
광주시	180	215	119.44
이천시	108	131	121.30
양주시	173	192	110.98
오산시	168	213	126.79

422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구리시	111	130	117.12
안성시	165	193	116.97
포천시	102	115	112.75
의왕시	87	108	124.14
하남시	101	112	110.89
여주시	54	54	100.00
양평군	29	34	117.24
동두천시	88	89	101.14
과천시	42	46	109.52
가평군	29	35	120.69
연천군	22	23	104.55

〈부표 2-22-10〉 강원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단위: 개, %)

	‘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A)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B)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B/A) × 100
계	821	957	116.57
춘천시	153	176	115.03
원주시	216	273	126.39
강릉시	136	156	114.71
동해시	36	50	138.89
태백시	19	23	121.05
속초시	51	57	111.76
삼척시	33	40	121.21
홍천군	38	37	97.37
횡성군	24	22	91.67
영월군	15	14	93.33
평창군	12	16	133.33
정선군	10	10	100.00
철원군	19	20	105.26
화천군	14	12	85.71
양구군	7	11	157.14
인제군	16	17	106.25
고성군	12	12	100.00
양양군	10	11	110.00

〈부표 2-22-11〉 충청북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단위: 개, %)

	‘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A)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B)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B/A) × 100
계	785	922	117.45
청주시	443	508	114.67
충주시	79	102	129.11
제천시	50	61	122.00
청원군	76	98	128.95
보은군	8	7	87.50
옥천군	21	21	100.00
영동군	8	12	150.00
증평군	13	14	107.69
진천군	34	37	108.82
괴산군	6	8	133.33
음성군	37	41	110.81
단양군	10	13	130.00

〈부표 2-22-12〉 충청남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단위: 개, %)

	‘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A)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B)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B/A) × 100
계	1,150	1,389	120.78
천안시	424	501	118.16
공주시	47	56	119.15
보령시	40	43	107.50
아산시	209	277	132.54
서산시	84	99	117.86
논산시	74	74	100.00
계룡시	33	40	121.21
당진시	83	127	153.01
금산군	26	30	115.38
부여군	26	25	96.15
서천군	20	18	90.00
청양군	16	15	93.75
홍성군	34	40	117.65
예산군	21	27	128.57
태안군	13	17	130.77

〈부표 2-22-13〉 전라북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단위: 개, %)

	‘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A)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B)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B/A) × 100
계	1,173	1,404	119.69
전주시	495	620	125.25
군산시	154	190	123.38
익산시	194	233	120.10
정읍시	80	85	106.25
남원시	57	67	117.54
김제시	57	61	107.02
완주군	54	64	118.52
진안군	7	7	100.00
무주군	7	7	100.00
장수군	5	5	100.00
임실군	10	8	80.00
순창군	11	13	118.18
고창군	21	22	104.76
부안군	21	22	104.76

〈부표 2-22-14〉 전라남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단위: 개, %)

	‘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A)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B)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B/A) × 100
계	802	853	106.36
목포시	139	140	100.72
여수시	105	117	111.43
순천시	150	167	111.33
나주시	35	35	100.00
광양시	97	107	110.31
담양군	9	9	100.00
곡성군	11	11	100.00
구례군	7	7	100.00
고흥군	20	20	100.00
보성군	8	8	100.00
화순군	56	57	101.79
장흥군	12	15	125.00
강진군	10	10	100.00
해남군	25	21	84.00
영암군	27	32	118.52
무안군	32	35	109.38
함평군	11	12	109.09
영광군	14	15	107.14
장성군	12	12	100.00
완도군	17	16	94.12
진도군	5	7	140.00
신안군	0	0	0.00

〈부표 2-22-15〉 경상북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단위: 개, %)

	‘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A)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B)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B/A) × 100
계	1,561	1,645	105.38
포항시	412	417	101.21
경주시	162	168	103.70
김천시	96	88	91.67
안동시	82	86	104.88
구미시	283	343	121.20
영주시	34	42	123.53
영천시	42	40	95.24
상주시	36	34	94.44
문경시	30	35	116.67
경산시	164	163	99.39
군위군	2	2	100.00
의성군	10	9	90.00
청송군	2	3	150.00
영양군	3	4	133.33
영덕군	15	15	100.00
청도군	12	13	108.33
고령군	10	10	100.00
성주군	19	15	78.95
칠곡군	104	108	103.85
예천군	16	19	118.75
봉화군	10	12	120.00
울진군	16	18	112.50
울릉군	1	1	100.00

〈부표 2-22-16〉 경상남도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단위: 개, %)

	‘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A)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B)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B/A) × 100
계	2,127	2,347	110.34
창원시	688	752	109.30
진주시	231	262	113.42
통영시	65	76	116.92
사천시	86	101	117.44
김해시	527	555	105.31
밀양시	57	58	101.75
거제시	99	123	124.24
양산시	211	238	112.80
의령군	9	9	100.00
함안군	41	50	121.95
창녕군	18	19	105.56
고성군	11	15	136.36

426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남해군	7	9	128.57
하동군	19	18	94.74
함양군	9	9	100.00
산청군	12	12	100.00
거창군	25	28	112.00
합천군	12	13	108.33

〈부표 2-22-17〉 제주특별자치시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단위: 개, %)

	‘12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A)	‘13년말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B)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B/A) × 100
계	441	472	107.03
제주시	337	350	103.86
서귀포시	104	122	117.31

〈부표 2-23-1〉 서울특별시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아동수 (A)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B)							취약보육 실시율 (B/A) ×100
		영아 보육 이용수		장애아 보육이용 수 (③)	다문화유아 보육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보육 이용수(⑤)	휴일 보육이용 수 (⑥)	(B)= ②+③+④+⑤+ ⑥	
		실제 이용수①	조정계수 적용이용수 ①×0.5(②)						
계	242,648	136,696	68,348.0	1,870	3,082	6,959	160	80,419.0	33.14
종로구	3,924	1,824	912.0	47	59	449	19	1,486.0	37.87
중구	3,450	1,838	919.0	52	78	189	0	1,238.0	35.88
용산구	5,124	2,653	1,326.5	27	128	166	0	1,647.5	32.15
성동구	7,245	4,115	2,057.5	50	123	178	4	2,412.5	33.30
광진구	8,632	5,035	2,517.5	48	126	470	20	3,181.5	36.86
동대문구	8,670	4,795	2,397.5	26	109	276	0	2,808.5	32.39
종량구	10,661	5,854	2,927.0	71	126	314	4	3,442.0	32.29
성북구	11,102	6,792	3,396.0	63	123	228	9	3,819.0	34.40
강북구	8,767	4,473	2,236.5	62	136	224	0	2,658.5	30.32
도봉구	9,766	5,527	2,763.5	83	103	303	10	3,262.5	33.41
노원구	14,006	9,104	4,552.0	174	106	431	20	5,283.0	37.72
은평구	13,938	7,886	3,943.0	98	167	221	12	4,441.0	31.86
서대문구	6,897	3,681	1,840.5	70	73	151	0	2,134.5	30.95
마포구	8,467	4,581	2,290.5	95	93	243	2	2,723.5	32.17
양천구	11,919	6,508	3,254.0	157	127	197	1	3,736.0	31.34
강서구	14,715	8,395	4,197.5	86	158	370	11	4,822.5	32.77
구로구	12,640	6,850	3,425.0	100	248	283	16	4,072.0	32.22
금천구	7,584	3,912	1,956.0	35	168	411	2	2,572.0	33.91
영등포구	10,172	5,566	2,783.0	47	174	176	0	3,180.0	31.26
동작구	8,903	5,042	2,521.0	34	78	181	10	2,824.0	31.72
관악구	11,311	6,371	3,185.5	87	178	342	7	3,799.5	33.59
서초구	8,227	4,504	2,252.0	55	50	135	0	2,492.0	30.29
강남구	9,419	5,166	2,583.0	102	74	345	0	3,104.0	32.95
송파구	14,871	9,048	4,524.0	97	130	368	8	5,127.0	34.48
강동구	12,238	7,176	3,588.0	104	147	308	5	4,152.0	33.93

〈부표 2-23-2〉 부산광역시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아동수 (A)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B)							취약보육 실시율 (B/A) ×100
		영아 보육 이용수		장애아 보육이용 수 (③)	다문화유아 보육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보육 이용수(⑤)	휴일 보육이용 수 (⑥)	(B)= ②+③+④+⑤+ ⑥	
		실제 이용수①	조정계수 적용이용수 ①×0.5(②)						
계	74,317	47,053	23,526.5	605	890	1,400	10	26,431.5	35.57
중구	944	452	226.0	33	10	26	0	295.0	31.25
서구	1,929	1,091	545.5	11	46	71	0	673.5	34.91
동구	1,893	1,027	513.5	5	34	70	0	622.5	32.88
영도구	2,443	1,422	711.0	10	43	37	0	801.0	32.79
부산진구	6,763	4,631	2,315.5	57	64	69	0	2,505.5	37.05
동래구	5,212	3,241	1,620.5	63	42	78	0	1,803.5	34.60
남구	5,909	3,627	1,813.5	71	97	80	0	2,061.5	34.89
북구	6,985	4,617	2,308.5	84	76	55	4	2,527.5	36.18
해운대구	8,927	5,714	2,857.0	37	90	123	0	3,107.0	34.80
사하구	8,546	5,319	2,659.5	52	109	220	2	3,042.5	35.60
금정구	4,663	2,966	1,483.0	32	52	176	3	1,746.0	37.44
강서구	2,098	1,206	603.0	9	29	0	0	641.0	30.55
연제구	4,113	2,614	1,307.0	41	37	51	0	1,436.0	34.91
수영구	3,415	2,114	1,057.0	64	39	51	0	1,211.0	35.46
사상구	5,453	3,765	1,882.5	7	85	162	0	2,136.5	39.18
기장군	5,024	3,247	1,623.5	29	37	131	1	1,821.5	36.26

〈부표 2-23-3〉 대구광역시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아동수 (A)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B)							취약보육 실시율 (B/A) ×100
		영아 보육 이용수		장애아 보육이용 수 (③)	다문화유아 보육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보육 이용수(⑤)	휴일 보육이용 수 (⑥)	(B)= ②+③+④+⑤+ ⑥	
		실제 이용수①	조정계수 적용이용수 ①×0.5(②)						
계	63,505	38,444	19,222.0	711	777	1,596	40	22,346.0	35.19
중구	1,529	861	430.5	8	14	30	2	484.5	31.69
동구	8,907	5,404	2,702.0	52	94	130	0	2,978.0	33.43
서구	5,726	2,991	1,495.5	50	160	166	12	1,883.5	32.89
남구	3,420	1,769	884.5	98	57	79	1	1,119.5	32.73
북구	12,999	8,131	4,065.5	195	131	279	0	4,670.5	35.93
수성구	8,991	5,305	2,652.5	94	50	274	10	3,080.5	34.26
달서구	15,941	10,074	5,037.0	151	175	527	15	5,905.0	37.04
달성군	5,992	3,909	1,954.5	63	96	111	0	2,224.5	37.12

〈부표 2-23-4〉 인천광역시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아동수 (A)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B)							취약보육 실시율 (B/A) ×100
		영아 보육 이용수		장애아 보육이용 수 (③)	다문화유아 보육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보육 이용수(⑤)	휴일 보육이용 수 (⑥)	(B)= ②+③+④+⑤+ ⑥	
		실제 이용수①	조정계수 적용이용수 ①×0.5(②)						
계	81,796	49,072	24,536.0	537	1,071	1,773	17	27,934.0	34.15
중구	3,469	2,053	1,026.5	30	48	112	0	1,216.5	35.07
동구	2,189	1,449	724.5	16	20	52	0	812.5	37.12
남구	10,826	6,199	3,099.5	63	151	204	1	3,518.5	32.50
연수구	7,657	4,895	2,447.5	71	84	290	0	2,892.5	37.78
남동구	14,918	9,042	4,521.0	113	191	327	5	5,157.0	34.57
부평구	14,973	8,668	4,334.0	129	209	436	5	5,113.0	34.15
계양구	10,776	6,202	3,101.0	59	145	110	5	3,420.0	31.74
서구	15,693	9,885	4,942.5	45	191	242	1	5,421.5	34.55
강화군	974	519	259.5	9	29	0	0	297.5	30.54
옹진군	321	160	80.0	2	3	0	0	85.0	26.48

〈부표 2-23-5〉 광주광역시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아동수 (A)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B)							취약보육 실시율 (B/A) ×100
		영아 보육 이용수		장애아 보육이용 수 (③)	다문화유아 보육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보육 이용수(⑤)	휴일 보육이용 수 (⑥)	(B)= ②+③+④+⑤+ ⑥	
		실제 이용수①	조정계수 적용이용수 ①×0.5(②)						
계	51,274	30,209	15,104.5	408	551	1,349	74	17,486.5	34.10
동구	2,249	1,204	602.0	41	30	56	5	734.0	32.64
서구	8,996	5,824	2,912.0	87	69	416	1	3,485.0	38.74
남구	6,018	3,585	1,792.5	91	93	164	2	2,142.5	35.60
북구	14,002	8,106	4,053.0	61	143	345	56	4,658.0	33.27
광산구	20,009	11,490	5,745.0	128	216	368	10	6,467.0	32.32

〈부표 2-23-9〉 경기도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아동수 (A)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B)							취약보육 실시율 (B/A) ×100
		영아 보육 이용수		장애아 보육이용 수 (③)	다문화유아 보육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보육 이용수(⑤)	휴일 보육이용 수 (⑥)	(B)= ②+③+④+⑤+ ⑥	
		실제 이용수①	조정계수 적용이용수 ①×0.5(②)						
계	397,656	240,033	120,016.5	2,123	5,433	12,522	243	140,337.5	35.29
수원시	34,010	22,165	11,082.5	115	389	885	8	12,479.5	36.69
성남시	23,871	14,253	7,126.5	185	350	509	9	8,179.5	34.27
고양시	28,019	17,753	8,876.5	182	234	1,043	35	10,370.5	37.01
용인시	34,380	21,022	10,511.0	164	246	514	10	11,445.0	33.29
부천시	21,449	12,902	6,451.0	150	358	716	3	7,678.0	35.80
안산시	23,286	14,025	7,012.5	184	584	1,200	42	9,022.5	38.75
안양시	16,842	10,216	5,108.0	110	193	416	1	5,828.0	34.60
남양주시	23,357	13,556	6,778.0	80	180	856	2	7,896.0	33.81
화성시	22,912	14,782	7,391.0	91	276	580	22	8,360.0	36.49
평택시	15,130	9,092	4,546.0	33	209	478	1	5,267.0	34.81
의정부시	14,114	8,624	4,312.0	78	116	574	44	5,124.0	36.30
시흥시	14,459	7,926	3,963.0	81	364	622	7	5,037.0	34.84
파주시	14,839	8,892	4,446.0	56	204	318	16	5,040.0	33.96
광명시	11,242	6,968	3,484.0	28	139	325	0	3,976.0	35.37
김포시	10,802	7,364	3,682.0	41	129	285	0	4,137.0	38.30
군포시	8,740	5,659	2,829.5	70	76	320	0	3,295.5	37.71
광주시	12,546	6,696	3,348.0	85	288	308	1	4,030.0	32.12
이천시	8,290	4,517	2,258.5	21	121	200	23	2,623.5	31.65
양주시	8,396	4,678	2,339.0	28	121	315	14	2,817.0	33.55
오산시	8,135	5,275	2,637.5	77	103	251	0	3,068.5	37.72
구리시	5,120	3,089	1,544.5	43	57	214	0	1,858.5	36.30
안성시	7,288	4,313	2,156.5	43	126	263	0	2,588.5	35.52
포천시	5,138	2,565	1,282.5	52	144	409	1	1,888.5	36.76
의왕시	5,631	3,278	1,639.0	41	37	147	0	1,864.0	33.10
하남시	4,840	2,730	1,365.0	19	56	80	0	1,520.0	31.40
여주시	3,099	1,772	886.0	13	78	25	4	1,006.0	32.46
양평군	2,726	1,274	637.0	7	76	87	0	807.0	29.60
동두천시	3,791	2,085	1,042.5	27	62	207	0	1,338.5	35.31
과천시	2,296	1,021	510.5	13	23	192	0	738.5	32.16
가평군	1,645	821	410.5	4	67	40	0	521.5	31.70
연천군	1,263	720	360.0	2	27	143	0	532.0	42.12

〈부표 2-23-10〉 강원도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아동수 (A)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B)							취약보육 실시율 (B/A) ×100
		영아 보육 이용수		장애아 보육이용 수 (③)	다문화유아 보육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보육 이용수(⑤)	휴일 보육이용 수 (⑥)	(B)= ②+③+④+⑤+ ⑥	
		실제 이용수①	조정계수 적용이용수 ①×0.5(②)						
계	45,113	24,131	12,065.5	170	908	1,124	114	14,381.5	31.88
춘천시	9,162	5,032	2,516.0	30	140	251	30	2,967.0	32.38
원주시	10,976	6,358	3,179.0	70	201	383	35	3,868.0	35.24
강릉시	6,605	3,258	1,629.0	40	69	217	33	1,988.0	30.10
동해시	2,778	1,552	776.0	12	35	96	0	919.0	33.08
태백시	1,383	646	323.0	0	24	0	0	347.0	25.09
속초시	2,727	1,466	733.0	3	24	53	5	818.0	30.00
삼척시	1,457	801	400.5	8	30	4	2	444.5	30.51
홍천군	1,713	891	445.5	1	59	9	0	514.5	30.04
횡성군	1,034	501	250.5	1	78	17	0	346.5	33.51
영월군	676	351	175.5	0	31	58	0	264.5	39.13
평창군	819	391	195.5	1	32	0	9	237.5	29.00
정선군	757	353	176.5	0	55	30	0	261.5	34.54
철원군	1,626	749	374.5	2	37	2	0	415.5	25.55
화천군	670	412	206.0	1	7	0	0	214.0	31.94
양구군	714	326	163.0	0	21	0	0	184.0	25.77
인제군	870	469	234.5	0	15	0	0	249.5	28.68
고성군	653	301	150.5	1	30	0	0	181.5	27.79
양양군	493	274	137.0	0	20	4	0	161.0	32.66

〈부표 2-23-11〉 충청북도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아동수 (A)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B)							취약보육 실시율 (B/A) ×100
		영아 보육 이용수		장애아 보육이용 수 (③)	다문화유아 보육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보육 이용수(⑤)	휴일 보육이용 수 (⑥)	(B)= ②+③+④+⑤+ ⑥	
		실제 이용수①	조정계수 적용이용수 ①×0.5(②)						
계	51,476	27,098	13,549.0	247	1,010	1,546	13	16,365.0	31.79
청주시	25,186	13,442	6,721.0	138	230	843	13	7,945.0	31.55
충주시	5,895	3,111	1,555.5	39	134	276	0	2,004.5	34.00
제천시	3,383	1,945	972.5	1	95	172	0	1,240.5	36.67
청원군	6,180	3,065	1,532.5	37	106	51	0	1,726.5	27.94
보은군	503	273	136.5	0	43	12	0	191.5	38.07
옥천군	1,142	662	331.0	13	69	16	0	429.0	37.57
영동군	856	463	231.5	11	34	9	0	285.5	33.35
증평군	1,473	703	351.5	4	37	39	0	431.5	29.29
진천군	2,493	1,221	610.5	1	100	57	0	768.5	30.83
괴산군	642	296	148.0	2	36	0	0	186.0	28.97
음성군	3,052	1,588	794.0	1	90	8	0	893.0	29.26
단양군	671	329	164.5	0	36	63	0	263.5	39.27

〈부표 2-23-12〉 충청남도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아동수 (A)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B)							취약보육 실시율 (B/A) ×100
		영아 보육 이용수		장애아 보육이용 수 (③)	다문화유아 보육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보육 이용수(⑤)	휴일 보육이용 수 (⑥)	(B)= ②+③+④+⑤+ ⑥	
		실제 이용수①	조정계수 적용이용수 ①×0.5(②)						
계	69,395	38,511	19,255.5	386	1,656	1,533	47	22,877.5	32.97
천안시	20,754	12,647	6,323.5	125	254	276	15	6,993.5	33.70
공주시	2,934	1,642	821.0	35	115	43	0	1,014.0	34.56
보령시	2,639	1,466	733.0	11	82	106	9	941.0	35.66
아산시	14,470	8,276	4,138.0	67	228	554	20	5,007.0	34.60
서산시	5,929	3,170	1,585.0	20	133	44	0	1,782.0	30.06
논산시	4,067	1,897	948.5	27	207	113	0	1,295.5	31.85
계룡시	1,487	909	454.5	3	7	162	0	626.5	42.13
당진시	7,162	3,475	1,737.5	44	192	50	0	2,023.5	28.25
금산군	1,405	672	336.0	6	89	0	0	431.0	30.68
부여군	1,487	755	377.5	4	114	0	0	495.5	33.32
서천군	1,308	630	315.0	12	60	71	0	458.0	35.02
청양군	577	359	179.5	1	30	23	0	233.5	40.47
홍성군	2,262	1,183	591.5	21	65	69	0	746.5	33.00
예산군	1,531	795	397.5	2	41	14	0	454.5	29.69
태안군	1,383	635	317.5	8	39	8	3	375.5	27.15

〈부표 2-23-13〉 전라북도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아동수 (A)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B)							취약보육 실시율 (B/A) ×100
		영아 보육 이용수		장애아 보육이용 수 (③)	다문화유아 보육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보육 이용수(⑤)	휴일 보육이용 수 (⑥)	(B)= ②+③+④+⑤+ ⑥	
		실제 이용수①	조정계수 적용이용수 ①×0.5(②)						
계	59,050	33,877	16,938.5	338	1,451	2,524	105	21,356.5	36.17
전주시	23,011	13,979	6,989.5	91	200	1,015	48	8,343.5	36.26
군산시	9,886	5,492	2,746.0	86	176	284	23	3,315.0	33.53
익산시	9,413	5,647	2,823.5	95	206	485	0	3,609.5	38.35
정읍시	3,611	1,968	984.0	22	120	235	17	1,378.0	38.16
남원시	2,951	1,409	704.5	14	120	163	1	1,002.5	33.97
김제시	2,206	1,225	612.5	17	104	139	0	872.5	39.55
완주군	2,983	1,583	791.5	10	118	98	0	1,017.5	34.11
진안군	417	221	110.5	0	43	0	0	153.5	36.81
무주군	575	287	143.5	0	35	12	0	190.5	33.13
장수군	485	202	101.0	0	50	0	0	151.0	31.13
임실군	525	234	117.0	2	54	0	0	173.0	32.95
순창군	627	332	166.0	0	62	11	0	239.0	38.12
고창군	1,294	662	331.0	1	107	32	10	481.0	37.17
부안군	1,066	636	318.0	0	56	50	6	430.0	40.34

〈부표 2-23-14〉 전라남도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아동수 (A)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B)							취약보육 실시율 (B/A) ×100
		영아 보육 이용수		장애아 보육이용 수 (③)	다문화유아 보육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보육 이용수(⑤)	휴일 보육이용 수 (⑥)	(B)= ②+③+④+⑤+ ⑥	
		실제 이용수①	조정계수 적용이용수 ①×0.5(②)						
계	56,334	29,709	14,854.5	541	1,826	1,404	28	18,653.5	33.11
목포시	10,517	5,789	2,894.5	117	89	263	0	3,363.5	31.98
여수시	8,640	4,314	2,157.0	154	181	143	0	2,635.0	30.50
순천시	9,552	5,174	2,587.0	78	189	265	8	3,127.0	32.74
나주시	2,048	1,059	529.5	18	119	78	0	744.5	36.35
광양시	6,661	3,555	1,777.5	65	123	174	15	2,154.5	32.34
담양군	743	392	196.0	0	55	15	0	266.0	35.80
곡성군	661	349	174.5	0	68	7	0	249.5	37.75
구례군	548	274	137.0	1	18	27	0	183.0	33.39
고흥군	1,225	559	279.5	2	126	18	0	425.5	34.73
보성군	758	391	195.5	1	73	41	0	310.5	40.96
화순군	2,322	1,162	581.0	1	71	173	0	826.0	35.57
장흥군	749	388	194.0	1	37	25	5	262.0	34.98
강진군	948	445	222.5	15	58	0	0	295.5	31.17
해남군	1,695	888	444.0	23	107	45	0	619.0	36.52
영암군	2,066	1,073	536.5	39	101	28	0	704.5	34.10
무안군	2,165	1,279	639.5	16	81	34	0	770.5	35.59
함평군	653	313	156.5	1	70	0	0	227.5	34.84
영광군	1,281	601	300.5	0	58	5	0	363.5	28.38
장성군	847	450	225.0	0	56	3	0	284.0	33.53
완도군	1,109	668	334.0	6	47	48	0	435.0	39.22
진도군	659	330	165.0	2	61	0	0	228.0	34.60
신안군	487	256	128.0	1	38	12	0	179.0	36.76

〈부표 2-23-15〉 경상북도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아동수 (A)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B)							취약보육 실시율 (B/A) ×100
		영아 보육 이용수		장애아 보육이용 수 (③)	다문화유아 보육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보육 이용수(⑤)	휴일 보육이용 수 (⑥)	(B)= ②+③+④+⑤+ ⑥	
		실제 이용수①	조정계수 적용이용수 ①×0.5(②)						
계	73,825	45,430	22,715.0	591	1,992	2,420	67	27,785.0	37.64
포항시	16,050	10,566	5,283.0	169	266	676	41	6,435.0	40.09
경주시	7,114	4,162	2,081.0	101	243	135	2	2,562.0	36.01
김천시	3,354	2,134	1,067.0	60	121	178	4	1,430.0	42.64
안동시	3,814	2,156	1,078.0	4	112	50	0	1,244.0	32.62
구미시	15,279	10,518	5,259.0	125	171	478	1	6,034.0	39.49
영주시	2,611	1,400	700.0	14	114	46	0	874.0	33.47
영천시	2,085	1,146	573.0	11	98	93	0	775.0	37.17

상주시	1,635	1,064	532.0	2	123	100	1	758.0	46.36
문경시	1,447	864	432.0	2	56	39	0	529.0	36.56
경산시	8,199	5,100	2,550.0	64	138	302	3	3,057.0	37.29
군위군	201	94	47.0	0	23	0	0	70.0	34.83
의성군	760	324	162.0	2	52	18	0	234.0	30.79
청송군	318	180	90.0	0	15	3	0	108.0	33.96
영양군	223	84	42.0	0	27	0	0	69.0	30.94
영덕군	753	340	170.0	0	44	13	0	227.0	30.15
청도군	614	348	174.0	2	48	15	0	239.0	38.93
고령군	785	410	205.0	0	47	21	0	273.0	34.78
성주군	697	330	165.0	0	63	21	0	249.0	35.72
칠곡군	5,099	2,952	1,476.0	27	71	158	15	1,747.0	34.26
예천군	902	438	219.0	0	93	0	0	312.0	34.59
봉화군	517	266	133.0	4	33	22	0	192.0	37.14
울진군	1,289	506	253.0	4	32	52	0	341.0	26.45
울릉군	79	48	24.0	0	2	0	0	26.0	32.91

〈부표 2-23-16〉 경상남도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아동수 (A)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B)							취약보육 실시율 (B/A) ×100
		영아 보육 이용수		장애아 보육이용 수 (③)	다문화유아 보육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보육 이용수(⑤)	휴일 보육이용 수 (⑥)	(B)= ②+③+④+⑤+ ⑥	
		실제 이용수①	조정계수 적용이용수 ①×0.5(②)						
계	106,745	65,498	32,749.0	655	2,113	3,827	108	39,452.0	36.96
창원시	32,867	20,603	10,301.5	226	449	1,411	13	12,400.5	37.73
진주시	12,291	6,651	3,325.5	84	289	537	41	4,276.5	34.79
통영시	4,688	2,715	1,357.5	5	92	122	0	1,576.5	33.63
사천시	4,933	2,668	1,334.0	30	113	49	0	1,526.0	30.93
김해시	20,344	13,587	6,793.5	146	240	850	27	8,056.5	39.60
밀양시	2,617	1,520	760.0	15	96	207	0	1,078.0	41.19
거제시	8,466	5,502	2,751.0	65	135	35	0	2,986.0	35.27
양산시	10,066	6,560	3,280.0	61	149	241	27	3,758.0	37.33
의령군	459	244	122.0	0	22	28	0	172.0	37.47
함안군	1,745	1,145	572.5	12	72	111	0	767.5	43.98
창녕군	1,217	715	357.5	1	47	19	0	424.5	34.88
고성군	1,545	786	393.0	1	64	37	0	495.0	32.04
남해군	810	377	188.5	1	59	32	0	280.5	34.63
하동군	1,022	479	239.5	1	72	36	0	348.5	34.10
함양군	760	430	215.0	2	42	59	0	318.0	41.84
산청군	718	351	175.5	1	53	0	0	229.5	31.96
거창군	1,584	852	426.0	4	69	28	0	527.0	33.27
합천군	613	313	156.5	0	50	25	0	231.5	37.77

〈부표 2-23-17〉 제주특별자치시 취약보육 실시율

(단위: 명, %)

	보육시설 이용 전체아동수 (A)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B)							취약보육 실시율 (B/A) × 100
		영아 보육 이용수		장애아 보육이용 수 (③)	다문화유아 보육이용수 (④)	시간 연장형보육 이용수(⑤)	휴일 보육이용 수 (⑥)	(B)= ②+③+④+⑤+ ⑥	
		실제 이용수①	조정계수 적용이용수 ①×0.5(②)						
계	27,256	14,730	7,365.0	177	413	1,425	300	9,680.0	35.52
제주시	20,785	11,435	5,717.5	156	256	713	72	6,914.5	33.27
서귀포시	6,471	3,295	1,647.5	21	157	712	228	2,765.5	42.74

□ 지역경제 분야(서민생활안정)

○ 취약계층 생상품 우선구매 실적

〈부표 2-24-1〉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상품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단위: 원, %)

	'13년 총구매액(A)	'13년 중증장애인생상품구매액(B)	중증장애인생상품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B/A) × 100
계	924,703,165	12,644,673	1.37
종로구	20,088,463	365,917	1.82
중구	12,940,012	776,614	6.00
용산구	12,780,636	536,035	4.19
성동구	15,826,788	179,470	1.13
광진구	14,487,162	255,184	1.76
동대문구	14,069,613	332,583	2.36
중랑구	12,864,713	238,340	1.85
성북구	15,896,914	156,736	0.99
강북구	15,735,864	230,773	1.47
도봉구	12,679,280	49,860	0.39
노원구	6,051,216	201,946	3.34
은평구	17,588,179	306,975	1.75
서대문구	15,786,345	215,932	1.37
마포구	12,376,569	381,676	3.08
양천구	13,575,856	320,798	2.36
강서구	13,342,835	864,430	6.48
구로구	20,814,075	860,731	4.14
금천구	16,313,999	535,636	3.28
영등포구	16,624,972	583,555	3.51
동작구	14,061,999	275,757	1.96
관악구	19,744,718	423,188	2.14
서초구	26,462,366	699,227	2.64
강남구	546,580,547	3,169,795	0.58
송파구	25,469,013	112,351	0.44
강동구	12,541,031	571,164	4.55

〈부표 2-24-2〉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단위: 원, %)

	'13년 총구매액(A)	'13년 중증장애인생산물구매액(B)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B/A) × 100
계	194,315,726	1,512,804	0.78
중구	6,586,836	59,755	0.91
서구	9,672,121	55,284	0.57
동구	6,500,186	53,173	0.82
영도구	10,967,246	186,103	1.70
부산진구	8,463,484	74,812	0.88
동래구	6,633,330	80,874	1.22
남구	11,993,683	129,781	1.08
북구	8,566,812	87,690	1.02
해운대구	17,202,389	111,875	0.65
사하구	13,814,300	139,532	1.01
금정구	17,613,607	137,726	0.78
강서구	19,305,310	60,401	0.31
연제구	6,991,120	62,780	0.90
수영구	7,405,127	70,758	0.96
사상구	15,156,881	137,484	0.91
기장군	27,443,294	64,776	0.24

〈부표 2-24-3〉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단위: 원, %)

	'13년 총구매액(A)	'13년 중증장애인생산물구매액(B)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B/A) × 100
계	131,037,048	968,752	0.74
중구	7,714,314	28,995	0.38
동구	10,055,030	25,106	0.25
서구	10,196,734	33,604	0.33
남구	8,904,808	133,278	1.50
북구	16,097,409	148,834	0.92
수성구	19,469,233	129,067	0.66
달서구	25,009,197	276,456	1.11
달성군	33,590,323	193,412	0.58

〈부표 2-24-4〉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단위: 원, %)

	'13년 총구매액(A)	'13년 중증장애인생산물구매액(B)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B/A) × 100
계	199,770,097	1,833,396	0.92
중구	17,273,129	168,443	0.98
동구	8,356,682	42,335	0.51
남구	11,553,082	180,531	1.56
연수구	22,759,449	287,352	1.26
남동구	19,792,441	200,613	1.01
부평구	20,812,199	248,864	1.20
계양구	13,039,283	300,656	2.31
서구	28,204,338	301,013	1.07
강화군	23,084,884	69,527	0.30
옹진군	34,894,610	34,062	0.10

〈부표 2-24-5〉 광주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단위: 원, %)

	'13년 총구매액(A)	'13년 중증장애인생산물구매액(B)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B/A) × 100
계	43,735,132	450,163	1.03
동구	6,778,950	33,671	0.50
서구	9,789,469	59,238	0.61
남구	3,965,811	104,422	2.63
북구	10,168,844	217,507	2.14
광산구	13,032,058	35,325	0.27

〈부표 2-24-6〉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단위: 원, %)

	'13년 총구매액(A)	'13년 중증장애인생산물구매액(B)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B/A) × 100
계	72,042,264	647,441	0.90
동구	10,581,257	57,628	0.54
중구	13,027,136	106,041	0.81
서구	16,652,503	98,252	0.59
유성구	17,965,923	91,467	0.51
대덕구	13,815,445	294,053	2.13

〈부표 2-24-〉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단위: 원, %)

	'13년 총구매액(A)	'13년 중증장애인생산물구매액(B)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B/A) × 100
계	107,624,867	940,401	0.87
중구	15,985,802	83,006	0.52
남구	30,164,823	189,922	0.63
동구	13,130,386	15,913	0.12
북구	15,364,297	262,212	1.71
울주군	32,979,559	389,348	1.18

〈부표 2-24-8〉 세종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단위: 원, %)

	'13년 총구매액(A)	'13년 중증장애인생산물구매액(B)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B/A) × 100
계	0	0	0.00

〈부표 2-24-9〉 경기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단위: 원, %)

	'13년 총구매액(A)	'13년 중증장애인생산물구매액(B)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B/A) × 100
계	1,545,031,978	15,562,522	1.01
수원시	108,406,082	2,412,865	2.23
성남시	79,803,358	654,541	0.82
고양시	88,564,779	669,082	0.76
용인시	86,548,304	871,140	1.01
부천시	72,970,834	835,806	1.15
안산시	87,051,266	64,795	0.07
안양시	57,265,217	129,945	0.23
남양주시	42,187,758	497,212	1.18
화성시	86,378,839	613,919	0.71
평택시	97,372,825	818,704	0.84
의정부시	47,784,755	204,297	0.43
시흥시	49,768,710	89,883	0.18
파주시	75,190,811	676,345	0.90
광명시	52,183,411	1,015,478	1.95
김포시	32,700,200	361,851	1.11
군포시	31,595,505	663,618	2.10
광주시	29,830,110	173,298	0.58

이천시	45,024,052	105,955	0.24
양주시	46,162,481	369,349	0.80
오산시	26,358,971	1,293,056	4.91
구리시	28,012,451	744,216	2.66
안성시	32,683,389	181,095	0.55
포천시	27,714,675	457,135	1.65
의왕시	19,246,602	12,234	0.06
하남시	29,515,885	402,577	1.36
여주시	33,588,632	647,071	1.93
양평군	27,519,627	109,054	0.40
동두천시	24,889,448	46,468	0.19
과천시	23,219,557	406,288	1.75
가평군	21,630,234	12,131	0.06
연천군	33,863,210	23,114	0.07

〈부표 2-24-10〉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단위: 원, %)

	'13년 총구매액(A)	'13년 중증장애인생산물구매액(B)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B/A) × 100
계	540,419,831	1,835,750	0.34
춘천시	45,096,120	502,929	1.12
원주시	61,182,225	499,818	0.82
강릉시	41,666,167	61,337	0.15
동해시	23,449,075	222,441	0.95
태백시	20,324,025	162,800	0.80
속초시	16,835,076	7,287	0.04
삼척시	41,147,579	148,723	0.36
홍천군	46,544,428	46,146	0.10
횡성군	23,109,893	20,152	0.09
영월군	34,958,209	6,322	0.02
평창군	33,025,910	91,113	0.28
정선군	19,679,126	16,516	0.08
철원군	20,950,377	2,306	0.01
화천군	27,832,154	8,964	0.03
양구군	15,844,795	3,302	0.02
인제군	23,407,244	12,329	0.05
고성군	21,467,802	7,244	0.03
양양군	23,899,626	16,021	0.07

〈부표 2-24-11〉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단위: 원, %)

	'13년 총구매액(A)	'13년 중증장애인생산물구매액(B)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B/A) × 100
계	270,589,960	1,640,379	0.61
청주시	61,947,774	533,464	0.86
충주시	37,793,957	75,190	0.20
제천시	23,753,158	90,566	0.38
청원군	28,156,886	48,797	0.17
보은군	11,216,218	417,779	3.72
옥천군	10,374,594	76,304	0.74
영동군	17,970,566	74,554	0.41
증평군	8,094,198	24,643	0.30
진천군	16,242,731	55,141	0.34
괴산군	17,182,525	11,356	0.07
음성군	19,827,443	199,572	1.01
단양군	18,029,910	33,013	0.18

〈부표 2-24-12〉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단위: 원, %)

	'13년 총구매액(A)	'13년 중증장애인생산물구매액(B)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B/A) × 100
계	633,016,811	6,751,675	1.07
천안시	86,018,192	1,570,454	1.83
공주시	29,363,432	627,122	2.14
보령시	30,646,833	306,766	1.00
아산시	75,841,250	1,468,792	1.94
서산시	64,805,564	1,231,361	1.90
논산시	51,119,046	96,576	0.19
계룡시	12,481,162	108,164	0.87
당진시	47,678,565	80,972	0.17
금산군	29,733,751	25,825	0.09
부여군	25,422,327	260,888	1.03
서천군	22,960,038	421,700	1.84
청양군	32,141,384	170,030	0.53
홍성군	36,940,212	195,640	0.53
예산군	44,588,288	153,509	0.34
태안군	43,276,767	33,876	0.08

〈부표 2-24-13〉 전라북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단위: 원, %)

	'13년 총구매액(A)	'13년 중증장애인생산물구매액(B)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B/A) × 100
계	488,317,758	2,541,007	0.52
전주시	51,785,022	741,163	1.43
군산시	52,004,843	272,045	0.52
익산시	24,550,734	356,454	1.45
정읍시	60,001,676	200,924	0.33
남원시	24,486,556	28,563	0.12
김제시	49,587,694	84,393	0.17
완주군	27,836,678	366,306	1.32
진안군	41,348,948	27,196	0.07
무주군	21,678,208	60,088	0.28
장수군	22,105,114	38,815	0.18
임실군	17,611,732	67,733	0.38
순창군	17,101,236	32,659	0.19
고창군	29,047,144	43,169	0.15
부안군	49,172,173	221,499	0.45

〈부표 2-24-14〉 전라남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단위: 원, %)

	'13년 총구매액(A)	'13년 중증장애인생산물구매액(B)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B/A) × 100
계	812,355,077	2,212,166	0.27
목포시	24,908,748	416,465	1.67
여수시	48,885,344	359,367	0.74
순천시	44,315,066	83,151	0.19
나주시	35,871,356	48,353	0.13
광양시	40,210,510	46,385	0.12
담양군	27,269,280	45,791	0.17
곡성군	46,706,340	65,301	0.14
구례군	25,204,843	320,914	1.27
고흥군	67,277,170	69,896	0.10
보성군	42,962,316	64,727	0.15
화순군	19,839,752	31,041	0.16
장흥군	41,685,164	31,519	0.08
강진군	10,417,749	9,671	0.09
해남군	48,649,793	79,003	0.16
영암군	21,129,595	55,317	0.26
무안군	28,199,739	79,737	0.28
함평군	35,968,041	176,647	0.49
영광군	21,403,852	26,415	0.12
장성군	31,400,798	69,170	0.22
완도군	48,375,217	83,968	0.17
진도군	30,598,542	31,534	0.10
신안군	71,075,862	17,794	0.03

〈부표 2-24-15〉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단위: 원, %)

	'13년 총구매액(A)	'13년 중증장애인생산물구매액(B)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B/A) × 100
계	835,608,629	4,270,738	0.51
포항시	77,063,310	1,672,956	2.17
경주시	67,423,022	98,551	0.15
김천시	35,197,506	37,995	0.11
안동시	76,517,461	119,649	0.16
구미시	55,218,741	113,040	0.20
영주시	27,988,129	102,332	0.37
영천시	65,078,236	336,401	0.52
상주시	36,982,408	524,257	1.42
문경시	37,138,930	31,547	0.08
경산시	13,988,739	121,786	0.87
군위군	19,300,374	20,954	0.11
의성군	43,706,269	47,341	0.11
청송군	23,659,039	75,524	0.32
영양군	37,497,699	27,280	0.07
영덕군	31,244,475	209,852	0.67
청도군	4,972,749	57,847	1.16
고령군	16,970,990	307,552	1.81
성주군	40,214,391	42,236	0.11
칠곡군	32,791,201	102,566	0.31
예천군	31,131,413	55,850	0.18
봉화군	24,760,471	43,119	0.17
울진군	22,754,266	104,255	0.46
울릉군	14,008,810	17,848	0.13

〈부표 2-24-16〉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단위: 원, %)

	'13년 총구매액(A)	'13년 중증장애인생산물구매액(B)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B/A) × 100
계	774,820,418	2,113,938	0.27
창원시	170,610,522	723,578	0.42
진주시	40,268,703	34,721	0.09
통영시	35,722,530	18,097	0.05
사천시	28,004,295	18,701	0.07
김해시	66,634,296	214,609	0.32
밀양시	41,052,254	88,719	0.22
거제시	49,472,941	32,711	0.07
양산시	63,282,753	429,489	0.68
의령군	28,262,346	11,236	0.04
함안군	30,207,958	359,451	1.19

창녕군	21,656,193	41,027	0.19
고성군	37,035,742	22,405	0.06
남해군	18,464,747	38,793	0.21
하동군	14,357,848	11,686	0.08
함양군	27,627,091	13,140	0.05
산청군	30,006,291	13,978	0.05
거창군	34,050,224	13,718	0.04
합천군	38,103,684	27,879	0.07

〈부표 2-24-17〉 제주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단위: 원, %)

	'13년 총구매액(A)	'13년 중증장애인생산물구매액(B)	중증장애인생산물 총 구매액에 대한 구매목표비율 달성률 (B/A) × 100
계	0	0	0.00
제주시	0	0	0.00
서귀포시	0	0	0.00

□ 중점관리 분야(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부표 2-25-1〉 서울특별시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단위: 개, %)

	노인일자리 제공 수					노인일자리 목표량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C/F)×100
	공공분야 (A)	민간분야(B)			C= (A+B)	공공분야 (D)	민간분야 (E)	F= (D+E)	
		일자리제공수 (①)	가중치 (②)	B= (①×②)					
계	31,881	3,745	0	3,946.94	35,827.94	31,077	3,255	34,332	104.36
종로구	945	143	1.05	150.15	1,095.15	1,060	146	1,206	90.81
중구	1,312	40	1	40.00	1,352.00	1,374	110	1,484	91.11
용산구	1,264	40	1	40.00	1,304.00	1,173	52	1,225	106.45
성동구	1,139	121	1.03	124.63	1,263.63	1,115	98	1,213	104.17
광진구	914	210	1.05	220.50	1,134.50	923	135	1,058	107.23
동대문구	1,041	103	1.03	106.09	1,147.09	1,001	95	1,096	104.66
종량구	870	49	1	49.00	919.00	803	70	873	105.27
성북구	1,273	96	1.03	98.88	1,371.88	1,231	120	1,351	101.55
강북구	1,081	254	1.05	266.70	1,347.70	1,078	112	1,190	113.25
도봉구	1,004	169	1.05	177.45	1,181.45	1,002	126	1,128	104.74
노원구	2,431	146	1.05	153.30	2,584.30	2,400	110	2,510	102.96
은평구	1,613	234	1.05	245.70	1,858.70	1,584	165	1,749	106.27
서대문구	1,379	125	1.03	128.75	1,507.75	1,370	120	1,490	101.19
마포구	2,240	422	1.1	464.20	2,704.20	2,130	440	2,570	105.22
양천구	1,302	22	1	22.00	1,324.00	1,286	95	1,381	95.87
강서구	1,025	105	1.03	108.15	1,133.15	1,028	115	1,143	99.14
구로구	1,528	140	1.05	147.00	1,675.00	1,545	98	1,643	101.95
금천구	1,287	139	1.05	145.95	1,432.95	1,280	91	1,371	104.52
영등포구	1,483	160	1.05	168.00	1,651.00	1,442	108	1,550	106.52
동작구	1,197	108	1.03	111.24	1,308.24	1,208	85	1,293	101.18
관악구	975	124	1.03	127.72	1,102.72	940	121	1,061	103.93
서초구	923	136	1.05	142.80	1,065.80	960	117	1,077	98.96
강남구	1,903	378	1.1	415.80	2,318.80	1,327	311	1,638	141.56
송파구	619	175	1.05	183.75	802.75	687	110	797	100.72
강동구	1,133	106	1.03	109.18	1,242.18	1,130	105	1,235	100.58

〈부표 2-25-2〉 부산광역시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단위: 개, %)

	노인일자리 제공 수					노인일자리 목표량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C/F)×100
	공공분야 (A)	민간분야(B)			C= (A+B)	공공분야 (D)	민간분야 (E)	F= (D+E)	
		일자리제공수 (①)	가중치 (②)	B= (①×②)					
계	14,718	2,809	1.07	3,018.61	17,736.61	14,313	2,146	16,459	107.76
중구	505	30	1	30.00	535.00	471	12	483	110.77
서구	779	245	1.05	257.25	1,036.25	757	176	933	111.07
동구	878	145	1.05	152.25	1,030.25	823	107	930	110.78
영도구	795	172	1.05	180.60	975.60	755	124	879	110.99
부산진구	1,576	12	1	12.00	1,588.00	1,503	10	1,513	104.96
동래구	1,024	35	1	35.00	1,059.00	996	22	1,018	104.03
남구	1,103	146	1.05	153.30	1,256.30	1,097	114	1,211	103.74
북구	1,056	358	1.1	393.80	1,449.80	1,043	242	1,285	112.82
해운대구	1,627	0	1	0.00	1,627.00	1,617	0	1,617	100.62
사하구	1,117	268	1.1	294.80	1,411.80	1,094	210	1,304	108.27
금정구	962	323	1.1	355.30	1,317.30	970	295	1,265	104.13
강서구	558	0	1	0.00	558.00	493	0	493	113.18
연제구	744	602	1.1	662.20	1,406.20	735	487	1,222	115.07
수영구	875	98	1.03	100.94	975.94	852	81	933	104.60
사상구	682	129	1.03	132.87	814.87	672	65	737	110.57
기장군	437	246	1.05	258.30	695.30	435	201	636	109.32

〈부표 2-25-3〉 대구광역시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단위: 개, %)

	노인일자리 제공 수				노인일자리 목표량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C/F)×100	
	공공분야 (A)	민간분야(B)		C= (A+B)	공공분야 (D)	민간분야 (E)	F= (D+E)		
		일자리제공수 (①)	가중치 (②)						B= (①×②)
계	10,481	1,381	0	1,461.35	11,942.35	9,910	1,091	11,001	108.56
중구	902	263	1.05	276.15	1,178.15	860	154	1,014	116.19
동구	1,362	95	1.03	97.85	1,459.85	1,345	115	1,460	99.99
서구	1,104	149	1.05	156.45	1,260.45	1,105	146	1,251	100.76
남구	1,315	221	1.05	232.05	1,547.05	1,320	153	1,473	105.03
북구	1,352	199	1.05	208.95	1,560.95	1,354	151	1,505	103.72
수성구	1,433	190	1.05	199.50	1,632.50	1,415	155	1,570	103.98
달서구	1,714	264	1.1	290.40	2,004.40	1,657	217	1,874	106.96
달성군	1,299	0	1	0.00	1,299.00	854	0	854	152.11

〈부표 2-25-4〉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단위: 개, %)

	노인일자리 제공 수					노인일자리 목표량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C/F)×100
	공공분야 (A)	민간분야(B)			C= (A+B)	공공분야 (D)	민간분야 (E)	F= (D+E)	
		일자리제공수 (①)	가중치 (②)	B= (①×②)					
계	14,431	2,320	0	2,527.56	16,958.56	10,897	1,531	12,428	136.45
중구	710	56	1	56.00	766.00	588	38	626	122.36
동구	583	107	1.03	110.21	693.21	470	71	541	128.13
남구	2,538	409	1.1	449.90	2,987.90	1,808	209	2,017	148.14
연수구	1,502	283	1.1	311.30	1,813.30	1,126	229	1,355	133.82
남동구	1,966	461	1.1	507.10	2,473.10	1,503	329	1,832	134.99
부평구	1,856	425	1.1	467.50	2,323.50	1,483	245	1,728	134.46
계양구	1,608	183	1.05	192.15	1,800.15	1,295	128	1,423	126.50
서구	1,989	374	1.1	411.40	2,400.40	1,401	265	1,666	144.08
강화군	1,012	22	1	22.00	1,034.00	824	17	841	122.95
옹진군	667	0	1	0.00	667.00	399	0	399	167.17

〈부표 2-25-5〉 광주광역시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단위: 개, %)

	노인일자리 제공 수					노인일자리 목표량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C/F)×100
	공공분야 (A)	민간분야(B)			C= (A+B)	공공분야 (D)	민간분야 (E)	F= (D+E)	
		일자리제공수 (①)	가중치 (②)	B= (①×②)					
계	6,798	1,020	0	1,071.00	7,869.00	6,600	929	7,529	104.52
동구	866	240	1.05	252.00	1,118.00	837	201	1,038	107.71
서구	1,334	145	1.05	152.25	1,486.25	1,290	136	1,426	104.23
남구	1,716	223	1.05	234.15	1,950.15	1,662	188	1,850	105.41
북구	1,678	206	1.05	216.30	1,894.30	1,631	195	1,826	103.74
광산구	1,204	206	1.05	216.30	1,420.30	1,180	209	1,389	102.25

〈부표 2-25-6〉 대전광역시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단위: 개, %)

	노인일자리 제공 수					노인일자리 목표량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C/F)×100
	공공분야 (A)	민간분야(B)			C= (A+B)	공공분야 (D)	민간분야 (E)	F= (D+E)	
		일자리제공수 (①)	가중치 (②)	B= (①×②)					
계	7,356	1,042	0	1,108.65	8,464.65	6,845	702	7,547	112.16
동구	1,400	209	1.05	219.45	1,619.45	1,366	157	1,523	106.33
중구	1,765	291	1.1	320.10	2,085.10	1,587	165	1,752	119.01
서구	1,903	213	1.05	223.65	2,126.65	1,592	143	1,735	122.57
유성구	1,196	198	1.05	207.90	1,403.90	1,206	161	1,367	102.70
대덕구	1,092	131	1.05	137.55	1,229.55	1,094	76	1,170	105.09

〈부표 2-25-7〉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단위: 개, %)

	노인일자리 제공 수					노인일자리 목표량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C/F)×100
	공공분야 (A)	민간분야(B)			C= (A+B)	공공분야 (D)	민간분야 (E)	F= (D+E)	
		일자리제공수 (①)	가중치 (②)	B= (①×②)					
계	4,596	422	0	437.47	5,033.47	4,059	328	4,387	114.74
중구	935	172	1.05	180.60	1,115.60	892	133	1,025	108.84
남구	1,639	126	1.03	129.78	1,768.78	1,340	83	1,423	124.30
동구	541	0	1	0.00	541.00	500	0	500	108.20
북구	545	21	1	21.00	566.00	531	21	552	102.54
울주군	936	103	1.03	106.09	1,042.09	796	91	887	117.48

〈부표 2-25-8〉 세종시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단위: 개, %)

	노인일자리 제공 수				C= (A+B)	노인일자리 목표량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C/F)×100
	공공분야 (A)	민간분야(B)		공공분야 (D)		민간분야 (E)	F= (D+E)		
		일자리제공수 (①)	가중치 (②)					B= (①×②)	
계	0	0	0	0	0.00	0	0	0	0.00

〈부표 2-25-9〉 경기도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단위: 개, %)

	노인일자리 제공 수				노인일자리 목표량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C/F)×100	
	공공분야 (A)	민간분야(B)			C= (A+B)	공공분야 (D)	민간분야 (E)		F= (D+E)
		일자리제공수 (①)	가중치 (②)	B= (①×②)					
계	29,478	6,019	0	6,464.22	35,942.22	27,527	3,857	31,384	114.52
수원시	1,486	488	1.1	536.80	2,022.80	1,471	307	1,778	113.77
성남시	2,044	469	1.1	515.90	2,559.90	1,813	390	2,203	116.20
고양시	2,049	506	1.1	556.60	2,605.60	1,518	387	1,905	136.78
용인시	1,051	289	1.1	317.90	1,368.90	1,049	247	1,296	105.63
부천시	2,112	292	1.1	321.20	2,433.20	1,890	233	2,123	114.61
안산시	1,441	282	1.1	310.20	1,751.20	1,330	184	1,514	115.67
안양시	1,177	280	1.1	308.00	1,485.00	1,066	172	1,238	119.95
남양주시	940	200	1.05	210.00	1,150.00	895	195	1,090	105.50
화성시	1,084	377	1.1	414.70	1,498.70	1,051	216	1,267	118.29
평택시	1,058	179	1.05	187.95	1,245.95	1,051	124	1,175	106.04
의정부시	1,297	212	1.05	222.60	1,519.60	1,293	181	1,474	103.09
시흥시	978	433	1.1	476.30	1,454.30	963	192	1,155	125.91
파주시	773	196	1.05	205.80	978.80	774	88	862	113.55
광명시	1,466	142	1.05	149.10	1,615.10	1,219	62	1,281	126.08

450 2014년 지역복지정책평가 결과 및 성과분석

김포시	624	200	1.05	210.00	834.00	601	133	734	113.62
군포시	874	214	1.05	224.70	1,098.70	735	101	836	131.42
광주시	623	137	1.05	143.85	766.85	641	58	699	109.71
이천시	699	126	1.03	129.78	828.78	631	81	712	116.40
양주시	503	64	1	64.00	567.00	497	40	537	105.59
오산시	488	38	1	38.00	526.00	460	14	474	110.97
구리시	530	156	1.05	163.80	693.80	528	51	579	119.83
안성시	492	33	1	33.00	525.00	492	33	525	100.00
포천시	690	239	1.05	250.95	940.95	642	41	683	137.77
의왕시	645	102	1.03	105.06	750.06	633	75	708	105.94
하남시	460	33	1	33.00	493.00	451	28	479	102.92
여주시	550	101	1.03	104.03	654.03	555	50	605	108.10
양평군	1,014	48	1	48.00	1,062.00	953	36	989	107.38
동두천시	1,172	94	1	94.00	1,266.00	1,150	74	1,224	103.43
과천시	219	43	1	43.00	262.00	222	25	247	106.07
가평군	555	22	1	22.00	577.00	563	22	585	98.63
연천군	384	24	1	24.00	408.00	390	17	407	100.25

〈부표 2-25-10〉 강원도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단위: 개, %)

	노인일자리 제공 수				노인일자리 목표량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C/F)×100	
	공공분야 (A)	민간분야(B)		C= (A+B)	공공분야 (D)	민간분야 (E)	F= (D+E)		
		일자리제공수 (①)	가중치 (②)						B= (①×②)
계	13,506	1,746	0	1,829.03	15,335.03	10,589	1,271	11,860	129.30
춘천시	2,116	300	1.1	330.00	2,446.00	869	202	1,071	228.38
원주시	1,026	213	1.05	223.65	1,249.65	941	181	1,122	111.38
강릉시	855	235	1.05	246.75	1,101.75	768	195	963	114.41
동해시	845	189	1.05	198.45	1,043.45	786	186	972	107.35
태백시	677	79	1	79.00	756.00	574	54	628	120.38
속초시	631	82	1	82.00	713.00	660	73	733	97.27
삼척시	568	111	1.03	114.33	682.33	631	0	631	108.13
홍천군	668	0	1	0.00	668.00	557	0	557	119.93
횡성군	676	156	1.05	163.80	839.80	512	179	691	121.53
영월군	847	8	1	8.00	855.00	531	0	531	161.02
평창군	621	201	1.05	211.05	832.05	557	60	617	134.85
정선군	494	53	1	53.00	547.00	441	0	441	124.04
철원군	457	0	1	0.00	457.00	406	0	406	112.56
화천군	786	0	1	0.00	786.00	441	0	441	178.23
양구군	499	0	1	0.00	499.00	462	0	462	108.01
인제군	507	49	1	49.00	556.00	462	70	532	104.51
고성군	731	34	1	34.00	765.00	504	25	529	144.61
양양군	502	36	1	36.00	538.00	487	46	533	100.94

〈부표 2-25-11〉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단위: 개, %)

	노인일자리 제공 수					노인일자리 목표량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C/F)×100
	공공분야 (A)	민간분야(B)			C= (A+B)	공공분야 (D)	민간분야 (E)	F= (D+E)	
		일자리제공수 (①)	가중치 (②)	B= (①×②)					
계	9,134	1,096	0	1,162.02	10,296.02	7,305	989	8,294	124.14
청주시	2,514	487	1.1	535.70	3,049.70	1,749	458	2,207	138.18
충주시	1,452	119	1.03	122.57	1,574.57	1,282	108	1,390	113.28
제천시	917	87	1	87.00	1,004.00	807	73	880	114.09
청원군	1,212	140	1.05	147.00	1,359.00	809	102	911	149.18
보은군	418	23	1	23.00	441.00	370	50	420	105.00
옥천군	443	0	1	0.00	443.00	406	34	440	100.68
영동군	379	11	1	11.00	390.00	350	6	356	109.55
증평군	263	28	1	28.00	291.00	157	30	187	155.61
진천군	316	135	1.05	141.75	457.75	275	98	373	122.72
괴산군	333	24	1	24.00	357.00	300	20	320	111.56
음성군	599	42	1	42.00	641.00	553	10	563	113.85
단양군	288	0	1	0.00	288.00	247	0	247	116.60

〈부표 2-25-12〉 충청남도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단위: 개, %)

	노인일자리 제공 수					노인일자리 목표량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C/F)×100
	공공분야 (A)	민간분야(B)			C= (A+B)	공공분야 (D)	민간분야 (E)	F= (D+E)	
		일자리제공수 (①)	가중치 (②)	B= (①×②)					
계	10,750	927	0	947.56	11,697.56	9,471	773	10,244	114.19
천안시	1,492	221	1.05	232.05	1,724.05	1,474	238	1,712	100.70
공주시	832	104	1.03	107.12	939.12	713	100	813	115.51
보령시	448	106	1.03	109.18	557.18	450	90	540	103.18
아산시	563	94	1	94.00	657.00	518	76	594	110.61
서산시	815	57	1	57.00	872.00	761	39	800	109.00
논산시	532	14	1	14.00	546.00	486	10	496	110.08
계룡시	432	18	1	18.00	450.00	239	13	252	178.57
당진시	1,092	40	1	40.00	1,132.00	1,097	42	1,139	99.39
금산군	482	10	1	10.00	492.00	438	10	448	109.82
부여군	555	107	1.03	110.21	665.21	545	76	621	107.12
서천군	822	83	1	83.00	905.00	674	25	699	129.47
청양군	476	0	1	0.00	476.00	415	0	415	114.70
홍성군	807	48	1	48.00	855.00	757	45	802	106.61
예산군	333	25	1	25.00	358.00	330	9	339	105.60
태안군	1,069	0	1	0.00	1,069.00	574	0	574	186.24

〈부표 2-25-13〉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단위: 개, %)

	노인일자리 제공 수					노인일자리 목표량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C/F)×100
	공공분야 (A)	민간분야(B)			C= (A+B)	공공분야 (D)	민간분야 (E)	F= (D+E)	
		일자리제공수 (①)	가중치 (②)	B= (①×②)					
계	16,839	1,437	0	1,516.65	18,355.65	14,381	1,122	15,503	118.40
전주시	3,221	561	1.1	617.10	3,838.10	3,011	455	3,466	110.74
군산시	1,777	78	1	78.00	1,855.00	1,551	61	1,612	115.07
익산시	1,855	232	1.05	243.60	2,098.60	1,763	158	1,921	109.25
정읍시	1,870	239	1.05	250.95	2,120.95	1,225	141	1,366	155.27
남원시	1,061	85	1	85.00	1,146.00	901	71	972	117.90
김제시	1,167	25	1	25.00	1,192.00	1,044	25	1,069	111.51
완주군	766	66	1	66.00	832.00	754	55	809	102.84
진안군	481	33	1	33.00	514.00	426	29	455	112.97
무주군	603	66	1	66.00	669.00	451	64	515	129.90
장수군	1,506	37	1	37.00	1,543.00	939	30	969	159.24
임실군	445	15	1	15.00	460.00	427	23	450	102.22
순창군	631	0	1	0.00	631.00	478	0	478	132.01
고창군	775	0	1	0.00	775.00	742	0	742	104.45
부안군	681	0	0	0.00	681.00	669	10	679	100.29

〈부표 2-25-14〉 전라남도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단위: 개, %)

	노인일자리 제공 수					노인일자리 목표량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C/F)×100
	공공분야 (A)	민간분야(B)			C= (A+B)	공공분야 (D)	민간분야 (E)	F= (D+E)	
		일자리제공수 (①)	가중치 (②)	B= (①×②)					
계	17,270	1,035	0	1,060.46	18,330.46	15,210	830	16,040	114.28
목포시	1,304	70	1	70.00	1,374.00	1,244	49	1,293	106.26
여수시	1,936	238	1.05	249.90	2,185.90	1,585	188	1,773	123.29
순천시	1,580	20	1	20.00	1,600.00	1,359	20	1,379	116.03
나주시	969	123	1.03	126.69	1,095.69	807	118	925	118.45
광양시	630	98	1.03	100.94	730.94	637	100	737	99.18
담양군	561	0	1	0.00	561.00	506	0	506	110.87
곡성군	397	121	1.03	124.63	521.63	380	112	492	106.02
구례군	356	0	1	0.00	356.00	341	0	341	104.40
고흥군	1,117	9	1	9.00	1,126.00	932	8	940	119.79
보성군	620	8	1	8.00	628.00	587	7	594	105.72
화순군	1,108	20	1	20.00	1,128.00	623	20	643	175.43
장흥군	659	9	1	9.00	668.00	658	9	667	100.15
강진군	575	16	1	16.00	591.00	505	7	512	115.43
해남군	774	0	1	0.00	774.00	755	6	761	101.71
영암군	570	0	1	0.00	570.00	575	0	575	99.13
무안군	551	11	1	11.00	562.00	554	7	561	100.18
함평군	502	30	1	30.00	532.00	460	46	506	105.14
영광군	666	59	1	59.00	725.00	670	42	712	101.83

장성군	657	0	1	0.00	657.00	496	0	496	132.46
완도군	571	93	1	93.00	664.00	583	66	649	102.31
진도군	612	110	1.03	113.30	725.30	431	25	456	159.06
신안군	555	0	1	0.00	555.00	522	0	522	106.32

〈부표 2-25-15〉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단위: 개, %)

	노인일자리 제공 수					노인일자리 목표량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C/F)×100
	공공분야 (A)	민간분야(B)			C= (A+B)	공공분야 (D)	민간분야 (E)	F= (D+E)	
		일자리제공수 (①)	가중치 (②)	B= (①×②)					
계	20,236	1,884	0	2,002.17	22,238.17	16,553	1,483	18,036	123.30
포항시	4,482	431	1.1	474.10	4,956.10	2,566	295	2,861	173.23
경주시	1,363	164	1.05	172.20	1,535.20	1,314	115	1,429	107.43
김천시	1,099	53	1	53.00	1,152.00	786	46	832	138.46
안동시	1,385	195	1.05	204.75	1,589.75	1,242	152	1,394	114.04
구미시	755	381	1.1	419.10	1,174.10	742	301	1,043	112.57
영주시	643	0	1	0.00	643.00	617	0	617	104.21
영천시	533	0	1	0.00	533.00	521	0	521	102.30
상주시	756	81	1	81.00	837.00	735	86	821	101.95
문경시	923	76	1	76.00	999.00	852	70	922	108.35
경산시	718	135	1.05	141.75	859.75	677	116	793	108.42
군위군	355	0	1	0.00	355.00	341	0	341	104.11
의성군	891	177	1.05	185.85	1,076.85	819	147	966	111.48
청송군	977	114	1.03	117.42	1,094.42	824	106	930	117.68
영양군	487	0	1	0.00	487.00	360	0	360	135.28
영덕군	594	0	1	0.00	594.00	583	0	583	101.89
청도군	403	0	1	0.00	403.00	392	0	392	102.81
고령군	335	0	1	0.00	335.00	323	0	323	103.72
성주군	338	30	1	30.00	368.00	330	29	359	102.51
칠곡군	433	47	1	47.00	480.00	379	20	399	120.30
예천군	437	0	1	0.00	437.00	370	0	370	118.11
봉화군	909	0	1	0.00	909.00	675	0	675	134.67
울진군	818	0	1	0.00	818.00	603	0	603	135.66
울릉군	602	0	1	0.00	602.00	502	0	502	119.92

〈부표 2-25-16〉 경상남도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단위: 개, %)

	노인일자리 제공 수					노인일자리 목표량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C/F)×100
	공공분야 (A)	민간분야(B)			C= (A+B)	공공분야 (D)	민간분야 (E)	F= (D+E)	
		일자리제공수 (①)	가중치 (②)	B= (①×②)					
계	15,941	1,225	1.07	1,312.21	17,253.21	15,343	844	16,187	106.59
창원시	3,543	435	1.1	478.50	4,021.50	3,492	316	3,808	105.61
진주시	1,876	132	1.05	138.60	2,014.60	1,666	68	1,734	116.18
통영시	812	9	1	9.00	821.00	804	10	814	100.86
사천시	447	16	1	16.00	463.00	452	15	467	99.14
김해시	1,385	336	1.1	369.60	1,754.60	1,356	217	1,573	111.54
밀양시	501	0	1	0.00	501.00	504	0	504	99.40
거제시	1,470	26	1	26.00	1,496.00	1,208	34	1,242	120.45
양산시	1,513	117	1.03	120.51	1,633.51	1,476	69	1,545	105.73
의령군	351	0	1	0.00	351.00	360	0	360	97.50
함안군	373	41	1	41.00	414.00	371	30	401	103.24
창녕군	395	10	1	10.00	405.00	403	10	413	98.06
고성군	374	10	1	10.00	384.00	376	10	386	99.48
남해군	574	0	1	0.00	574.00	563	0	563	101.95
하동군	436	23	1	23.00	459.00	445	0	445	103.15
함양군	396	0	1	0.00	396.00	394	0	394	100.51
산청군	459	17	1	17.00	476.00	442	15	457	104.16
거창군	571	0	1	0.00	571.00	564	0	564	101.24
합천군	465	53	1	53.00	518.00	467	50	517	100.19

〈부표 2-25-17〉 제주특별자치시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단위: 개, %)

	노인일자리 제공 수					노인일자리 목표량			노인일자리 목표 달성률 (C/F)×100
	공공분야 (A)	민간분야(B)			C= (A+B)	공공분야 (D)	민간분야 (E)	F= (D+E)	
		일자리제공수 (①)	가중치 (②)	B= (①×②)					
계	3,277	261	0	0.00	3,277.00	2,860	216	3,076	106.53
제주시	1,971	143	0	0.00	1,971.00	1,716	122	1,838	107.24
서귀포시	1,306	118	0	0.00	1,306.00	1,144	94	1,238	105.49